

양천구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복지서비스 욕구조사

2009. 4.

양 천 장 에 인 종 합 복 지 관
성 공 회 대 학 교 사 회 복 지 연 구 소

제 출 문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본 보고서를 “양천구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복지서비스 욕구 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4월

연구진

- 연구 기관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책임연구원 : 김 용 득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구원 : 상 중 열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 연구원 : 오 영 숙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 연구원 : 송 남 영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 보조연구원 : 전 권 일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보조원
- 보조연구원 : 이 금 지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보조원

이 보고서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의뢰한 '장애유형별 복지서비스 욕구조사'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서이며,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제 1 장 연구 개요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 목적 및 연구내용	1
1. 연구 목적	1
2. 연구방법과 내용	2
1) 연구방법	2
2) 연구내용	3
제 2 장 선행 연구 검토	5
제 1 절 장애인복지의 주요 동향	5
1.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5
1) 장애이념과 법	5
2)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8
2. 장애인복지정책 변화의 동향	9
1)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개편	9
2) 장애인공적요양보장제도 도입	10
3) 장애인 거주서비스 체계 개편	10
3.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11
1) 장애인복지 현황과 중점 추진계획	12
2) 장애인교육문화 현황과 중점 추진계획	14
3) 장애인경제활동 지원 현황과 중점 추진계획	15
4) 장애인사회참여 지원 현황과 중점 추진계획	17
제 2 절 양천구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요추계	19
1. 양천구 장애인복지 서비스 필요인구	19
2. 양천구 장애인복지시설 종류별 수요산정	19

제 3 장 욕구 조사	23
제 1 절 조사 설계	23
1. 조사개요	23
1) 조사내용	23
2) 조사방법	24
2. 표본설계	24
3. 설문지 수집 결과	26
제 2 절 조사결과	27
1. 전체 장애인 결과	27
1) 인구사회학적 특성	27
2) 일상생활 수행능력	33
3) 기관이용 현황	44
4) 연령별 서비스 욕구	51
5) 기타 서비스 욕구	72
2. 장애유형별 결과	86
1) 지체장애인	87
2) 뇌병변장애인	116
3) 지적장애인	143
4) 자폐성장애인	169
5) 정신장애인	192
6) 시각장애인	213
7) 청각장애인	233
8) 기타장애인	254
제 4 장 양천구 장애인복지 정책 방향	272
제 1 절 전체 장애인 종합 검토	272
1. 인구사회학적 특성	272
2. 일상생활수행능력	273
3. 장애인 기관 이용 현황	273
4. 연령별 서비스 현황	274

5. 기타 서비스 욕구	276
--------------------	-----

제2절 장애유형별 종합 검토 277

1. 지체장애	277
2. 뇌병변장애	278
3. 지적장애	278
4. 자폐성 장애	279
5. 정신장애	280
6. 시각장애	281
7. 청각장애	281
8. 기타장애	282

제 3 절 종합제언 282

1. 전체 장애인의 서비스 미충족률	283
1) 미취학 아동(총 35명)	283
2) 취학 아동 및 청소년(총 82명)	284
3) 성인(총 497명)	284
2. 장애유형별 서비스 미충족율	284
1) 지체장애	284
2) 뇌병변장애	285
3) 지적장애	287
4) 자폐성 장애	288
5) 정신장애	289
6) 시각장애	290
7) 청각장애	291
8) 기타장애	291

참고문헌 293

<부록 1> 양천구 장애인 서비스 욕구조사 설문지	295
<부록 2> 인터뷰 설문지	307
<부록 3> 언어장애인 인터뷰 내용	308

표 목 차

<표 2-2-1> 장애인복지서비스 필요 인구	19
<표 2-2-2> 장애인복지시설 종류별 필요수량	21
<표 3-1-1> 표본 설계(양천구 장애유형별 인구비율 적용)	25
<표 3-1-2> 인터뷰 면접표본 설계	25
<표 3-1-3> 설문지 수거현황	26
<표 3-1-4> 인터뷰 현황	27
<표 3-2-1> 장애유형/장애등급/연령별 현황	28
<표 3-2-2> 설문응답자/성별/동거가족 현황	29
<표 3-2-3> 학력/혼인관계/주택소유 현황	30
<표 3-2-4> 월평균 수입과 월평균 지출	31
<표 3-2-5> 지출순위	31
<표 3-2-6> 수급자 현황	32
<표 3-2-7> 가족과의 관계	32
<표 3-2-8>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33
<표 3-2-9> 장애유형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34
<표 3-2-10> 연령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35
<표 3-2-11>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	35
<표 3-2-12> 일상생활에 있어 도움충분정도	36
<표 3-2-13> 장애유형별 일상생활에 있어 도움충분정도	37
<표 3-2-14> 연령별 일상생활에 있어 도움충분정도	38
<표 3-2-15>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38
<표 3-2-16>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수행능력 (ADL)	39
<표 3-2-17> 연령별 일상생활 수행능력 (ADL)	40
<표 3-2-18> 일상생활수행능력별 도움필요정도	41
<표 3-2-19> 도움필요정도별 주변으로부터의 도움충분정도	42
<표 3-2-20> 일상생활수행능력별 도움충분정도	43
<표 3-2-21> 기관 이용현황	44
<표 3-2-22> 기타 이용기관 현황	50
<표 3-2-23> 미취학 아동 서비스 이용 현황	52

<표 3-2-24> 취학 아동(초등학생- 고등학생) 서비스 이용 현황	58
<표 3-2-25> 성인(만 18세 이상) 서비스 이용 현황	65
<표 3-2-26> 취업 여부	72
<표 3-2-27> 근무 업종 / 근무 년수	72
<표 3-2-28> 현재 직무군	73
<표 3-2-29>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73
<표 3-2-30> 구직과 이직 희망 업종 / 희망 (월)급여	74
<표 3-2-31> 구직활동 않는 이유	74
<표 3-2-32> 서비스 인지 경로	75
<표 3-2-33> 서비스 선택기준	76
<표 3-2-34>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가장 필요한 서비스	76
<표 3-2-35> 연령별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가장 필요한 서비스	77
<표 3-2-36> 자택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77
<표 3-2-37> 동의하지 않는 이유	78
<표 3-2-38> 장애인 인식개선 방안	78
<표 3-2-39> 할인혜택이 가장 필요한 분야	79
<표 3-2-40> 주택 개조에 대한 욕구	79
<표 3-2-41> 집수리 희망내용	80
<표 3-2-42> 장애유형/장애등급/연령별 현황	86
<표 3-2-43> 응답자	87
<표 3-2-44> 장애등급/연령	88
<표 3-2-45> 학력/성별/결혼	88
<표 3-2-46> 동거인	89
<표 3-2-47> 주택소유 형태	90
<표 3-2-48> 월평균 수입/지출	90
<표 3-2-49> 지출순위	91
<표 3-2-50> 수급자 현황	92
<표 3-2-51> 가족관계 정도	92
<표 3-2-52> 연령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93
<표 3-2-53> 주로 도와주는 사람	94

<표 3-2-54> 도움충분정도	95
<표 3-2-55> 일상생활수행능력(ADL)	96
<표 3-2-56> 기관 이용 현황	97
<표 3-2-57> 미취학아동기(0세~7세) 서비스 이용 현황	99
<표 3-2-58> 취학아동 및 청소년기(8세~19세) 서비스 이용 욕구	100
<표 3-2-59> 성인기(20세 이상) 서비스 이용 현황	102
<표 3-2-60> 현재 취업여부	103
<표 3-2-61> 취업 분야	103
<표 3-2-62> 현재 직무	104
<표 3-2-63> 근무기간	105
<표 3-2-64>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105
<표 3-2-65> 구직과 이직 희망 업종	106
<표 3-2-66> 희망급여	106
<표 3-2-67> 구직활동 않는 이유	107
<표 3-2-68> 서비스 인지경로	108
<표 3-2-69> 서비스 선택기준	108
<표 3-2-70> 연령별 필요한 서비스	109
<표 3-2-71> 자택 자원봉사활동 동의 여부/반대이유	110
<표 3-2-72> 인식개선방안	111
<표 3-2-73> 할인혜택 분야	111
<표 3-2-74> 집수리 여부/희망내용	112
<표 3-2-75> 응답자	116
<표 3-2-76> 장애등급/연령	117
<표 3-2-77> 학력/성별/결혼	117
<표 3-2-78> 동거인	118
<표 3-2-79> 주택소유 형태	118
<표 3-2-80> 월평균 수입/지출	119
<표 3-2-81> 지출순위	120
<표 3-2-82> 수급자 현황	120
<표 3-2-83> 가족관계 정도	121

<표 3-2-84> 연령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121
<표 3-2-85> 주로 도와주는 사람	122
<표 3-2-86> 도움충분정도	123
<표 3-2-87>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124
<표 3-2-88> 기관 이용 현황	125
<표 3-2-89> 미취학아동기(0세~7세) 서비스 현황	127
<표 3-2-90> 취학아동 및 청소년기(8세~19세) 서비스 현황	128
<표 3-2-91> 성인기(20세 이상) 서비스 현황	130
<표 3-2-92> 현재 취업여부	131
<표 3-2-93> 취업 분야	131
<표 3-2-94> 현재 직무	132
<표 3-2-95> 근무기간	132
<표 3-2-96>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133
<표 3-2-97> 구직과 이직 희망 업종	133
<표 3-2-98> 희망급여	134
<표 3-2-99> 구직하지 않는 이유	134
<표 3-2-100> 서비스 인지경로	135
<표 3-2-101> 서비스 선택기준	135
<표 3-2-102> 연령별 필요한 서비스	136
<표 3-2-103> 자택 자원봉사활동 동의 여부/반대이유	137
<표 3-2-104> 인식개선방안	138
<표 3-2-105> 할인혜택 분야	138
<표 3-2-106> 집수리 여부/희망내용	139
<표 3-2-107> 응답자	144
<표 3-2-108> 장애등급/연령	144
<표 3-2-109> 학력/성별/결혼	145
<표 3-2-110> 동거인	145
<표 3-2-111> 주택소유 형태	146
<표 3-2-112> 월평균 수입/지출	146
<표 3-2-113> 지출순위	147

<표 3-2-114> 수급자 현황	148
<표 3-2-115> 가족관계 정도	148
<표 3-2-116> 연령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149
<표 3-2-117> 주로 도와주는 사람	150
<표 3-2-118> 도움충분정도	151
<표 3-2-119>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152
<표 3-2-120> 기관 이용 현황	153
<표 3-2-121> 미취학아동기(0세~7세) 서비스 미충족률	155
<표 3-2-122> 취학아동 및 청소년기(8세~19세) 서비스 현황	156
<표 3-2-123> 성인기(20세 이상) 서비스 현황	158
<표 3-2-124> 현재 취업여부	159
<표 3-2-125> 취업 분야	159
<표 3-2-126> 현재 직무	160
<표 3-2-127> 근무기간	160
<표 3-2-128>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160
<표 3-2-129> 구직과 이직 희망 업종	161
<표 3-2-130> 희망급여	161
<표 3-2-131> 구직활동 않는 이유	161
<표 3-2-132> 서비스 인지경로	162
<표 3-2-133> 서비스 선택기준	162
<표 3-2-134> 연령별 필요한 서비스	163
<표 3-2-135> 자택 자원봉사활동 동의 여부/반대이유	164
<표 3-2-136> 인식개선방안	164
<표 3-2-137> 할인혜택 분야	165
<표 3-2-138> 집수리 여부/희망내용	165
<표 3-2-139> 응답자	169
<표 3-2-140> 장애등급/연령	169
<표 3-2-141> 학력/성별/결혼	170
<표 3-2-142> 동거인	170
<표 3-2-143> 주택소유 형태	171

<표 3-2-144> 월평균 수입/지출	171
<표 3-2-145> 지출순위	172
<표 3-2-146> 수급자 현황	172
<표 3-2-147> 가족관계 정도	173
<표 3-2-148> 연령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174
<표 3-2-149> 주로 도와주는 사람	175
<표 3-2-150> 도움충분정도	176
<표 3-2-151>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177
<표 3-2-152> 기관 이용 현황	178
<표 3-2-153> 취학아동 및 청소년기(8세~19세) 서비스 현황	180
<표 3-2-154> 성인기(20세 이상) 서비스 미충족률	181
<표 3-2-155> 현재 취업여부	182
<표 3-2-156>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183
<표 3-2-157> 구직과 이직 희망 업종	183
<표 3-2-158> 희망급여	183
<표 3-2-159> 구직활동 않는 이유	184
<표 3-2-160> 서비스 인지경로	184
<표 3-2-161> 서비스 선택기준	185
<표 3-2-162> 연령별 필요한 서비스	186
<표 3-2-163> 자택 자원봉사활동 동의 여부/반대이유	187
<표 3-2-164> 인식개선방안	187
<표 3-2-165> 할인혜택 분야	188
<표 3-2-166> 집수리 여부/희망내용	188
<표 3-2-167> 응답자	192
<표 3-2-168> 장애등급/연령	193
<표 3-2-169> 학력/성별/결혼	193
<표 3-2-170> 동거인	194
<표 3-2-171> 주택소유 형태	194
<표 3-2-172> 월평균 수입/지출	195
<표 3-2-173> 지출순위	195

<표 3-2-174> 수급자 현황	196
<표 3-2-175> 가족관계 정도	196
<표 3-2-176> 연령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197
<표 3-2-177> 주로 도와주는 사람	198
<표 3-2-178> 도움충분정도	199
<표 3-2-179>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200
<표 3-2-180> 기관 이용현황	201
<표 3-2-181> 취학아동 및 청소년기(8세~19세) 서비스 현황	203
<표 3-2-182> 성인기(20세 이상) 서비스 현황	204
<표 3-2-183> 현재 취업여부	205
<표 3-2-184> 취업 분야/현재 직무	206
<표 3-2-185> 근무기간	206
<표 3-2-186>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206
<표 3-2-187> 구직과 이직 희망 업종	207
<표 3-2-188> 희망급여	207
<표 3-2-189> 구직활동 않는 이유	207
<표 3-2-190> 서비스 인지경로	208
<표 3-2-191> 서비스 선택기준	208
<표 3-2-192> 연령별 필요한 서비스	209
<표 3-2-193> 자택 자원봉사활동 동의 여부/반대이유	210
<표 3-2-194> 인식개선방안	210
<표 3-2-195> 할인혜택 분야	211
<표 3-2-196> 집수리 여부/희망내용	211
<표 3-2-197> 응답자	214
<표 3-2-198> 장애등급	214
<표 3-2-199> 학력/성별/결혼	215
<표 3-2-200> 동거인	215
<표 3-2-201> 주택소유 형태	216
<표 3-2-202> 월평균 수입/지출	216
<표 3-2-203> 지출순위	217

<표 3-2-204> 수급자 현황	217
<표 3-2-205> 가족관계 정도	218
<표 3-2-206> 연령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218
<표 3-2-207> 주로 도와주는 사람	219
<표 3-2-208> 도움충분정도	219
<표 3-2-209>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220
<표 3-2-210> 기관 이용현황	221
<표 3-2-211> 성인기(20세 이상) 서비스 현황	222
<표 3-2-212> 현재 취업여부	224
<표 3-2-213> 취업 분야	224
<표 3-2-214> 현재 직무	225
<표 3-2-215> 근무기간	225
<표 3-2-216>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225
<표 3-2-217> 구직과 이직 희망 업종	226
<표 3-2-218> 희망급여	226
<표 3-2-219> 구직활동 않는 이유	226
<표 3-2-220> 서비스 인지경로	227
<표 3-2-221> 서비스 선택기준	227
<표 3-2-222> 연령별 필요한 서비스	228
<표 3-2-223> 자택 자원봉사활동 동의 여부/반대이유	228
<표 3-2-224> 인식개선방안	229
<표 3-2-225> 할인혜택 분야	229
<표 3-2-226> 집수리 여부/희망내용	230
<표 3-2-227> 응답자	233
<표 3-2-228> 장애등급/연령	234
<표 3-2-229> 학력/성별/결혼	234
<표 3-2-230> 동거인	235
<표 3-2-231> 주택소유 형태	235
<표 3-2-232> 월평균 수입/지출	236
<표 3-2-233> 지출순위	236

<표 3-2-234> 수급자 현황	237
<표 3-2-235> 가족관계 정도	237
<표 3-2-236> 연령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237
<표 3-2-237> 주로 도와주는 사람	239
<표 3-2-238> 도움충분정도	239
<표 3-2-239>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240
<표 3-2-240> 기관 이용현황	241
<표 3-2-241> 성인기(20세 이상) 서비스 현황	242
<표 3-2-242> 현재 취업여부	244
<표 3-2-243> 취업 분야	244
<표 3-2-244> 현재 직무	245
<표 3-2-245> 근무기간	245
<표 3-2-246>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245
<표 3-2-247> 구직과 이직 희망 업종	246
<표 3-2-248> 희망급여	246
<표 3-2-249> 구직활동 않는 이유	247
<표 3-2-250> 서비스 인지경로	247
<표 3-2-251> 서비스 선택기준	248
<표 3-2-252> 연령별 필요한 서비스	248
<표 3-2-253> 자택 자원봉사활동 동의 여부/반대이유	249
<표 3-2-254> 인식개선방안	249
<표 3-2-255> 할인혜택 분야	250
<표 3-2-256> 집수리 여부/희망내용	250
<표 3-2-257> 응답자	254
<표 3-2-258> 장애등급/연령	255
<표 3-2-259> 학력/성별/결혼	255
<표 3-2-260> 동거인	256
<표 3-2-261> 주택소유 형태	256
<표 3-2-262> 월평균 수입/지출	257
<표 3-2-263> 지출순위	257

<표 3-2-264> 수급자 현황	258
<표 3-2-265> 가족관계 정도	258
<표 3-2-266> 연령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259
<표 3-2-267> 주로 도와주는 사람	260
<표 3-2-268> 도움충분정도	260
<표 3-2-269>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261
<표 3-2-270> 기관 이용현황	262
<표 3-2-271> 성인기(20세 이상) 서비스 현황	264
<표 3-2-272> 현재 취업여부	265
<표 3-2-273>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265
<표 3-2-274> 구직활동 않는 이유	266
<표 3-2-275> 서비스 인지경로	266
<표 3-2-276> 서비스 선택기준	267
<표 3-2-277> 연령별 필요한 서비스	267
<표 3-2-278> 자택 자원봉사활동 동의 여부/반대이유	268
<표 3-2-279> 인식개선방안	268
<표 3-2-280> 할인혜택 분야	269
<표 3-2-281> 집수리 여부/희망내용	269
<표 4-3-1> 전체 장애인 서비스 미충족률	383
<표 4-3-2> 지체 장애인 서비스 미충족률	285
<표 4-3-3> 뇌병변 장애인 서비스 미충족률	286
<표 4-3-4> 지적 장애인 서비스 미충족률	287
<표 4-3-5> 자폐성 장애인 서비스 미충족률	289
<표 4-3-6> 정신 장애인 서비스 미충족률	290
<표 4-3-7> 시각 장애인 서비스 미충족률	291
<표 4-3-8> 청각 장애인 서비스 미충족률	291
<표 4-3-9> 기타 장애인 서비스 미충족률	292

제 1 장 연구 개요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복지 이용시설로서 양천구 신정6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4년 10월 6일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관에서는 양천구 지역의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객관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헌조사, 지역욕구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따른 사업제안을 위한 관련된 일련의 작업을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의뢰하였다.

이에 본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김용득(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책임연구원로 하고, 상종열(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수료)·송남영·오영숙(이상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전권일(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수료)·이금지(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을 연구보조원으로 구성한 후, 의뢰된 연구를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5개월에 걸쳐서 완성하였다.

제 2 절 연구 목적 및 연구내용

1. 연구 목적

최근 장애인 복지를 둘러싼 환경은 첫째, 장애인 대인서비스 강조, 대상의 다양화, 방법의 다양화, 공급주체의 다양화, 운영인력의 전문화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욕구조사를 통한 장애인 당사자 욕구반영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둘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4) 등 법과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셋째, 장애인 등록률 증가, 권리인식 증가, 삶의 질 욕구 증가 등 이용자의 자기결정과 선택이 강조되는 추세 속에 놓여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장애인 의식변화에 따른 당사자 욕구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설 및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장 등에 치중해 왔던

지역사회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① 양천구 내 거주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분석을 기초로 장애유형별로 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② 개관 4년을 맞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연구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내용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조사 결과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몇 가지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연구되었다. 사용된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 조사, 지역 거주 장애인 욕구조사, 전문가 검토를 위한 Focus Group Interview 등이다. 이상의 각 연구방법에 의해 수행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이다. 연구의 종합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천구 지역에 대한 분석 및 2008년도에 이루어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 정밀조사 연구'와 함께 서울시의 2004년 '장애인욕구조사 및 정책지표 설정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전국 및 서울시 전역의 장애인에 대한 선행연구자료 분석을 통하여, 평균적인 장애인의 욕구 성향을 확보하였다. 또한, 2006년 발표된 '양천구 장애인복지서비스 수요추계 및 복지욕구 분석'을 토대로 양천구 거주 장애인의 욕구조사를 통해 지역단위 욕구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둘째, 설문조사이다. 선행 연구조사와 연구팀 내에서 3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마련된 연구 설계 틀을 적용하여 양천구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장애유형별로 구성하고 학령전기, 학령기, 성년기로 구분하여 당사자의 욕구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 개발 과정에 있어, 전문가를 통해 설문지 구성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셋째, 인터뷰 면접이다. 설문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각 장애유형별로 3-4명을 선정하여 총 30명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했다. 연령별 욕구가 다를 것을 감안해 학령전기, 학령기, 성인기별로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했으며, 이 조사를 통해 감춰진 욕구를 파악하였다.

넷째, 전문가를 통한 검토이다. 장애인이용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거나 양천구

내 장애인 단체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집단을 참여시켜서 설문지를 통해 나타난 장애인 욕구를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는 조사 설계와 조사 설문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환경변화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4),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제정(2007) 등의 제정 이후, 중앙정부는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양천구내 거주 장애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했다.

둘째, 광역자치단체로 서울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 변화 및 욕구조사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다. 서울시에서는 2004년 장애인의 욕구파악을 위해 "장애인 욕구조사 및 정책지표 설정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자료는 우선, 장애인의 욕구를 장애유형별로 파악했다는 점, 또한 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 하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약 5년이 경과하고 제 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8-2012) 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변화와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변화를 동시에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문지 개발과정에서 이런 점들을 최대한 반영시켰다.

셋째, 사회서비스 영역의 확산과 바우처(voucher) 제도의 도입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다. 바우처 제도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게 서비스경쟁을 유도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유도하고 있다. 바우처 제도 이용 시 비용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다.

2007년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 장애인 복지서비스 영역에도 도입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활동보조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라는 점에서 바우

처 서비스의 이용현황과 이용욕구 파악은 향후, 양천구의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중요한 연구조사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장애인서비스 욕구의 변화 추세에 주목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된 몇 가지 흐름은 의료서비스, 심리·정서서비스, 직업서비스, 주거서비스, 교육서비스 등 기존의 서비스 욕구 이외에도 문화 및 체육활동으로 대별되는 여가활동서비스 부문이다. 과거 치료의 한 방식으로 도입된 문화/체육활동 욕구는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방법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상화(Normalization)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치료나 교육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관점에서 욕구조사의 주요 항목으로 문화 및 체육활동 욕구를 비중 있게 다루고자 했다.

다섯째, 지역사회와의 소통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프리슬리(Priestley)는 다중페러다임의 논의를 통해 장애인을 둘러싼 관점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했을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개인적 관념론의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지역사회에서 장애/비장애 사회통합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중요한 목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바라보는 지역사회와의 소통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설문조사 문항에 최대한 반영시켰다.

마지막으로, 이런 연구내용을 토대로 욕구와 서비스간의 불일치를 측정하고자 했다. ‘이용자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한 서비스 항목’과 ‘아예 제공받고 있지 못하거나, 제공받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한 서비스’간의 차이를 미충족률로 계산하여 각 항목별 미충족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제 2 장 선행 연구 검토

제 1 절 장애인복지의 주요 동향

1.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1) 장애이념과 법

(1) 이념적 지형

장애를 인식하고 묘사하는 관점은 인류 역사와 함께 변화해 왔다. 장애에 대한 의학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장애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의 저주의 결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의학의 발전과 함께 장애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의료적 처치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 질병의 한 종류로 파악되었다. 또한 산업혁명 이전에는 장애인이 무가치한 노동력으로 인식되기보다는 공동체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정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노동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패러다임이 형성되면서, 장애인은 생산에 기여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되었다.

장애에 대한 이런 지배패러다임에 대항하는 저항패러다임의 출발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및 급속한 산업화와 관련이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을 통해 많은 전쟁 장애인들이 속출하였으며, 국가 공로자인 이들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예우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었다.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 과정은 부정적 부산물로 각종 산업재해와 질병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산업역군’으로 묘사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 장애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장벽의 해소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저항패러다임의 본격적인 형성은 전쟁과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제기된 ‘사회적 책임론’에 기초한 장애인 운동에 의해 주도 되었다. 서구사회에서 산업 혁명 이후에 전개된 장애패러다임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분리와 통합 패러다임, 개별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패러다임, 전문가 주도과 장애 당사자 주도 패러다임

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분리와 정상화 담론(normalization, ordinary life, social role valorization)

분리와 통합의 패러다임은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여 일반적인 사회에서 격리 수용 또는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관점과 장애인도 사회의 동일한 구성원으로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장소와 동일한 생활양식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보는 관점의 대립이다. 정상화 패러다임은 1960년대 후반 스칸디나비아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실천원칙으로 제기되었으며, 대규모의 시설 보호로 인한 비인간적인 처우에 반대하는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북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상화 패러다임은 북미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울펜스버거(Wolfensberger) 등에 의하여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social role valorization)로 정교화되었고, 점차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②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social barrier, social action, social change)

개별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의 패러다임은 장애의 발생과 장애인의 경험은 개별적인 것이며 장애에 대한 책임도 장애인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관점과 장애의 발생과 장애인의 경험은 사회적인 것이고, 따라서 사회가 장애인이 적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관점의 대립이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 패러다임은 1976년 영국에서 분리에 반대했던 지체장애인 연합(UPIAS: Union of the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의 장애 정의에서 기원한다. 이 정의에서 장애인은 사회에서 억압받고 있는 인구집단으로 간주된다(Oliver, 1996). 이러한 사회적 책임 패러다임은 영국의 핑켈스타인(Finkelstein)과 올리버(Oliver) 등에 의하여 체계화되면서 보편적인 패러다임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③ 전문가 주도과 당사자 주도(IL 운동, self-determinism, self-control, service choice)

전문가 주도과 장애 당사자 주도의 패러다임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전문가에 의해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주도되어야 한다는 관점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환경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의 주도권을 갖고 소비자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보는 관점의 대립이다. 당사자 주도의 패러다임은 자립생활운동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다. 이 운동은 1970

년대 미국의 장애인 자조그룹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로버츠(Roberts)의 선구적인 역할과 데종(DeJong)의 체계화 노력을 통해 영향력 있는 보편적인 패러다임들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법적 지형

① 장애인 권리협약

장애인의 법적 권한의 행사와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상당한 편의제공의 의무, 자유권에 관한 사항들의 즉각적 실현, 사회권에 관한 사항들의 점진적 원칙과 자원의 최대 활용, 전 장애인을 포함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이 아닌 자립적 생활(living independently),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의 방지, 거주지와 생애계획의 선택기회보장 등 한국 장애인관련 법의 정비와 제도 개선 및 환경변화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¹⁾

② 장애인차별금지법

직접차별²⁾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를 차별로 인정, 차별영역으로 복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 차별시정기구에 의한 시정권고와 법무부에 의한 시정명령, 입증책임의 분배 등³⁾이 포함되어 있다.

③ 2007년 3월 장애인복지법 개정

공공주택 건설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분양 지원 노력 명시, 자립생활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고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인 파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에서 ‘주체’로, ‘재활’에서 ‘자립’으로,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통합’으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철학을 바꾼 이번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은 최근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최소한의 기본적 원칙과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⁴⁾

- 1) 이익섭, 2007, 장애인권리협약의 의미와 핵심과제, 보건복지포럼, 5-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법 제 4조 1항 제 2호)를 말함
- 3) 남찬섭, 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3-3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 김성희, 2007,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 보건복지포럼, 34-40, 한국보건사회

2)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1) 공공영역의 변화

최근 10년 동안 지역단위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한 변화를 보면 보건복지사무소 설립방안 검토와 사회복지사무소 설립방안 검토를 거쳐서 현재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는 복지, 교육, 노동, 의료, 문화, 관광 등의 주민생활과 관련된 영역에서 욕구가 있는 주민은 동사무소에 이를 신청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영역과의 관계 설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희망복지지원단과 같은 별도의 전달체계가 고려되고 있다.

(2) 민간영역의 변화

최근 10년 동안에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공적 전달체계의 변화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역동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이 영역의 변화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서비스 공급의 확대이다. 저 출산 고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위기에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동보육정책이 집중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대처 차원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최근 만성적 실업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과감하게 창출하는 것이 실업대책의 중요한 대안으로 설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확대가 사회정책의 우선적 과제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둘째, 비시설 서비스(지역사회에 기초한 서비스)의 발전이다.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은 시설보호였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에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심부름센터 등의 다양한 규모의 지역사회서비스 시설들이 괄목할 만하게 확충되어 왔다.

셋째, 지속적인 새로운 서비스 종류 또는 제도의 도입과 함께 시장방식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2003년 7월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

연구원

하여 이용권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이 방식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새로이 시행하고 있다. 노인공적요양보장제도(2008년), 노인돌봄서비스(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2007), 산모신생아도우미바우처제도(2006), 지역사회서비스혁신바우처사업(2007년) 등이 단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향후는 비시장적 방식에 의한 공급과 시장방식에 의한 공급이 공존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장애인복지정책 변화의 동향

패러다임 변화 추세에 맞추어, 향후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차 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될 것이며, 이용자의 인권과 탈시설화를 통한 자립의 요구는 설득력이 더해 갈 것이다. 따라서 대처와 변화에서 기존의 건강함 공급주체가 주도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주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도 변화를 예측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는 유도하는 가시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도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들을 공론화 또는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핵심적인 쟁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개편

현재 장애의 진단과 등록, 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장애인의 직업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서비스를 관리하는 체계에 관련한 쟁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용역과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본 과제를 통해서는 합리적으로 장애정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진단 기준의 마련, 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장애인의 직업재활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평가도구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러한 각 영역의 서비스 자격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와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인정된 사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공식적 전달체계의 구축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결국 장애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달체계의 종합적인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며, 장애인 고유의 독립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2) 장애인공적요양보장제도 도입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방식에 기초한 노인요양보장제도에는 65세 미만 장애인의 사회적 케어(Social care)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적 케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연구용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케어를 노인요양보장제도에 편입시키는 방안과 별도의 장애인공적케어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이 비교검토 되었고, 현재는 독자적인 체계구축으로 방향이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의 사회적 케어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로 편입하든, 아니면 독립적인 장애인공적케어체제를 구축하든 기존의 케어 서비스 공급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방문간호사가 서비스 제공여부에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군구가 서비스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재택방문서비스는 개인이 장애인복지관에 신청하면, 장애인복지관이 서비스의 종류와 강도를 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생활시설서비스의 경우는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시군구가 입소를 의뢰하고, 생활시설이 입소를 받아들이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공적케어체계 구축의 과제는 현재 다른 갈래로 제공되고 있는 케어관련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통합하면서, 이를 전달하기 위한 구조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독립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의 과제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장애인 거주서비스 체계 개편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의 핵심은 장애인생활시설이며, 다소 규모가 있는 생활시설은 지역사회와 분리된 시설 유형이다. 이런 분리된 대규모 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하여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의 장

애인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에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현재 연구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방식을 검토하였고, 이 결과를 소규모를 위한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연구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들은 향후 서비스 공급확대는 철저히 소규모이면서 지역사회친화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 시설 서비스의 종류에 기존의 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을 포함시킬 것, 시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과감히 확대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방식을 도입할 것,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장애인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계약 방식을 도입할 것, 서비스 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조직을 설립할 것,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이의제기 절차를 확립할 것 등이다.

3.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최근 장애인정책은 장애인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하여 과거의 협소하고 잔여적인 차원의 접근에서 사회복지, 교육, 고용, 문화, 사회참여 등의 복합적 영역에 대한 보편적 대처를 필요로 한다. 이들 영역의 주요 현황과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계획을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에서 채택하고 있는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는 1970년대 후반까지 별다른 큰 진전이 없이 개별적인 자선에 의존하는 수준이었다. 현대적 장애인복지의 개념은 1976년 UN의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에 이어서 정부가 1977년에 '특수교육법'을 제정하고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함으로써 형성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 장애계의 생존권보장 요구에 의해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과 1989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운동의 영향을 주요하게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99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등은 제도적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장애인정책의 추진 전략은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 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1997년에 마련되어 1998년부터 2002년 걸쳐서 추진되었으며, 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계획은 2003년에 발표되어 2003년부터 2007년에 걸쳐서 추진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법정사업인 대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2008년에 발표되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본 계획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선진화, 장애인 경제활동 확대, 장애인 교육문화 증진,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등의 분야에서 총 58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1) 장애인복지 현황과 중점 추진계획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의 소득지원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정도과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18세 미만의 재가 장애아동의 경우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09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월 13만원, 차상위계층에 속하면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면서 경증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월 3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7만원, 생활시설에서 입소하는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속하는 중증장애아동의 경우는 월 20만원,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하는 중증장애아동의 경우는 월 1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가구에 속하는 경증장애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장애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일정수준 이하인 1급 중증장애인에겐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원래의 가정을 떠나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을 통하여 주거 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경제적 지원과 일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분야의 향후 5년간의 정부 중점 추진계획은 다섯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첫째,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의 선진화이다. 현재의 장애등록 제도는 의학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서 장애등급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생활시설 입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서비스 자격 판단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서비스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제공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하여 서비스의 자격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 때문에 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의 선진화를 통해서 의학적인 판단, 근로능력판단, 사회적 생활능력 판단이라는 다차원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 영역으로 연계하는 체계수립을 모

색하고 있다.

둘째,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추진이다. 현행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지원액수가 필요에 비해서 낮다는 문제와 함께 수당의 지급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가구의 전반적인 빈곤 문제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수급자의 범위도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반계층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고 있고, 지원단가도 제도의 시행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산출원리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전체 장애인의 소득지원 정책의 수립이라는 차원에서 수급자의 범위나 지원단가가 합리적으로 설계된 장애연금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⁷⁾

셋째,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다. 현재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시설보호,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각종 지원서비스, 장애인 자립생활이념에 기초하여 제공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등이 있다. 이러한 각 서비스들은 각각의 체계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어, 이들 사회복지서비스들이 체계적으로 상호 연관되도록 하는 종합적인 제도설계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넷째, 장애인 주택서비스의 확대이다. 장애인의 주택서비스는 소득과 생활지원의 핵심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내용은 장애인의 필요한 수요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에 대하여 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장애인에게 국민임대, 맞춤형 임대주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장애인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우선공급하고, 다가구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기존 주택을 전세 임대할 수 있는 물량 확대를 추진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이다. 18세 미만의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자폐성 장애 등의 아동은 언어치료, 행동치료, 심리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의 각종 재활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아동 가족의 경우 양육상담, 심리상담, 아동 일시보호 등의 가족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재활치료서비스의 확대와 가족지원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⁸⁾

7) 장애연금법은 현재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으며, 본 법률안에서는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70/100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4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증장애인에 대한 차등지급액은 중증장애인 연금액의 50%이상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는 2009년도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로 등록된 아동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장애아동가족지

2) 장애인교육문화 현황과 중점 추진계획

장애인의 교육과 문화 분야는 미취학 장애아동에 대하여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기관을 통하여 보육과 조기교육의 제공, 취학 연령의 장애아동에 대하여 일반학교의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을 통하여 정규교육 서비스의 제공, 전체 장애인을 위한 문화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장애아동의 보육과 조기교육 영역에서는 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보육서비스는 장애전담 보육시설, 장애통합 보육시설, 일반보육시설 등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조기교육서비스는 특수교육기관,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 일반유치원의 일반학급 등을 통하여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현재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전체 추정 장애영유아의 36%에 불과하여 서비스의 양적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 전국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 정규교육 영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과정으로 포함되어 있고,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의무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영향으로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비율은 평균 23.5%이나 유치원은 전체의 1.8%, 고등학교의 경우는 전체의 17.1%에 불과하여 교육의 연계성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리고 대학의 경우 특별전형 제도 등의 실시로 장애학생의 교육 접근 기회는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의 시설·설비, 학습지원의 부족으로 중도탈락 또는 휴학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 및 체육 영역에서는 장애인체육시설의 운영,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제도의 수립, 문화 바우처를 통한 여가활동 기회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 장애인의 문화와 체육 수요에 비해서는 그 제공 정도가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일반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에 대한 물리적 편의증진 등을 통하여 일반적인 문화 및 체육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장애인의 교육기회와 문화체육활동 영역에서는 네 가지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지원의 강화이다. 장애아동의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대상을 2008년 현재 14,914명에서 2012년까지 2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

원서비스의 경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내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 연 320시간이내에서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시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매년 5개소씩 신축하여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일반보육시설 가운데 통합보육시설 지정을 매년 확대하며, 이와 함께 장애아 전담교사를 현재 1,350명에서 2012년까지 2,35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둘째,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실시이다. 현재 의무교육 적용 과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되어 있는 것을 2012년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수요, 교원 수요, 시설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연차적으로 의무교육 연한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셋째, 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강화이다. 현재 대학에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전국에 3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103개소로 확대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교수·학습 지원 도우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넷째, 장애인 체육 분야에 대한 정보·시설 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의 개선이다. 장애인이 개인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등급 및 유형에 맞는 생활체육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제가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양궁, 사격 등의 특수한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훈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3) 장애인경제활동 지원 현황과 중점 추진계획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는 고용관련 지원이 중요하다. 본 영역은 크게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통한 일반고용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서비스가 중요하다.

먼저, 의무고용제도를 보면 2004년에 의무고용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의무고용 적용대상 사업장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2만여 개의 의무고용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그리고 2006년에는 민간부문에서는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폐지하고 정부부문에서는 고용의무 직종을 대폭 확대하여 약 2만 9천여 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부조달 입찰 참가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

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취업장애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장애인 고용을 자체는 정체상태에 있고, 중증장애인의 취업이 부진한 상태이며, 대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실정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 2000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 162개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8년부터는 재원구조를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수행기관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수행체계를 개편하였다.

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의무고용제도와 중증장애인에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경제활동 지원 분야의 세 가지가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이다. 현재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미흡한 상황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무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등 제도의 재설계가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둘째, 정부의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 역할 강화이다. 여기서는 정부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2%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 이 기준에 미흡한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고용률 3%이상에서는 현행 2%에서 3%로, 고용률 3%미만은 현행 5%에서 6%로 조정하여 시행하는 과제가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유인 및 제재방안 마련, 정부부문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제 적용,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특례입학 확대를 통한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 방안 수립 및 시행 등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셋째,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제공이다. 구인·구직상담 및 전문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목표로 장애인 지원고용과 시험고용을 통한 일자리 확충, 고용과 복지가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와 특수

학교, 직업재활시설, 고용지원센터, 폴리텍대학 등과 연계된 장애인고용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확대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훈련, 중증장애인의 유형별 특화훈련 등을 실시하며, 공공훈련기관과 민간훈련기관에서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이다.

4)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현황과 중점 추진계획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에서는 전반적인 생활에 걸쳐서 장애인의 참여의 권리와 이에 대한 지원을 선언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 교통체계에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차별금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미흡한 수준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서는 적극적인 차별의 문제와는 별도로 '정당한 편의제공'을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중요한 의무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로 인하여 교육, 노동, 문화, 정보 등에 대한 적절한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장애인이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제공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차별의 개념 및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인식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버스업체에서 저상버스 구입 시 대당 1억 원을 보조하는 등의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도시의 기존 도시철도 역사에 이동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시작하여 141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434대, 에스컬레이터 447대를 설치하였다.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사회참여의 일차적 전제가 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 대단히 미흡한 수준에 있다.

장애인의 사회생활 전반에서의 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실 있는 시행,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대중 교통체계에서의 접근성 제고 등이 핵심과제로 설정될 수 있는 사회참여 지원 영역에서는 네 가지가 중요한 추진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 상황 모니터링이다. 2008년에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2009년부터 이를 활용한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에 관련된 각종 교육자료나 영상자료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둘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내실화이다.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는 이동과 기본적인 사회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대인적 서비스이다. 사회의 물리적 이동환경의 개선으로 완전하게 활동제약을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별 지원서비스가 필요하게 된다. 현재와 같이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지원시간의 확대, 활동보조인의 지원 능력 강화,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의 확대 등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셋째, 장애인보조기구 산업화 지원이다. 장애인보조기구는 향후 단계적으로 공적프로그램을 통하여 지급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장애인보조기구가 공적체계를 통하여 확대 보급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체형에 맞는 적절한 제품의 개발, 대중적 보급에 적절한 가격, 사용의 불편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애프터서비스 등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국산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매년 3-4개의 보조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지원을 추진하고, 보조기구 기술이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기술이전 지원 및 지도를 실시하며,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육성정책 마련 등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넷째, 저상버스 도입의 확대이다. 버스는 가장 기초적인 대중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도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14,500대)를 휠체어와 유모차의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저상버스를 대량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양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제 2 절 양천구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요추계

1. 양천구 장애인복지 서비스 필요인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06년 3월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에 의뢰하여 “양천구 장애인복지서비스 수요 추계 및 복지욕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서비스 필요인구 수를 3,497명으로 전체 추정장애인 15,777명의 22.2%로 추산하고 있다. 장애유형별 구체적인 서비스 필요인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2-1>와 같다.

<표 2-2-1> 장애인복지서비스 필요 인구

(단위 : 명)

구 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정신 장애	기타 장애	계
인원	731	960	201	135	16	915	150	213	175	3,497

2. 양천구 장애인복지시설 종류별 수요산정

보고서에서는 서울시(2004)는 「장애인 욕구조사 및 정책지표 설정연구」에서 제시한 서비스 공급기준에 대한 기존 연구의 종합을 기초로 양천구 장애인복지시설 종류별 수요를 산정하였다.

① 생활시설, 요양시설

생활시설 및 요양시설은 신규설치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양천구에 존재하는 기존의 미신고시설을 파악하여 양성화하고, 추가수요는 공동생활가정으로 대신한다.

② 영유아시설

영유아시설은 신규설치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양천구에 존재

하는 기존의 미신고 시설을 파악하여 양성화하고, 추가수요는 주간보호서비스 확대를 대신한다.

③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실제 서비스 필요인구 700~1,000명 이상인 자치구에 1개소를 설치한다.

④ 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자치구 단위에서 실제 서비스 필요인구 200명 이상의 경우 1개소를 설치하고, 인접구를 포함하여 서비스한다.

⑤ 청각장애인복지관

청각장애인복지관은 자치구 단위에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실제 서비스 필요인구 150명 이상의 경우 1개소를 설치하고, 인접구를 포함하여 서비스 한다.

⑥ 장애인체육관 및 재활병원

장애인체육관 및 재활병원은 실제 서비스 필요인구 3천명 이상인 경우에 1개소를 설치한다.

⑦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시각장애인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1개소를 설치하며,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⑧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는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청각 및 언어장애인 50-100명 당 1개소를 설치하며, 청각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⑨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는 학령전기 아동 30명당 1개소를 산정하되, 자치구에 최대 10개소가 넘지 않도록 한다. 영유아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지 않고, 영유아시설에 대한 수요인구에

대해서는 모두 주간보호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⑩ 단기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는 학령전기 및 학령기 장애인구가 200명당 1개소를 설치한다.

⑪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은 청년기 장애인 1백명 당 1개소를 설치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생활시설 및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도 공동생활가정에 가산한다.

⑫ 근로시설 및 직업훈련 시설

근로시설 및 직업훈련시설은 청년기 장애인이 500명이 넘는 자치구에 각 1개소씩 설치한다.

⑬ 보호작업장 및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장 및 작업활동시설은 청년기 장애인이 1천명 이하인 자치구는 각 1개소를 설치하며, 추가 1천명 당 1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⑭ 기타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각 동별 1개씩 설치하고,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는 자치구당 1개소를 설치한다. 그리고 장애아동전담 어린이집은 학령전기 장애아동 150명당 1개소를 설치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종류별 공급기준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2-2>와 같다.

<표 2-2-2> 장애인복지시설 종류별 필요수량

기준유형	시설유형	서비스 공급기준
서비스 공급능력 기준	장애인종합복지관	· 실제 서비스 필요인구 700-1,000명이상인 자치구에 1개소
	시각장애인복지관	·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시각 장애인 200명 이상 자치구에 1개소 설치 · 인접구를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
	청각장애인복지관	·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청각·언어장애인 150명 이상 자치구에 1개소 설치

	재활병원	· 실제 서비스 필요인구 3천명 이상인 지역에 1개소
	장애인체육관	· 실제 서비스 필요인구 3천명 이상인 지역에 1개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시각 장애인 100명 이상인 지역에 1개소 ·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된 구는 제외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청각장애인 50~100명당 1개소 · 청각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된 구는 제외
배치기준	주간보호센터	· 학령전기 장애아동 30명당 1개소
	단기보호센터	· 학령전기 및 학령기 장애인구 200명당 1개소
	공동생활가정	· 청년기 장애인 100명당 1개소. · 생활시설 및 요양시설이 필요한 수요를 모두 공동생활가정에서 흡수
	근로시설 직업훈련시설	· 청년기 장애인 500명이 넘는 자치구에 각 1개소
	보호작업장 작업활동시설	· 청년기 장애인 1천명 이하인 구는 각 1개소, 추가 1천명당 1개소 추가
	장애인자립생활 센터	· 서비스 필요인구 500명당 1개소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 자치구당 1개소 설치
	장애아동전담 어린이집	· 학령전기 장애아동 150명당 1개소
	생활시설 요양시설	· 신규 설치하지 않음 · 추가 수요는 공동생활가정 설치를 통해 해결
	영유아시설	· 신규 설치하지 않음 · 추가 수요는 주간보호서비스 확대를 통해 해결

제 3 장 욕구 조사

제 1 절 조사 설계

1. 조사개요

장애인 각 개인의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욕구의 차이 있다고 분석됨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을 장애유형에 따라 설계하였다. 사회서비스수요·공급실태정밀조사연구(2008, 기획예산처), 2004 장애인욕구조사 및 정책지표설정연구(2004, 서울시)가 설문지 개발에 있어 주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1) 조사내용

우선, 장애유형을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기타장애 등 9가지로 구분하였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2008년 이용현황(11월까지)을 파악한 결과 신장장애, 안면장애, 간질 등의 이용자 숫자가 매우 적고, 또한 의료(전문재활)기관 욕구가 강하다는 점에서 기타장애로 구분하였다. 설문지는 질문의 내용에 따라 리커트척도(Likert scales)와 명목척도, 서열척도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폐쇄형 질문을 주로 하되 개방형 질문을 병행하여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은 2009년 2월 현재 양천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복지관 이용자는 물론 시설 및 재가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은 본인이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유아, 아동기, 청소년기 장애인 지적장애인과 같이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에는 가족 및 주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각 대상자별 설문 내용은 첫째, 조사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의 특성과 나이, 성별, 학력, 결혼유무, 소득수준, 거주지 등이 포함된 개인적 특성으로 구성된 일반적 특성과 둘째, 장애인 당사자의 현재의 능력, 셋째는 복지관련 기관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경험과 연령별 희망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필요도를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장애유형별 욕구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자, 장애유형별 아홉 가지 기준과 함께 미취

학 아동, 취학아동, 성인의 세가지 기준을 토대로 30명에 대한 인터뷰 면접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설문지에서 구분할 수 없는 숨겨진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이는 장애유형별 특별한 욕구를 얻어내기 위함이었다.

2)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양천구자립생활지원센터, 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양천구지부, 주간보호센터, 어린이집, 특수학교 등의 기관의 협조를 받아 집단면접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우편조사를 통해 1차로 수거된 설문지를 기준으로 2차로 기관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의도한 만큼의 표본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가정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3월 16일 우편발송을 시작하여 4월 17일을 마감일로 설정하였다. 본 조사의 설계, 조사표 개발, 표본설계는 연구진이 담당하고, 표본추출 및 실사작업은 연구진과 조사원이 함께 수행하였다. 설문지 개발은 2차례에 걸친 연구진 내 회의를 통해 초안을 만들고, 다시 양천장애인복지관 실무자와의 2차례에 걸친 확인 작업을 거치며 기본 틀을 완성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된 설문지는, 사전조사와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후 3월 12일 확정하였다.

우편조사를 통한 설문지 발송은 총 1,000부를 목표로 하였으며, 회수율은 25%에서 30% 정도를 고려하였다. 약 100부 정도의 설문지는 기관실무자의 협조를 통해 발송하였다.

기관별 방문을 통한 집합조사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사원을 선발하여 방문조사를 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연습면접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사원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2. 표본설계

본 조사의 목적이 장애유형별 양천구 장애인복지서비스 욕구조사라는 점에 주목하여 장애유형별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우선 양천구민 중에서 등록장애인(약16,500명)의 모집

단 중에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양천구자립생활센터, 주간보호센터, 어린이집 등 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유형별 구성에 비례하여 할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비가 작은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표본추출 룰(Rule)과 통계적 유의미성을 고려하여 최소 30개를 미리 배분하였다.

표본추출은 등록 장애인을 동별로 정렬한 후에 계통추출법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동별 분포도나 성별분포도를 유사하게 유지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나, 시간 및 예산의 제약 상, 일정 부분 기관별로 집락표집하는 방식을 취했다.

<표 3-1-1> 표본 설계(양천구 장애유형별 인구비율 적용)

장애 유형	양천구 거주 장애인 수(명)	양천구 거주장애인 유형별 비율(%)	비율할당 표본수(명)	계획 조사 표본수(명)
지체	8,850	53.6	322	322
뇌병변	1,763	10.7	65	65
지적	865	5.2	32	32
자폐성	108	0.7	5	30
정신	520	3.1	18	30
시각	1,635	9.9	60	30
청각	1,740	10.5	63	30
언어	101	0.6	4	30
기타	935	5.7	35	30
계	16,517	100	604	599

* 기타 장애: 간, 신장, 심장, 간질, 장루·요루, 호흡기, 안면

<표 3-1-2> 인터뷰 면접표본 설계

장애유형	0 - 만6세	만7세 - 만17세	만18세 이상	계
지체	1	1	2	4
뇌병변	1	1	2	4
지적	1	1	1	3
자폐성	1	1	1	3
정신	1	1	1	3
시각	1	1	2	4
청각	1	1	1	3
언어	1	1	1	3
기타	1	1	2	3
계	9	9	13	30

* 기타 장애: 성인지체 2명(상지, 하지), 뇌병변 2명(뇌성마비, 뇌졸중), 시각 2명(점막, 저시력)으로 구분

3. 설문지 수집 결과

실제 조사기간은 애초 예정했던 것보다 1주일이 더 걸려 4월 17일에 마감하였다. 우편조사를 통한 설문지 발송은 총 1,000부를 목표로 하였으나, 지체장애와 언어장애의 경우 회수율이 목표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 438부를 추가로 더 발송하였다. 또한, 4월 17일부터 4일간 양천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약 1달간 수거된 설문지 수는 614개이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자와 대기자로부터 수거한 설문지의 수는 462개(75.2%)이고,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회수한 수가 74개(12.2%), 베다니 장애인어린이집(10부), 하은장애인주간보호시설(9부), 한빛장애인주간보호시설(15부), 신목장애인주간보호시설(7부) 등 양천구내 장애인 관련기관으로부터 수거한 설문지가 77개(12.5%)이다.

<표 3-1-3> 설문지 수거현황

구분	빈도	퍼센트(%)
양천복지관 이용자/대기자	462	75.2
타기관 이용자	77	12.5
양천자립생활센터 이용자	75	12.2
합계	614	100.0

장애유형별 욕구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자 실시한 인터뷰는 3월 27일부터 약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9명의 인터뷰를 실시했다.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 장애가 확인되는 시기가 늦을 뿐만 아니라, 장애가족이 인터뷰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2건 밖에 실시하지 못했으며, 학령기 청소년의 경우도 정신장애와 언어장애, 기타장애의 사례를 얻을 수가 없었다.

<표 3-1-4> 인터뷰 현황

(△: 인터뷰 설문, ▲: 전화설문)

장애유형	미취학	취학	성인	계
지체			△(상지)△(하지)	2
뇌병변		▲▲	△△	4
청각		▲	△	2
시각		△	▲	2
지적	▲	▲	△	3
자폐성		△	▲	2
정신			▲	1
언어	△		△	2
기타			△	1
계	2	6	11	19

제 2 절 조사결과

1. 전체 장애인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조사대상자 일반 특성

전체 응답자 614명 중에서 지체장애가 200명(32.6%), 뇌병변장애가 140명(22.8%), 지적장애가 65명(10.6%), 자폐성장애가 27명(4.4%), 정신장애가 46명(7.5%), 시각장애가 35명(5.7%), 청각장애가 30명(4.9%), 언어장애가 6명(1.0%), 기타장애가 26(4.2%)명이었다.

9) 언어장애의 경우 회수율이 극히 적었다. 양천장애인복지관 이용자와 대기자를 기준으로 6명에게 1차로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낸 후, 추후 약 100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2차 우편설문을 실시하면서 30개의 표본 수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최종 회수된 것은 6명에 불과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대상자들 중에 언어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언어장애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 장애를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기준을 바탕으로 제외하였다.

등록 장애인이 아닌 경우가 2명이었으며, 장애유형을 2개 이상 기입한 경우는 무응답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응답자중 1급은 236명(38.4%), 2급은 160명(26.0%), 3급은 101명(16.5%), 4급은 37명(6.0%), 5급은 28명(4.6%), 6급은 29명(4.7%)이었다. 장애급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23명이었다. 1급에서 3급까지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은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시설을 통해 설문조사를 한 원 자료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강하다는 점에서 '표현적 욕구'의 한 형태로 보인다. 미취학 아동은 35명(5.7%), 취학아동은 82명(13.4%), 만 18세 이상 성인은 497명(80.9%)이었다.

<표 3-2-1> 장애유형/장애등급/연령별 현황

(n=614)							
	구분			구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장애 유형	지체	200	32.6	장애 등급	1급	236	38.4
	뇌병변	140	22.8		2급	160	26.0
	지적	65	10.6		3급	101	16.5
	자폐성	27	4.4		4급	37	6.0
	정신	46	7.5		5급	28	4.6
	시각	35	5.7		6급	29	4.7
	청각	30	4.9	무응답	23	3.7	
	언어	6	1.0	합계	614	100.0	
	기타	26	4.2	연령	미취학아동	35	5.7
	미등록	2	0.3		취학 학생	82	13.4
	무응답	37	6.0		성인(만18세 이상)	497	80.9
	합계	614	100.0		합계	614	100

* 기타 장애에는 간, 간질, 장루·요루,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를 포함시켰다.

설문지 응답은 본인이 직접 응답한 경우가 359개(58.5%), 본인 이외에 배우자, 어머니, 아버지 등 가족들이 응답한 경우가 249개(40.6%)이다. 전체 설문지 중에서 남자장애인이 384(62.5%)개이며, 여자 장애인은 227명(37.0%)이다. 성별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3명이었다. 장애인과 함께 사는 가족의 경우 배우자가 211명(18.5%), 어머니 242명(21.3%), 아버지 191명(16.8), 형제 116명(10.2%), 자매 48명(4.3%), 자녀 152명(13.4%) 등이었다.

<표 3-2-2> 설문응답자/성별/동거가족 현황

(n=614)							
	구분			구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응답자	본인	359	58.5	성별	남자	384	62.5
	기타	249	40.6		여자	227	37.0
	무응답	6	1.0		무응답	3	0.5
	합계	614	100.0		합계	614	100.0
기타응답자	배우자	29	11.6	동거인	배우자	211	18.5
	어머니	130	52.0		어머니	242	21.3
	아버지	12	4.8		아버지	191	16.8
	할머니	4	1.6		할아버지	8	0.7
	형제	7	2.8		할머니	29	2.5
	자매	1	0.4		형제	116	10.2
	자녀	25	10.0		자매	48	4.2
	손자녀	2	0.8		자녀	152	13.4
	친척	1	0.4		손·자녀	25	2.2
	기타	38	15.6		친척	12	1.1
합계	249	100.0	기타	104	9.1		
			합계	1,138	100.0		

* 사위는 자녀에 포함시켰다.

학력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가 182명(29.6%)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가 122명(19.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문대학(이상)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가 109명(17.8%)이었으며 무학도 36명(5.9%)이 있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의 경우가 275명(44.8%)이고 미혼이 311명(50.7%)이었다. 혼인의 기타에는 이혼이 많았으며, 사망이나 별거도 있었다. 주택소유의 경우 자기소유가 201명(32.7%), 전세 151명(24.6%), 월세 89명(14.5%)이었다. 기타 거주지로는 임대주택이 많았고, 그다음, 회사기숙사가 있었으며, 무상거주인 경우와 친구나 친척집에 같이 사는 경우 등이 있었다.

<표 3-2-3> 학력/혼인관계/주택소유 현황

		(n=614)					
구 분		빈도	퍼센트(%)	구 분		빈도	퍼센트(%)
학 력	미취학	19	3.1	혼인 상태	기혼	275	44.8
	유치원/어린이집 재	28	4.6		미혼	311	50.7
	초등학교 (재/중/졸)	122	19.9		기타	21	3.4
	중학교 (재/중/졸)	89	14.5		무응답	7	1.1
	고등학교 (재/중/졸)	182	29.6	합계	614	100.0	
	(전문)대학 (재/중/졸)	109	17.8	주택 소유	자기소유	201	32.7
	무학	36	5.9		전세	151	24.6
	기타	12	2.0		월세	89	14.5
	무응답	17	2.8		기타	165	26.9
	합계	614	100.0		무응답	8	1.3
					합계	614	100.0

* 혼인상태에서 사별이나 별거는 기타에 포함시켰다.
* 부모소유나 자녀 소유는 자기소유로 간주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경제 상황

월평균 수입과 지출은 5단계로 구분하였다. 40만원 이하 수입의 경우 86명(14%), 80만 원 이하가 125명(20.4%), 120만원 이하가 83명(13.5%), 200만원 이하가 75명(12.2%)이었다. 200만원 이상은 132명(21.5%)이었다.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113명(18.4%)이나 되었다.

40만원 이하 지출의 경우 69명(11.2%), 80만원 이하가 144명(23.5%), 120만원 이하가 74명(12.1%), 200만원 이하가 113명(18.4%), 200만원 이상은 126명(20.5%)이었다. 무응답은 88명(14.3%)이었다.

<표 3-2-4> 월평균 수입과 월평균 지출

		(n=614)					
월 평균수입		빈도	퍼센트(%)	월 평균지출		빈도	퍼센트(%)
40만원 이하	86	14.0	40만원 이하	69	11.2		
41만원-80만원	125	20.4	41만원-80만원	144	23.5		
81만원-120만원	83	13.5	81만원-120만원	74	12.1		
120만원-200만원	75	12.2	120만원-200만원	113	18.4		
200만원 이상	132	21.5	200만원 이상	126	20.5		
무응답	113	18.4	무응답	88	14.3		
합계	614	100.0	합계	614	100.0		

* 월 평균지출에 1,000만 원 이상이라고 기재한 경우가 1명 있었다.

1순위, 2순위, 3순위로 질문한 지출순위를 가중치 합계로 분석한 결과, 식료품비(737명, 20.0%)와 의료비(449명, 12.2%), 주거광열비(510명, 13.8%), 교육비(403명, 10.9%)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여가생활문화비(238명, 6.5%), 교통비/차량유지비(196명, 5.3%), 빛 값는 비용(157명, 4.3%)도 가계지출에 있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회활동 및 경조사비(88명, 6.2%), 재테크 및 재산형성에 필요한 저축(77명, 2.1%)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표 3-2-5> 지출순위

		(n=614)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산 합계		가중합산 합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식료품비	128	20.8	129	21.0	95	15.5	352	24.9	737	25.6	
교육비	102	16.6	62	10.1	19	3.1	183	13.0	449	15.6	
의료비	90	14.7	87	14.2	66	10.7	243	17.2	510	17.7	
주거광열비	59	9.6	77	12.5	72	11.7	208	14.7	403	14.0	
교통비/차량유지비	18	2.9	34	5.5	74	12.1	126	8.9	196	6.8	
사회활동 및 경조사비	23	3.7	24	3.9	40	6.5	87	6.2	157	5.5	
여가문화생활비	2	0.3	11	1.8	25	4.1	38	2.7	53	1.8	
빛 값는 비용	49	8.0	25	4.1	41	6.7	115	8.1	238	8.3	
재테크 및 금융	16	2.6	9	1.5	11	1.8	36	2.5	77	2.7	
기타	13	2.1	5	0.8	6	1.0	24	1.7	55	1.9	
무응답	114	18.6	151	24.6	165	26.9					
합계	614	99.9	614	100.0	614	100.1	1,412	99.9	2,875	99.9	

* 기타의견으로 교회실일조(1순위), (전동차와 의족)보장구 수리비(3순위) 등이 있었다.

조사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91명(31.1%)이었으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도 61명(9.9%)이나 되어, 두 집단의 합이 유효응답자 중에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표 3-2-6> 수급자 현황

(n=614)

구분	빈도	퍼센트(%)
기초생활수급자	191	31.1
차상위 계층	61	9.9
그 외(일반)	264	43.0
잘 모름	61	9.9
기타	20	3.3
무응답	17	2.8
합계	614	100.0

가족과의 관계는 대체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좋다'의 경우가 244개(39.7%)였으며, '조금 좋다'의 경우도 190개(30.9%)였다. 반면에 '매우 나쁘다'와 '조금 나쁘다'의 경우는 108개(17%) 정도로 상대적으로 그 빈도수가 적었다.

<표 3-2-7> 가족과의 관계

(n=614)

관계	빈도	퍼센트(%)
매우 나쁘다	30	4.9
조금 나쁘다	78	12.7
조금 좋다	190	30.9
매우 좋다	244	39.7
무응답	72	11.7
합계	614	100.0

(3) 소결

성별, 학력, 연령과 같은 사항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 변수 통제화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추론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기초생활제도 수

급권자 수의 비율과 응답자의 수입과 지출이 80만원 이하인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국가의 지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수급권자의 비율이 31.6%인 경우와 한 달 평균 수입이 80만원 이하 비율이 34.4%, 평균 지출이 80만원 이하의 비율이 34.7%이라는 점에서 조사 대상자의 30-40%가 절대빈곤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양천구의 장애인 정책의 방향에 있어 경제적 지원 및 서비스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2) 일상생활 수행능력

(1)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가 하는 항목에 대해, 182명(29.6%)이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도 110명(17.9%)이며,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101명(16.4%)이었다.

<표 3-2-8>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n=614)

도움필요정도	빈도	퍼센트(%)
모든 일상생활 혼자 가능	81	13.2
대부분의 일상생활 혼자 가능	101	16.4
일부 남의 도움 필요	182	29.6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97	15.8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 필요	110	17.9
무응답	43	7.0
합계	614	100.0

이를 장애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지체장애의 경우는 일부 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58명(29.0%)으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는 일부 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40명(28.9%)으로 가장 많았다. 지적장애의 경우는 '대부분 남의 도움을 받는다'(20명, 30.8%)와 '일부 남의 도움을 받는다'(19명, 29.2%)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폐성장애는 대부분

남의 도움을 받는 경우(7명, 25.9%)와 거의 남의 도움을 받는 경우(7명, 25.9%)가 같았으며, 대부분 혼자 해결하는 경우와 일부 남의 도움을 받는 경우(6명, 22.2%)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정신장애(17명, 37.0%)와 시각장애(10명, 28.6%), 청각장애(9명, 30.0%), 언어장애(3명, 50%)의 경우 일부 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3-2-9> 장애유형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n=614)

도움필요정도	지체		뇌병변		지적	
	빈도	퍼센트 (%)	빈도	퍼센트 (%)	빈도	퍼센트 (%)
모든 일상생활 혼자 가능	34	17.0	11	7.9	6	9.2
대부분의 일상생활 혼자 가능	38	19.0	17	12.1	10	15.4
일부 남의 도움 필요	58	29.0	40	28.6	19	29.2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26	13.0	23	16.4	20	30.8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 필요	30	15.0	38	27.1	8	12.3
무응답	14	7.0	11	7.9	2	3.1
합계	200	100.0	140	100.0	65	100.0
도움필요정도	자폐성		정신		시각	
	빈도	퍼센트 (%)	빈도	퍼센트 (%)	빈도	퍼센트 (%)
모든 일상생활 혼자 가능	1	3.7	7	15.2	8	22.9
대부분의 일상생활 혼자 가능	6	22.2	8	17.4	4	11.4
일부 남의 도움 필요	6	22.2	17	37.0	10	28.6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7	25.9	8	17.4	6	17.1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 필요	7	25.9	4	8.7	6	17.1
무응답	0	0	2	4.3	1	2.9
합계	27	100	46	100.0	35	100.0
도움필요정도	청각		언어		기타	
	빈도	퍼센트 (%)	빈도	퍼센트 (%)	빈도	퍼센트 (%)
모든 일상생활 혼자 가능	7	23.3	0	0.0	7	26.9
대부분의 일상생활 혼자 가능	5	16.7	1	16.7	6	23.1
일부 남의 도움 필요	9	30.0	3	50.0	7	26.9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1	3.3	1	16.7	0	0.0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 필요	5	16.7	0	0.0	0	0.0
무응답	3	10.0	1	16.7	6	23.1
합계	30	100.0	6	100.0	26	100.0

이를 연령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 전부 혼자 하는 경우는 5%(1

명)밖에 되지 않은 반면, 남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취학 아동은 거의 남의 도움을 받는 경우(23명, 28.0%)가 가장 많았으며, 일부 남의 도움(21명, 25.6%) 또는 대부분 남의 도움을 받는 경우(22명, 26.8%)가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일부 남의 도움을 받는 경우(156명, 31.4%)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미취학 아동이나 취학 아동의 경우와는 다르게 완전 자립의 경우에서 거의 남의 도움을 받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표 3-2-10> 연령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n=614)

도움필요정도	미취학 아동		취학 학생		성인	
	빈도	퍼센트 (%)	빈도	퍼센트 (%)	빈도	퍼센트 (%)
모든 일상생활 혼자 가능	1	3.1	4	4.9	76	15.3
대부분의 일상생활 혼자 가능	4	11.4	9	11.0	88	17.7
일부 남의 도움 필요	5	14.3	21	25.6	156	31.4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11	31.4	22	26.8	64	12.9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 필요	12	34.3	23	28.0	75	15.1
무응답	2	5.7	3	3.7	38	7.6
합계	35	100.0	91	100.0	460	100.0

(2)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은 부모 (124명, 20.2%)이다. 그 다음이 배우자(76명, 12.4%)였으며, 유료 활동보조인이 37명(6.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녀와 친척도 각각 18명(2.9%)과 9명(1.5%)을 차지했다.

<표 3-2-11>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

(n=614)

도우미	빈도	퍼센트(%)
배우자	76	19.5
부모	124	31.9
조부모	4	1.0
자녀	18	4.6
이웃	8	2.1

친척	9	2.3
유료가정봉사원	8	2.1
유료간병인	4	1.0
유료 활동보조인	37	9.5
무료가정봉사원	10	2.6
무료 간병인	4	1.0
무료 활동보조인	8	2.1
기타	25	6.4
무응답	54	13.9
합계	389	100.0

* 기타 도와주는 사람으로는 교회 교우들이나 여자자매, 남자형제, 친구들과 비공식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있었다.

(3) 일상생활에 있어 도움충분정도

가족이나 주변인으로 받는 도움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충분한가라는 문항에 부족하다는 답변이 충분하다는 것보다 약 3배 정도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우 부족이 92명(23.7%), 부족 187명(48.1%)으로 71.8%인 반면, 충분하다가 82명(21.1%) 매우 충분하다가 14명(3.6%)로 24.7%에 불과했다.

<표 3-2-12> 일상생활에 있어 도움충분정도

(n=389)

도움충분정도	빈도	퍼센트(%)
매우 부족	92	23.7
부족	187	48.1
충분	82	21.1
매우충분	14	3.6
무응답	14	3.6
합계	389	100.0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의 경우는 도움이 부족하다가 52.6%(60명)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도 28.9%(33명)로 높은 편이었다. 뇌병변장애의 경우 30.5%(40명)가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충분하다는 답변도 19.1%(25명)나 되었다. 지적장애 역시 부족하다는 응답이 51.1%(24명)로 가장 높았으며, 충분하다는 답변은 27.7%(13명)

정도였다. 반면에 자폐성 장애는 '부족하다'가 9명(45.0%), '충분하다'가 6명(30%)이었다. 정신장애의 경우도 '부족하다'가 13명(44.8%)으로 가장 많았고, '충분하다'고 답한 경우도 9명(31.0%)이나 되었다. 시각장애의 경우 부족하다(9명, 40.9%)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7명(33.3%)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청각장애의 경우 부족하다(8명, 26.7%), 매우 부족하다(5명, 16.7%)는 답변이 충분하다는 답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청각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의 경우보다 주변의 도움 정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 보다 유의해야 할 장애유형으로 판단된다.

<표 3-2-13> 장애유형별 일상생활에 있어 도움충분정도

도움충분정도	지체장애		뇌병변		지적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우 부족	33	28.9	22	16.8	8	17.0
부족	60	52.6	40	30.5	24	51.1
충분	17	14.9	25	19.1	13	27.7
매우충분	2	1.8	5	3.8	1	2.1
무응답	2	1.8	39	29.8	1	2.1
합계	114	100.0	131	100.0	47	100.0
도움충분정도	자폐성		정신		시각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우 부족	4	20.0	6	20.7	3	13.6
부족	9	45.0	13	44.8	9	40.9
충분	6	30.0	9	31.0	7	31.8
매우충분	1	5.0	1	3.4	2	9.1
무응답	0	0.0	0	0.0	1	4.5
합계	20	100.0	29	100.0	22	100.0
도움충분정도	청각		언어		기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우 부족	5	16.7	1	25.0	2	28.6
부족	8	26.7	2	50.0	4	57.1
충분	1	3.3	1	25.0	1	14.3
매우충분	1	3.3	0	0.0	0	0.0
무응답	15	50.0	0	0.0	0	0.0
합계	30	100.0	4	100.0	7	100.0

연령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 부족하다는 응답과 충분하다는 응답이 각각 39.3%(11명)으로 나타났으며, 취학 학생은 부족하다는 응답이 50.0%(33명)로 충분하다는 의견(18명, 27.3%)보다 월등히 많았다. 성인 역시 매우 부족하다(7명, 26.1%)·부족하다는 의견이 48.5%(143명)로 충분하다는 의견(53명, 18.0%)보다 훨씬 높았다.

<표 3-2-14> 연령별 일상생활에 있어 도움충분정도

도움충분정도	미취학 아동		취학 학생		성인	
	빈도	퍼센트 (%)	빈도	퍼센트 (%)	빈도	퍼센트 (%)
매우 부족	3	10.7	12	18.2	77	26.1
부족	11	39.3	33	50.0	143	48.5
충분	11	39.3	18	27.3	53	18.0
매우충분	2	7.1	2	3.0	10	3.4
무응답	1	3.6	1	1.5	12	4.1
합계	28	100.0	66	100.0	295	100.0

(4)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Activity of Daily Living)

총 614개의 사례 중에서 완전자립¹⁰⁾을 보이는 수는 181명(29.5%)였다. 이들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경우이다. 정도가 낮은 의존을 가진 장애 유형도 112명(18.2%)이었다. 이들은 남에게 부분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이다. 중증은 상당부분 남에게 의존하여 도움을 받는 경우로 236명(38.5%)로 양천구에서 제일 많았다.

<표 3-2-15>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n=614)

ADL	빈도	퍼센트(%)
완전자립(이상 없음)	181	29.5
정도 약함 (경증)	112	18.2
정도 심함 (중증)	236	38.5
무응답	85	13.8
합계	614	100

10) ADL 측정지표 12개 항목은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으로 환산하여 계구성하였다. 이 중에서 이상없음에 모두 표시했으면 완전자립의 경우(12점)이고, 여기에 부분도움이 4항목이거나, 완전도움이 2항목이면 경증(16점), 17점 이상이면 중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출처: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 정밀조사 연구,2008)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의 경우 완전자립(61명, 30.5%)과 중증(63명, 31.5%)의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경증(37명, 18.5%) 역시 적지 않게 나타났다. 반면에 뇌병변장애의 경우 중증¹¹⁾의 비율이 60.7%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거나, 부분도움을 받는 경우보다 약 3배에서 4배 정도 높았다. 지적장애는 중증(30명, 46.2%)이 가장 많았고 경증(17명, 26.2%), 완전자립(14명, 21.5%)이 그 뒤를 이었다. 자폐성장애의 경우 중증이 12명(44.4%), 경증이 7명(25.9%), 자립생활이 6명(22.2%) 순서였으며,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경우는 자립생활이 가능한 비율이 각각 51.4%(18명)와 53.3%(16명)로 남의 도움을 받는 경우보다 훨씬 높았다.

<표 3-2-16>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수행능력 (ADL)

A D L	지체		뇌병변		지적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이상 없음	61	30.5	24	17.1	14	21.5
경증	37	18.5	21	15.0	17	26.2
중증	63	31.5	85	60.7	30	46.2
무응답	39	19.5	10	7.1	4	6.2
합계	200	100.0	130	100.0	61	100.0
A D L	자폐성		정신		시각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이상 없음	6	22.2	22	47.8	18	51.4
경증	7	25.9	10	21.7	5	14.3
중증	12	44.4	10	21.7	10	28.6
무응답	2	7.4	4	8.7	2	5.7
합계	25	100.0	46	100.0	35	100.0
A D L	청각		언어		기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이상 없음	16	53.3	2	33.3	14	53.8
경증	1	3.3	1	16.7	1	3.8
중증	2	6.7	2	33.3	3	11.5
무응답	11	36.7	1	16.7	8	30.8
합계	30	100.0	6	100.0	26	100.0

11)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는 장애등급이 1,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포함)인 장애를 말한다.

연령별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보면 미취학 아동(24명, 68.6%)과 취학 아동(51명, 62.2%)의 경우 중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성인의 경우는 완전자립(169명, 34.0%), 경증(89명, 17.9%), 중증(161명, 32.4%)이 비슷한 추세로 나타났다.

<표 3-2-17> 연령별 일상생활 수행능력 (ADL)

A D L	미취학		취학		성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이상 없음	1	2.9	11	13.4	169	34.0
경증	7	20.0	16	19.5	89	17.9
중증	24	68.6	51	62.2	161	32.4
무응답	3	8.6	4	4.9	78	15.7
합계	35	100.0	82	100.0	497	100.0

(5) 일상생활수행능력별 도움필요정도

일상생활수행능력별 도움필요정도를 측정하는 데 총 500명(81.4%)의 유효 수가 측정 되었으며¹²⁾, 이 중에서 완전자립의 경우는 174명이고, 경증은 133명, 중증은 193명이다. 일상생활에 있어 도움정도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확인한 결과 완전자립의 경우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71명(40.8%),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52명(29.9%), 일부 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42명(24.1%)으로 나타났다. 부분도움을 받아야 할 경증의 경우는 일부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57명(54.3%)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31명, 29.5%), 대부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11명, 10.5%)가 뒤를 이었다. 완전도움을 받는 중증의 경우는 거의 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90명(18.0%)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남의 도움을 받는 경우(64명, 12.8%), 일부 남의 도움을 받는 경우(34명, 6.8%)로 전체 38.6%의 완전도움을 받는 경우에서 대부분을 차지했다.

12) 총 설문지 614개 중에서 ADL 유효응답은 500명이고,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과, 도움이 필요한 정도 항목에 하나라도 응답하지 않은 사례가 114명이다.

<표 3-2-18> 일상생활수행능력별 도움필요정도

(n= 500)

구 분	도움필요정도						전체	
	모든 일상생활 혼자 가능	대부분 일상생활 혼자 가능	일부 남의 도움 필요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거의 남의 도움 필요			
일상생활수행능력	완전 자립	빈도	71	52	42	5	4	174
		전체 %	40.8%	29.9%	24.1%	2.9%	2.3%	100.0%
	부분 도움 (경증)	빈도	2	31	57	11	4	105
		전체 %	1.9%	29.5%	54.3%	10.5%	3.8%	100.0%
	완전 도움 (중증)	빈도	1	5	52	72	91	221
		전체 %	0.5%	2.3%	23.5%	32.6%	41.2%	100.0%
전체	빈도	74	88	151	88	99	500	
전체 %	14.8%	17.6%	30.2%	17.6%	19.8%	100.0%		

* 결측 값은 114개(18.6%)이다.

(6) 도움필요정도별¹³⁾ 주변으로부터의 도움충분정도¹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도움이 얼마나 충분한가를 측정하는데 있어 유효 수는 375명(61.0%)이다. 이 중에서 일부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174명(39.3%)이고, 대부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94명(21.1%), 거의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106명(23.8%)이다. 이들이 느끼는 주변으로부터의 도움충분 정도를 파악한 결과 일부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중에서 주변의 도움이 '매우 부족하다'가 32명(34.8%), '부족한 편이다'가 91명(48.7%), '충분한 편이다'가 48명(58.5%), '매우 충분한 편이다'가 4명(28.6%)로 나타났다. 대부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중에서 주변의 도움이 '매우 부족하다'가 23명(25.0%), '부족한 편이다'가 48명(25.7%), '충분한 편이다'가 19명(23.2%), '매우 충분한 편이다'가 4명(28.6%)로 나타났다. 거의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중에서 주변의 도움이 '매우 부족하다'가 37명(40.2%), '부족한 편이다'가 48명(25.7%), '충분한 편이다'가 15명(18.3%), '매우 충분한 편

13)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혼자서 할 수 있음, 대부분 혼자서 할 수 있음, 일부 도움 필요, 대부분 도움 필요, 전부 도움 필요로 5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한 정도별 도움 필요도를 말한다.
14) 가족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충분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매우 부족하다, 부족한 편이다, 충분한 편이다, 매우 충분하다로 구분하였다.

이다'가 6명(42.9%)으로 나타났다.

<표 3-2-19> 도움필요정도별 주변으로부터의 도움충분정도

(n= 375)

구분	도움필요정도				
	일부 남의 도움 필요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거의 남의 도움 필요	전체	
남에게만 비	매우 부족하다	빈도 32 전체 % 34.8%	빈도 23 전체 % 25.0%	빈도 37 전체 % 40.2%	빈도 92 전체 % 100.0%
	부족한편이다	빈도 91 전체 % 48.7%	빈도 48 전체 % 25.7%	빈도 48 전체 % 25.7%	빈도 187 전체 % 100.0%
	충분한편이다	빈도 48 전체 % 58.5%	빈도 19 전체 % 23.2%	빈도 15 전체 % 18.3%	빈도 82 전체 % 100.0%
	매우충분한편이다	빈도 4 전체 % 28.6%	빈도 4 전체 % 28.6%	빈도 6 전체 % 42.9%	빈도 14 전체 % 100.0%
	전체	빈도 175 전체 % 39.3%	빈도 94 전체 % 21.1%	빈도 106 전체 % 23.8%	빈도 375 전체 % 100.0%

* 결측값은 239개이다.

(7) 일상생활수행능력별 도움충분정도

일상생활수행능력별로 도움충분정도를 교차분석한 결과 유효 수는 325개였으며, 완전 자립의 경우가 50명(15.4%), 부분도움(경중)이 70명(21.5%), 완전도움(중중)이 205명(63.1%)이었다.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일상생활수행능력의 합이 중중이지만 도움이 부족하다고 표시한 경우로 105명이 응답했다. 다음으로 중중의 경우면서 매우 부족하다고 답한 경우가 54명이었으며, 중중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37명)와 경중으로 부족하다고 답한 경우(36명)가 비슷하게 그 뒤를 이었다. 완전자립, 경중, 중중인 경우를 모두 합해서 '도움이 충분한 편이다'라고 답한 경우는 73명이고, 매우 충분하다고 답한 경우는 11명밖에 되지 않았다.

<표 3-2-20> 일상생활수행능력별 도움충분정도

(n= 325)

구분	일상생활수행능력총합				
	완전자립	경중	중중	전체	
도움 충분 정도	매우 부족하다	빈도 10 전체 % 12.7%	빈도 15 전체 % 19.0%	빈도 54 전체 % 68.4%	빈도 79 전체 % 100.0%
	부족한 편이다	빈도 21 전체 % 13.0%	빈도 36 전체 % 22.2%	빈도 105 전체 % 64.8%	빈도 162 전체 % 100.0%
	충분한 편이다	빈도 18 전체 % 24.7%	빈도 18 전체 % 24.7%	빈도 37 전체 % 50.7%	빈도 73 전체 % 100.0%
	매우충분한편이다	빈도 1 전체 % 9.1%	빈도 1 전체 % 9.1%	빈도 9 전체 % 81.8%	빈도 11 전체 % 100.0%
	전체	빈도 50 전체 % 15.4%	빈도 70 전체 % 21.5%	빈도 205 전체 % 63.1%	빈도 325 전체 % 100.0%

* 결측값은 213개(34.7%)임.

(8) 소결

양천구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ADL로 측정된 결과 완전자립의 경우는 29.5%인 반면에, 중중은 38.5%였다. 중중이 많다는 것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장애유형별에서는 뇌병변에서 중중이 60.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면에 완전자립은 청각장애인이 53.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양천구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뇌병변 장애인을 중심으로 서비스 공급량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 중에서 중중이 68.6%로 가장 높았으며, 성인의 완전자립의 비율이 34.0%로 가장 높았다. 미취학 아동 중에서 중중인 대상에 대한 서비스의 비중이 그만큼 많아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도움이 필요한데 정작 주변으로부터 도움은 그다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매우 부족하다' 또는 '부족한 편이다'라고 답한 경우가 50.7%로 나타났으며, 거의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매우 부족하다' 또는 '부족한 편이다'라고 답한 경우가 65.9%나 되었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을 기준으로 분류된 경중과 중중의 경우에도 주변의 도움이 부족하다 또는 매우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51명과 159명으로 70-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천구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3) 기관이용 현황

응답자의 경우 자신의 장애유형 내지는 관심의 정도에 따라 표기하여 결측값이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질문 각 항목에 있어 전체 614명으로 질문에 답한 인원이 적은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이용희망을 묻는 질문에 있어서 특정 장애유형의 응답자 표집 수보다 더 많은 숫자가 표시된 경우가 있었다. 이는 개인의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바람직한 상태로서의 욕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2-21> 기관 이용현황

(n=614)

기 관 명	인지여부		이용경험여부		이용희망여부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희망함 (%)	희망 안함 (%)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306(69.1)	137(30.9)	135(31.0)	300(69.0)	140(36.6)	243(63.4)
특수교육 지원센터	188(43.3)	246(56.7)	73(17.9)	335(82.1)	164(42.3)	223(57.7)
유아교육기관	251(63.7)	143(36.3)	115(30.1)	267(69.9)	101(30.1)	234(69.9)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287(64.6)	157(35.4)	133(30.6)	302(69.4)	249(60.0)	166(40.0)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195(44.2)	246(55.8)	76(17.9)	349(82.1)	251(59.6)	170(40.4)
장애인복지관	433(93.1)	32(6.9)	355(74.3)	123(25.7)	327(76.0)	103(24.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70(59.6)	183(40.4)	108(25.0)	324(75.0)	265(64.3)	147(35.7)
직업재활시설	241(55.8)	191(44.2)	47(11.5)	361(88.5)	196(49.5)	200(50.5)
장애인고용촉진공단	232(52.5)	210(47.5)	80(19.2)	337(80.8)	261(62.4)	157(37.6)
장애인생활시설	235(54.1)	199(45.9)	53(12.7)	364(87.3)	185(45.8)	219(54.2)
중증장애인요양시설	201(46.4)	232(53.6)	19(4.7)	389(95.3)	119(31.0)	265(69.0)
장애영유아생활시설	148(35.7)	267(64.3)	14(3.6)	370(96.4)	67(19.0)	286(81.0)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178(42.0)	246(58.0)	21(5.3)	377(94.7)	122(32.8)	250(67.2)
주간·단기 보호시설	207(48.1)	223(51.9)	38(9.4)	366(90.6)	135(35.8)	242(64.2)
장애인전용체육관	157(36.1)	278(63.9)	62(14.8)	357(85.2)	241(59.5)	164(40.5)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192(43.8)	246(56.2)	111(26.4)	310(73.6)	253(63.9)	143(36.1)
재활 병·의원	271(62.0)	166(38.0)	161(36.9)	275(63.1)	256(63.4)	148(36.6)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191(44.5)	238(55.5)	56(13.8)	351(86.2)	204(53.0)	181(47.0)
이동지원서비스센터	336(75.7)	108(24.3)	174(39.1)	271(60.9)	270(65.9)	140(34.1)

기 관 명	인지여부		이용경험여부		이용희망여부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희망함 (%)	희망 안함 (%)
심부름센터	132(30.8)	297(69.2)	20(4.9)	391(95.1)	189(48.5)	201(51.5)
교통안전공단	123(28.6)	307(71.4)	20(4.9)	389(95.1)	204(51.6)	191(48.4)
사회복지시설	117(27.7)	306(72.3)	26(6.4)	378(93.6)	93(25.1)	277(74.9)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111(27.1)	299(72.9)	5(1.3)	384(98.7)	72(20.5)	279(79.5)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132(32.5)	274(67.5)	7(1.8)	378(98.2)	68(19.4)	282(80.6)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119(29.4)	286(70.6)	10(2.6)	379(97.4)	64(18.2)	288(81.8)

(1) 교육관련 기관의 인지, 이용경험, 이용희망 여부

①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의 경우 안다는 답변(306명, 69.1%)이 모른다는 답변(137명, 30.9%)보다 많았다. 반면에 이용경험은 없다(300명, 69%)는 답변이 있다(135명, 31%)는 답변보다 많았다. 이용희망에 있어서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희망하는 경우(140명, 36.6%)보다 희망하지 않는 경우(243명, 63.4%)가 더 많았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학습지원센터 등)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모르는 경우(246명, 56.7%)가 아는 경우(188명, 43.3%)보다 더 많았다. 이용 경험여부 역시 대부분이 없다(335명, 82.1%)고 답했으며, 이용희망에 있어서도 희망하지 않음(223명, 57.7%)이 많았다.

③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을 인지하는 정도(251명, 63.7%)가 높았으나, 이용경험(115명, 30.1%)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희망하는 비율(30.1%)도 낮았다. 이는 미취학 아동의 표본 수가 취학 학생이나 성인들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된다.

④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성인 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을 인지하는 정도(287명, 64.6%)가 높았으나, 이용경험(133명,

30.6%)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에 희망하는 비율은 60.0%(249명)로 높았다. 반면에 성인 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은 인지하는 정도(195명, 44.2%)와 이용경험 여부(76명, 17.9%)는 낮았으나, 반면에 희망하는 비율은 59.6%로 적지 않았다.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및 사회교육 차원에서 재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관/자립생활센터 인지, 이용경험, 이용희망 여부

① 장애인복지관

93.1%(433명)의 응답율이 보여주듯 대다수의 응답자가 장애인 복지관을 알고 있었다. 이용경험비율(74.3%), 이용희망율(76%)도 크게 높았다.

②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인지도는 59.6%(270명)이지만, 이용 경험은 25.0%(108명)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에 이용희망을 묻는 질문에는 64.3%(265명)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지, 이용경험, 이용희망 여부

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등)

241명(55.8%)의 응답자가 직업재활시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47명(11.5%)만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약 과반수의 응답자가 앞으로 이용을 희망한다(49.5%)라고 표시했다.

② 장애인고용촉진공단

232명(52.5%)의 응답자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80명(19.2%)만이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에 이용희망을 묻는 질문에는 62.4%(261명)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4) 장애인 생활시설/요양시설/체육시설 인지, 이용경험, 이용희망 여부

① 장애인생활시설

235명(54.1%)의 응답자가 장애인생활시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53명(12.7%)만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85명(45.8%)이 이용 희망에 표시했다.

②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201명(46.4%)의 응답자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19명(4.7%)만이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에 이용희망을 묻는 질문에는 119명(31.0%)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③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148명(35.7%)의 응답자가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14명(3.6%)만이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에 이용희망을 묻는 질문에는 67명(19.0%)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④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178명(42.0%)의 응답자가 그룹홈 (공동생활가정)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21명(5.3%)만이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에 이용희망을 묻는 질문에는 122명(32.8%)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⑤ 주간·단기 보호시설

207명(48.1%)의 응답자가 주간·단기 보호시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38명(9.4%)만이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에 이용희망을 묻는 질문에는 135명(35.8%)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⑥ 장애인전용체육관

157명(36.1%)의 응답자가 장애인전용체육관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62명(14.8%)만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41명(59.5%)이 이용 희망기관으로 표시했다.

(5) 재활 병·의원/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인지, 이용경험, 이용희망 여부

① 장애인 재활 병·의원

271명(62.0%)의 응답자가 장애인 재활 병·의원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161명(36.9%)만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56명(63.4%)이 이용 희망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②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보건소)

192명(43.8%)의 응답자가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111명(26.4%)만이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에 이용희망을 묻는 질문에는 253명(63.9%)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6) 장애인 재가복지 시설 인지, 이용경험, 이용희망 여부

①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191명(44.5%)의 응답자가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56명(13.8%)만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4명(53.0%)이 이용 희망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② 이동지원서비스센터(장애인콜택시, 해피콜 등)

336명(75.7%)의 응답자가 이동지원서비스센터(장애인콜택시, 해피콜 등)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174명(39.1%)만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에 이용희망을 묻는 질문에는 270명(65.9%)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③ 심부름센터

132명(30.8%)의 응답자가 심부름센터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20명(4.9%)만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 이용 희망의사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189명(48.5%)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7) 교통안전공단 인지, 이용경험, 이용희망 여부

123명(28.6%)의 응답자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피해유자녀생활기금, 장학금 지원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20명(4.9%)만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4명(51.6%)이 이

용 희망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8) 사회복지시설(정신장애인) 인지, 이용경험, 이용희망 여부

117명(27.7%)의 응답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26명(6.4%)만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93명(25.1%)이 이용 희망에 표시했다. 정신장애인의 응답자가 46명임을 감안해볼 때, 해당 항목의 응답자가 정신장애인에 국한하여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 시·청각 장애인 시설 인지, 이용경험, 이용희망 여부

①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111명(27.1%)의 응답자가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5명(1.3%)만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72명(20.5%)이 이용 희망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②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132명(32.5%)의 응답자가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7명(1.8%)만이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에 이용희망을 묻는 질문에는 68명(19.4%)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③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119명(29.4%)의 응답자가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10명(2.6%)만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 이용 희망의사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64명(18.2%)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10) 기타 이용기관

교육기관, 재활기관, 생활시설, 의료기관, 직업기관, 문화/체육시설 및 기관 등 개인의 욕구해소를 위해 다양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인접구내 시설은 물론, 먼 지역 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표 3-2-22> 기타 이용기관 현황

고대구로병원	사회복지관	어르신행복한세상
고척동구로구민체육센터	삼성병원	어린이집
광진체협홈	삼육재활원	에덴장애인복지관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부재활체육센터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서울국립정신병원	오류동사무실
기쁜우리복지관	서울시립장애인치과	의료보험공단
까리따스	성프란치스코복지관	이대목동병원
나눔복지나눔공동체	수레바퀴	이동지원서비스
남부시립복지관	신목장애인어린이집	이미용실
남부장애인복지관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일산직업학교
농아인협회	신목해냄어린이집	재가복지
뇌성마비복지관	신월체육센터	재가복지센터
늘푸른나무복지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재활병원
도서관	신촌세브란스병원	주간보호
방화11복지관	애호협회	지적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백상정신병원	양천구민센터	천사복지관
백상정신소아과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청소년회관
베다니어린이집	양천노인복지관	청음회관
베다니학교	양천단기재활센터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병원	양천복지관	한국성진학교
보건소한마음교실	양천자립생활센터	한국아동발달센터
보훈병원	양천장애인복지센터	한마음교실
복지관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한울정신보건센터

(11) 소결

이용기관의 인지도, 이용경험 여부, 이용희망여부를 파악함에 있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기관은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같은 시설이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주로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장

아인복지관의 인지도와 이용경험, 향후 이용희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이 재활서비스에서 사회인식개선 관련 활동까지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정책의 흐름과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립지원센터의 경우 도입시기가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60%에 달하고, 64.3%가 이용희망 의사를 피력한 것을 볼 때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가 점차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자립지원생활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서비스 공급량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반증하는 수치이다.

이동지원서비스센터의 인지도와 이용경험, 이용희망 비율도 매우 높았는데, 이 역시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인의 활동에 가장 필요한 장애인콜택시 등 이동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재활서비스 기관인 병·의원과 보건소에 대한 이용희망의 비율(병·의원 : 63.4%, 보건소 : 63.9%)이 높은 것도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희망여부 역시 62.4%나 되었다. 다만, 이용경험의 경우 20%가 체 못되는 비율을 보였으며,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장애인 당사자의 고용문제, 경제문제 등과 관련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장애인전용체육관(59.5%),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60.0%),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59.6%)의 이용희망 비율이 높았다는 점에 미루어볼 때, 장애인의 교육과 문화·체육관련 욕구가 점점 높아짐을 알 수 있다.

4) 연령별 서비스 욕구

(1) 미취학 아동(만 0세 - 초등학교 이전)

미취학 아동이 응답한 수는 35명으로 전체 614명 중에 5.7%이다. 하지만, 각 항목별로 모두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무응답 항목의 경우는 결측값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각 항목별 수는 35개 보다 대부분 적게 표시되었다. 미충족률은 필요여부에 대한 응답에 “필요하다”로 답한 응답자들 중에서 현재 이용여부에 “아니오” 라고 응답한 사람들로 구성된 비율이다.

<표 3-2-23> 미취학 아동 서비스 이용 현황

사 업 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
	필요(%)	불필요(%)	이용(%)	비이용(%)	
조기특수교육	27(90.0)	3(10.0)	13(48.1)	14(51.9)	51.9
부모교육	29(96.7)	1(3.3)	11(37.9)	18(62.1)	62.1
장애이해교육(부모/형제)	28(93.3)	2(6.7)	6(21.4)	22(78.6)	78.6
물리치료	24(77.4)	7(22.6)	14(58.3)	10(41.7)	41.7
언어치료	31(93.9)	2(6.1)	21(67.7)	10(32.3)	32.3
심리치료	26(83.9)	5(16.1)	7(26.9)	19(73.1)	73.1
작업치료	30(90.9)	3(9.1)	21(70.0)	9(30.0)	30.0
음악치료	28(90.3)	3(9.7)	9(32.1)	19(67.9)	67.9
미술치료	25(83.3)	5(16.7)	6(24.0)	19(76.0)	76.0
동물매개치료	17(60.7)	11(39.3)	0(0)	17(100.0)	100.0
장애전담 어린이집/통합어린이 집	30(93.8)	2(6.3)	28(93.3)	2(6.7)	6.7
주간보호	16(57.1)	12(42.9)	1(6.3)	15(93.8)	93.8
단기보호	12(42.9)	16(57.1)	0(0)	12(100.0)	100.0
진료상담	20(69.0)	9(31.0)	1(5.0)	19(95.0)	95.0
건강관리	25(83.3)	5(16.7)	8(32.0)	17(68.0)	68.0
활동보조서비스	24(77.4)	7(22.6)	7(29.2)	17(70.8)	70.8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15(50.0)	15(50.0)	0(0)	15(100.0)	100.0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16(55.2)	13(44.8)	0(0)	16(100.0)	100.0
여가활동	22(75.9)	7(24.1)	4(18.2)	18(81.8)	81.8
체육활동	26(83.9)	5(16.1)	7(26.9)	19(73.1)	73.1
체력단련실 등 장소 이용	21(72.4)	8(27.6)	2(9.5)	19(90.5)	90.5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15(55.6)	12(44.4)	5(33.3)	10(66.7)	66.7
청력검사/훈련	14(48.3)	15(51.7)	0(0)	14(100.0)	100.0

(n=35)

① 교육 서비스

가) 조기특수교육
27명(90.0%)의 응답자가 조기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13명(48.1%)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충족률은 51.9%로 조기특수교육을 희망하는 대상 중 2명 중 1명은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부모교육(자녀 양육교육)
29명(96.7%)의 응답자가 부모교육(자녀 양육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11명(37.9%)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62.1%이다.

다) 장애이해교육(부모/형제)
28명(93.3%)의 응답자가 장애이해교육(부모/형제)을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으나, 6명(21.4%)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충족률은 78.6%이다.

② 치료 서비스

가) 물리치료
24명(77.4%)의 응답자가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14명(58.3%)은 현재 이 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충족률은 41.7%이다.

나) 언어치료(의사소통훈련)
31명(93.9%)의 응답자가 언어치료(의사소통훈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21명(67.7%)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32.3%이다.

다) 심리치료(놀이치료)
26명(83.9%)의 응답자가 심리치료(놀이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7명(26.9%)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충족률은 73.1%이다.

라) 작업치료

30명(90.9%)의 응답자가 작업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9명(30.0%)은 현재 이 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충족률은 30.0%이다.

마) 음악치료

28명(90.3%)의 응답자가 음악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9명(32.1%)만이 현재 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67.9%이다.

바) 미술치료

25명(83.3%)의 응답자가 미술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6명(24.0%)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충족률은 76.0%이다.

사) 동물매개치료

17명(60.7%)의 응답자가 동물매개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현재 이 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족률은 100.0%이다.

③ 시설 서비스

가) 장애전담 어린이집 / 통합어린이 집

30명(93.8%)의 응답자가 장애전담 어린이집 / 통합어린이 집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으며, 28명(93.3%)가 현재 이 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 있어 미충족률이 가장 낮은 6.7%로 조사되었다.

나) 주간보호

16명(57.1%)의 응답자가 주간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 주간보호 서비스는 한 명만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93.8%이다.

다) 단기보호

12명(42.9%)의 응답자가 단기보호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현재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취학 아동은 한 명도 없었다. 미충족률은 100.0%이다.

④ 상담/검진 서비스

가) 진로상담(진학상담 등)

20명(69.0%)의 응답자가 진로상담(진학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으나, 현재 1명만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95.0%로 조사되었다.

나) 건강관리(상담/검진, 치과진료 등)

25명(83.3%)의 응답자가 건강관리(상담/검진, 치과진료 등)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 8명(32.0%)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68.0%이다.

⑤ 재가서비스

가) 활동보조서비스

24명(77.4%)의 응답자가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7명(29.2%)만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충족률은 70.8%이다.

나) 산모 신생아도우미 서비스

15명(50.0%)의 응답자가 산모 신생아도우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한명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100%이다.

다)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16명(55.2%)의 응답자가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이 역시 한명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100%이다.

⑥ 여가/문화/체육활동 서비스

가) 여가활동(나들이, 공연관람 등)

22명(75.9%)의 응답자가 여가활동(나들이, 공연관람 등)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4명(18.2%)만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충족률은 81.8%이다.

나) 체육활동(수영 등)

26명(83.9%)의 응답자가 체육활동(수영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7명(26.9%)만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73.1%이다.

다) 체육시설 이용

21명(72.4%)의 응답자가 체력단련실/체육관/수영장/탁구장 등 체육관련 시설이용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2명(9.5%)만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90.5%이다.

⑦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서비스

15명(55.6%)의 응답자가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5명(33.3%)만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충족률은 66.7%이다.

⑧ 청력검사/훈련 서비스

14명(48.3%)의 응답자가 청력검사/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한 명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100%이다.

⑨ 기타 서비스

설문지에 예시된 서비스 외에도 가족심리치료, 모래 없는 어린이 안전 놀이터와 휴식 공간, 사회적 훈련, 인지치료, 웃음치료, (이 미용실과 직접 연계한) 이발서비스, 장애아동을 위한 응급치료(단 시간 내의 빠른 처치과정), 가정방문 물리치료서비스, 장애아동을 위한 쇼핑센터, 치료도구 및 신발 등 장애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생활도구 제작 등이 있었다.

⑩ 소결

미취학 아동의 욕구에 있어서 가장 높은 영역은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시설과 같은 서비스 욕구였다. 미충족율이 모두 90% 이상이었으며, 필요하지만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한명도 없었다. 2006년 양천구에서 실시한 양천구 장애인복지서비스 수요추계 및 복지욕구 분석에서도 서비스 확충을 제한한 바 있는데, 양천구 차원에서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활동치료의 경우도 미충족율이 매우 높았다. 심리치료(73.1%), 음악치료(67.9%), 미술치료(76.0%), 동물매개치료(100%)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용희망자에 비해 공급되는 서비스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지원서비스 중에서는 부모·형제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이해교육 욕구(78.6%)가 특히 높았다. 진로상담(진학상담)의 경우는 상담 프로그램 욕구로서 미충족율이 높아서 95.0%에 달했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이며 필요한 욕구로 일반 학교를 선택할 것인지 특수학교를 선택할 것인지 등의 고민을 해결해줄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들이와 같은 여가활동과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체육관·수영장 등 운동공간에 대한 욕구가 높아서 90.5%에 달했다. 앞서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과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천구내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서비스는 시행된 지 2년밖에 안되, 3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던 탓에 미충족율이 100%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역시 미충족율이 높게 나왔지만 이용조건이 까다로워(지자체장이 인정한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되는 장애인)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정책상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과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중·장기적 재원마련을 통하여)하여 이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취학 아동(초등학생 - 고등학생)

취학 아동이 응답한 수는 82명으로 전체 비율로는 13.4%이다. 하지만, 각 항목별로 모두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무응답 항목의 경우는 결측값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각 항목별 수는 82개 보다 대부분 적게 표시되었다.

<표 3-2-24> 취학 아동(초등학생- 고등학생) 서비스 이용 현황

(n=82)

사 업 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
	필요(%)	불필요(%)	이용(%)	비이용(%)	
특수학교	56(83.6)	11(16.4)	31(55.4)	25(44.6)	44.6
특수학급	65(98.5)	1(1.5)	41(63.1)	24(36.9)	36.9
학교 방과 후 활동	63(95.5)	3(4.5)	41(65.1)	22(34.9)	34.9
정보화교육	62(93.9)	4(6.1)	14(22.6)	48(77.4)	77.4
부모교육	65(98.5)	1(1.5)	16(24.6)	49(75.4)	75.4
인권 교육	62(95.4)	3(4.6)	8(12.9)	54(87.1)	87.1
학습지원 활동	64(97.0)	2(3.0)	21(32.8)	43(67.2)	67.2
일상생활훈련	60(93.8)	4(6.3)	13(21.7)	47(78.3)	78.3
물리치료	47(74.6)	16(25.4)	13(27.7)	34(72.3)	72.3
언어치료	60(89.6)	7(10.4)	27(45.0)	33(55.0)	55.0
심리치료	61(91.0)	6(9.0)	18(29.5)	43(70.5)	70.5
작업치료	59(89.4)	7(10.6)	15(25.4)	44(74.6)	74.6
음악치료	64(94.1)	4(5.9)	17(26.6)	47(73.4)	73.4
미술치료	64(94.1)	4(5.9)	11(17.2)	53(82.8)	82.8
동물매개치료	48(77.4)	14(22.6)	2(4.2)	46(95.8)	95.8
주간보호	49(76.6)	15(23.4)	8(16.3)	41(83.7)	83.7
단기보호	45(71.4)	18(28.6)	2(4.4)	43(95.6)	95.6
그룹홈(공동생활가정)	47(72.3)	18(27.7)	2(4.3)	45(95.7)	95.7
장기시설보호	41(64.1)	23(35.9)	0(0)	41(100.0)	100.0
진로상담	60(92.3)	5(7.7)	4(6.7)	56(93.3)	93.3
건강관리	67(95.7)	3(4.3)	19(28.4)	48(71.6)	71.6
성교육/성상담	63(94.0)	4(6.0)	4(6.3)	59(93.7)	93.7
활동보조서비스	62(93.9)	4(6.1)	26(41.9)	36(58.1)	58.1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44(69.8)	19(30.2)	2(4.5)	42(95.5)	95.5
테마캠프	63(95.5)	3(4.5)	14(22.2)	49(77.8)	77.8
여가활동	62(95.4)	3(4.6)	20(32.3)	42(67.7)	67.7
체육활동	64(94.1)	4(5.9)	18(28.1)	46(71.9)	71.9
문화활동	59(92.2)	5(7.8)	9(15.3)	50(84.7)	84.7
체력단련실 등 장소 이용	62(93.9)	4(6.1)	17(27.4)	45(72.6)	72.6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36(58.1)	26(41.9)	7(19.4)	29(80.6)	80.6
청력검사/훈련	35(55.6)	28(44.4)	1(2.9)	34(97.1)	97.1

① 교육 서비스

가) 특수학교

56명(83.9%)의 응답자가 특수학교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31명(55.4%)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충족률은 44.6%로 나타났다.

나) 특수학급(일반학교)

65명(98.5%)의 응답자가 특수학급(일반학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41명(63.1%)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36.9%이다.

다) 학교 방과 후 활동

63명(95.5%)의 응답자가 학교 방과 후 활동을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으나, 41명(65.1%)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충족률은 34.9%이다.

라) 정보화 교육(컴퓨터, 인터넷 활용 등)

62명(93.9%)의 응답자가 정보화 교육(컴퓨터, 인터넷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14명(22.6%)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충족률은 77.4%로 나타났다.

마) 부모교육(자녀 양육교육)

65명(98.5%)의 응답자가 부모교육(자녀 양육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16명(24.6%)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75.4%이다.

바) 인권 교육

62명(95.4%)의 응답자가 인권 교육을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으나, 8명(12.9%)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충족률은 87.1%이다.

사) 학습지원 활동

64명(97.0%)의 응답자가 학습지원 활동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21명(32.8%)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충족률은 67.2%로 나타났다.

아) 일상생활훈련(신변처리, 요리 등)

60명(93.8%)의 응답자가 일상생활훈련(신변처리, 요리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13명(21.7%)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78.3%이다.

② 치료 서비스

가) 물리치료

47명(74.6%)의 응답자가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13명(27.7%)만이 현재 이 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충족률은 72.3%이다.

나) 언어치료(의사소통훈련)

60명(89.6%)의 응답자가 언어치료(의사소통훈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27명(45.0%)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55.0%이다.

다) 심리치료(놀이치료)

61명(91.0%)의 응답자가 심리치료(놀이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18명(29.5%)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충족률은 70.5%이다.

라) 작업치료

59명(89.4%)의 응답자가 작업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15명(25.4%)만이 현재 이 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충족률은 74.6%이다.

마) 음악치료

64명(94.1%)의 응답자가 음악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17명(26.6%)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73.4%이다.

바) 미술치료

64명(94.1%)의 응답자가 미술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11명(17.2%)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충족률은 82.8%이다.

사) 동물매개치료

48명(77.4%)의 응답자가 동물매개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현재 이 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는 2명(4.2%)으로 나타났다. 미충족률은 95.8%이다.

③ 시설 서비스

가) 주간보호

49명(76.6%)의 응답자가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으며, 8명(16.3%)이 현재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미충족률이 83.7%로 조사되었다.

나) 그룹홈(공동생활가정)

47명(72.3%)의 응답자가 주간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 2명(4.3%)이 그룹홈 생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95.7%이다.

다) 단기보호

45명(71.4%)의 응답자가 단기보호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이 역시 2명(4.4%)만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미충족률은 95.6%이다.

라) 장기시설보호

41명(64.1%)의 응답자가 장기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현재, 단 한 명의 이용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충족률은 100%이다.

④ 상담/검진 서비스

가) 진로상담

60명(92.3%)의 응답자가 진로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으나, 현재 4명(6.7%)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93.3%로 조사되었다.

나) 건강관리(상담/검진, 치과진료 등)

67명(95.7%)의 응답자가 건강관리(상담/검진, 치과진료 등)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

만, 현재 19명(28.4%)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71.6%이다.

다) 성교육/성상담
63명(94.0%)의 응답자가 성교육/성상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 4명(6.3%)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93.7%이다.

⑤ 재가서비스

가) 활동보조서비스
62명(93.9%)의 응답자가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26명(41.9%)만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충족률은 58.1%이다.

나)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44명(69.8%)의 응답자가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2명(4.5%)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족률은 95.5%이다.

⑥ 여가·문화·체육활동 서비스

가) 여가활동(나들이, 공연관람 등)
62명(95.4%)의 응답자가 여가활동(나들이, 공연관람 등)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20명(32.3%)만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충족률은 67.7%이다.

나) 체육활동(수영 등)
64명(94.1%)의 응답자가 체육활동(수영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18명(28.1%)만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71.9%이다.

다) 체육시설 이용
62명(93.9%)의 응답자가 체력단련실/체육관/수영장/탁구장 등 장소 이용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17명(27.4%)만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72.6%이다.

라) 문화활동(풍물, 기악합주, 합창 등)
59명(92.2%)의 응답자가 문화활동(풍물, 기악합주, 합창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9명(15.3%)만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84.7%이다.

마) 테마캠프(장애청소년 체험활동)
63명(95.5%)의 응답자가 테마캠프(장애청소년 체험활동)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14명(22.2%)만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77.8%이다.

⑦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서비스

36명(58.1%)의 응답자가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7명(19.4%)만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충족률은 80.6%이다.

⑧ 청력검사/훈련 서비스

35명(55.6%)의 응답자가 청력검사/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1명(2.9%)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97.1%이다.

⑨ 기타 서비스

뇌병변장애아의 경우 수중스포츠 시 일반수영장 온도보다 수온이 1~2도 높은 것을 원했고, 등하교 서비스, 사회적응훈련, 인지치료,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에 대한 인식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피아노교육, AAC (그림으로 하는 의사소통)언어서비스, 방학기간 그룹 활동, 자녀동반 없는 부부나들이, 잠재력개발, 학교활동지원서비스, 요리, 방학기간 프로그램, 아빠와 아이와의 체험활동, 노는 토요일에 대학생들과 인연 맺기 프로그램 등 청소년프로그램의 증가를 원하였다.

⑩ 소결

주간보호와 단기보호와 같은 시설서비스와 심리치료·음악치료·동물매개치료 등과 같은 활동치료서비스의 경우 미취학 아동의 경우와 욕구의 차이는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시설서비스에 있어서 그룹홈 이용에 대한 욕구가 95.7%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과 장기시설보호의 욕구도 100%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양천구 차원에서 사회성을 기르고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 그 효과가 큰 그룹홈에 대한 시설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이며, 장애자녀의 간병과 지원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장기보호시설의 확충¹⁵⁾이 요구된다. 장기보호시설의 경우, 개별화·자립화의 원칙에 따른 정책적인 판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학 학생의 경우 교육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하여 정보화교육(77.4%), 인권교육(87.1%), 학습지원활동(67.2%) 등으로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학교교육은 아니지만 성교육/성상담(93.7%)은 사춘기에 접어든 장애학생들에게 서비스욕구충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인권교육과 함께 새롭게 도입해야 할 프로그램이다.

여가나들이, 문화·체육관련 프로그램은 그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문화활동의 경우 음악활동·미술활동 등을 통해서 장애·비장애 통합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치료의 모델을 넘어, 창작활동의 단계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내지는 창작 스튜디오¹⁶⁾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휠체어·보장구 제작 및 대여서비스, 청력검사·훈련서비스에 대한 미충족율이 높다는 점에서 서비스 공급량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성인(만 18세 이상)

성인이 응답한 수는 497명으로 비율로는 80.9%이다. 하지만, 각 항목별로 모두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무응답 항목의 경우는 결측값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각 항목별 수는 497개 보다 대부분 적게 표시되었다.

15) 2006년 양천구 장애인복지서비스 수요추계 및 복지욕구 분석에서는 장기보호시설에 대한 제안이 빠져있다.

16) 한국시각장애인협회의 경우 일본의 “에이블아트” 프로그램을 기초로 시각장애인인 미술작가들이 함께 하는 창작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창작된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을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하고 있다.

<표 3-2-25> 성인(만 18세 이상) 서비스 이용 현황

(n=497)

사 업 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
	필요(%)	불필요(%)	이용(%)	비이용(%)	
인문학 교육	148(55.0)	121(45.0)	22(14.9)	126(85.1)	85.1
인권 교육	188(68.9)	85(31.1)	42(22.3)	146(77.7)	77.7
정보화교육	225(75.8)	72(24.2)	63(28.0)	162(72.0)	72.0
일상생활훈련	167(60.7)	108(39.3)	58(34.7)	109(65.3)	65.3
직업상담	184(65.7)	96(34.3)	35(19.0)	149(81.0)	81.0
직업능력평가	163(45.2)	198(54.8)	24(14.7)	139(85.3)	85.3
취업준비훈련	167(60.3)	110(39.7)	22(13.2)	145(86.8)	86.8
보호 작업	118(45.4)	142(54.6)	17(14.4)	101(85.6)	85.6
취업 후 지원	167(62.5)	100(37.5)	11(6.6)	156(93.4)	93.4
취업알선	179(64.2)	100(35.8)	24(13.4)	155(86.6)	86.6
물리치료	198(66.7)	99(33.3)	44(22.2)	154(77.8)	77.8
언어치료	126(46.7)	144(53.3)	13(10.3)	113(89.7)	89.7
심리치료	137(50.4)	135(49.6)	25(18.2)	112(81.8)	81.8
작업치료	123(45.9)	145(54.1)	26(21.1)	97(78.9)	78.9
주간보호	96(37.1)	163(62.9)	22(22.9)	74(77.1)	77.1
단기보호	84(32.9)	171(67.1)	8(9.5)	76(90.5)	90.5
그룹홈	86(34.0)	167(66.0)	7(8.1)	79(91.9)	91.9
결혼상담	103(39.8)	156(60.2)	6(5.8)	97(94.2)	94.2
성교육/성상담	129(48.9)	135(51.1)	22(17.1)	107(82.9)	82.9
활동보조서비스	192(69.1)	86(30.9)	86(44.8)	106(55.2)	55.2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154(56.4)	119(43.6)	31(20.1)	123(79.9)	79.9
노인 돌봄 서비스	126(46.8)	143(53.2)	14(11.1)	112(88.9)	88.9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	83(32.9)	169(67.1)	8(9.6)	75(90.4)	90.4
이동목욕서비스	109(41.8)	152(58.2)	10(9.2)	99(90.8)	90.8
이·미용서비스	187(65.4)	99(34.6)	62(33.2)	125(66.8)	66.8
여가활동	211(74.6)	72(25.4)	85(40.3)	126(59.7)	59.7
체육활동	181(66.3)	92(33.7)	49(27.1)	132(72.9)	72.9
문화활동	155(58.3)	111(41.7)	30(19.4)	125(80.6)	80.6
체력단련 등 장소 이용	203(70.2)	86(29.8)	73(36.0)	130(64.0)	64.0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168(59.8)	113(40.2)	65(38.7)	103(61.3)	61.3

① 교육 서비스

가) 인문학 교육(문학/역사/철학/예술 등)

148명(55.0%)의 응답자가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22명(14.9%)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충족률은 85.1%로 나타났다.

나) 인권 교육

188명(68.9%)의 응답자가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42명(22.3%)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77.7%이다.

다) 정보화 교육(컴퓨터, 인터넷 활용 등)

225명(75.8%)의 응답자가 정보화 교육(컴퓨터, 인터넷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63명(28.0%)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충족률은 72.0%로 나타났다.

라) 일상생활훈련(신변처리, 요리 등)

167명(60.7%)의 응답자가 일상생활훈련(신변처리, 요리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58명(34.7%)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65.3%이다.

② 직업 서비스

가) 직업상담

184명(65.7%)의 응답자가 직업 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35명(19.0%)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충족률은 81.0%로 나타났다.

나) 직업능력평가

163명(45.2%)의 응답자가 직업능력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24명(14.7%)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85.3%이다.

다) 취업준비훈련

167명(60.3%)의 응답자가 취업준비훈련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22명(13.2%)만이 현

재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충족률은 86.8%로 나타났다.

라) 보호 작업

118명(45.4%)의 응답자가 보호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17명(14.4%)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85.6%이다.

마) 취업 후 지원

167명(62.5%)의 응답자가 취업 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11명(6.6%)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93.4%이다.

바) 취업 알선

179명(64.2%)의 응답자가 취업 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24명(13.4%)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86.6%이다.

③ 치료 서비스

가) 물리치료

198명(66.7%)의 응답자가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44명(22.2%)이 현재 이 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충족률은 77.8%이다.

나) 언어치료(의사소통훈련)

126명(46.7%)의 응답자가 언어치료(의사소통훈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13명(10.3%)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89.7%이다.

다) 심리치료(원예치료/댄스치료/드라마치료)

137명(50.4%)의 응답자가 심리치료(원예치료/댄스치료/드라마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25명(18.2%)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충족률은 81.8%이다.

라) 작업치료

123명(45.9%)의 응답자가 작업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26명(21.1%)만이 현재 이

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충족률은 78.9%이다.

④ 시설 서비스

가) 그룹홈(공동생활가정)
86명(34.0%)의 응답자가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으며, 8명(9.5%)이 현재 그룹홈을 이용하고 있었다. 미충족률은 91.9%로 조사되었다.

나) 주간보호
96명(37.1%)의 응답자가 주간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 22명(22.9%)이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77.1%이다.

다) 단기보호
84명(32.9%)의 응답자가 단기보호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이 역시 8명(9.5%)의 현재 서비스 이용 숫자를 보이고 있다. 미충족률은 90.5%이다.

⑤ 상담/섭진 서비스

가) 결혼상담
103명(39.8%)의 응답자가 결혼 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으나, 현재 6명(5.8%)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94.2%로 조사되었다.

나) 성교육/성상담
129명(48.9%)의 응답자가 성교육/성상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 22명(17.1%)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82.9%이다.

⑥ 재가서비스

가) 활동보조서비스
192명(69.1%)의 응답자가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86명(44.8%)이 현

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충족률은 55.2%로 성인의 각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미충족율을 보인다.

나)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154명(56.4%)의 응답자가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31명(20.1%)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족률은 79.9%이다.

다) 노인 돌보미 서비스
126명(46.8%)의 응답자가 노인 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14명(11.1%)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충족률은 88.9%이다.

라) 산모 신생아 돌보미 서비스
83명(32.9%)의 응답자가 산모 신생아 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8명(9.6%)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족률은 90.4%이다.

마) 이동목욕서비스
109명(41.8%)의 응답자가 이동목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10명(9.2%)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충족률은 90.8%이다.

바) 이·미용서비스
187명(65.4%)의 응답자가 이·미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62명(33.2%)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족률은 66.8%이다.

⑦ 여가/문화/체육활동 서비스

가) 여가활동(나들이, 공연관람 등)
211명(74.6%)의 응답자가 여가활동(나들이, 공연관람 등)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85명(30.8%)만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충족률은 59.7%이다.

나) 체육활동(수영 등)
181명(66.3%)의 응답자가 체육활동(수영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49명(27.1%)만

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72.9%이다.

다) 체육시설 이용

203명(70.2%)의 응답자가 체력단련실/체육관/수영장/탁구장 등 장소 이용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73(36.0%)만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64.0%이다.

라) 문화활동(풍물, 기악합주, 합창 등)

155명(58.3%)의 응답자가 문화활동(풍물, 기악합주, 합창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30명(19.4%)만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충족률은 80.6%이다.

㉘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서비스

168명(59.8%)의 응답자가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65명(38.7%)만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충족률은 61.3%이다.

㉙ 기타 서비스

거치식 호이스, 보청기 구입, 국어와 산수 학습지원, 야외견학 프로그램, 미술치료, 방문 재활치료, 스쿠버다이빙훈련 프로그램, 도로보행 교육프로그램, 점자컴퓨터 교육, 하모니카/기타/색소폰 연주 강습, 저렴한 김치구매 서비스, 월2회 도시락 반찬서비스, 빠른 정보서비스, 세탁서비스, 시장도우미, 요리강습(자격증준비), 병원입원시보증인, 유료 응급차량의 무료서비스, 응급 콜서비스, 의료비 지원, 의료기기 무료대여, 인공 와우 시술서비스, 재활을 위한 수술, 저렴한 요양시설, 자립생활 체험 홈, 장애인전동차, 수동 휠체어, 장애자콜택시 이용 시에 청각장애인 문자이용 서비스, TV자막 서비스, 리프트 방식의 침대, 서서 밀고가는 보조기구 대여서비스, 욕창매트 대여 서비스, 옷과 이불 대여 서비스, 이사서비스, 장년층 맞춤 취업교육, 장애인 창업교육, 소득보장서비스, 장애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퇴원 시 119이용서비스, 주거지원, 시설생활인 지원 등이 있었다.

㉚ 소결

성인에 있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은 취업관련 서비스이다. 직업상담(81.0%), 직업능력평가(85.3%), 취업준비훈련(86.8%), 보호작업(85.6%), 취업 후 지원

(93.4%), 취업알선(86.6%) 등 취업관련 서비스 전반에 걸쳐 높은 욕구를 보였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영역은 결혼과 성과 관련 서비스이다. 혼인 적령기에 들어있거나 성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해소하여야 할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비스 영역에서 제외되어 있던 것에 대해 양천구 차원에서 진지한 고민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설서비스 영역이나 활동치료의 영역은 미취학 아동과 취학 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으며, 가사·간병 방문서비스(79.9%), 노인 돌보미서비스(88.8%), 산모 신생아 돌보미서비스(90.4%), 이동목욕서비스(90.9%) 등 각종 돌봄서비스의 욕구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양천구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서비스의 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인문학 교육(85.1%)이나 문화활동(80.5%)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문학 교육의 경우 장애인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제외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다는 비율이 8.1%(22명)이나 된다. 이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영역이 문화적 치료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를 넘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삶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는 단계로 집입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단기적으로 인문학강좌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17) 2006년 일본에서는 '섹스 자원봉사'라는 책이 출간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었다. 이 책의 저자인 가와이 가오리는 "딱거나 용변보는 것만큼 기본 권리인 성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며 "성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다."며 책이 가진 의미를 대신했다. 네덜란드 SAR(선택적 인간관계 재단)은 성욕을 처리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섹스파트너나 밤을 함께 할 사람을 파견한다. 이곳이 내세우는 주장은 '우리(장애인)는 돌이 아니다. 어떤 중증 장애인도 성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장애인이 설립한 SAR은 연간 약 2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60%가량이 정신지체장애인이고 나머지는 신체장애인이다.

5) 기타 서비스 욕구

(1) 취업(성인)

① 취업 현황

총 380명이 응답하였으며,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82명(16.5%)이고 실업상태인 경우가 298명(60.0%)이다. 무응답도 23.5%에 달했다.

<표 3-2-26> 취업 여부

(n=497)		
구분	빈도	퍼센트(%)
예	82	16.5
아니오	298	60.0
무응답	117	23.5
합계	497	100.0

② 직업 분야 / 근무년수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22명(26.8%)으로 단일 업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자영업(9명, 11.0%)이었다. 기타의 경우는 취약계층일자리(공공근로)가 가장 많고, 예술관련 직업, 아르바이트, 재활용품수집 등이 있었다.

82명의 취업자 중에서 근무년수의 경우 5년 이상이 30명(36.6%)으로 가장 많았다. 2년이상에서 5년 미만도 20명(24.4%)이나 되었다. 반면에 6개월 미만이라 응답한 사람도 16명(19.5%)이었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응답한 경우도 10명(12.2%)이 있었다.

<표 3-2-27> 근무 업종 / 근무 년수

(n=82)					
현재 분야	빈도	퍼센트(%)	근무 년수	빈도	퍼센트(%)
농축수산업/임업/원예업	1	1.2	6개월미만	16	19.5
자영업	9	11.0	6개월이상 1년미만	10	12.2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6	7.3	1년이상 2년미만	6	7.3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	22	26.8	2년이상 5년미만	20	24.4
기타	41	50.0	5년이상	30	36.6
무응답	3	3.7	무응답	0	0
합계	82	100.0	합계	82	100.0

현재 일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리직 5명, 컴퓨터관련(전산)직 5명, 잡무(경비, 보조, 홀서빙, 설거지 등) 12명, 사무직 28, 청소 4명, 예술 3명, 운영자(자영업, 소장, 대표) 4명, 공공근로, 권익옹호, 교회사역, 안마지업 등이었다.

<표 3-2-28> 현재 직무군

(n=82)									
직업	관리직	운영자	컴퓨터 관련	잡무	청소	예술	사무직	기타	합계
빈도	5	4	5	12	4	3	28	21	82
퍼센트(%)	6.0	4.9	6.0	14.6	4.9	3.7	34.2	25.7	100

③ 이직/구직 희망 여부

382명의 응답자 중에서 이직/구직 희망자는 126명(20.5%)이었다.

<표 3-2-29>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n=497)		
구직 원함	빈도	퍼센트(%)
예	126	20.5
아니오	256	41.7
무응답	232	37.8
합계	614	100.0

④ 구직과 이직 시 희망 업종 / 희망 (월)급여

희망업종에 표기한 126명의 업종은 살펴보면 농축수산업/원예업(4명, 3.2%)을 제외하면 자영업(18명, 14.3%), 블루칼라(24명, 19.1%), 화이트칼라(20명, 15.9%)가 비교적 크게 분포되어 있다. 희망급여는 100만원에서 149만원 사이가 40명(32.3%)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만원에서 99만원 사이도 31명(25%)으로 그 다음이었다.

<표 3-2-30> 구직과 이직 희망 업종 / 희망 (월)급여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이직희망 업종	농축수산업/원예업	4	3.2	희망 급여	1만원- 49만원	13	10.5
	자영업	18	14.3		50만원- 99만원	31	25.0
	블루칼라	24	19.0		100만원-149만원	40	32.3
	화이트칼라	20	15.9		150만원- 199만원	20	16.1
	기타	41	32.5		200만원 이상	20	16.1
	무응답	19	15.1		무응답	0	0
	합계	126	100.0		합계	124	100.0

* 기타 희망하는 일자리 중 예술 관련에 관한 것이 있었다.

⑤ 구직활동 않는 이유

구직희망을 하지 않은 256명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장애 때문에'(137명, 53.5%)로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31명, 12.1%)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는 5명(2.0%) 정도였다.

<표 3-2-31> 구직활동 않는 이유

이유	빈도	퍼센트(%)
장애 때문에	137	53.5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31	12.1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4	1.6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5	2.0
기타	55	21.5
무응답	24	9.4
합계	256	100.0

* 기타 '건강이 이상이 생겨서 또는 학생이나 다른 준비로 인해 구직을 하지 않는'도 있었다.

(2) 복지서비스 정보 인지경로

다중 응답으로 응답하였으며 '주변 이웃이나 친지를 통해'가 214개(26.4%)로 가장 많았고, '사업기관 등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가 181개(22.3%)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의 방송 및 언론매체를 보고'가 109개(13.4%)였으며, '관할 거주지 공무원의 안내로' 답한 경우가 82개(10.1%)였다. 전단지, 홍보물 등 인쇄매체를 보고라고 답한 경우는 79개(9.7%)를 차지했다.

<표 3-2-32> 서비스 인지 경로

구분	빈도	퍼센트(%)
전단지, 홍보물 등 인쇄매체를 보고	79	9.7
주변 이웃이나 친지를 통해	214	26.4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를 보고	109	13.4
관할 거주지 공무원의 안내로	82	10.1
사업기관 등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	181	22.3
기타	40	4.9
무응답	106	13.2
합계	811	100

* 114, 120, 129 등 전화안내, 병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교기관, 장애인복지관, 학교, 장애인협회 등의 기타 응답이 있었다.

(3) 서비스 선택 기준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 이동거리(804개, 21.8%)가 서비스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내용(431개, 11.7%), 프로그램의 전문성(413개, 11.2%)이 그 뒤를 이었으며, 비중은 낮았지만 이용료(352개, 9.6%)와 이용가능시간(224개, 6.1%)도 역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었다.

<표 3-2-33> 서비스 선택기준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산		합산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합산		합산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이동거리	205	33.4	63	10.3	63	10.3	331	26.9	804	32.1
시설규모	12	2.0	41	6.7	35	5.7	88	7.2	153	6.1
이용료	44	7.2	77	12.5	66	10.7	187	15.2	352	14.1
인지도	13	2.1	17	2.8	21	3.4	51	4.1	94	3.8
이용가능 기간	20	3.3	49	8.0	66	10.7	135	11.0	224	9.0
프로그램의 전문성	63	10.3	85	13.8	54	8.8	202	16.4	413	16.5
서비스 내용	71	11.6	67	10.9	84	13.7	222	18.1	431	17.2
기타	7	1.1	4	0.7	2	0.3	13	1.1	31	1.2
무응답	179	29.2	211	34.4	223	36.3				
합계	614	100.2	614	100.1	614	99.9	1,229	100.0	2,502	100.0

* 기타의견으로 당사자 의견 존중, 자기선택권(1순위), 소비자주권 옹호, 장애인 참여의 폭, 친교(2순위) 등이 있었다.

<표 3-2-34>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가장 필요한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	빈도	퍼센트(%)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101	16.4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119	19.4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기회 확대	42	6.8
(역사/생태 등)테마관광기회 확대	45	7.3
기타	92	15.0
무응답	215	35.0
합계	614	100.0

* 기타 의견으로 치료·운동 관련, 이동(나들이, 보행), 교육·훈련, 경제적 도움, 가정가사도우미, 적성에 맞는 것, 게임, 사람만나는 기회, 동료상담, 문학동아리, 사회경험 등이 있었다.

(4)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가장 필요한 서비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묻는 항목에 399명이 응답하였으며, 그 중에서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를 119명(19.4%)로 가장 많이 꼽았다. 두 번째는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101명, 16.4%)'이었다. (테마관광) 기회

확대(45명, 7.3%),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기회 확대(42명, 6.8%)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20명, 80.0%)과 취학 학생(30명, 57.4%)의 경우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를 가장 선호했으며, 반면에 성인의 경우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84명, 37.0%)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표 3-2-35> 연령별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가장 필요한 서비스

연령별	(공연(전시장) 방문기회)	(음악/미술) 학습기회	(축구/야구) 동아리 활동	(역사) 테마관광
미취학아동(~7세)	5(20.0)	20(80.0)	0(0.0)	0(0.0)
취학학생(8~19세)	12(19.7)	35(57.4)	13(21.3)	1(1.6)
성인(20세 이상)	84(37.0)	64(30.0)	29(13.1)	44(19.9)

(5) (장애인 자택에서)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자택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242명, 39.4%)과 동의하지 않는 의견(227명, 37.0%)이 비슷했다.

<표 3-2-36> 자택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구 분	빈도	퍼센트(%)
동의	242	39.4
동의하지 않음	227	37.0
무응답	145	23.6
합계	614	100.0

장애인 자택에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27명이 제시한 가장 많은 이유는 '장애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음'(70명, 30.8%)이었다. 또한 '사생활노출부담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담감'도 33명(14.5%)으로 적지 않았다. 자원봉사자의 자질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도 19명(8.3%)나 되었다.

<표 3-2-37> 동의하지 않는 이유

(n=227)

동의하지 않는 이유	빈도	퍼센트(%)
장애가 심하지 않음(필요 없음 포함)	70	30.8
가족이 돌볼 수 있음(가족지원)	20	8.8
사생활노출부담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담감	33	14.5
자원봉사자의 자질문제(무책임, 군림하는 태도 등)	19	8.3
구조적 문제(시간조절 어려움 등)	8	3.5
개인적 측면(장애특수성, 기관선호, 개별적 선호문제 등)	20	8.8
기타	57	25.3
합계	227	100.0

(6) 장애인 인식개선 방안

가장 많은 사람(142명, 23.1%)이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 운영을 꼽았다. 그 뒤를 이어 홍보 캠페인(126명, 20.5%)과 인식개선 교육(119명, 19.4%)도 강조되었다.

<표 3-2-38> 장애인 인식개선 방안

(n=614)

구분	빈도	퍼센트(%)
홍보(캠페인, 방송 등)	126	20.5
인식개선 교육	119	19.4
장애인의 지역행사참여	57	9.3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 운영	142	23.1
기타	11	1.8
무응답	159	25.9
합계	614	100.0

* 기타 의견으로 장애인 스스로의 의지와 자존감이 필요하고 장애인과 어울리는 사회 풍도와 인프라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7) 할인혜택이 가장 필요한 분야

병원이 303명(49.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차량정비(37명, 6.0%)와 같이 실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분야를 꼽았으며, 영화/스포츠/공연장과 같은 문화공간(32명, 5.2%)

도 중요한 분야로 선택되었다.

<표 3-2-39> 할인혜택이 가장 필요한 분야

(n=614)

구분	빈도	퍼센트(%)
병원	303	49.3
식당	26	4.2
영화/스포츠/공연장	32	5.2
학원	24	3.9
차량정비	37	6.0
기타	35	5.7
무응답	157	25.6
합계	614	100.0

*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으로 생필품, 식료품, 현금지원, 공공요금(공과금, 관리비), 교통비(버스비 등), 치료비(치과), 장애로 인한 추가요금(보장구수리, 복지관요금) 등에 대한 할인 의견이 있었다.

(8) 주택 개조

고치고 싶다는 의견(229명, 37.3%)과 고치고 싶지 않다는 의견(208명, 33.9%)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3-2-40> 주택 개조에 대한 욕구

(n=614)

구분	빈도	퍼센트(%)
반드시 고치고 싶다	103	16.8
가급적 고치고 싶다	126	20.5
별로 고치고 싶지 않다	132	21.5
전혀 고치고 싶지 않다	76	12.4
기타	14	2.3
무응답	163	26.5
합계	614	100.0

* 기타의견으로 자기 집이 아니고 전세나 월세, 임대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였고, 고칠 만큼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집의 구조를 바꾸거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쳤으면 하는가 하는 물음에 가장 많은 의견은 화장실을 개조하고 이동로를 확보하고 싶다는 것이 많았다. 또한, 화장실 공간을 확보하고 봉 설치하는 것과 이동통로를 넓게 하고 문턱을 없애고 출입구를 넓히는 것도 다수의 의견이었다.

<표 3-2-41> 집수리 희망내용

장소	고치고 싶은 곳
화장실	욕조제거, 미끄럼방지, 변기, 봉설치, 세면대 높이
부엌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선반
이동로확보	문턱 없애기, 자동문설치, 핸드레일
방	봉 설치, 전동침대, 방진매트, 수납공간
인테리어	도배, 장판, 전기시설, 시멘트칠(몰딩), 쿠션, 조명, 창문, 환기
구조	난방, 소음, 발코니, 도시가스시설, 베란다, 운동기구, 수도시설, 자동문, 출입구(현관), 리모컨 설치, 하수구
기타	전동침대, 집이 비좁음, 의료기관이용, 열쇠설치, 편의시설

(9)소결

성인에 한정하여 파악했던 취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응답자 중 약 20% 정도만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직업을 살펴보면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그 때문인지 이직과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33%나 되었다. 희망급여 역시 150만 원 이하가 전체의 67%를 차지할 만큼 보수에 대한 기대치도 높지 않았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장애가 가장 많았다. 종합적으로 보면, 자립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취업과 직업 활동에 있어 양천구 거주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직업을 갖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결과를 갖게 된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장애인들이 느끼고 있어 적극적으로 직업을 갖고자 노력하지 않으며, 또한 희망하는 급여도 비장애인의 평균임금보다도 낮게 설정되어 있었다.

복지서비스의 인지경로를 보면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서비스의 선택기준은 이동거리가 가장 많기는 했으나 프로그램의 전문성이나 서비스 내용을 꼽는 경우도 많았던 것을 감안해 보면 각자의 경험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용가능시간이나 이용료 문제를 지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볼 때, 관련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노력을 보이면 서비스 혜택을 받는 장애인의 수가 단기적으로도 크게 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경우 취약 학생이나 청소년 이하의 계층에게는 음악이나 미술 등의 학습기회의 확대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이며, 성인들에게는 공연장이나 미술관 등과 같은 곳에 방문할 수 있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에 관련해서는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맞게 봉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치밀하게 준비된 봉사활동)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할인혜택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는 병원과 차량정비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의료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차량정비소와 같은 곳에 이동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개조의 경우는 고치고 싶은 경우와 고치고 싶지 않다는 경우가 비슷했다. 다만, 주택개량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적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의 미끄럼방지나 봉 설치, 부엌의 싱크대 높낮이 조절, 문턱 없애기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이나 도배·장판과 같이 환경개선과 같은 비교적 적은 재원과 지역사회의 도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영역부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10) 기타 권의 사항

전문 자격사 시험을 공부할 수 있게끔 사설 학원 수강료를 지원
가까운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프로그램이 많았으면 함
가장 먼저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함
가족이 활동보조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함.
시각 장애인이 보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 상인들 단속이 필요함.
개인 상담을 통한 개별서비스 희망
계단이동의 불편, 식당 의자 시설 구비 안됨
장애아동이 필요한 고가의 보장구나 도구들의 지원이 있었으면 함
공공시설에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횡단보도 턱이 너무 높음
공공장소에 장애인 안내를 위한 서비스 강화(안내소, 휴식공간 등)
장애인 우선(줄서기, 차타기 등) 배려(홍보 강화)
장애인이라는 용어 대신 새로운 개념의 용어 개발 필요(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등과 유사 용어)

관절수술을 한 상태에서 수중운동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했으면 좋겠음
교육비 지원과 복지관 시설이 많아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음,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서 언제든 희망하면 갈 수 있는 직업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음
장애인 일터가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관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음
구직활동에서의 차별금지, 부부가 다 장애인일 시 혜택확대
나에게 맞는 서비스와 양의 증가(PAS)
너무 많은 복지관이용자들로 인하여 체력단련실 등 공간이 너무 좁고 불편
옥상에 평행봉이나 회전관 등이 설치 요망
민간 시설도 주차요금 혜택이 있었으면 함
대학교육 학비와 책 지원.
등록 장애인 사회복지공무원과 연 1회 이상 면담 요망,
떡국 한 그릇을 먹기 위하여,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교통비 2천 원씩 들어가며 간다는 것은 낭비
맞춤식으로 확실적 아닌 대상자 1인마다 수준에 맞는 현실적인 전환이 필요
건강, 교육 훈련, 음악적 훈련, 기술훈련, 본인의 잠재적 가능성 발견 유도
가능성이 1%라도 주저 않지 않고 일어나도록 칭찬하는 피그말리온 효과 기대(정기적인 상담),
인문교육 병행
무성의한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미술동아리, 음악, 태권도, 교육활동
바우처 서비스가 의료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들이 공평하게 받아야 함
버스무임승차 필요
보청기는 국가 차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음.
복지관 등의 시설 수가 부족함
복지관 이용 시 이용비에 지원이 필요
복지관 이용요금이 비쌌, 이동비용도 비쌌
복지관에 게임이 있으면 좋겠음
복지관에서 무료 점심식사 제공
복지관을 걸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
복지관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음.
복지관이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불편
복지관 이용료 할인
복지담당공무원의태도개선(장애인의 가족을 수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주체로 인식),
양천구청 복지예산의 사용처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열람권 필요,

양천구청 복지담당공무원의 인식재교육이 매우 필요함
복지시설의 확충
복지카드는 교통비만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으면 함(신용카드중복)
집 보유(가치)와 무관하게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확대 필요
독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그에 맞는 자립생활기술훈련과 생활공간 마련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아동들이 비장애인들과의 교류하는 지역사회 필요.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의 이해교육
비장애인의 인식개선, 경제적인 안정, 가족프로그램 마련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 또한 중증의 경우 동반 1인의 교통비 혜택도 필요
사회적으로 당사자주의가 대세인데 아직도 시설이나 복지관은 그에 따른 변화도 없는 것 같음.
콜택시 요금이 저렴했으면 좋겠음. 콜택시 연결이 바로 되지 않아서 아쉬움.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원함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원함
설문조사 하신대로만 실천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지 용지 값 아껴서 장애인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음
성인들을 위한 인지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음. 평생학습이 필요함
성인 후견인제도의 도입 필요
졸업 후 이용기간 제한 없이 복지관 이용, 고등학교 졸업 후 이용시설 절실
소득에 상관없이 장애아동 교육비용에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음.
콜택시가 불편. 서울장애인도 경기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스포츠운동의 지원
시설생활인의 자립생활, 지역거주 지원
치료서비스 이용 시 대기기간이 너무 길,
기관에 대한 정기적 감사와 만족도 조사 필요함(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 정확도를 요함)
자녀들 교육비. 장애자녀들 교육문제를 지원해주는 혜택
실무자들의 불친절함
안전장치, 보장구착용, 손잡이, 문턱 등이 불편함
양천복지관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교육 필요.
미용, 피부마사지등, 해금 가야금 하프 등의 음악프로그램도 진행
어려서 언어치료를 받았지만 비용이 비싸서 오랜 기간을 하지 못해 아쉬움.
언어, 인지치료를 제대로 시킬 수 있는 시설과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기를 바랍.
구립 어린이집이 규율을 너무 중요시하고 선생님들의 아이 보는 시선이나 말투가 의무적, 사무적으로 느껴짐. (구립은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당당함인 듯)

인격적인 교육프로그램
인근에 있는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함.
교사의 태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느껴짐.
사회복지공무원의 장애인교육필요(인권과 상대의 뜻을 잘인지할 수 있도록)
청소년층의 언어치료가 매우 부족함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활동보조가 필수, 현재 규정으로는 생활불가능,
취업하고 싶어도 근로지원이 없으면 유지불가, 양친구 특례가 필요
자립생활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자립생활이념을 토대로 한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함
장애 청소년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복지관에서 조차 경증 장애를 선호하는 것이 문제
장애급수와 무관하게 의료비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음
장애를 가진 가족에서 장애수당이나 국민연금 등의 특별수당을 가산해서라도 아이들을 키우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움 필요
장애복지담당자들의 진심으로 공정한 행사운영, 전년도에 행사참여 후 너무나 실망함.
2009년도 장애인 잔치를 계획한다는 통보가 있다면 구청장님을 찾아뵙고 절대 반대.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살았음. 많은 홍보 필요
장애인 당사자 권익과 인권을 대변하는 단체에 지원 늘려주고
이 같은 곳에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필요
활동보조도우미가 가정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듯이 국가에서 물리치료, 작업치료사들을 보내주어 가정방문하여 한 시간씩 치료에 도움
장애인(지체장애)들이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영화관이나 공연장이 많았으면 함
나름대로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음
장애인도 장애정도에 따라 취업되었으면 좋을 것 같음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살기를 원함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활동보조인 지원이 늘었으면 좋겠음
장애인보장기구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었으면 좋겠음
장애인복지를 위한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편파적
장애인생활비지원요청(기초생활수급자수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나이제한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아동은 60시간 활동보조가능)
장애인 시설이나 공공장소를 많이 만들고 장애인들이 돌아다니기 편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시고 장애인 일자리도 많이 생겼음 하는 게 나의 생각임
장애인을 위한 취업알선이나 상담등, 취업 후에도 사후관리가 제일 필요
취업을 위한 지원이 많아졌으면
장애인 인권 보호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통한 근무시간이 늘어나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센터부족.
재가방문서비스 확대, 장애아를 가정에서 돌보는 서비스, 시각장애인용 주거시설
재활운동실을 지하에서 윗층으로 옮겨야 함
재활치료/작업치료를 원함
중증장애인들에겐 활동보조인이 반드시 필요
저렴한 가격으로 단기, 장기 돌봄 서비스 필요 (부모의 긍정적 사회활동),
아동의 치료비가 비싸서 사설기관도 이용하지 못함(집안에서 방치됨).
치료비로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음. 비장애 형제들의 교육도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음.
적극적인 문화 활동과 선입견에 대한 차별 의식 개선
전동차 서비스/ 지하철 승강기 개선, 시내버스나 고속버스의 할인
전시공연 등의 관람기회 많이 제공
전신마비 장애인은 아파트를 얻을 때 조금 더 큰 평수의 아파트가 필요
정부지원을 차상위 계층에 혜택이 아닌 장애등급별도 연금을 지급
언어치료 의료보험 적용시켜 많은 아이들이 적은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장애가족들이 적은 비용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주거문제개선,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 통합적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사업이 절실함. 양친구 특례가 필요.
지적능력이 가능한 장애아동에게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실용적인 생활영어수업이 이루어졌으면 함.
집 구조 변경, 이동권 확보, 이동할 수 있는 보장구 지원 확대
차량유지비, 가스 값을 다시 지원
청소년프로그램 확대, 스포츠에 대한 시설과 수영장개설, 놀토 프로그램 확대
취업알선이 가장 필요
취업이나 복지관프로그램이 젊은 사람들 위주
탈시설화, 통합화, 주류화에 더한 전향적인 실천, IL확대지원
아동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통합어린이집의 교사교육의 교육과 특별 지원체계 마련
학습프로그램의 지원, 맞벌이부부를 위한 방과 후 교실운영(학교)
도우미제도 확대. 이동보조에 대한 더 많은 지원 필요
장애기준 수당 1년에 한번 합쳐준다면 목돈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음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너무 짧고 장애아들 보다는 몸이 불편한 노인 분들 위주임.
활동보조인 교육 철저 관리 등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 요망

2. 장애유형별 결과

전체 응답자 614명 중에서 미등록한 경우와 중복장애로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면 총 표집수는 549개였다. 그 중에서 지체장애가 200명(32.6%), 뇌병변장애가 140명(22.8%), 지적장애가 65명(10.6%), 자폐성장애가 27명(4.4%), 정신장애가 46명(7.5%), 시각장애가 35명(5.7%), 청각장애가 30명(4.9%), 언어장애가 6명(1.0%), 기타장애가 26명(4.2%)이었다. 언어장애의 경우 회수율이 극히 적었다. 양천장애인복지관 이용자와 대기자를 기준으로 6명에게 1차로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낸 후, 추후 약 100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2차 우편 설문을 시도하였으나 최종 회수된 것은 6개에 불과했다. 언어장애에 대한 표집 사례수가 적어, 장애유형별 결과분석에서는 언어장애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고자 한다.

<표 3-2-42> 장애유형/장애등급/연령별 현황

(n=614)			
	구분	빈도	%
장애유형	지체	200	32.6
	뇌병변	140	22.8
	지적	65	10.6
	자폐성	27	4.4
	정신	46	7.5
	시각	35	5.7
	청각	30	4.9
	언어	6	1.0
	기타	26	4.2
	미등록	2	0.3
	무응답	37	6.0
	계	614	100.0

* 기타 장애에는 간, 간질, 장루·요루,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를 포함시켰다.

1) 지체장애인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양천구 거주 장애인 중 설문에 응답한 지체장애인(총 200명)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응답자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200명의 지체장애자 응답자 중, 본인 응답은 79.5%(159명)였으며, 기타로 배우자, 어머니, 아버지, 자녀, 형제·자매, 손자, 손녀가 응답하였다.

<표 3-2-43> 응답자

(n=200)			
	구분	빈도	퍼센트(%)
응답자	본인	159	79.5
	기타	39	19.5
	무응답	2	1.0
	합계	200	100.0
기타 내용	배우자	5	2.5
	어머니	15	7.5
	아버지	3	1.5
	자·녀	8	4.0
	형제·자매	3	1.5
	손자·녀	2	1.0
	기타	3	1.5
	합계	39	19.5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을 장애 등급 및 연령별로 살펴보면, 장애등급에 있어서는 1급 32.5%(65명), 2급 21.5%(43명), 3급 17.5%(35명), 4급 10.5%(21명), 5급 10.5%(21명), 6급 6.0%(12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 1.5%(5명), 취학아동 4%(7명), 성인 94.5%(188명)로, 주로 성인들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4> 장애등급/연령

(n=200)			
구분	빈도	퍼센트(%)	
장애등급	1급	65	32.5
	2급	43	21.5
	3급	35	17.5
	4급	21	10.5
	5급	21	10.5
	6급	12	6.0
	무응답	3	1.5
	합계	200	100
연령	미취학아동(0세~7세)	5	2.5
	취학아동(8세~19세)	7	3.5
	성인(20세 이상)	188	94
	무응답	0	0.0
	합계	200	100.0

<표 3-2-45> 학력/성별/결혼

(n=200)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학력	미취학	4	2.0	성별	남자	122	61.0
	유치원/어린이집	7	3.5		여자	78	39.0
	초등학교	25	12.5		무응답	0	0.0
	중학교	36	18.0		합계	200	100.0
	결혼	고등학교	62	31.0	기혼	111	55.5
		(전문)대학	38	19.0	미혼	84	42.0
		무학	16	8.0	기타	4	2.0
		기타	6	3.0	무응답	1	0.5
		무응답	6	3.0	합계	200	100.0
		합계	200	100.0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의 학력, 성별, 결혼에 관한 사항으로 학력에 있어서는 미취학 2%(4명), 유치원/어린이집 3.5%(7명), 초등학교 12.5%(25명), 중학교 18%(36명), 고등학교 31%(62명), 대학(전문대학 포함) 19%(38명), 무학 8%(16명)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61%(122명), 여자 39%(78명)로 전체장애의 성별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결혼 유무에 대해서는 기혼 55.5%(111명), 미혼 42%(84명)로 나타났다.

다중응답으로 물은 대상 지체장애인의 동거여부에 대해 배우자 25.9%(83명), 자녀 18.4%(59명), 어머니 15.6%(50명), 아버지 9.3%(30명), 형제 5.6%(18명), 손자녀 4.4%(14명)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기타 내용으로는 '혼자산다'(독거)는 응답이 가장 많아 전체 13.2%(44명)를 차지하였다.

<표 3-2-46> 동거인

(n=321)			
구분	빈도	퍼센트(%)	
동거인	배우자	83	25.9
	어머니	50	15.6
	아버지	30	9.3
	할아버지	1	0.3
	할머니	6	1.9
	형제	18	5.6
	자매	8	2.5
	자녀	59	18.4
	손자녀	14	4.4
	친척	3	1.2
	기타	52	14.3
	무응답	2	0.6
합계	321	100.0	
기타내용	독거	44	13.2
	기타	8	1.1
	합계	52	14.3

* 다중응답으로 전체 지체장애인의 수보다 응답자의 수가 많다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의 주택소유에 관한 사항으로 자기소유 29%(58명), 월세 26.5%(53명), 전세 25.5%(51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은 임대 아파트 및 친척집에서 거주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3-2-47> 주택소유 형태

		(n=200)	
구 분		빈 도	퍼센트(%)
주택소유 형태	자기소유	58	29.0
	전세	51	25.5
	월세	53	26.5
	기타	36	18.0
	무응답	2	1.0
합계		200	100.0
기타내용	임대	22	11.0
	친척	8	4.0
	기타	1	0.5
	무응답	5	2.5
	합계	36	18.0

<표 3-2-48> 월평균 수입/지출

		(n=200)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 분		빈 도	퍼센트(%)
월 평균 수입	1원~40만원	49	24.5	월 평균 지출	1원~40만원	30	15.0
	41만원~80만원	51	25.5		41만원~80만원	50	25.0
	81만원~120만원	26	13.0		81만원~120만원	35	17.5
	121만원~200만원	24	12.0		121만원~200만원	32	16.0
	200만원 이상	31	15.5		200만원 이상	30	15.0
	무응답	19	9.5		무응답	23	11
	합계	200	100.0		합계	200	100.0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의 월평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월평균 수입에 대해서는 41만원~80만원이 25.5%(51명), 40만원 이하는 24.5%(49명), 200만원 이상이 15.5%(31명), 81만원~120만원이 13%(26명), 121만원~200만원이 12%(24명)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지출에 대해서는 41만원~80만원이 25%(50명), 81만원~120만원은 17.5%(35명), 121만원~200만원이 16%(32명), 200만원 이상과 40만원 이하는 각각 15%(30명) 순이었으며 무응답은 11%로 나타났다. 전체장애인에 비해 지체장애인의 63%가 120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이었으며, 수입대비 지출의 규모가 더 큰 경향을 볼 때 직업생활 지원, 생계비 지

원, 각종 수당의 추가 지원 등의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응답대상 지체장애인의 지출 순위에 관한 사항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다시 가중치의 합계로 표시하였다. 가중치의 합계로 분석된 결과를 보면 식료품비 26.2%(242개), 주거광열비 16.5%(152개), 의료비 15.4%(142개), 교육비 10.4%(96개), 교통비/차량유지비 8.9%(82개), 빚갚는 비용 7.9%(73개), 사회활동 및 경조사비 7.5%(69개), 여가문화생활비 3%(2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49> 지출순위

		(n=200)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가중치 합계		
	빈도	퍼센트 (%)	빈도	퍼센트 (%)	빈도	퍼센트 (%)	빈도	퍼센트 (%)	빈도	퍼센트 (%)	
식료품비	43	21.5	43	21.5	27	13.5	113	25.0	242	26.2	
교육비	20	10.0	16	8.0	4	2.0	40	8.8	96	10.4	
의료비	23	11.5	26	13.0	21	10.5	70	15.5	142	15.4	
주거광열비	27	13.5	23	11.5	25	12.5	75	16.6	152	16.5	
교통비/차량유지비	8	4.0	18	9.0	22	11.0	48	10.6	82	8.9	
사회활동 및 경조사비	12	6.0	7	3.5	19	9.5	38	8.4	69	7.5	
여가문화생활비	1	0.5	4	2.0	10	5.0	15	3.3	21	2.3	
빚 갚는 비용	16	8.0	7	3.5	11	5.5	34	7.5	73	7.9	
재테크 및 금융	7	3.5	2	1.0	0	0.0	9	2.0	25	2.7	
기타	5	2.5	1	0.5	4	2.0	10	2.2	21	2.3	
무응답	38	19.0	53	26.5	57	28.5					
합계	200	100.0	200	100.0	200	100.0	452	100.0	923	100.0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비수급) 37%(74명), 기초생활수급자 34%(68명), 차상위계층 10%(20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50> 수급자 현황

(n=200)			
구 분	빈 도	퍼센트(%)	
수급자 현황	기초생활수급자	68	34.0
	차상위 계층	20	10.0
	그 외(일반)	74	37.0
	잘 모름	22	11.0
	기타	7	3.5
	무응답	9	4.5
	합계	200	100.0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의 가족과의 관계 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매우 좋다'가 36.5%(73명), '조금 좋다'가 31%(62명), '조금 나쁘다'가 12%(24명), '매우 나쁘다'가 6%(12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는 67.5%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1> 가족관계 정도

(n=200)			
구 분	빈 도	퍼센트(%)	
가족관계 정도	매우 나쁘다	12	6.0
	조금 나쁘다	24	12.0
	조금 좋다	62	31.0
	매우 좋다	73	36.5
	무응답	29	14.5
	합계	200	100.0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의 연령대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남의 도움 필요 29%(58명), 대부분 일상생활 가능 19%(38명), 모든 일상생활 가능 17%(34명), 거의 남의 도움 필요 15%(30명),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13%(26명) 순이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남의 도움 필요로 하는 경우가 80.0%(4명)로 도움의 필요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취학 아동의 경우도 유사하여 남의 도움 필요가 85.7%(6명)로 거의 대부분의 취학 아동의 경우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일부 및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가 41.8%(78명)로 응답자의 기능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학령기, 미취학, 성인기 순으로 도움이 많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자의 개인적인 상황은 추후 서비스 내용 및 프로그램 기획 시 적극 반영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진다.

<표 3-2-52> 연령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n=200)			
구 분		빈 도	퍼센트(%)
전체	모든 일상생활 가능	34	17.0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38	19.0
	일부 남의 도움 필요	58	29.0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26	13.0
	거의 남의 도움 필요	30	15.0
	무응답	14	7.0
	합계	200	100.0
	미취학아동 (0세~7세)	모든 일상생활 가능	0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1	20.0
일부 남의 도움 필요		1	20.0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2	40.0
거의 남의 도움 필요		1	20.0
무응답		0	0.0
합계		5	100.0
취학아동 (8세~19세)	모든 일상생활 가능	0	0.0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0	0.0
	일부 남의 도움 필요	1	14.3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2	28.6
	거의 남의 도움 필요	3	42.9
	무응답	1	14.3
	합계	7	100.0
성인 (20세 이상)	모든 일상생활 가능	34	18.1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37	19.7
	일부 남의 도움 필요	56	29.8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22	11.7
	거의 남의 도움 필요	26	13.8
	무응답	13	6.9
	합계	188	100.0

<표 3-2-53> 주로 도와주는 사람

		(n=114)	
구 분	빈 도	퍼센트(%)	
도와주는 사람	배우자	26	22.8
	부모	22	19.3
	조부모	0	0.0
	자녀	7	6.1
	이웃	3	2.6
	친척	1	0.9
	유료가정봉사원	1	0.9
	유료간병인	1	0.9
	유료 활동보조인	21	18.4
	무료가정봉사원	5	4.4
	무료 간병인	3	2.6
	무료 활동보조인	3	2.6
	기타	7	6.1
	무응답	14	12.3
	합계	114	100.0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을 주로 도와주는 사람에 관한 사항으로 배우자 22.8%(26명), 부모 19.3%(22명), 유료활동보조인 18.4%(21명), 자녀 6.1%(7명), 무료가정봉사원 2.6%(5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료간병인, 무료 활동보조인, 이웃 등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주로 돕는 사람 중 가족이 48.2%로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의 도움충분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편이다' 52.6%(60명), '매우 부족하다' 28.9%(33명), '충분한 편이다' 14.9%(17명), '매우 충분한 편이다' 1.8%(2명)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75%가 '부족하다'고 응답

하였고, 취학 아동의 경우 매우 부족 및 부족한 편이 83.4%로 나타났으며, 성인의 경우 매우 부족과 부족한 편이 81.7%로 전반적으로 도움이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향후 복지관의 프로그램 기획에서 관련 프로그램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표 3-2-54> 도움충분정도

		(n=114)	
구 분	빈 도	퍼센트(%)	
전체	매우 부족하다	33	28.9
	부족한 편이다	60	52.6
	충분한 편이다	17	14.9
	매우 충분한 편이다	2	1.8
	무응답	2	1.8
	합계	114	100.0
미취학아동 (0세~7세)	매우 부족하다	1	25.0
	부족한 편이다	2	50.0
	충분한 편이다	1	25.0
	매우 충분한 편이다	0	0.0
	합계	4	100.0
취학아동 (8세~19세)	매우 부족하다	1	16.7
	부족한 편이다	4	66.7
	충분한 편이다	1	16.7
	매우 충분한 편이다	0	0.0
	합계	6	100.0
성인 (20세 이상)	매우 부족하다	31	29.8
	부족한 편이다	54	51.9
	충분한 편이다	15	14.4
	매우 충분한 편이다	2	1.9
	무응답	2	1.9
	합계	104	100.0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중증이 31.5%(63명), 완전자립 30.5%(61명), 경증 18.5%(37명)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중증이 60%(3명), 경증이 20%(1명)로 나타났으며, 취학아동의 경우 중증 85.7%(6명), 완전자립 14.3%(1명)이었고, 성인은 완전자립 31.9%(60명), 중증 28.7%(54명), 경증 19.1%(36명)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결과는 일상생활능력이 있어 완전자립보다는 자립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2-55>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n=200)

구분	빈도	퍼센트(%)	
전체	완전 자립(이상없음)	61	30.5
	정도 약함(경증)	37	18.5
	정도 심함(중증)	63	31.5
	무응답	39	19.5
	합계	200	100.0
미취학아동 (0세~7세)	완전 자립(이상없음)	0	0.0
	정도 약함(경증)	1	20.0
	정도 심함(중증)	3	60.0
	무응답	1	20.0
	합계	5	100.0
취학아동 (8세~19세)	완전 자립(이상없음)	1	14.3
	정도 약함(경증)	0	0.0
	정도 심함(중증)	6	85.7
	무응답	0	0.0
	합계	7	100.0
성인 (20세 이상)	완전 자립(이상없음)	60	31.9
	정도 약함(경증)	36	19.1
	정도 심함(중증)	54	28.7
	무응답	38	20.2
	합계	188	100.0

(2) 기관이용 현황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정도, 이용 경험 여부, 이용 희망 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서비스 제공기관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92.8%(142명), 이동지원서비스 센터 81.9%(119명), 장애인정보화 교육기관 73.2%(109명), 장애인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68.3%(99명), 재활병의원 65.3%(96명),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65.1%(99명) 순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복지관 70.3%(104명), 이동지원서비스센터 45.7%(63명), 재활병의원 36.4%(52명),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35%(49명), 자립지원센터 31.4%(45명) 순으로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희망여부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70.8%(97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63.6%(82명), 재활병의원 62.9%(83명), 장애인전용체육관 62.4%(81명),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60%(78명), 장애인고용촉진공단 59.9%(83명),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56%(76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으로는 지역의 복지관 및 인접지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경험을 기술한 것이 있었다.

종합해 보면 인지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이용률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의료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장애인복지관, 재활병의원, 장애인체육관 등에 대한 이용유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업 및 자립과 관련된 기관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자립지원센터,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등에 대한 이용유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6> 기관 이용 현황 (n=200)

기관명	인지여부		이용경험여부		이용희망여부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희망함 (%)	희망안함 (%)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99(68.3)	46(31.7)	16(11.9)	119(88.1)	29(23.8)	93(76.2)
특수교육 지원센터	52(36.1)	92(63.9)	7(5.4)	123(94.6)	36(28.7)	87(71.3)
유아교육기관	79(59.4)	54(40.6)	15(12.3)	107(87.7)	23(20.5)	89(79.5)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109(73.2)	40(26.8)	49(35.0)	92(65.0)	76(56.0)	59(44.0)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62(42.2)	85(57.8)	26(19.1)	111(80.9)	79(59.4)	54(40.6)
장애인복지관	142(92.8)	11(7.2)	104(70.3)	44(29.7)	97(70.8)	40(29.2)

기관명	인지여부		이용경험여부		이용희망여부	
	안다 (%)	모른다 (%)	있다 (%)	없다 (%)	희망함 (%)	희망안함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99(65.1)	53(34.9)	45(31.4)	96(68.6)	78(60.0)	52(40.0)
직업재활시설	81(56.7)	61(43.3)	13(10.1)	116(89.9)	55(43.3)	72(56.7)
장애인고용촉진공단	94(61.4)	59(38.6)	41(29.7)	97(70.3)	83(59.9)	55(40.1)
장애인생활시설	89(61.8)	55(38.2)	20(14.8)	115(85.2)	53(41.4)	76(58.6)
중증장애인요양시설	72(50.0)	72(50.0)	6(4.0)	125(95.4)	32(26.4)	89(44.5)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49(34.8)	92(65.2)	0(0.0)	125(100.0)	22(18.8)	95(81.2)
그룹홈(공동생활가정)	60(42.6)	81(57.4)	4(3.1)	123(96.9)	38(32.8)	79(67.2)
주간·단기 보호시설	66(46.5)	76(53.5)	5(3.9)	123(96.1)	33(27.6)	84(42.0)
장애인전용체육관	67(46.2)	78(53.8)	26(19.1)	110(80.9)	81(62.4)	51(38.6)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보건소)	77(52.4)	70(47.6)	40(29.0)	98(71.0)	82(63.6)	48(36.4)
재활 병·의원	96(65.3)	51(34.7)	52(36.4)	91(63.6)	83(62.9)	49(37.1)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81(55.5)	65(44.5)	19(14.6)	111(85.4)	64(52.0)	59(48.0)
이동지원서비스센터	119(81.9)	26(18.1)	63(45.7)	77(54.3)	92(69.5)	39(30.5)
심부름센터	61(41.8)	85(58.2)	8(6.8)	124(93.2)	66(50.4)	63(49.6)
교통안전공단	48(33.3)	96(66.7)	9(7.7)	121(92.3)	73(55.8)	56(44.2)
사회복지시설	43(30.5)	98(69.5)	4(3.8)	127(96.2)	25(19.7)	97(80.3)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41(30.1)	95(69.9)	0(0.0)	124(100.0)	20(16.9)	98(83.1)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50(36.5)	87(63.5)	0(0.0)	125(100.0)	21(17.6)	98(82.4)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48(34.5)	91(65.5)	3(2.5)	120(97.5)	22(18.8)	95(81.2)

(3) 연령별 서비스 이용 현황

① 미취학 아동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 중 미취학 아동(0세-7세)의 서비스 미충족률에 관한 사항이다. 전체 숫자가 5명밖에 되지 않아 통계적 의미는 크게 부족하며, 다만 욕구의 흐름과 경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의미를 두었다. 미취학 아동기에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미충족률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음악치료, 동물매개치료, 주간보호, 단기보호,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휠체어보장구 제작, 청력검사 및 훈련 등이 100%였고, 심리치료, 작업치료, 진로상담, 건강관리, 여가활동, 체육활동, 체력단련실 이용 등이 80%였으며,

장애이해교육, 물리치료, 활동보조서비스 등은 75.5%, 조기특수교육, 부모교육, 미술치료 등은 60%로 나타났다.

<표 3-2-57> 미취학아동기(0세~7세) 서비스 이용 현황

사업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
	필요 (%)	불필요 (%)	이용 (%)	비이용 (%)	
조기특수교육	5(100.0)	0(0.0)	2(40.0)	3(60.0)	60.0
부모교육(자녀 양육교육)	5(100.0)	0(0.0)	2(40.0)	3(60.0)	60.0
장애이해교육(부모/형제)	4(80.0)	1(20.0)	1(25.5)	3(75.5)	75.5
물리치료	4(80.0)	1(20.0)	1(25.5)	3(75.5)	75.5
언어치료(의사소통훈련)	5(100.0)	0(0.0)	3(60.0)	2(40.0)	40.0
심리치료(놀이치료)	5(100.0)	0(0.0)	1(20.0)	4(80.0)	80.0
작업치료	5(100.0)	0(0.0)	1(20.0)	4(80.0)	80.0
음악치료	5(100.0)	0(0.0)	0(0.0)	5(100.0)	100.0
미술치료	5(100.0)	0(0.0)	2(40.0)	3(60.0)	60.0
동물매개치료	4(100.0)	0(0.0)	0(0.0)	4(100.0)	100.0
장애전담 어린이집/통합 어린이 집	5(100.0)	0(0.0)	5(100.0)	0(0.0)	0.0
주간보호	4(100.0)	0(0.0)	0(0.0)	4(100.0)	100.0
단기보호	4(100.0)	0(0.0)	0(0.0)	4(100.0)	100.0
진로상담(진학상담 등)	5(100.0)	0(0.0)	1(20.0)	4(80.0)	80.0
건강관리	5(100.0)	0(0.0)	1(20.0)	4(80.0)	80.0
활동보조서비스	4(80.0)	1(20.0)	1(25.5)	3(75.5)	75.5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4(80.0)	1(20.0)	0(0.0)	4(100.0)	100.0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3(60.0)	2(40.0)	0(0.0)	3(100.0)	100.0
여가활동	5(100.0)	0(0.0)	1(20.0)	4(80.0)	80.0
체육활동	5(100.0)	0(0.0)	1(20.0)	4(80.0)	80.0
체력단련실 등 장소 이용	5(100.0)	0(0.0)	1(20.0)	4(80.0)	80.0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3(60.0)	2(40.0)	0(0.0)	3(100.0)	100.0
청력검사/훈련	3(60.0)	2(40.0)	0(0.0)	3(100.0)	100.0

② 취학아동 및 청소년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 중 취학아동 및 청소년(8세-19세)의 서비스 미충족률에 관한 사항이다. 이 역시 전체 숫자가 7명밖에 되지 않아 통계적 의미는 크게 부족하며, 다만 욕구의 흐름과 경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의미를 두었다. 취학아동 및 청소년기에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미충족률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부모교육, 인권교육, 학습지원 활동, 일상생활훈련, 언어치료, 심리치료, 미술치료, 동물매개, 주간보호, 단기보호, 장기시설보호, 그룹홈, 진로상담, 건강관리, 성교육,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문화활동, 청력검사 훈련 100%, 정보화교육, 작업치료 80.5%, 휠체어대여/보장구 제작 66.7%, 활동보조서비스, 테마캠프 60%, 음악치료 50%, 방과 후 학교 40%, 특수학교, 특수학급 20%로 나타났다.

<표 3-2-58> 취학아동 및 청소년기(8세~19세) 서비스 이용 욕구

(n=7)

사 업 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
	필요 (%)	불필요 (%)	이용 (%)	비이용 (%)	
특수학교	5(83.0)	1(17.0)	4(80.0)	1(20.0)	20.0
특수학급	5(83.0)	1(17.0)	4(80.0)	1(20.0)	20.0
학교 방과 후 활동	5(100.0)	0(0.0)	3(60.0)	2(40.0)	40.0
정보화 교육	5(100.0)	0(0.0)	1(20.0)	4(80.0)	80.0
부모교육(자녀 양육교육)	4(100.0)	0(0.0)	0(0.0)	4(100.0)	100.0
인권 교육	3(75.0)	1(25.0)	0(0.0)	3(100.0)	100.0
학습지원 활동	5(100.0)	0(0.0)	0(0.0)	5(100.0)	100.0
일상생활훈련	5(100.0)	0(0.0)	0(0.0)	5(100.0)	100.0
물리치료	5(100.0)	0(0.0)	1(20.0)	4(80.0)	80.0
언어치료	3(75.0)	1(25.0)	0(0.0)	3(100.0)	100.0
심리치료(놀이치료)	4(100.0)	0(0.0)	0(0.0)	4(100.0)	100.0
작업치료	5(100.0)	0(0.0)	1(20.0)	4(80.0)	80.0
음악치료	4(100.0)	0(0.0)	2(50.0)	2(50.0)	50.0
미술치료	5(100.0)	0(0.0)	0(0.0)	5(100.0)	100.0
동물매개치료	2(50.0)	2(50.0)	0(0.0)	2(100.0)	100.0
주간보호	5(100.0)	0(0.0)	0(0.0)	5(100.0)	100.0
단기보호	4(100.0)	0(0.0)	0(0.0)	4(100.0)	100.0
그룹홈	4(80.0)	1(20.0)	0(0.0)	4(100.0)	100.0

사 업 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
	필요 (%)	불필요 (%)	이용 (%)	비이용 (%)	
장기시설보호	3(60.0)	2(40.0)	0(0.0)	3(100.0)	100.0
진로상담	3(75.0)	1(25.0)	0(0.0)	3(100.0)	100.0
건강관리	6(100.0)	0(0.0)	0(0.0)	6(100.0)	100.0
성교육/성상담	5(100.0)	0(0.0)	0(0.0)	5(100.0)	100.0
활동보조서비스	5(100.0)	0(0.0)	2(40.0)	3(60.0)	60.0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3(75.0)	1(25.0)	0(0.0)	3(100.0)	100.0
테마캠프	5(100.0)	0(0.0)	2(40.0)	3(60.0)	60.0
여가활동	5(100.0)	0(0.0)	1(20.0)	4(80.0)	80.0
체육활동	5(100.0)	0(0.0)	1(20.0)	4(80.0)	80.0
문화활동	4(100.0)	0(0.0)	0(0.0)	4(100.0)	100.0
체력단련실 등 장소 이용	5(100.0)	0(0.0)	1(20.0)	4(80.0)	80.0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3(60.0)	2(40.0)	1(33.3)	2(66.7)	66.7
청력검사/훈련	2(50.0)	2(50.0)	0(0.0)	2(100.0)	100.0

③ 성인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 중 성인(20세 이상)의 서비스 미충족률에 관한 사항이다. 성인기에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미충족률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미충족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충족률 순으로 정리해 보면 이동목욕서비스 97.8%, 그룹홈 96.6%, 주간보호 96.6%, 취업 후 지원, 취업준비훈련 95%,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94.6%, 언어치료 94.4%, 단기보호 93.1%, 직업능력평가 90.5%, 노인도우미 서비스 90.4%, 결혼상담 90.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필요한 서비스 내용에는 교육서비스, 김치 저렴하게 구입, 빨래서비스, 수중치료, 시강도우미, 시설생활인지원, 응급 콜서비스, 의료비지원, 의료기기 무료대여, 이불세탁, 체험 홈, 한글교육, 가사·간병서비스, 이사서비스, 스쿠버다이빙훈련, 리프트 방식의 침대, 주거지원, 요리강습(자격증준비), 장애인 창업교육, 하모니카/기타/섹소폰 연주 강습, 서서밀고 가는 보조기구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표 3-2-59> 성인기(20세 이상) 서비스 이용 현황

(n=188)

사 업 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
	필요 (%)	불필요 (%)	이용 (%)	비이용 (%)	
인문학 교육	66(64.1)	37(35.9)	12(18.2)	54(81.8)	81.8
인권 교육	84(80.0)	21(20.0)	24(28.6)	60(71.4)	71.4
정보화교육	87(76.3)	27(23.7)	22(25.3)	65(74.7)	74.7
일상생활훈련	55(53.9)	47(46.1)	18(32.7)	37(67.3)	67.3
직업상담	69(64.5)	38(35.5)	9(13.0)	60(87.0)	87.0
직업능력 평가	63(61.2)	40(38.8)	6(9.5)	57(90.5)	90.5
취업 준비 훈련	60(57.7)	44(42.3)	3(5.0)	57(95.0)	95.0
보호 작업	43(43.4)	56(56.6)	5(11.6)	38(88.4)	88.4
취업 후 지원	64(62.1)	39(37.9)	3(4.7)	61(95.3)	95.3
취업알선	65(60.7)	42(39.3)	8(12.3)	57(87.7)	87.7
물리치료	81(69.2)	36(30.8)	19(23.5)	62(76.5)	76.5
언어치료(의사소통훈련)	36(34.6)	68(65.4)	2(5.6)	34(94.4)	94.4
심리치료(원예치료/댄스치료/드라마치료)	39(37.9)	64(65.1)	5(12.8)	34(87.2)	87.2
작업치료	36(36.4)	63(63.6)	7(19.4)	29(80.6)	80.6
주간보호	29(29.6)	69(70.4)	1(3.4)	28(96.6)	96.6
단기보호	29(29.3)	70(70.7)	2(6.9)	27(93.1)	93.1
그룹홈	29(29.9)	68(70.1)	1(3.4)	28(96.6)	96.6
결혼상담	41(41.8)	57(58.2)	4(9.8)	37(90.2)	90.2
성교육/성상담	49(48.0)	53(52.0)	5(10.2)	44(89.8)	89.8
활동보조서비스	81(75.0)	27(25.0)	39(48.1)	42(51.9)	51.9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73(68.9)	33(31.1)	11(15.1)	62(84.9)	84.9
노인 돌봄 서비스	52(51.0)	50(49.0)	5(9.6)	47(90.4)	90.4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	37(37.4)	62(62.6)	2(5.4)	35(94.6)	94.6
이동목욕서비스	45(45.5)	54(54.5)	1(2.2)	44(97.8)	97.8
이·미용서비스	70(64.8)	38(35.2)	23(32.9)	47(67.1)	67.1
여가활동	79(74.5)	27(25.5)	30(38.0)	49(62.0)	62.0
체육활동	72(66.7)	36(33.3)	17(23.6)	55(76.4)	76.4
문화활동	61(60.4)	40(39.6)	8(13.1)	53(86.9)	86.9
체력단련실 등 장소이용	80(70.8)	33(29.2)	26(32.5)	54(67.5)	67.5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83(74.8)	28(25.2)	29(34.9)	54(65.1)	65.1

(4) 기타 서비스 욕구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의 취업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미취업이 51.6%(97명), 취업이 23.9%(45명)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미취업이 50%이상으로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표 3-2-60> 현재 취업여부

(n=188)

구 분	빈 도	퍼센트(%)	
현재취업	취업	45	23.9
	미취업	97	51.6
	무응답	46	24.5
	합계	188	100.0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의 취업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 24.4%(11명),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11.1%(5명), 자영업 8.9%(4명), 농업 등 2.2%(1명)로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으로는 건축분야 관리직, 공공근로, 노점상, 미싱사, 사회단체활동, 사회복지, 사회사업, 아르바이트, 연극, 예술(미술), 요양보호사, 자립생활센터, 장애단체, 장애인복지현장, 취업정보실, 청소, 활동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3-2-61> 취업 분야

(n=45)

구 분	빈 도	퍼센트(%)	
분야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원예업	1	2.2
	자영업	4	8.9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5	11.1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	11	24.4
	기타	22	48.9
	무응답	2	4.4
	합계	45	100.0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의 취업분야에서의 현재 직무에 대한 사항으로 건설부분 관리, 공공근로, 교회사역, 권익옹호활동, 기획홍보, 단순작업, 대표, 동료상담, 부동산컨설팅, 분재원 보조, 사무관리, 사무기획, 사무업무, 사무직, 사무직 중간관리, 사회복지, 상담, 서양화가, 센터 활동가, 소장, 식당보조, 업소관리, 연극배우, 오피스텔경비, 자립생활, 자립생활지원팀, 잡부, 전산지원, 청소, 취업정보실청소, 프로그래머, 홀서빙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2> 현재 직무

(n=45)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 분	빈 도	퍼센트(%)
건설부분관리	1	2.3	서양화가	1	2.3
공공근로	1	2.3	센터 활동가	1	2.3
교회사역	1	2.3	소장	1	2.3
권익옹호활동	1	2.3	식당보조	1	2.3
기획홍보	1	2.3	업소관리	1	2.3
단순작업	1	2.3	없음	1	2.3
대표	2	4.6	연극배우	1	2.3
동료상담	1	2.3	오피스텔경비	1	2.3
부동산컨설팅	1	2.3	자립생활	1	2.3
분재원보조	1	2.3	자립생활지원팀	1	2.3
사무관리	1	2.3	잡부	1	2.3
사무기획	1	2.3	전산지원	1	2.3
사무업무	2	4.6	청소	1	2.3
사무직	2	4.6	취업정보실청소	1	2.3
사무직 중간관리	1	2.3	프로그래머	1	2.3
사회복지	2	4.6	홀서빙	1	2.3
상담	1	2.3	무응답	7	15.9
합계				45	100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의 취업현장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2년~5년 24.4%(11명), 5년 이상이 20%(9명), 6개월 미만인 15.6%(7명), 1년~2년이 11.1%(5명)로 나타났다.

<표 3-2-63> 근무기간

(n=45)			
구 분	빈 도	퍼센트(%)	
근무기간	6개월 미만	7	15.6
	6개월 ~ 1년	4	8.9
	1년 ~ 2년	5	11.1
	2년 ~ 5년	11	24.4
	5년 이상	9	20.0
	무응답	9	20.0
	합계	45	100.0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의 취업현장에서의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50%(94명), '고려하고 있다' 29.3%(55명)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천구 거주 지체장애인들이 대체적으로 현 직장에 대해 만족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3-2-64>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n=188)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고려	55	29.3
	비고려	94	50.0
	무응답	39	20.7
	합계	188	100.0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의 구직과 이직 희망 업종에 관한 사항으로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21.8%(12명), 자영업·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가 각각 16.4%(9명), 농업 등

1.8%(1명)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1차 산업보다는 2차 내지 3차 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무기술직 희망자의 경우, 당사자가 전문자격증 내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취업처를 찾지 못하고 상황으로 보인다. 기타 응답에는 가로 판매대, 고객 지원서비스상담, 그림, 법조계, 사무보조, 수선, 작품 활동, 장애인 관련직, 주차관리인, 중증장애인센터, 웹디자인 등으로 응답했다. 향후 장애인들의 희망일자리를 고려한 직업준비 및 취업처 개발, 사후관리 등의 세부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65> 구직과 이직 희망 업종

		(n=53)	
구 분		빈 도	퍼센트(%)
희망일자리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원예업	1	1.8
	자영업	9	16.4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12	21.8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	9	16.4
	기타	19	34.5
	무응답	5	9.1
	합계	55	100.0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의 희망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100만원~149만원으로 응답한 경우가 41.8%(23명), 50만원~100만원의 응답 비율은 18.2%(10명)이었다. 이외에도 150만원~199만원과 200만원 이상이 각각 12.7%(7명), 50만원 미만 5.5%(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66> 희망급여

		(n=55)	
구 분		빈 도	퍼센트(%)
희망급여	50만원 미만	3	5.5
	50만원~100만원	10	18.2
	100만원~150만원	23	41.8
	150만원~200만원	7	12.7
	200만원 이상	7	12.7
	무응답	5	9.1
	합계	53	100.0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의 직업생활과 관련하여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는, 장애 때문에 45.7%(43명), 일자리가 없어서 12.8%(12명),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가 각각 2.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장애 때문이라고 하는 응답이 절반에 이른다는 것이다. 기타의견으로는 나이가 많아서(14명), 복잡한 활동보조시간 때문에, 성직자의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장애와 나이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현 직장에 만족으로 나타났는데 나이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활동보조 시간 때문이라는 제도적 문제 제기 부분과 개인적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을 검토해 보면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직장생활 지원을 위한 이동 및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표 3-2-67> 구직활동 않는 이유

		(n=94)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직활동 않는 이유	장애 때문에	43	45.7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12	12.8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2	2.1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2	2.1
	기타	28	29.8
	무응답	7	7.4
	합계	94	100.0
기타내용	나이가 많아서	14	14.9
	현 직장에 만족	9	9.6
	기타	5	5.3
	합계	28	29.8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인지하는 경로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기관 22%(60개), 이웃 및 친지 20.4%(56개), 방송 및 언론매체 16.4%(44개), 인쇄매체(전단지 등) 11.4%(31개), 공무원 11.0%(30개)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68> 서비스 인지경로

		(n=200)	
구 분		빈 도	퍼센트(%)
서비스 인지경로	인쇄매체(전단지 등)	31	11.4
	이웃 및 친지	56	20.4
	방송 및 언론매체	44	16.3
	공무원	30	11.0
	사회복지기관	60	22.0
	기타	14	5.9
	무응답	35	13.0
	합계	270	100
기타 내용	장애인자립생활센터	7	2.95
	기타	7	2.95
	합계	14	5.9

<표 3-2-69> 서비스 선택기준

구 분	(n=200)									
	1순위		2순위		3순위		합산 합계		가중합산 합계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이동거리	64	32.0	18	9.0	17	8.5	99	25.8	245	31.3
시설규모	5	2.5	12	6.0	15	7.5	32	8.4	54	6.9
이용료	14	7.0	26	13.0	15	7.5	55	14.4	109	13.9
인지도	5	2.5	3	1.5	5	2.5	13	3.4	26	3.3
이용가능 기간	5	2.5	18	9.0	21	10.5	44	11.5	72	9.2
프로그램의 전문성	11	5.5	24	12.0	24	12.0	59	15.4	105	13.4
서비스 내용	29	14.5	23	11.5	22	11.0	74	19.3	155	19.8
기타	4	2.0	2	1.0	1	0.5	7	1.8	17	2.2
무응답	63	31.5	74	37.0	80	40.0				
합계	200	100.0	200	100.0	200	100.0	383	100.0	783	100.0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가중치 합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동거리 31.3%(245개), 서비스 내용 19.8%(155개), 이용료 13.9%(109개), 프로그램 전문성 13.4%(105개), 시설 이용기간 9.2%(72개), 시설규모 6.9%(54개), 인지도 3.3%(26개)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당사자 의견 존중, 소

비자주권응호, 장애인 참여의 폭, 자기선택권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전체장애인의 응답과 비교해 보면, 이동거리를 선택한 비율이 약 10%(31.3 : 21.8) 높으며, 서비스 내용도 8%(19.8 : 11.7) 정도 높게 나타났다. 지체장애인에 있어 '이동거리'와 '서비스 내용'이 중요한 서비스 선택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응답에서 볼 수 있듯이 당사자들이 자기선택 및 참여에 대한 인식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70> 연령별 필요한 서비스

		(n=200)	
구 분		빈 도	퍼센트(%)
전체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39	19.5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33	16.5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 기회확대	14	7.0
	(역사/생태 등)테마관광 기회확대	15	7.5
	기타	30	15.0
	무응답	69	34.5
	합계	200	100.0
	미취학 아동 (0세~7세)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1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4	80.0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기회 확대		0	0.0
(역사/생태 등)테마관광 기회 확대		0	0.0
기타		0	0.0
무응답		0	0.0
합계		5	100.0
취학 아동 (0세~19세)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1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2	28.6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기회 확대	1	14.3
	(역사/생태 등)테마관광기회 확대	0	0.0
	기타	1	14.3
	무응답	2	28.6
	합계	7	100
	성인 (20세 이상)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37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27	14.4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기회 확대		13	6.9
(역사/생태 등)테마관광기회 확대		15	8.0
기타		29	15.4
무응답		67	35.6
합계		188	100.0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의 연령대별 필요한 서비스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살펴 보면 방문기회(공연장, 전시장 등) 19.5%(39명), 학습기회(음악/미술 등) 확대 16.5%(33명), 테마관광기회 확대 7.5%(15명), 동아리활동기회 확대 7.0%(14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사항으로 여가와 교육 및 치료, 자립생활, 편의시설에 관한 응답이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게임, 동료상담, 문학동아리, 한글 익히기, 방문, 물리치료, 체력단련실, 생계 유지(취업),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자립생활안정지원, IL센터, 활동보조 시간 확대, 활동보조서비스, 활동보조인 확대, 전동스쿠터, 지역사회 편의시설 확대, 휠체어 신청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교육을 받을 연령대인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는 학습기회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성인의 경우 방문기회의 확대에 대한 욕구가 더 높았다. 이런 경향은 전체 장애인의 경향과 비교해 볼 때도 유사하다.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의 자택자원봉사활동 동의 및 반대이유에 관한 사항으로 반대 39.5%(79명), 동의 35.0%(70명)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는 당사자의 일상생활 기능 등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없다'는 응답이 38.0%(30명), '자원봉사자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1.4%(9명), '활동보조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8.8%(7명), '돌볼 가족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6.4%(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71> 자택 자원봉사활동 동의 여부/반대이유

		(n=200)	
구 분		빈 도	퍼센트(%)
자택 자원 봉사 활동	동의	70	35.0
	비동의	79	39.5
	무응답	51	25.5
	합계	200	100.0
반대 이유	가족이 돌볼 수 있다.	5	6.4
	도움이 필요 없다.	30	38.0
	자원봉사자가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	11	14.0
	자원봉사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	9	11.4
	자원봉사보다 유급봉사자(활동보조인 등)가 필요하다.	7	8.8
	기타	3	3.7
	무응답	14	17.7
	합계	79	100

향후 양천구의 자원봉사자 관련 사업추진 시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자원봉사 이용자 중심의 봉사활동 계획, 교육, 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자원봉사측면과 함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이 생각하는 인식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비장애 통합 프로그램 운영 25.5%(51명), 홍보 18.5%(37명), 인식개선 교육 17%(34명), 장애인의 지역 사회행사 참여 11.5%(23명)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양천구 및 장애인복지관 사업에 있어서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 마련, 지역의 언론매체와의 협조를 통한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2-72> 인식개선방안

		(n=200)	
구 분		빈 도	퍼센트(%)
인식 개선 방안	홍보(캠페인,방송등)	37	18.5
	인식개선 교육	34	17.0
	장애인의 지역행사참여	23	11.5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 운영	51	25.5
	기타	6	3.0
	무응답	49	24.5
합계		200	100.0

<표 3-2-73> 할인혜택 분야

		(n=200)	
구 분		빈 도	퍼센트(%)
할인혜택분야	병원	103	51.5
	식당	7	3.5
	영화/스포츠/공연장	7	3.5
	학원	5	2.5
	차량정비	18	9.0
	기타	13	6.5
	무응답	47	23.5
	합계	200	100.0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이 생각하는 생활에 있어 할인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병원 51.5%(103명), 차량정비 9.0%(18명), 식당·영화관등 3.5%(7명), 학원 2.5%(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의료적 필요 및 이동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차량정비에

대한 혜택의 욕구가 전체장애인의 비율(6.0%)에 비해 3%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체장애인들의 이동에 대한 욕구가 조금 더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응답 대상 지체장애인의 집수리 필요 및 희망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가급적 고치고 싶다' 24%(48명), '반드시 고치고 싶다' 19%(38명), '별로 고치고 싶지 않다' 16.5%(33명), '전혀 고치고 싶지 않다' 9.5%(19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내용으로는 화장실(화장실 공간 확보(욕조제거 등), 안전바 설치, 미끄럼 방지, 화장실 문턱 제거, 세면대 높낮이 조절), 이동 공간 확보(방 문턱 제거, 통로를 넓게 함. 계단 없애기, 현관문 넓히기, 안전바 설치), 인테리어(도배, 장판, 페인트 칠, 물딩, 채광), 부엌(싱크대 높낮이 조절, 수납공간 확보), 구조(전기배선, 도시가스 배관, 환기·환풍, 채광)로 나타났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응답자중 집수리에 대한 욕구가 66.0%로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정부차원의 주거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양천구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안전바 설치, 화장실 문턱 제거, 인테리어(도배, 장판, 페인트 칠, 물딩 등) 등은 지역자원(자활후생기관 등) 및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해결 방안이 우선 제시될 수 있는 대책으로 보인다.

<표 3-2-74> 집수리 여부/희망내용

(n=200)			
구분	빈도	퍼센트 (%)	
집 개조	반드시 고치고 싶다	38	19.0
	가급적 고치고 싶다	48	24.0
	별로 고치고 싶지 않다	33	16.5
	전혀 고치고 싶지 않다	19	9.5
	기타	6	3.0
	무응답	56	28.0
	합계	200	100.0
집수리 희망내용	화장실 : 화장실 공간 확보(욕조제거 등), 안전바 설치, 미끄럼 방지, 화장실 문턱 제거, 세면대 높낮이 조절		
	이동 공간 확보 : 방 문턱 제거, 통로를 넓게 함. 계단 없애기, 현관문 넓히기, 안전바 설치		
	인테리어 : 도배, 장판, 페인트 칠, 물딩, 채광		
	부엌 : 싱크대 높낮이 조절, 수납공간 확보		
구조 : 전기배선, 도시가스 배관, 환기·환풍, 채광			

(5) 소결

본 조사에 응답한 지체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중 성인이 188명으로 94.5%의 비율로 나타났다. 지체장애 영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 특이사항을 정리해 보면 첫째, 전체응답자 중 자가 주택 소유자는 2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응답자 중 120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이 63%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수입과 지출 관계에 있어서 응답자의 수입대비 지출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의 도움 필요 57%, 일상생활 가능 36%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학령기, 미취학, 성인기 순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도움충분 정도에 대한 응답에서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75%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취학 아동의 경우 매우 부족 및 부족한 편이 83.4%로 나타났으며, 성인의 경우 매우 부족과 부족한 편이 81.7%로 전반적으로 도움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 번째, 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관한 사항은 중증 31.5%, 완전자립 30.5%, 경증 18.5%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결과는 일상생활능력이 있어 완전자립보다는 일상생활에 있어 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인지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이용률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료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장애인복지관, 재활병의원, 장애인체육관등에 대한 이용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업 및 자립과 관련된 기관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자립지원센터,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등에 대한 이용 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 음악치료, 동물매개치료, 주간보호, 단기보호,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휠체어보장구 제작, 청력검사 및 훈련 등에서 미충족율이 100%였고, 심리치료, 작업치료, 진로상담, 건강관리, 여가활동, 체육활동, 체력단련실 이용 등이 80%였다. 취학 아동 및 청소년 역시 이러한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의 전 영역에서 골고루 미충족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미취학 아동 및 취학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은 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아동 및 청소년을 돌보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시급한 정책으로 하루 빨리 서비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인의 경우 특히 시설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직업생활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미충족률

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양천구의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시에 단기보호, 주간보호, 그룹홈의 추가설치가 요구되며,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기획에 미충족률을 서비스 개발의 우선순위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기타 서비스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취업과 관련해서 미취업이 51.6%, 취업이 23.9%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의 연령대별 필요한 서비스는 방문기회(공연장, 전시장 등) 19.5%, 학습기회(음악/미술 등) 확대 16.5%, 테마관광 기회확대 7.5%, 동아리활동기회 확대 7.0%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이 생활에 있어 할인이 필요한 분야는 병원 51.5%, 차량정비 9.0%, 식당, 영화관등 3.5%, 학원 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의료적 필요와 이동의 필요에 따른 응답으로 보여진다. 넷째, 자원봉사활동 반대가 39.5%로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대 이유 중 주목할 사항은 자원봉사자의 자질이 부족하다 응답이 11.4%, 활동보조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8.8%이었다. 이는 자원봉사를 토대로 지역거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보다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과 장애인의 입장에서 자원봉사자보다 소비자의 결정권이 우선시 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인다. 다섯째, 장애인의 집수리 필요 및 희망 내용으로는 출입구, 화장실(입구, 욕조제거), 세면대 높낮이 조절, 싱크대, 문턱, 문손잡이, 자동문, 경사로 이동통로, 침대, 도시가스, 벽지, 장판, 가구, 수도, 손잡이 등 안전 설비, 집의 크기, 전반적인 리모델링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인터뷰 자료

인터뷰 대상(1)	여성(70), 지체장애(상지장애)
주거 (생활시설)	- 수술해서 다리가 많이 아프다. - 집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불편하다. 벽에 손잡이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노동 (직업활동)	- 배운 게 별로 없어서 이거(복지관 식당일) 밖에 못한다. 힘이 들지만 재미있다. -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하니까 내가 젊어지는 기분이 든다. 아픔을 이기고 나간다. -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여기는 내년에는 팀장이 못할 거라고 한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 가정에 약값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일하고 있다.

의료분야 (재활)	- 병원 같은 경우 물리치료 받을 경우 잘해 준다.
이동 (편의시설)	- 고관절 뼈를 해 넣었다. 앉기가 불편하고, 많이 걸어 다닐 수 없다. - 오갈 때 불편하다. 버스 탈 때 앞에 젊은 사람이 타고 그러면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몸이 둔하니까... 저상버스는 편하다. - 보도블록은 잘해 놔는데, 불편한데가 그래도 많다.

인터뷰 대상(2)	남성, 지체장애(하지장애)
주거 (생활시설)	- 붙잡고 이동해야 되니까, 벽에 손잡이를 설치해주면 좋겠다. - 화장실의 경우 앉아서 불일을 본다. 습관이 되서 괜찮은 것 같다. - 슬라이딩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노동 (직업활동)	- 나한테 맞는 일자리가 없다. 보행이 잘 안되니 일하기 힘들다. - 취직을 했었다. 기계조립공일 3개월 정도 했었다. 동네에서 봉어 빵 장사를 했었고, 1000냥 좌판도 했다. - 20대 때, 일하려고 해도 몸이 안 따라주니까 일할 곳이 없었다.
의료분야 (재활)	- 췌, 팔년 전에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만 두었다.(효과도 없고 대기시간도 길고, 치료시간 30분이고 하니까)
이동 (편의시설)	-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근래에는 콜택시가 시간 맞춰서 잘 온다. - 지하철은 가끔 탄다. 열차와 플랫폼 폭이 넓어서 휠체어가 빠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휠체어를 뒤로해서 탄다. - 인도로 가면 턱이 너무 높거나 차를 인도로 주차시켜놓아 차도로 내려올 수 없을 경우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도로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 운동을 더 하기 위해 수동휠체어를 주로 사용한다. 오르막 길이 있을 경우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
여가	- 관절에 좋다고 해서 수영을 하고 있고, 많이 좋아졌다.
기타	- 자원봉사자나 활동보조인 활용하고 싶어도 돈 때문에 힘들다. - 기관이나 국민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2) 뇌병변장애인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양천구 거주 뇌병변장애인인 중 설문에 응답한 장애인(총 140명)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응답자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140명의 응답자 중 본인이 응답한 경우가 62.2%(87명)이고 나머지는 어머니, 배우자, 자녀, 손자, 손녀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5> 응답자

(n=140)			
구 분	빈 도	퍼센트(%)	
응답자	본인	87	62.2
	기타	51	36.4
	무응답	2	1.4
	합계	140	100.0
	기타 내용	배우자	14
	어머니	21	15.0
	자·녀	7	5.0
	손자·녀	1	0.6
	기타	4	2.9
	무응답	4	2.9
	합계	51	36.4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의 장애 등급 및 연령으로 장애등급에 있어서는 1급 55%(77명), 2급 27.9%(39명), 3급 14.3%(20명), 5급·6급이 각각 0.7%(1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미취학 8.6%(12명), 취학아동 7.9%(11명), 성인 83.6%(117명)이었다. 주로 성인들이 응답하였다.

<표 3-2-76> 장애등급/연령

(n=140)			
구 분	빈 도	퍼센트(%)	
장애등급	1급	77	55.0
	2급	39	27.9
	3급	20	14.3
	5급	1	0.7
	6급	1	0.7
	무응답	2	1.4
	합계	140	100.0
연령	미취학아동(0세~7세)	12	8.6
	취학아동(8세~19세)	11	7.9
	성인(20세 이상)	117	83.6
	합계	140	100.0

<표 3-2-77> 학력/성별/결혼

(n=140)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 분		빈 도	퍼센트(%)	
			성별	결혼			
학력	미취학	5	3.6	성별	남자	97	69.3
	유치원/어린이집	9	6.4		여자	43	30.7
	초등학교	23	16.4		합계	140	100.0
	중학교	15	10.7	결혼	기혼	73	52.1
	고등학교	41	29.3		미혼	60	42.9
	(전문)대학	39	27.9		기타	6	4.3
	무학	3	2.1		무응답	1	0.7
	기타	1	0.7		합계	140	100.0
	무응답	4	2.9				
	합계	140	100.0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의 학력, 성별, 결혼에 관한 사항으로 학력에 있어서는 미취학 3.6%(5명), 유치원/어린이집 6.4%(9명), 초등학교 16.4%(23명), 중학교 10.7%(15명), 고등학교 29.3%(41명), (전문)대학 27.9%(39명), 무학 2.1%(3명)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69.3%(97명), 여자 30.7%(43명)이었다. 결혼 유무에 대해서는 기혼 52.1%(73명), 미혼 42.9%(60명)로 나타났다.

다중응답으로 질문한 뇌병변장애인의 동거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배우자 23.8%(61명), 자녀 18.0%(46명), 어머니 17.6%(45명), 아버지 14.8%(38명), 형제 9.3%(24명), 자매 3.1%(8명) 순이었으며 이외에도 손자녀 2.3%, 할머니 2.3%, 친척 1.6%, 할아버지 0.3%와 함께 산다는 응답이 있었다. 기타 6.6%, 무응답 0.3%로 나타났다.

<표 3-2-78> 동거인

		(n=140)	
구 분	빈 도	퍼센트(%)	
동거인	배우자	61	23.8
	어머니	45	17.6
	아버지	38	14.8
	할아버지	1	0.3
	할머니	6	2.3
	형제	24	9.3
	자매	8	3.1
	자녀	46	18.0
	손자녀	6	2.3
	친척	4	1.6
	기타	17	6.6
	무응답	1	0.3
합계	257	100	
기타내용	독거	11	4.3
	기타	6	2.3
	합계	17	6.6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의 주택소유에 관한 사항으로 자기소유 32.9%(46명), 월세 25.7%(36명), 전세 22.9%(32명), 기타 16.4%(23명) 순이었으며 무응답이 2.1%로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은 임대아파트 및 친척집에서 거주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3-2-79> 주택소유 형태

		(n=140)	
구 분	빈 도	퍼센트(%)	
주택소유 형태	자기소유	46	32.9
	전세	32	22.9
	월세	36	25.7
	기타	23	16.4
	무응답	3	2.1
합계	140	100.0	
기타내용	임대	10	7.1
	친척·친지	4	2.9
	기타	4	2.9
	무응답	5	3.5
	합계	23	16.4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의 월평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월평균 수입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상 26.4%(37명), 41만원-80만원 18.6%(26명), 81만원-120만원 17.9%(25명), 40만원까지 17.1%(24명), 121만원-200만원 7.9%(1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은 12.1%였다. 월평균 지출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상 25.7%(36명), 41만원-80만원 25%(35명), 121만원-200만원 16.4%(23명), 81만원-120만원 13.6%(19명), 40만원 이하 5.7%(8명) 순이었으며 무응답 13.6%로 나타났다.

<표 3-2-80> 월평균 수입/지출

		(n=140)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 분	빈 도	퍼센트(%)		
월 평 균 수 입	1원-40만원	24	17.1	월 평 균 지 출	1원-40만원	8	5.7
	41만원-80만원	26	18.6		41만원-80만원	35	25.0
	81만원-120만원	25	17.9		81만원-120만원	19	13.6
	121만원-200만원	11	7.9		121만원-200만원	23	16.4
	200만원 이상	37	26.4		200만원 이상	36	25.7
	무응답	17	12.1		무응답	19	13.6
	합계	140	100.0		합계	140	100.0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의 지출 순위에 관한 사항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가치치 합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총 625개의 응답 중에서 식료품비 24.4%(159개), 의료비 15.4%(129개), 교육비 10.5%(88개), 주거광열비 10.1%(85개), 교통비/차량유지비 6.46%(54개), 사회활동 및 조사비 5.6%(47개), 빚 갚는 비용 5.5%(46개), 채테크 2.5%(21개), 여가문화활동비 1.9%(16개), 기타 0.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81> 지출순위

(n=140)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산 합계		가중합산 합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식료품비	28	20.0	25	17.9	25	17.9	78	24.3	159	24.4
교육비	19	13.6	13	9.3	5	3.6	37	11.5	88	10.5
의료비	23	16.4	23	16.4	14	10.0	60	18.7	129	15.4
주거광열비	12	8.6	16	11.4	17	12.1	45	14.0	85	10.1
교통비/차량유지비	5	3.6	10	7.1	19	13.6	34	10.6	54	6.4
사회활동 및 조사비	9	6.4	8	5.7	4	2.9	21	6.5	47	5.6
여가문화생활비	0	0.0	5	3.6	6	4.3	11	3.4	16	1.9
빚 갚는 비용	10	7.1	4	2.9	8	5.7	22	6.9	46	5.5
재테크 및 금융	4	2.9	3	2.1	3	2.1	10	3.1	21	2.5
기타	2	1.4	0	0.0	1	0.7	3	0.7	7	0.8
무응답	28	20.0	33	23.6	38	27.1				
합계	140	100.0	140	100.0	140	100.0	321	100.0	652	100.0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비수급) 49.3%(69명), 기초생활수급자 27.1%(38명), 차상위 계층 12.1%(17명) 순이었다. 다른 유형의 장애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비율이 적다는 특성이 나타났다.

<표 3-2-82> 수급자 현황

(n=140)

구 분	빈도	퍼센트(%)	
수급자 현황	기초생활수급자	38	27.1
	차상위 계층	17	12.1
	그외(일반)	69	49.3
	잘 모름	10	7.1
	기타	4	2.9
	무응답	2	1.4
	합계	140	100.0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의 가족과의 관계 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매우 좋다' 45.7%(64명), '조금 좋다' 24.3%(34명), '조금 나쁘다' 15%(21명), '매우 나쁘다' 3.6%(5명) 순으로 나타났다. 뇌병변 장애유형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긍정적

인 관계가 70%로 나타났다.

<표 3-2-83> 가족관계 정도

(n=140)

구 분	빈도	퍼센트(%)	
가족관계 정도	매우 나쁘다	5	3.6
	조금 나쁘다	21	15.0
	조금 좋다	34	24.3
	매우 좋다	64	45.7
	무응답	16	11.4
	합계	140	100.0

<표 3-2-84> 연령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n=140)

구 분	빈도	퍼센트(%)	
전체	모든 일상생활 가능	11	7.9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17	12.1
	일부 남의 도움 필요	40	28.6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23	16.4
	거의 남의 도움 필요	38	27.1
	무응답	11	7.9
	합계	140	100.0
미취학아동 (0세~7세)	일부 남의 도움 필요	2	16.7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2	16.7
	거의 남의 도움 필요	8	66.7
	합계	12	100.0
취학아동 (8세~19세)	모든 일상생활 가능	1	9.1
	일부 남의 도움 필요	2	18.2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2	18.2
	거의 남의 도움 필요	6	54.6
	합계	11	100.0
성인 (20세 이상)	모든 일상생활 가능	10	8.5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17	14.5
	일부 남의 도움 필요	36	30.8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19	16.2
	거의 남의 도움 필요	24	20.5
	무응답	18	17.8
	합계	101	100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의 연령대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남의 도움 필요' 28.6%(40명), '거의 남의 도움 필요' 27.1%(38명),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16.4%(23명), '대부분 일상생활 가능' 12.1%(17명), '모든 일상생활 가능' 7.9%(11명) 순이었으며 무응답도 7.9%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일부 및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거의남의 도움 필요가 100%로 나타났다. 취학 아동의 경우, 일부 또는 대부분 및 거의 남의 도움 필요가 91.9%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일부 및 대부분, 거의 남의 도움 필요가 67.5%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미취학, 학령기, 성인기 순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을 주로 도와주는 사람에 관한 사항으로 배우자 30.7%(31명), 부모 22.8%(23명), 유료활동보조인 7.9%(8명), 자녀, 유료가정봉사원 3.0%(3명), 무료가정봉사원, 이웃, 무료활동보조인 2.0%(2명)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주로 돕는 사람 중 가족이 56.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현재 제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9.9%)도 적지 않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5> 주로 도와주는 사람

(n=101)			
구 분		빈 도	퍼센트(%)
도와주는 사람	배우자	31	30.7
	부모	23	22.8
	자녀	3	3.0
	이웃	2	2.0
	친척	1	1.0
	유료가정봉사원	3	3.0
	유료간병인	2	2.0
	유료 활동보조인	8	7.9
	무료가정봉사원	2	2.0
	무료 활동보조인	2	2.0
	기타	6	5.9
	무응답	18	17.8
	합계	101	100.0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의 도움충분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편이다' 39.6%(40명), '충분한 편이다' 24.8%(25명), '매우 부족하다' 21.8%(22명), '매우 충분한 편이다' 5.0%(5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도움충분정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2-86> 도움충분정도

(n=101)			
구 분		빈 도	퍼센트(%)
전체	매우 부족하다	22	21.8
	부족한 편이다	40	39.6
	충분한 편이다	25	24.8
	매우충분한 편이다	5	5.0
	무응답	9	8.9
	합계	101	100.0
미취학아동 (0세~7세)	매우 부족하다	1	8.3
	부족한 편이다	2	16.7
	충분한 편이다	7	58.3
	매우충분한 편이다	1	8.3
	무응답	1	8.3
	합계	12	100.0
취학아동 (8세~19세)	매우 부족하다	1	10.0
	부족한 편이다	4	40.0
	충분한 편이다	4	40.0
	무응답	1	10.0
	합계	10	100.0
	성인 (20세 이상)	매우 부족하다	20
부족한 편이다		34	27.4
충분한 편이다		14	11.3
매우충분한 편이다		4	3.2
무응답		7	5.6
합계		79	100.0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중증 60.7%(85명), 경증 15.0%(21명), 완전자립 17.1%(24명)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중증이 83.4%(10명), 경증은 없었고 완전자립 8.3%(1명)로 나타났으며, 취학 아동의 경우 중증 81.8%(9명), 완전자립 9.1%(1명)이었다. 성인의 경우 중증 56.4%(66명), 완전 자립 19.7%(23명), 경증은 17.1%(20명)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뇌병변장애의 경우 일상생활능력이 있어 완전자립보다는 저강도 케어(Care) 또는 고강도 케어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향후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을 반영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87>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n=140)

구 분		빈 도	퍼센트(%)
전체	완전자립(이상없음)	24	17.1
	정도약함(경증)	21	15.0
	정도심함(중증)	85	60.7
	무응답	10	7.1
	합계	140	100.0
미취학아동 (0세~7세)	완전자립(이상없음)	1	8.3
	정도심함(중증)	10	83.4
	무응답	1	8.3
	합계	12	100
취학아동 (8세~19세)	완전자립(이상없음)	1	9.1
	정도심함(중증)	9	81.8
	무응답	1	9.1
	합계	11	100.0
성인 (20세 이상)	완전자립(이상없음)	23	19.7
	정도약함(경증)	20	17.1
	정도심함(중증)	66	56.4
	무응답	8	6.8
	합계	117	100.0

(2) 기관 이용현황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정도, 이용 경험 여부, 이용 희망 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서비스 제공기관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96.4%(108명), 이동지원서비스 센터 85.8%(91명),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71.7%(71명),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65.4%(68명), 장애인정보화 교육기관 64.1%(66명), 유아교육기관 62.9%(56명) 순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76.1%(86명), 이동지원서비스센터 60.4%(67명), 재활 병·의원 60%(63명), 유아교육기관 30.1%(25명), 장애인정보화 교육기관 28.4%(29명) 순으로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희망여부에 대해서는 이동지원서비스센터 76.8%(76명), 장애인복지관 73.3%(77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67.7%(63명), 재활병·의원 65.6%(63명), 장애인자립지원센터 60.6%(57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으로는 지역의 복지관 및 인접지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경험을 기술한 것으로 보여진다.

종합해 보면 뇌병변장애의 경우 이동관련 서비스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의료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장애인복지관, 재활병의원과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이용욕구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88> 기관 이용 현황

(n=140)

기 관 명	인지여부		이용경험여부		이용희망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71(71.7)	28(28.3)	23(24.2)	72(75.8)	24(27.6)	63(72.4)
특수교육 지원센터	44(45.4)	53(54.6)	10(11.0)	81(89.0)	26(31.3)	57(68.7)
유아교육기관	56(62.9)	33(37.1)	25(30.1)	58(69.9)	23(29.5)	55(70.5)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66(64.1)	37(35.9)	29(28.4)	73(71.6)	50(51.0)	48(49.0)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50(49.5)	51(50.5)	16(16.8)	79(83.2)	53(54.6)	44(45.4)
장애인복지관	108(96.4)	4(3.6)	86(76.1)	27(23.9)	77(73.3)	28(26.7)
장애인자립생활센터	68(65.4)	36(34.6)	27(27.6)	71(72.4)	57(60.6)	37(39.4)
직업재활시설	59(58.4)	42(41.6)	8(8.6)	85(91.4)	36(39.6)	55(60.4)
장애인고용촉진공단	54(52.4)	49(47.6)	13(13.5)	83(86.5)	54(56.3)	42(43.8)

기관명	인지여부		이용경험여부		이용희망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장애인생활시설	56(55.4)	45(44.6)	14(14.3)	84(85.7)	33(35.9)	59(64.1)
중증장애인요양시설	53(52.5)	48(47.5)	5(5.2)	91(94.8)	24(27.3)	64(72.7)
장애영유아생활시설	35(36.8)	60(63.2)	3(3.5)	82(96.5)	11(13.9)	68(86.1)
그룹홈(공동생활가정)	39(39.8)	59(60.2)	4(4.4)	86(95.6)	18(21.2)	67(78.8)
주간·단기 보호시설	53(52.5)	48(47.5)	7(7.6)	85(92.4)	26(31.0)	58(69.0)
장애인전용체육관	40(39.6)	61(60.4)	17(17.2)	82(82.8)	53(56.4)	41(43.6)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51(51.5)	48(48.5)	32(32.3)	67(67.7)	63(67.7)	30(32.3)
재활 병·의원	86(82.7)	18(17.3)	63(60.0)	42(40.0)	63(65.6)	33(34.4)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47(48.0)	51(52.0)	19(20.0)	76(80.0)	51(55.4)	41(44.6)
이동지원서비스센터	91(85.8)	15(14.2)	67(60.4)	44(39.6)	76(76.8)	23(23.2)
심부름센터	30(30.9)	67(69.1)	4(4.3)	90(95.7)	35(39.8)	53(60.2)
교통안전공단	34(34.3)	65(65.7)	5(5.4)	87(96.4)	36(40.4)	53(59.6)
사회복지시설	25(25.3)	74(74.7)	2(2.2)	90(97.8)	9(10.7)	75(89.3)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31(31.3)	68(68.7)	1(1.1)	92(98.9)	10(11.9)	74(88.1)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34(34.7)	64(65.3)	3(3.3)	88(96.7)	11(13.3)	72(86.7)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34(35.1)	63(64.9)	2(2.2)	91(97.8)	9(10.8)	74(89.2)

(3) 연령별 서비스 현황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 중 미취학 아동(0세~7세) 12명에 대한 서비스 미충족률에 관한 사항이다. 미취학 아동기에 서비스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한 결과를 미충족률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심리치료, 미술치료, 동물매개치료, 진로상담, 단기보호,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가 100%, 주간보호 85.7% 등 전반적으로 서비스 미충족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의 경우, 응답자 모두가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9> 미취학아동기(0세~7세) 서비스 현황

(n=12)

사업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필요(%)	불필요(%)	이용(%)	비이용(%)	
조기특수교육	9(100.0)	0(0.0)	2(22.2)	7(77.8)	77.8
부모교육(자녀 양육교육)	9(100.0)	0(0.0)	3(33.3)	6(66.7)	66.7
장애이해교육(부모/형제)	9(100.0)	0(0.0)	2(22.2)	7(77.8)	77.8
물리치료	10(91.0)	0(0.0)	10(100.0)	0(00.0)	0.0
언어치료(의사소통훈련)	10(91.0)	1(9.0)	7(70.0)	3(30.0)	30.0
심리치료(놀이치료)	8(80.0)	2(20.0)	0(0.0)	8(100.0)	100.0
작업치료	11(100.0)	0(0.0)	11(100.0)	0(0.0)	0.0
음악치료	8(80.0)	2(20.0)	2(25.0)	6(75.0)	75.0
미술치료	7(70.0)	3(30.0)	0(0.0)	7(100.0)	100.0
동물매개치료	6(600.0)	4(40.0)	0(0.0)	6(100.0)	100.0
장애전담 어린이집/통합 어린이 집	10(100.0)	0(0.0)	9(90.0)	1(10.0)	10.0
주간보호	7(70.0)	3(30.0)	1(14.3)	6(85.7)	85.7
단기보호	5(50.0)	5(50.0)	0(0.0)	5(100.0)	100.0
진로상담(진학상담 등)	9(90.0)	1(10.0)	0(0.0)	9(100.0)	100.0
건강관리	10(100.0)	0(0.0)	4(40.0)	6(60.0)	60.0
활동보조서비스	9(90.0)	1(10.0)	3(33.3)	6(66.7)	66.7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5(50.0)	5(50.0)	0(0.0)	5(100.0)	100.0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6(60.0)	4(40.0)	0(0.0)	6(100.0)	100.0
여가활동	7(77.8)	2(22.2)	2(28.6)	5(71.4)	71.4
체육활동	9(90.0)	1(10.0)	2(22.2)	7(77.8)	77.8
체력단련실 등 장소 이용	7(77.8)	2(22.2)	1(14.3)	6(85.7)	85.7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8(88.9)	1(11.1)	4(50.0)	4(50.0)	50.0
청력검사/훈련	7(70.0)	3(30.0)	0(0.0)	7(100.0)	100.0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 중 취학아동 및 청소년(8세-19세) 11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미충족률에 관한 사항이다. 미충족률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인권교육, 동물매개치료, 일상생활 훈련, 단기보호, 장기시설보호, 진로상담,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테마캠프, 여가활동, 체육활동 100%, 정보화교육 87.5%, 부모교육, 문화활동 85.5%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서비스 미충족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물리치료(28.6%), 활동보조서비스(28.6%), 언어치료(40.0%), 작업치료(42.9%)와 같은 활동치료의 경우는 20-40% 대의 미충족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2-90> 취학아동 및 청소년기(8세~19세) 서비스 현황

(n=11)

사업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필요 (%)	불필요 (%)	이용 (%)	비이용 (%)	
특수학교	8(100.0)	0(0.0)	4(50.0)	4(50.0)	50.0
특수학급	8(100.0)	0(0.0)	4(50.0)	4(50.0)	50.0
학교 방과 후 활동	7(87.5)	1(12.5)	2(28.6)	5(71.4)	71.4
정보화 교육	8(100.0)	0(0.0)	1(12.5)	7(87.5)	87.5
부모교육(자녀 양육교육)	7(87.5)	1(12.5)	1(14.3)	6(85.7)	85.7
인권 교육	6(75.0)	2(25.0)	0(0.0)	6(100.0)	100.0
학습지원 활동	7(87.5)	1(12.5)	3(42.9)	4(57.1)	57.1
일상생활훈련	5(71.4)	2(28.6)	0(0.0)	5(100.0)	100.0
물리치료	7(87.5)	1(12.5)	5(71.4)	2(28.6)	28.6
언어치료	5(62.5)	3(37.5)	3(60.0)	2(40.0)	40.0
심리치료(놀이치료)	6(75.0)	2(25.0)	1(16.7)	5(83.3)	83.3
작업치료	7(87.5)	0(0.0)	4(57.1)	3(42.9)	42.9
음악치료	6(75.0)	2(25.0)	1(16.7)	5(83.3)	83.3
미술치료	6(75.0)	2(25.0)	1(16.7)	5(83.3)	83.3
동물매개치료	6(75.0)	2(25.0)	0(0.0)	6(100.0)	100.0
주간보호	5(62.5)	3(37.5)	1(20.0)	4(80.0)	80.0
단기보호	4(50.0)	4(50.0)	0(0.0)	4(100.0)	100.0

사업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필요 (%)	불필요 (%)	이용 (%)	비이용 (%)	
그룹홈	3(37.5)	5(62.5)	0(0.0)	3(100.0)	100.0
장기시설보호	3(37.5)	5(62.5)	0(0.0)	3(100.0)	100.0
진로상담	6(75.0)	2(25.0)	0(0.0)	6(100.0)	100.0
건강관리	6(75.0)	2(25.0)	2(33.3)	4(66.7)	66.7
성교육/성상담	6(75.0)	2(25.0)	1(16.7)	5(83.3)	83.3
활동보조서비스	7(87.5)	1(12.5)	5(71.4)	2(28.6)	28.6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3(37.5)	5(62.5)	0(0.0)	3(100.0)	100.0
테마캠프	6(75.0)	2(25.0)	0(0.0)	6(100.0)	100.0
여가활동	6(75.0)	2(25.0)	0(0.0)	6(100.0)	100.0
체육활동	5(62.5)	3(37.5)	0(0.0)	5(100.0)	100.0
문화활동	7(87.5)	1(12.5)	1(14.3)	6(85.7)	85.7
체력단련실 등 장소 이용	5(62.5)	3(37.5)	1(20.0)	4(80.0)	80.0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6(75.0)	2(25.0)	2(33.3)	4(66.7)	66.7
청력검사/훈련	3(37.5)	5(62.5)	0(0.0)	3(100.0)	100.0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 중 성인기(20세 이상)에 있는 117명에 대한 서비스 미충족률을 분석한 것이다. 성인기에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한 결과를 미충족률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미충족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충족률 순으로 정리해 보면 단기보호, 결혼상담 100%, 보호작업 96%, 그룹홈 94.7%, 직업능력 평가 93.9%, 취업 후 지원 91.7% 순으로 미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결혼과 관련된 서비스, 직업생활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미충족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34.0%), 활동보조서비스(44.0%), 여가활동(46.3%), 체력단련실 등 장소이용(44.8%)은 미충족율이 50%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기타 필요한 서비스 내용에는 국어·숫자 과외선생님, 도시락반찬 월 2회, 목욕서비스, 미술치료, 방문재활치료, 병원입원 시 보증, 수중치료, 야외견학프로그램, 유료응급차량의 무료서비스, 자립생활체험, 장애인콜택시 청각장애인 문자이용, 저렴한 요양시설, 콜택시 확충, 물리치료, 세탁서비스, 양천구요양센터, 욕창매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작업치료, 퇴원 시 119 이용으로 나타났다.

<표 3-2-91> 성인기(20세 이상) 서비스 현황

(n=117)

사 업 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
	필요 (%)	불필요 (%)	이용 (%)	비이용 (%)	
인문학 교육	30(46.9)	34(53.1)	4(13.3)	26(86.7)	86.7
인권 교육	39(59.0)	27(41.0)	10(25.6)	29(74.4)	74.4
정보화교육	54(71.0)	22(29.0)	19(35.2)	35(64.8)	64.8
일상생활훈련	48(66.7)	24(33.3)	15(31.3)	33(68.8)	68.8
직업상담	37(53.6)	32(46.4)	4(10.8)	33(89.2)	89.2
직업능력 평가	33(47.1)	37(52.9)	2(6.1)	31(93.9)	93.9
취업 준비 훈련	38(54.3)	32(45.7)	6(15.8)	32(84.2)	84.2
보호 작업	25(37.9)	41(62.1)	1(4.0)	24(96.0)	96.0
취업 후 지원	36(52.9)	32(47.1)	3(8.3)	33(91.7)	91.7
취업알선	39(58.2)	28(41.8)	4(10.3)	35(89.7)	89.7
물리치료	61(79.2)	16(20.8)	18(29.5)	43(70.5)	70.5
언어치료(의사소통훈련)	40(58.0)	29(42.0)	8(20.0)	32(80.0)	80.0
심리치료/예치료/댄스치료/드라마치료	41(57.7)	30(42.3)	7(17.1)	34(82.9)	82.9
작업치료	38(52.8)	34(47.2)	10(26.3)	28(73.7)	73.7
주간보호	21(31.8)	45(68.2)	5(23.8)	16(76.2)	76.2
단기보호	18(12.1)	48(87.9)	0(0.0)	18(100.0)	100.0
그룹홈	19(29.7)	45(70.3)	1(5.3)	18(94.7)	94.7
결혼상담	18(28.1)	46(71.9)	0(0.0)	18(100.0)	100.0
성교육/성상담	26(40.6)	38(59.3)	2(7.7)	24(92.3)	92.3
활동보조서비스	50(71.4)	20(28.6)	28(56.0)	22(44.0)	44.0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36(51.4)	34(48.6)	12(33.3)	24(66.7)	66.7
노인 돌봄 서비스	30(45.5)	36(54.5)	4(13.3)	26(86.7)	86.7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	15(24.6)	46(75.4)	2(13.3)	13(86.7)	86.7
이동목욕서비스	28(43.1)	37(56.9)	4(14.3)	24(85.7)	85.7
이·미용서비스	53(69.7)	23(30.3)	26(49.1)	27(50.9)	50.9
여가활동	54(75.0)	18(25.0)	29(53.7)	25(46.3)	46.3
체육활동	41(61.2)	26(38.8)	11(26.8)	30(73.2)	73.2
문화활동	35(52.2)	32(47.8)	9(25.7)	26(74.3)	74.3
체력단련실 등 장소이용	58(76.3)	18(23.7)	32(55.2)	26(44.8)	44.8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47(61.8)	29(38.2)	31(66.0)	16(34.0)	34.0

(4) 기타 서비스 욕구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의 취업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미취업이 65%(76명), 취업이 14.5%(17명)로 나타났다. 취업의 전체평균이나 지체장애인의 경우보다도 다소 낮은 숫자(전체:16.5%, 지체:23.9%)를 보이고 있었다.

<표 3-2-92> 현재 취업여부

(n=117)

구 분		빈 도	퍼센트(%)
취업여부	취업	17	14.5
	미취업	76	65.0
	무응답	24	20.5
	합계	117	100.0

취업하고 있는 17명을 대상으로 직종을 파악한 결과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 35.3%(6명), 자영업 11.8%(2명)로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으로는 예술, 자립생활센터의 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 취업정보실, 컴퓨터보조교육자로 나타났다.

<표 3-2-93> 취업 분야

(n=17)

구 분		빈 도	퍼센트(%)
분야	자영업	2	11.8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	6	35.3
	기타	8	47.1
	무응답	1	5.9
	합계	17	100.0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의 취업분야에서의 현재 직무에 대한 사항으로 관리직, 동료상담, 사무보조, 사무원, 사무직(활동가), 상담, 장애인연극단, 컴퓨터보조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4> 현재 직무

구 분	빈 도	퍼센트(%)
관리직	1	5.9
동료상담	1	5.9
사무보조	4	23.5
사무원	1	5.9
사무직(활동가)	1	5.9
상담	1	5.9
장애인연극단	1	5.9
컴퓨터관련	3	17.6
무응답	4	23.5
	17	100.0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의 취업현장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6개월 미만이 35.3%(6명), 1년~2년 23.5%(4명), 5년 이상·2년~5년 17.6%(3명), 6개월~1년이 11.8%(2명)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근무기간은 2년 미만이 70.6%, 2년 이상이 35.2%로 장기근무보다는 단기간 근무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직업 생활은 생계와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양천구의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시에 적극 참조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기획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2-95> 근무기간

구 분	빈 도	퍼센트(%)	
근무기간	6개월 미만	6	35.3
	6개월 ~ 1년	2	11.8
	1년 ~ 2년	4	23.5
	2년 ~ 5년 미만	3	17.6
	5년 이상	3	17.6
	무응답	2	11.8
	합계	17	100.0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의 취업현장에서의 이직 고려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가 55.6%(65명), '고려하고 있다'가 19.7%(23명)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적으로 현 직장에 대해 만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 3-2-96>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고려	23	19.7
	미고려	65	55.6
	무응답	29	24.8
	합계	117	100.1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의 구직과 이직 희망 업종에 관한 사항으로 자영업 21.7%(5명),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 13%(3명),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8.7%(2명), 농업 등 4.3%(1명), 기타 39.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자영업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대체적으로 1차 산업보다는 2차 또는 3차 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7> 구직과 이직 희망 업종

구 분	빈 도	퍼센트(%)	
희망일자리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원예업	1	4.3
	자영업	5	21.7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2	8.7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	3	13.0
	기타	9	39.1
	무응답	3	13.0
	합계	23	100.0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의 희망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뇌병변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100만원~149만원 30.5%(7명), 50만원~99만원 17.5%(4명), 200만원 이상과 150만원~199만원, 그리고 49만원 이하가 각각 13.0%(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98> 희망급여

(n=23)			
구 분	빈 도	퍼센트(%)	
희망급여	49만원 이하	3	13.0
	50만원~99만원	4	17.5
	100만원~149만원	7	30.5
	150만원~199만원	3	13.0
	200만원 이상	3	13.0
	무응답	3	13.0
	합계	23	100.0

장애인이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사항으로 뇌병변장애인들은 장애 때문에 60%(39명), '일자리가 없어서' 10.8%(7명),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와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가 각각 3.0%(2명)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나이가 많아서'(14명), '일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표 3-2-99> 구직하지 않는 이유

(n=65)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직활동 않는 이유	장애 때문에	39	60.0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7	10.8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2	3.0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2	3.0
	기타	9	13.8
	무응답	6	9.2
	합계	65	100.0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인지하는 경로에 관한 사항으로 이웃 및 친지 30.2%(54명), 사회복지기관 24.6%(44명), 방송 및 언론매체 13.4%(24명), 공무원 7.8%(14명), 인쇄매체(전단지 등) 7.3%(13명) 순으로 응답했다.

<표 3-2-100> 서비스 인지경로

(n=140)			
구 분	빈 도	퍼센트(%)	
서비스 인지경로	인쇄매체(전단지 등)	13	7.3
	이웃 및 친지	54	30.2
	방송 및 언론매체	24	13.4
	공무원	14	7.8
	사회복지기관	44	24.6
	기타	10	5.6
	무응답	20	11.1
	합계	179	100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합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동거리 31.6%(185개), 서비스 내용 17.2%(100개), 서비스 전문성 16.4%(96개), 이용료 13.1%(77개), 이용가능 기간 10.1%(59개)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01> 서비스 선택기준

(n=140)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산 합계		가중합산 합산합계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이동거리	49	35.0	14	10.0	10	7.1	73	25.5	185	31.6
시설규모	1	0.7	11	7.9	9	6.4	21	7.3	34	5.8
이용료	12	8.6	11	7.9	19	13.6	42	14.7	77	13.1
인지도	3	2.1	8	5.7	6	4.3	17	6.0	31	5.3
이용가능 기간	6	4.3	10	7.1	21	15.0	37	13.0	59	10.1
프로그램의 전문성	12	8.6	25	17.9	10	7.0	47	16.4	96	16.4
서비스 내용	20	14.3	13	9.3	14	10.0	47	16.4	100	17.2
기타	0	0.0	1	0.7	1	0.7	2	0.7	3	0.5
무응답	37	26.4	47	33.6	50	35.7				
합계	140	100.0	140	100.0	140	100.0	286	100	585	100

<표 3-2-102> 연령별 필요한 서비스

		(n=140)	
구분	빈도	퍼센트(%)	
전체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22	15.7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27	19.3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 기회확대	7	5.0
	(역사/생태 등)테마관광 기회확대	11	7.9
	기타	24	17.1
	무응답	49	35.0
	합계	140	100.0
미취학 아동 (0세~7세)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1	8.3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6	50.0
	기타	4	33.3
	무응답	1	8.3
	합계	12	100.0
취학 아동 (0세~19세)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3	27.3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5	45.5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 기회확대	1	9.1
	기타	1	9.1
	무응답	1	9.1
합계	11	100.0	
성인 (20세 이상)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18	15.4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16	13.7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 기회확대	6	5.1
	(역사/생태 등)테마관광 기회확대	11	9.4
	기타	19	16.2
	무응답	47	40.2
	합계	117	100.0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의 문화나 체육 관광과 관련된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기회(음악/미술 등) 확대 19.3%(27명), 방문기회(공연장, 전시장 등) 15.7%(22명), 테마관광 기회 확대 7.9%(11명), 동아리활동기회 확대 5.0%(7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의 특성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기타사항으로

가족 나들이를 갈 수 있는 기회 확대, 교통편과 활동보조시간 증가,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 제공, 체력단련을 자유롭게 대기시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 확대, 보행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서비스, 비용 걱정 없이 유료 응급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 경험, 외출과 사회참여, 장애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 제공 등으로 응답하였다.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은 자원봉사자가 장애인자택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42.2%(59명)가 동의하고 37.1%(52명)가 반대하였다. 반대 이유로는 당사자의 일상 생활기능 등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 없다'와 '자원봉사 오는 게 부담스럽다'가 각각 17.3%(9명)이었고, '자원봉사자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3.5%(7명)이었다. 활동보조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7.7%(4명), 돌볼 가족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5.8%(3명)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양천구의 자원봉사자 관련 사업추진 시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자원봉사 이용자 중심의 봉사활동 계획, 교육, 배치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원봉사측면과 함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2-103> 자택 자원봉사활동 동의 여부/반대이유

		(n=140)	
구분	빈도	퍼센트(%)	
자택 자원봉사활동	동의	59	42.2
	비동의	52	37.1
	무응답	29	20.7
	합계	140	100
반대이유	가족이 돌볼 수 있다.	3	5.8
	도움이 필요 없다.	9	17.3
	자원봉사자가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	9	17.3
	자원봉사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	7	13.5
	자원봉사보다 유급봉사자(활동보조인 등)가 필요하다.	4	7.7
	기타	2	3.8
	무응답	18	34.6
	합계	52	100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이 생각하는 인식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 운영 23.6%(33명), 홍보 23.6%(33명), 인식개선 교육 18.6%(26명), 장애인의 지역사회행사 참여 10%(14명)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양천구 및 장애인복지관 사업에

있어서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언론매체와의 협조를 통한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2-104> 인식개선방안

(n=140)			
구분	빈도	퍼센트(%)	
인식 개선 방안	홍보(캠페인, 방송등)	33	23.6
	인식개선 교육	26	18.6
	장애인의 지역행사참여	14	10.0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 운영	33	23.6
	기타	3	2.1
	무응답	31	22.1
	합계	140	100.0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이 생각하는 생활에 있어 할인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병원 51.4%(72명), 식당·차량정비 5.7%(8명), 영화관등 3.6%(5명), 학원 2.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의료적 필요와 이동의 필요에 따른 욕구가 반영된 결과이며, 정부차원의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양천구청을 중심으로 지역자원 조사,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2-105> 할인혜택 분야

(n=140)			
구분	빈도	퍼센트(%)	
할인혜택분야	병원	72	51.4
	식당	8	5.7
	영화/스포츠/공연장	5	3.6
	학원	3	2.1
	차량정비	8	5.7
	기타	8	5.7
	무응답	36	25.7
	합계	140	100.0

응답 대상 뇌병변장애인의 집수리 필요 및 희망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반드시 고치고 싶다'가 25.0%(35명), '별로 고치고 싶지 않다'가 19.3%(27명), '가급적 고치고 싶다'가 18.6%(26명), '전혀 고치고 싶지 않다'가 12.1%(17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06> 집수리 여부/희망내용

(n=140)			
구분	빈도	퍼센트(%)	
집 개 조	반드시 고치고 싶다	35	25.0
	가급적 고치고 싶다	26	18.6
	별로 고치고 싶지 않다	27	19.3
	전혀 고치고 싶지 않다	17	12.1
	기타	1	0.7
	무응답	34	24.3
	합계	140	100.0

(5) 소결

본 조사는 뇌병변장애인 14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중 성인이 117명으로 83.6%의 비율로 나타났다. 뇌병변장애 영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 특이사항을 정리해 보면 첫째, 전체응답자의 자가 주택 소유자가 3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응답자 중 120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이 44.3%로 나타났다. 셋째, 수입과 지출 관계에 있어서 응답자의 수입대비 지출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에 관해 일부라도 도움이 필요한 응답자가 72.1%에 이르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미취학, 취학아동, 성인기 순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도움충분정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편이다 39.6%, 충분한 편이다 24.8%, 매우 부족하다 21.8%, 매우 충분한 편이다. 5.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전체적으로 보면 중증

60.7%, 경증, 17.1%, 완전자립 15.0%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일상생활능력에 있어 완전자립보다는 저강도 케어 또는 고강도 케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이용 현황을 통해 드러난 뇌병변장애인의 가장 높은 서비스 욕구는 이동관련 서비스 욕구였으며, 의료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장애인복지관, 재활병의원 과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이용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측면에서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심리치료, 미술 치료, 동물매개치료, 진로상담, 단기보호,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가 100%, 주간보호 85.7% 등 전반적으로 서비스 미충족률이 매우 높았다. 반면에 취학아동 및 청소년(8세-19세)은 인권교육, 동물매개치료, 일상생활 훈련, 단기보호, 장기시설보호, 진로상담,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테마캠프, 여가활동, 체육활동 영역의 미충족율이 100%, 정보화교육 87.5%, 부모교육, 문화활동 85.5% 순이었다. 비록 응답자 수는 많지 않지만 연령대별 욕구의 흐름을 보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 치료와 재가 중심의 서비스 욕구에서 학교에 입학하고 사회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성을 기르는 서비스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성인들의 서비스 미충족률은 결혼상담 100%, 보호작업 96%, 그룹홈 94.7%, 직업능력 평가 93.9%, 취업 후 지원 91.7%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성인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들이며 양천구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기타 서비스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미취업이 65%로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었다. 근무기간은 2년 미만이 70.6%, 2년 이상이 35.2%로 장기근속보다는 단기간 근무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서비스의 선택기준은 이동거리 31.6%, 서비스 내용 17.2%, 서비스 전문성 16.4%, 이용료 13.1%, 이용가능기간 10.1%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이 생활에 있어 할인이 필요한 분야에 병원 51.4%, 식당, 차량정비 5.7%, 영화관등 3.6%, 학원 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의료적 필요와 이동의 필요에 따른 응답에 기인한 것이다. 넷째, 자택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동의 42.2%, 반대 37.1%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자원봉사자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3.5%, 활동보조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7.7%로 나타났다.

(6) 인터뷰 자료

인터뷰 대상(1)	남성, 뇌병변장애(오른팔·손 편마비)
주거 (생활시설)	-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많이 좋아져서 현재는 집에서 큰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다.
노동 (직업활동)	- 주차관리, 컴퓨터 작업 정도 할 수 있다. 하면은 할 수 있는데 못했다. - 취직하는 데 다른 어려운 점은 없다.
의료분야 (재활)	- 병원치료의 경우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경제적인 면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 - 병원 치료받거나 다닐 때 크게 부담 안 느끼고 있다.
이동 (편의시설)	- 차에서 오르내릴 때 차 문이 활짝 열어야 하는데, 주차공간이 좁은 경우 주차를 할 수 없다. - 지하철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사용하기 많이 힘들다. - 버스의 경우는 저상버스는 괜찮은 데, 구형버스는 사용하기 불편하다. 버스가 주차할 때 인도와 가까이 주차해서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여가	- 수영을 하고 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영을 권장하고 싶다 - 산·바다가 같이 있는 설악산이나 동해안으로 여행하고 싶다.
기타	-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지하 체력단련실에서 먼지 때문에 목이 막혀 30분 이상 있지 못한다. - 복도도 휠체어가 다니기에 공간이 좁다 - 비장애인과 같이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다.

인터뷰 대상(2)	여(55), 뇌병변장애
주거 (생활시설)	- 부엌이나 화장실을 가나 다 불편하다. 혼자 생활을 못하니까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니까 불편하다. 요리 같은 것도 남편이 다한다. 화장실은 혼자 간다. - 화장실에 기댈 것이 없으니까 세수 같은 것은 싱크대에서 한다.
노동 (직업활동)	- 일자리는 아직 생각도 못한다.
의료분야 (재활)	- 운동 걸 해서 휠체어를 타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이동 (편의시설)	- 주차도 그렇고 다 불편하다. 처음에 병원에 주차했다가, 나중에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인터뷰 대상(3)	남성(11), 뇌병변 장애(지적장애 중복).
주거 (생활시설)	- 배변 훈련 연습을 몇 년 째 하고 있다. 엄마가 배변 욕구를 인지하지 못해 그냥 바지에 싸는 경우도 있다. - 언어발달도 느려, 배변에 대한 표현을 잘하지 못한다.
의료분야 (재활)	- 복지관 대기기간이 너무 길다. - 병원은 진찰이나 치료시간이 짧아(30분 정도) 힘들고 불편하다.
이동 (편의시설)	- 근육활동을 위해 전동휠체어는 아직 사용 않는다. - 하체가 많이 움직여서 휠체어에 보조기구를 집에서 만들었다. - 아이의 발달에 따라 신체에 맞는 휠체어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보조기가 너무 비싸다.
여가	- 놀고 싶은 욕구는 있다. 동생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논다. - 휠체어 타고 돌아다니는 것을 즐겨서, 공원을 많이 돌아다닌다. - 여행하는 것도 좋아한다.

인터뷰 대상(4)	남성(11세), 뇌병변장애
주거 (생활시설)	-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해서 모두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
의료분야 (재활)	- 치료비 부담이 가장 크다. 또한 복지관의 경우 치료기간이 2년으로 너무 길다. - 병원이 너무 멀고, 개인 치료(사설기관)를 받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교육	- 학교에 가는 이유는 배우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사이에서 놀고, 선생님들과 아이가 만나는데 중점을 둔다.
이동 (편의시설)	- 주로 자가용으로 움직인다. -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시엔 업어서 이동한다. 지하철의 경우에 에스컬레이터가 위험하고 계단이 너무 많아서 업고 가기에 너무 힘들다. 휠체어도 사용하지만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여가	- 등산이나 산행을 가고 싶다. 그러나 산길이 너무 좁아서 아이를 데리고 가기 힘들다. - 여행을 하고 싶다. 넓고 트인 데서 아이가 마음껏 소리지르고 돌아다니게 하고 싶다.

3) 지적장애인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양천구 거주 장애인인 중 설문에 응답한 지적장애인(총 65명)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응답자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65명의 응답자 중 본인 응답이 13.8%(9명)이었다. 어머니가 응답한 경우는 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07> 응답자

(n=65)			
구 분		빈 도	퍼센트(%)
응답자	본인	9	13.8
	기타	56	86.2
	합계	65	100.0
기타 내용	어머니	42	64.6
	아버지	3	4.6
	할머니	1	1.5
	형제·자매	1	1.5
	기타	4	6.1
	무응답	5	7.7
	합계	56	100.0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의 장애 등급 및 연령으로 장애등급에 있어서는 1급 44.6%(29명), 2급 29.2%(19명), 3급 21.5%(14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미취학 12.3%(8명), 취학 아동 및 청소년 41.5%(27명), 성인 46.2%(30명)로 나타났다.

<표 3-2-108> 장애등급/연령

(n=65)			
구 분		빈 도	퍼센트(%)
장애등급	1급	29	44.6
	2급	19	29.2
	3급	14	21.5
	기타	2	3.0
	무응답	1	1.5
	합계	65	100.0
연령	미취학아동(0세~7세)	8	12.3
	취학아동(8세~19세)	27	41.5
	성인(20세 이상)	30	46.2
	합계	65	100.0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의 학력, 성별, 결혼에 관한 사항으로 학력은 고등학교 33.8%(22명), 초등학교 24.6%(16명), 중학교 12.3%(8명), (전문)대학 9.2%(6명), 미취학과 유치원/어린이집이 각각 6.2%(4명), 무학이 3.1%(2명)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61.5%(40명),

여자 38.5%(25명)이었다. 결혼 유무에 대해서는 미혼이 93.8%(61명), 기혼이 4.6%(3명)로 전체 장애유형별에서 지적장애인의 결혼 비율이 가장 적었다.

<표 3-2-109> 학력/성별/결혼

(n=65)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 분		빈 도	퍼센트(%)
학력	미취학	4	6.2	성별	남자	40	61.5
	유치원/어린이집	4	6.2		여자	25	38.5
	초등학교	16	24.6		합계	65	100.0
	중학교	8	12.3	결혼	기혼	3	4.6
	고등학교	22	33.8		미혼	61	93.8
	(전문)대학	6	9.2		기타	1	1.5
	무학	2	3.1		합계	65	100.0
	무응답	3	4.6				
	합계	65	100.0				

다중응답으로 질문한 지적장애인의 동거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총 174개의 응답 중에서 어머니 31.6%(55개), 아버지 29.3%(51개), 형제 16.7%(29개), 자매 10.3%(18개), 배우자 1.7%(3개)로 나타났다.

<표 3-2-110> 동거인

(n=174)			
구 분		빈 도	퍼센트(%)
동거인	배우자	3	1.7
	어머니	55	31.6
	아버지	51	29.3
	할아버지	2	1.1
	할머니	7	4.0
	형제	29	16.7
	자매	18	10.3
	자녀	2	1.1
	친척	1	0.5
	기타	6	3.4
	합계	174	100.0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의 주택소유에 관한 사항으로 자기소유가 41.5%(27명), 전세 40%(26명), 월세 10.8%(7명)로 나타났다.

<표 3-2-111> 주택소유 형태

구 분		빈 도	퍼센트(%)
주택소유 형태	자기소유	27	41.5
	전세	26	40.0
	월세	7	10.8
	기타	4	6.2
	무응답	1	1.5
	합계	65	100.0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의 월평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응답내용을 볼 때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전체 가족의 수입으로 보인다. 결과는 200만원 이상이 44.6%(29명), 81만원-120만원과 121만원-200만원이 각각 16.9%(11명), 41만원-80만원이 7.7%(5명), 1원-40만원이 4.6%(3명)로 나타났다. 월평균 지출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상이 43.1%(28명), 121만원-200만원이 24.6%(16명), 41만원-80만원이 7.7%(5명), 1원-40만원이 6.2%(4명), 81만원-120만원 4.6%(3명)로 나타났다.

<표 3-2-112> 월평균 수입/지출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 분		빈 도	퍼센트(%)
월 평균 수입	1원-40만원	3	4.6	월 평균 지출	1원-40만원	4	6.2
	41만원-80만원	5	7.7		41만원-80만원	5	7.7
	81만원-120만원	11	16.9		81만원-120만원	3	4.6
	121만원-200만원	11	16.9		121만원-200만원	16	24.6
	200만원 이상	29	44.6		200만원 이상	28	43.1
	무응답	6	9.2		무응답	9	13.8
	합계	65	100.0		합계	65	100.0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의 지출 순위에 관한 사항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하였으며, 가중치를 중심으로 보면 총 313개의 빈도에서 교육비 36.4%(79개), 식료품비 25.2%(79개), 의료비 13%(41개), 주거광열비 6.7%(21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교육비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별 측면에서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 및 청소년의 비율이 53.8%나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2-113> 지출순위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산 합계		가중합산 합계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식료품비	14	21.5	14	21.5	9	13.8	37	23.7	79	25.2
교육비	27	41.5	14	21.5	5	7.7	46	29.5	114	36.4
의료비	6	9.2	7	10.8	9	13.8	22	14.1	41	13.0
주거광열비	2	3.1	6	9.2	3	4.6	11	7.0	21	6.7
교통비/차량유지비	1	1.5	1	1.5	10	15.4	12	7.7	15	4.8
사회활동 및 조사비	0	0.0	3	4.6	3	4.6	6	3.8	9	2.9
여가문화생활비	0	0.0	2	3.1	4	6.2	6	3.8	8	2.6
빛 값는 비용	0	0.0	1	1.5	7	10.8	8	5.1	9	2.9
재테크 및 금융	3	4.6	2	3.1	2	3.1	7	4.5	15	4.8
기타	0	0.0	1	1.5	0	0.0	1	0.6	2	0.6
무응답	7	10.8	14	21.5	13	20.0				
합계	65	100.0	65	100.0	65	100.0	156	100.0	313	100.0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비수급) 63.1%(41명), 기초생활수급자 12.3%(8명), 차상위계층 7.7%(5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 장애유형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유형이었다.

<표 3-2-114> 수급자 현황

(n=65)			
구 분	빈 도	퍼센트(%)	
수급자 현황	기초생활수급자	8	12.3
	차상위 계층	5	7.7
	그 외(일반)	41	63.1
	잘 모름	6	9.2
	기타	3	4.6
	무응답	2	3.1
	합계	65	100.0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의 가족과의 관계 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매우 좋다'가 50.8%(33명), '조금 좋다'가 32.3%(21명), '조금 나쁘다'가 12.3%(8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관계가 82.3%로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 수준이 타 영역에 비해서 높은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115> 가족관계 정도

(n=65)			
구 분	빈 도	퍼센트(%)	
가족관계 정도	조금 나쁘다	8	12.3
	조금 좋다	21	32.3
	매우 좋다	33	50.8
	무응답	3	4.6
	합계	65	100.0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의 연령대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 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가 30.8%(20명), '일부 남의 도움 필요'가 29.2%(19명), '대부분 일상생활 가능'이 15.4%(10명), '거의 남의 도움 필요'가 12.3%(8명), '모든 일상생활 가능'이 9.2%(6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72.3%가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가 50%(4명), '거의 남의 도움 필요'가 25%(2명), '모든 일상생활 가능'과 '대부분 일상생활 가능'이 각각 12.5%(1명)로 나타났다. 취학아동 및 청소년

년의 경우,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가 33.3%(9명), '일부 남의 도움 필요'가 29.6%(8명), '거의 남의 도움 필요'가 18.5%(5명), '대부분 일상생활 가능'이 14.8%(4명), '모든 일상생활 가능'이 3.7%(1명)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일부 남의 도움 필요'가 36.7%(11명),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가 23.3%(7명),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이 16.7%(5명), '모든 일상생활가능'이 13.3%(4명)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취학아동 및 청소년, 미취학, 성인기 순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16> 연령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n=65)			
구 분	빈 도	퍼센트(%)	
전체	모든 일상생활 가능	6	9.2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10	15.4
	일부 남의 도움 필요	19	29.2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20	30.8
	거의 남의 도움 필요	8	12.3
	무응답	2	3.1
	합계	65	100.0
미취학아동 (0세~7세)	모든 일상생활 가능	1	12.5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1	12.5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4	50.0
	거의 남의 도움 필요	2	25.0
	합계	8	100.0
취학아동 (8세~19세)	모든 일상생활 가능	1	3.7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4	14.8
	일부 남의 도움 필요	8	29.6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9	33.3
	거의 남의 도움 필요	5	18.5
합계	27	100.0	
성인 (20세 이상)	모든 일상생활 가능	4	13.3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5	16.7
	일부 남의 도움 필요	11	36.7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7	23.3
	거의 남의 도움 필요	1	3.3
	무응답	2	6.7
	합계	30	100.0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을 주로 도와주는 사람에 관한 사항으로 부모가 66%(31명), 유료활동보조인이 4.3%(2명)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주로 돕는 사람 중 가족이 70.2%로 대부분의 도움을 가족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17> 주로 도와주는 사람

(n=47)

구 분	빈 도	퍼센트(%)	
도와주는 사람	배우자	1	2.1
	부모	31	66.0
	조부모	1	2.1
	유료가정봉사원	1	2.1
	유료 활동보조인	2	4.3
	무료 활동보조인	1	2.1
	기타	2	4.3
	무응답	7	14.9
	합계	47	100.0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의 도움충분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편이다'가 51.1%(24명), '충분한 편이다'가 27.7%(13명), '매우 부족하다'가 17%(8명), '매우 충분한 편이다'가 2.1%(1명)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부족한 편이다'가 50%(3명), '충분한 편이다'가 33.3%(2명), '매우 부족하다'가 16.7%(1명)로 나타났다. 취학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부족한 편이다'가 59.1%(13명), '충분한 편이다'가 27.3%(6명), '매우 부족하다'가 13.6%(3명)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부족한 편이다'가 42.1%(8명), '충분한 편이다'가 26.3%(5명), '매우 부족하다'가 21.1%(4명), '매우 충분한 편이다'가 5.3%(1명)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도움의 충분도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학아동 및 청소년, 미취학, 성인기 순으로 도움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3-2-118> 도움충분정도

(n=47)

구 분	빈 도	퍼센트(%)	
전체	매우 부족하다	8	17.0
	부족한 편이다	24	51.1
	충분한 편이다	13	27.7
	매우충분한 편이다	1	2.1
	무응답	1	2.1
	합계	47	100.0
미취학아동 (0세~7세)	매우 부족하다	1	16.7
	부족한 편이다	3	50.0
	충분한 편이다	2	33.3
	합계	6	100.0
취학아동 (8세~19세)	매우 부족하다	3	13.6
	부족한 편이다	13	59.1
	충분한 편이다	6	27.3
	합계	22	100.0
성인 (20세 이상)	매우 부족하다	4	21.1
	부족한 편이다	8	42.1
	충분한 편이다	5	26.3
	매우충분한 편이다	1	5.3
	무응답	1	5.3
	합계	19	100.0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중증 46.2%(30명), 경중 26.2%(17명), 완전자립 21.5%(14명)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중증 62.5%(5명), 완전자립과 경중이 각각 12.5%(1명)로 나타났다. 취학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중증 55.6%(15명), 경증 25.9%(7명), 완전자립 14.8%(4명)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완전자립과 경증이 각각 30%(9명), 중증이 33.3%(10명)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결과는 일상생활능력에 있어 완전자립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3-2-119>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n=65)			
구분	빈도	퍼센트(%)	
전체	완전자립(이상없음)	14	21.5
	정도약함(경증)	17	26.2
	정도심함(중증)	30	46.2
	무응답	4	6.2
	합계	65	100.0
미취학아동 (0세~7세)	완전자립(이상없음)	1	12.5
	정도약함(경증)	1	12.5
	정도심함(중증)	5	62.5
	무응답	1	12.5
	합계	8	100.0
취학아동 (8세~19세)	완전자립(이상없음)	4	14.8
	정도약함(경증)	7	25.9
	정도심함(중증)	15	55.6
	무응답	1	3.7
	합계	27	100.0
성인 (20세 이상)	완전자립(이상없음)	9	30.0
	정도약함(경증)	9	30.0
	정도심함(중증)	10	33.3
	무응답	2	6.7
	합계	30	100.0

(2) 기관 이용현황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정도, 이용 경험 여부, 이용 희망 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서비스 제공기관 인지여부는 장애인복지관 98%(48명),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92.6%(50명), 유아교육기관 88.1%(37명), 이동지원 서비스센터 78.7%(37명), 직업재활시설 66.7%(32명) 순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94.8%(55명),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74.1%(43명), 유아교육기관 62.5%(30명), 특수교육 지원센터 50.9%(28명), 재활 병·의원 30.2%(16명)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경험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용 희망여부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94.2%(49명),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82%(41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78.8%(41명), 장애인고용촉진공단 78.4%(40명),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과 직업재활시설 74.5%, 특수교육 지원센터 72%(36명)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지적장애인들의 교육관련 기관과 직업관련 기관에 대한 이용욕구가 큰 것으로 보인다.

<표 3-2-120> 기관 이용 현황

기관명	(n=65)					
	인지여부		이용경험여부		이용희망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50(92.6)	4(7.4)	43(74.1)	15(25.9)	30(66.7)	15(33.3)
특수교육 지원센터	33(66.0)	17(34.0)	28(50.9)	27(49.1)	36(72.0)	14(28.0)
유아교육기관	37(88.1)	5(11.9)	30(62.5)	18(37.5)	16(47.1)	18(52.9)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34(68.0)	16(32.0)	19(36.5)	33(63.5)	41(82.0)	9(18.0)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26(55.3)	21(44.7)	15(28.8)	37(71.2)	38(74.5)	13(25.5)
장애인복지관	48(98.0)	1(2.0)	55(94.8)	3(5.2)	49(94.2)	3(5.8)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8(58.3)	20(41.7)	9(17.3)	43(82.7)	41(78.8)	11(21.2)
직업재활시설	32(66.7)	16(33.3)	11(21.2)	41(78.8)	38(74.5)	13(25.5)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43.2)	25(56.8)	7(13.7)	44(86.3)	40(78.4)	11(21.6)
장애인생활시설	27(57.4)	20(42.6)	6(12.5)	42(87.5)	29(60.4)	19(39.6)
중증장애인요양시설	23(48.9)	24(51.1)	1(2.0)	48(98.0)	14(29.2)	34(70.8)

기 관 명	인지여부		이용경험여부		이용희망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23(48.9)	24(51.1)	8(16.0)	42(84.0)	8(19.0)	34(81.0)
그룹홈(공동생활가정)	27(55.1)	22(44.9)	5(9.4)	48(90.6)	22(45.8)	26(54.2)
주간·단기 보호시설	29(64.4)	16(35.6)	14(27.5)	37(72.5)	22(46.8)	25(53.2)
장애인전용체육관	12(26.1)	34(73.9)	4(7.7)	48(92.3)	35(70.0)	15(30.0)
지역사회중산재활(CBR)사업(보건소)	17(37.0)	29(63.0)	10(20.0)	40(80.0)	32(71.1)	13(28.9)
재활 병·의원	25(53.2)	22(46.8)	16(30.2)	37(69.8)	30(63.8)	17(36.2)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16(34.0)	31(66.0)	6(11.8)	45(88.2)	27(57.4)	20(42.6)
이동지원서비스센터	37(78.7)	10(21.3)	7(13.2)	46(86.8)	25(52.1)	23(47.9)
심부름센터	11(23.4)	36(76.6)	3(5.7)	50(94.3)	24(50.0)	24(50.0)
교통안전공단	12(25.0)	36(75.0)	1(1.9)	53(98.1)	26(53.1)	23(46.9)
사회복지시설	12(24.5)	37(75.5)	5(10.2)	44(89.8)	17(37.8)	28(62.2)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12(27.3)	32(72.7)	0(0.0)	47(100.0)	8(20.0)	32(80.0)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15(35.7)	27(64.3)	0(0.0)	43(100.0)	7(18.4)	31(81.6)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10(22.2)	35(77.8)	1(2.1)	46(97.9)	9(20.9)	34(79.1)

(3) 연령별 서비스 현황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 중 미취학 아동(0세-7세)의 서비스 미충족률에 관한 사항이다. 미취학 아동기에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미충족률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시설보호관련 욕구 미충족률,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등 바우처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동물매개치료의 경우는 프로그램이 없어서인지 미충족율이 100%로 나타났다. 주간보호와 단기보호와 같은 시설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미충족율도 100%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 역시 양천구 차원에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표 3-2-121> 미취학아동기(0세~7세) 서비스 미충족률

(n=8)

사 업 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
	필요 (%)	불필요 (%)	이용 (%)	비이용 (%)	
조기특수교육	6(75.0)	2(25.0)	4(66.7)	2(33.3)	33.3
부모교육(자녀 양육교육)	7(87.5)	1(12.5)	4(57.1)	3(42.9)	42.9
장애이해교육(부모/형제)	7(87.5)	1(12.5)	3(42.9)	4(57.1)	57.1
물리치료	6(85.7)	1(14.3)	1(16.7)	5(83.3)	83.3
언어치료(의사소통훈련)	7(100.0)	0(0.0)	5(71.4)	2(28.6)	28.6
심리치료(놀이치료)	7(100.0)	0(0.0)	3(42.9)	4(57.1)	57.1
작업치료	8(100.0)	0(0.0)	4(50.0)	4(50.0)	50.0
음악치료	7(100.0)	0(0.0)	6(85.7)	1(14.3)	14.3
미술치료	7(100.0)	0(0.0)	3(42.9)	4(57.1)	57.1
동물매개치료	5(71.4)	2(28.6)	0(0.0)	5(100.0)	100.0
장애전담 어린이집/통합 어린이 집	5(71.4)	2(28.6)	5(100.0)	0(0.0)	0.0
주간보호	2(28.6)	5(71.4)	0(0.0)	2(100.0)	100.0
단기보호	1(14.3)	6(85.7)	0(0.0)	1(100.0)	100.0
진로상담(진학상담 등)	4(57.1)	3(42.9)	0(0.0)	4(100.0)	100.0
건강관리	5(71.4)	2(28.6)	2(40.0)	3(60.0)	60.0
활동보조서비스	5(71.4)	2(28.6)	2(40.0)	3(60.0)	60.0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3(42.9)	4(57.1)	0(0.0)	3(100.0)	100.0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4(57.1)	3(42.9)	0(0.0)	4(100.0)	100.0
여가활동	5(71.4)	2(28.6)	1(20.0)	4(80.0)	80.0
체육활동	6(85.7)	1(14.3)	2(33.3)	4(66.7)	66.7
체력단련실 등 장소 이용	5(71.4)	2(28.6)	0(0.0)	5(100.0)	100.0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1(16.7)	5(83.3)	0(0.0)	1(100.0)	100.0
청력검사/훈련	1(14.3)	6(85.7)	0(0.0)	1(100.0)	100.0
기타 내용	인지치료, 감각통합치료,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와 가사·간병서비스의 미충족율에 대한 설명은 전체 장애인 결과 참조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 중 취학아동 및 청소년(8세-19세)의 서비스 미충족률에 관한 사항이다. 취학아동 및 청소년기에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한 결과를 미충족률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시설보호에 관한 욕구 미충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각종 치료에 대한 욕구 미충족, 그리고 교육관련 욕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 서비스에 있어서는 그룹홈에 대한 욕구가 높아서 미충족율이 100%이었다.

<표 3-2-122> 취학아동 및 청소년기(8세~19세) 서비스 현황

(n=27)

사 업 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
	필요 (%)	불필요 (%)	이용 (%)	비이용 (%)	
특수학교	22(91.7)	2(8.3)	14(63.6)	8(36.4)	36.4
특수학급	22(100.0)	0(0.0)	13(59.1)	9(40.9)	40.9
학교 방과 후 활동	23(100.0)	0(0.0)	18(78.3)	5(21.7)	21.7
정보화 교육	23(95.8)	1(4.2)	8(34.8)	15(65.2)	65.2
부모교육(자녀 양육교육)	23(100.0)	0(0.0)	4(17.4)	19(82.6)	82.6
인권 교육	23(100.0)	0(0.0)	3(13.0)	20(87.0)	87.0
학습지원 활동	32(95.8)	1(4.2)	7(30.4)	16(69.6)	69.6
일상생활훈련	20(90.9)	2(9.1)	3(15.0)	17(85.0)	85.0
물리치료	13(56.5)	10(43.5)	1(7.7)	12(92.3)	92.3
언어치료	21(87.5)	3(12.5)	7(33.3)	14(66.7)	66.7
심리치료(놀이치료)	21(87.5)	3(12.5)	4(19.0)	17(81.0)	81.0
작업치료	18(78.3)	5(21.7)	2(11.1)	16(88.9)	88.9
음악치료	23(95.8)	1(4.2)	5(21.7)	18(78.3)	78.3
미술치료	21(91.3)	2(8.7)	2(9.5)	19(90.5)	90.5
동물매개치료	16(72.7)	6(27.3)	0(0.0)	16(100.0)	100.0
주간보호	15(68.2)	7(31.8)	1(6.7)	14(93.3)	93.3

사 업 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
	필요 (%)	불필요 (%)	이용 (%)	비이용 (%)	
단기보호	15(65.2)	8(34.8)	1(6.7)	14(93.3)	93.3
그룹홈	17(73.9)	6(26.1)	0(0.0)	17(100.0)	100.0
장기시설보호	3(60.0)	2(40.0)	0(0.0)	3(100.0)	100.0
진로상담	24(100.0)	0(0.0)	1(4.2)	23(95.8)	95.8
건강관리	25(100.0)	0(0.0)	6(24.0)	19(76.0)	76.0
성교육/성상담	25(100.0)	0(0.0)	2(8.0)	23(92.0)	92.0
활동보조서비스	20(90.9)	2(9.1)	7(35.0)	13(65.0)	65.0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17(77.3)	5(22.7)	1(5.9)	16(94.1)	94.1
테마캠프	22(100.0)	0(0.0)	5(22.7)	17(77.3)	77.3
여가활동	21(95.5)	1(4.5)	8(38.1)	13(61.9)	61.9
체육활동	23(95.8)	1(4.2)	6(26.1)	17(73.9)	73.9
문화활동	21(95.5)	1(4.5)	4(19.0)	17(81.0)	81.0
체력단련실 등 장소 이용	23(100.0)	0(0.0)	6(26.1)	17(73.9)	73.9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9(42.9)	12(57.1)	1(11.1)	8(88.9)	88.9
청력검사/훈련	11(50.0)	11(50.0)	0(0.0)	11(100.0)	100.0

응답 대상 장애인 중 성인기(20세 이상)의 서비스 미충족률에 관한 사항이다. 성인기에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한 결과를 미충족률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물리치료와 언어치료와 같은 치료관련 미충족율이 100%였고, 다음으로 각종 바우처(노인 돌보미,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돌보미)서비스 역시 평균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관련 서비스(인문학 교육, 인권 교육, 정보화 교육 등) 미충족률도 매우 높았다.

<표 3-2-123> 성인기(20세 이상) 서비스 현황

사 업 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
	필요 (%)	불필요 (%)	이용 (%)	비이용 (%)	
인문학 교육	10(52.6)	9(47.4)	1(10.0)	9(90.0)	90
인권 교육	16(84.2)	3(15.8)	2(12.5)	14(87.5)	87.5
정보화교육	20(83.3)	4(16.7)	2(10.0)	18(90.0)	90
일상생활훈련	18(94.7)	1(5.3)	14(77.8)	4(22.2)	22.2
직업상담	19(95.0)	1(5.0)	12(63.2)	7(36.8)	36.8
직업능력 평가	17(89.5)	2(10.5)	9(52.9)	8(47.1)	47.1
취업 준비 훈련	18(94.7)	1(5.3)	7(38.9)	11(61.1)	61.1
보호 작업	17(85.0)	3(15.0)	8(47.1)	9(52.9)	52.9
취업 후 지원	16(94.1)	1(5.9)	3(18.8)	13(81.3)	81.3
취업알선	17(89.5)	2(10.5)	5(29.4)	12(70.6)	70.6
물리치료	12(63.2)	7(36.8)	0(0.0)	12(100.0)	100
언어치료(의사소통훈련)	13(72.2)	5(27.8)	0(0.0)	13(100.0)	100
심리치료(원예치료/댄스치료/드라마치료)	17(94.4)	1(5.6)	6(35.3)	11(64.7)	64.7
작업치료	14(87.5)	2(12.5)	5(35.7)	9(64.3)	64.3
주간보호	13(68.4)	6(31.6)	9(69.2)	4(30.8)	30.8
단기보호	9(60.0)	6(40.0)	3(33.3)	6(66.7)	66.7
그룹홈	12(70.6)	4(29.4)	3(25.0)	9(75.0)	75
결혼상담	11(57.9)	8(42.1)	1(9.1)	10(90.9)	90.9
성교육/성상담	17(89.5)	2(10.5)	9(52.9)	8(47.1)	47.1
활동보조서비스	13(68.4)	6(31.6)	4(30.8)	9(69.2)	69.2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7(38.9)	11(61.1)	0(0.0)	7(100.0)	100
노인 돌봄 서비스	7(41.2)	10(58.8)	0(0.0)	7(100.0)	100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	6(37.5)	10(62.5)	1(16.7)	5(83.3)	83.3
이동목욕서비스	6(35.3)	11(64.7)	0(0.0)	6(100.0)	100
이·미용서비스	12(66.7)	6(33.3)	1(8.3)	11(91.7)	91.7
여가활동	19(95.0)	1(5.0)	11(57.9)	8(42.1)	42.1
체육활동	17(89.5)	2(10.5)	7(41.2)	10(58.8)	58.8
문화활동	18(94.7)	1(5.3)	4(22.2)	14(77.8)	77.8
체력단련실 등 장소이용	19(95.0)	1(5.0)	7(36.8)	12(63.2)	63.2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6(35.3)	11(64.7)	0(0.0)	6(100.0)	100

(n=65)

(4) 기타 서비스 욕구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의 취업여부는 전체 응답자 중 성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취업여부는 미취업 60%(18명), 취업이 26.7%(5명)로 나타났다. 미취업이 60%로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장애유형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표 3-2-124> 현재 취업여부

(n=30)

구 분		빈 도	퍼센트(%)
취업여부	취업	5	16.7
	미취업	18	60.0
	무응답	7	23.3
	합계	30	100.0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의 취업분야에 관해 응답한 사람은 5명으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2-125> 취업 분야

(n=5)

구 분		빈 도	퍼센트(%)
분야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1	20.0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	1	20.0
	기타	3	60.0
	합계	5	100.0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의 취업분야에서의 현재 직무에 대해 응답한 사람은 5인으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2-126> 현재 직무

구분	빈도	퍼센트(%)
핸드폰 아답터 조립	1	1.5
어린이집 보조	1	1.5
어린이집 보조도우미	1	1.5
주방 설거지	1	1.5
청소원	1	1.5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의 취업현장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해 응답한 사람은 5인으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2-127> 근무기간

구분	빈도	퍼센트(%)	
근무기간	6개월 미만	2	40.0
	6개월 ~ 1년	1	20.0
	2년 ~ 5년 미만	1	20.0
	5년 이상	1	20.0
	합계	5	100.0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의 취업현장에서의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가 56.7%(17명), '고려하고 있다'가 20%(6명)로 나타났다.

<표 3-2-128>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고려	6	20
	미고려	17	56.7
	무응답	7	23.3
	합계	30	100.0

응답 대상 장애인의 구직과 이직 희망 업종에 관해 응답한 사람은 65명이거나 무응답이 59명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이 많은 이유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보호작업장이나 보

호작업 시설에서 일하는 것 외에 직업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2-129> 구직과 이직 희망 업종

구분	빈도	퍼센트(%)	
희망일자리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원예업	1	1.5
	자영업	2	3.1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	1	1.5
	기타	2	3.1
	무응답	59	90.8
	합계	65	100.0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의 희망급여에 관해 응답한 사람은 6인으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2-130> 희망급여

구분	빈도	퍼센트(%)	
희망급여	49만원 이하	1	16.7
	50만원~99만원	4	66.7
	100만원~149만원	1	16.7
	합계	6	100.0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의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 때문에 52.9%, 일자리가 없어서 17.6%로 나타났다.

<표 3-2-131> 구직활동 않는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구직활동 않는 이유	장애 때문에	9	52.9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3	17.6
	기타	2	11.8
	무응답	3	17.6
	합계	17	100.0

다중응답으로 질문한 것으로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인지하는 경로에 관한 사항으로 이웃 및 친지 30.9%(29개), 사회복지기관 26.6%(25개), 방송 및 언론매체와 인쇄매체(전단지 등)가 각각 10.6%(10개), 공무원 6.4%(6개)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32> 서비스 인지경로

(n=65)			
구 분		빈 도	퍼센트(%)
서비스 인지경로	인쇄매체(전단지 등)	10	10.6
	이웃 및 친지	29	30.9
	방송 및 언론매체	10	10.6
	공무원	6	6.4
	사회복지기관	25	26.6
	기타	6	6.4
	무응답	8	8.5
	합계	94	100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동거리 30.6%(97개), 프로그램 전문성 27.8%(88개), 서비스 내용 13.2%(42개), 이용료 12.9%(41개), 이용가능기간 9.8%(31개)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33> 서비스 선택기준

(n=65)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산 합계		가중합산 합계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이동거리	23	35.4	8	12.3	12	18.5	43	27.2	97	30.6
시설규모	0	0.0	4	6.2	4	6.2	8	5.1	12	3.8
이용료	6	9.2	9	13.8	5	7.7	20	12.7	41	12.9
인지도	1	1.5	1	1.5	1	1.5	3	1.9	6	1.9
이용가능 기간	2	3.1	8	12.3	9	13.8	19	12.0	31	9.8
프로그램의 전문성	16	24.6	15	23.1	10	15.4	41	25.9	88	27.8
서비스 내용	5	7.7	8	12.3	11	16.9	24	15.2	42	13.2
무응답	12	18.5	12	18.5	13	20.0				
합계	65	100.0	65	100.0	65	100.0	158	100	317	100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이 문화/체육/관광 관련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기회(음악/미술 등) 확대가 35.4%(23명), 방문기회(공연장, 전시장 등) 확대가 16.9%(11명), 동아리활동 기회 확대 9.2%(6명), 테마관광 기회 확대 4.6%(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기회의 확대가 방문기회의 확대보다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 및 청소년의 표본 수가 성인보다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타사항으로 18세 이상에게도 언어치료의 기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알선, 생활훈련, 심리활동, 언어치료, 인지학습이나 결혼준비, 체육활동, 치료, 활동량 많은 운동프로그램 참여로 응답하였다.

<표 3-2-134> 연령별 필요한 서비스

(n=65)			
구 분		빈 도	퍼센트(%)
전체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11	16.9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23	35.4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 기회확대	6	9.2
	(역사/생태 등)테마관광 기회확대	3	4.6
	기타	9	13.8
	무응답	13	20.0
	합계	65	100.0
미취학 아동 (0세~7세)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2	25.0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4	50.0
	기타	2	25.0
	합계	8	100.0
취학 아동 (0세~19세)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3	11.1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12	44.4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 기회확대	5	18.5
	기타	3	11.1
	무응답	4	14.8
합계	27	100.0	
성인 (20세 이상)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6	20.0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7	23.3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 기회확대	1	3.3
	(역사/생태 등)테마관광 기회확대	3	10.3
	기타	4	13.3
	무응답	9	30.0
	합계	30	100.0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의 자택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이유에 관한 사항으로 동의가 53.8%(35명), 반대가 27.7%(18명)로 나타났다.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하여 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도움이 필요 없다, 자원봉사자가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 자원봉사자들의 자질(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2-135> 자택 자원봉사활동 동의 여부/반대이유

구 분		빈 도	퍼센트(%)
자택 자원 봉사 활동	동의	35	53.8
	비동의	18	27.7
	무응답	12	18.5
	합계	65	100.0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이 생각하는 인식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비장애 통합 프로그램 운영 32.3%(21명), 인식개선 교육 23.1%(15명), 홍보 13.8%(9명), 장애인의 지역 사회행사 참여 7.7%(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36> 인식개선방안

구 분		빈 도	퍼센트(%)
인식 개선 방안	홍보(캠페인, 방송 등)	9	13.8
	인식개선 교육	15	23.1
	장애인의 지역행사참여	5	7.7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 운영	21	32.3
	기타	1	1.5
	무응답	14	21.5
	합계	65	100.0

응답 대상 지적장애인이 생각하는 생활에 있어 할인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병원 43.1%(28명), 영화관/스포츠/공연장 등 10.8%(7명), 학원과 식당이 6.2%(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37> 할인혜택 분야

구 분		빈 도	퍼센트(%)
할인혜택분야	병원	28	43.1
	식당	4	6.2
	영화/스포츠/공연장	7	10.8
	학원	4	6.2
	차량정비	2	3.1
	기타	6	9.2
	무응답	14	21.5
	합계	65	100.0

응답 대상 장애인의 집수리 필요 및 희망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별로 고치고 싶지 않다'가 35.4%(23명), '가급적 고치고 싶다'가 16.9%(11명), '전혀 고치고 싶지 않다'가 15.4%(10명), '반드시 고치고 싶다'가 6.2%(4명) 순으로 나타났다. 집수리 내용으로는 인테리어(도배, 아이 방을 밝게 고치고 싶음, 채광이 잘 되도록), 화장실과 현관 문턱 제거 등이었다.

<표 3-2-138> 집수리 여부/희망내용

구 분		빈 도	퍼센트 (%)
집 개 조	반드시 고치고 싶다	4	6.2
	가급적 고치고 싶다	11	16.9
	별로 고치고 싶지 않다	23	35.4
	전혀 고치고 싶지않다	10	15.4
	기타	1	1.5
	무응답	16	24.6
	합계	65	100.0
집수리 희망내용	인테리어: 도배, 아이 방을 밝게 고치고 싶음, 채광이 잘 되도록 화장실과 현관의 문턱 제거 위험하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5) 소결

본 조사에 응답한 지적장애인 6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지적장애인 영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 특이사항을 정리해 보면 첫째, 미혼이 전체응답자의 93.8%로 나타났다. 둘째 일부라도 도움이 필요한 응답자가 72.3%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가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었으며, 도움충분정도에 있어서는 68.%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을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자립이 21.5% 중증과 중증이 72.4%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결과는 일상생활능력이 있어 완전자립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이용현황을 통해서 지적장애인들의 교육관련 기관과 직업관련 기관에 대한 이용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지적장애인들의 특성상 활동치료(언어치료, 물리치료, 심리치료, 작업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가 많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욕구 미충족률이 있어 다른 부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프로그램에 우선하여 다양한 활동치료를 먼저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실제 현재 양천구종합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치료 프로그램 이용하고 있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측면에서 미충족률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 시설보호관련 욕구 미충족률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등에 대한 미충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아동 및 청소년은 시설보호에 관한 욕구, 각종 치료에 대한 욕구, 그리고 교육관련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성인은 직업관련 욕구 미충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인돌보미,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돌보미와 같은 돌봄서비스와 교육관련 서비스 미충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욕구 중에서 교육에 대한 욕구가 앞서 살펴본 지적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욕구의 흐름과 궤를 달리하는 것은 지적장애 유형의 특성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해 사회성과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반복학습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미충족율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달라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기타 서비스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미취업이 60%로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서비스를 선택기준은 이동거리, 프로그램 전문성, 서비스 내

용, 이용료, 이용 가능기간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대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필요한 서비스는 주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서비스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택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장애영역과는 다르게 53.0%가 장애인 자택에서의 자원봉사활동에 동의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다섯째, 장애인이 생활에 있어 할인이 필요한 분야에 병원 43.1%, 영화관등 10.8로 나타났다.

(6) 인터뷰 자료

인터뷰 대상(1)	남성(연령 안발함), 지적장애
의료분야 (재활)	- 지금은 언어치료만 받고 있는 데 미술이나 음악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같이 받고 싶다. 지적장애의 특성상 다양한 교육이나 치료가 아동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데, 경제적 부담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 -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대기 기간이 너무 길다. 지금의 아동의 경우도 4살 때 등록해서 7살 때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기다리는 3년 동안 사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았는데, 경제적 여건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동 (편의시설)	- 집과 복지관과의 거리가 멀다.
여가	- 아이의 장애 때문에 여가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다.
기타	- 일하는 여성으로 아이를 맡기기가 쉽지 않다. -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다. 복지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

인터뷰 대상(2)	남성(13세), 지적장애
주거 (생활시설)	- 집에서는 불편하지 않지만, 바깥에서는 많이 불편하다.
의료분야 (재활)	- 치료비부담이 가장 힘들다.
이동 (편의시설)	- 버스와 지하철을 주로 이용한다. 지하철은 이용 시 계단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 복지관의 위치가 대로변에 있거나 버스타고 내리기 편한 곳에 위치하였으면 좋겠다.
여가	- 취미생활로 연극 보기와 음악 듣기를 좋아한다. - 아이가 야외학습을 갈 때 또는 수학여행을 갈 때 보조교사가 도와주거나 활동 도우미가 있었으면 한다.
기타	- 복지관에서 집단치료를 받기를 원한다.

인터뷰 대상(3)	남성(21세), 지적장애
주거 (생활시설)	- 집에서는 불편한 것은 없다.
노동 (직업활동)	- 취직하는 데 있어서 힘이 부족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 전등 같은 것을 조립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
의료분야 (재활)	- 복지관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것은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교육	- 현재 받고 있는 직업교육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이동 (편의시설)	- 처음에 복지관까지 부모님과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혼자서 버스타고 다닌다.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람이 많으면 늦게 내릴 수 있다. - 직장을 구하게 되면 교통수단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가	- 제주도 여행 가보고 싶다. - 자전거 타고 싶다. 발작 때문에 자전거 타기 어렵다.
기타	- 복지관에서 직업에 필요한 교육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

4) 자폐성장애인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양천구 거주 장애인인 중 설문에 응답한 자폐성장애인(총 27명)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간단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응답자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27명의 응답자 중 본인 응답 3%(1명)이고, 기타 응답자 중에서 어머니 응답이 21명이었다.

<표 3-2-139> 응답자

(n=27)

구 분		빈 도	퍼센트(%)
응답자	본인	1	3.7
	기타	26	96.3
	무응답	0	0.0
	합계	27	100.0
기타 내용	어머니	21	77.8
	기타	5	18.5
	합계	26	96.3

<표 3-2-140> 장애등급/연령

(n=27)

구 분		빈 도	퍼센트(%)
장애등급	1급	20	74.1
	2급	6	22.2
	3급	1	3.7
	합계	27	100
연령	미취학아동(0세~7세)	1	3.7
	취학아동(8세~19세)	20	74.1
	성인(20세 이상)	6	22.2
	합계	27	100

응답 대상 자폐성장애인의 장애 등급 및 연령으로 장애등급에 있어서는 1급 74.1%(20명), 2급 22.2%(6명), 3급 3.7%(1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미취학 3.7%(1명), 취학아동 74.1%(20명), 성인 22.2%(6명)로 나타났다. 주로 취학아동 및 청소년이 응답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응답 대상 자폐성장장애인의 학력, 성별, 결혼에 관한 사항으로 학력은 초등학교 63%(17명),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11.1%(3명) 유치원/어린이집과 전문대가 각각 3.7%(1명)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81.5%(22명), 여자 18.5%(5명)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에 대해서는 미혼 92.6%(25명), 기혼 7.7%(2명)이었다. 미성년자들이 대부분이라 미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2-141> 학력/성별/결혼

(n=27)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 분		빈 도	퍼센트(%)
학력	미취학	0	0.0	성별	남자	22	81.5
	유치원/어린이집	1	3.7		여자	5	18.5
	초등학교	17	63.0		무응답	0	0.0
	중학교	3	11.1		합계	27	100.0
	고등학교	3	11.1	결혼	기혼	2	7.4
	(전문)대학	1	3.7		미혼	25	92.6
	무학	0	0.0		기타	0	0.00
	기타	1	3.7		무응답	0	0.0
	무응답	1	3.7		합계	27	100.0
	합계	27	100.0				

<표 3-2-142> 동거인

(n=27)			
구 분		빈 도	퍼센트(%)
동거인	배우자	3	3.7
	어머니	24	29.6
	아버지	23	28.4
	할아버지	1	1.2
	할머니	5	6.2
	형제	17	21.0
	자매	3	3.7
	자녀	2	2.5
	손자녀	0	0.0
	친척	2	2.5
	기타	0	0.0
	무응답	1	1.2
합계	81	100.0	

다중응답으로 질문한 자폐성장장애인의 동거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총 81명의 빈도 중에서 어머니 29.6%(24개), 아버지 28.4%(23개), 형제 21%(17개), 할머니 6.2%(5개)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 대상 자폐성장장애인의 주택소유에 관한 사항으로 자기소유 48.1%(13명), 전세 37%(10명), 월세 3.7%(1명) 등으로 나타났다.

<표 3-2-143> 주택소유 형태

(n=27)			
구 분		빈 도	퍼센트(%)
주택소유 형태	자기소유	13	48.1
	전세	10	37.0
	월세	1	3.7
	기타	2	7.4
	무응답	1	3.7
	합계	27	99.9

응답 대상 장애인의 월평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응답자의 연령 등을 볼 때 자폐성장장애인의 당사자의 수입과 지출이라기보다는 가구원의 수입으로 보인다. 월평균 수입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상 55.6%(15명), 41만원-80만원과 121만원-200만원의 경우가 각각 3.7%(1명)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지출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상이 44.4%(12명), 121만원-200만원이 18.5%(5명), 41만원-80만원이 7.4%(2명) 순이었다.

<표 3-2-144> 월평균 수입/지출

(n=27)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 분		빈 도	퍼센트(%)
월평균 수입	1원-40만원	0	0.0	월평균 지출	1원-40만원	0	0.0
	41만원-80만원	1	3.7		41만원-80만원	2	7.4
	81만원-120만원	0	0.0		81만원-120만원	0	0.0
	121만원-200만원	1	3.7		121만원-200만원	5	18.5
	200만원 이상	15	55.6		200만원 이상	12	44.4
	무응답	10	37.0		무응답	8	29.7
	합계	27	100.0		합계	27	100

응답 대상 자폐성장장애인의 지출 순위에 관한 사항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하였으며, 가중치를 중심으로 보면 교육비 42.1%(59개), 식료품비 23.6%(33개), 교통비/차량유지비 7.1%(10개), 빛 값는 비용 5.7%(8개) 순이었다. 교육비의 비중이 높은 중요한 이유는 앞서 지적장애인의 경우처럼 미성년자들이 표집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교육비의 비중을 높이고, 식료품비나 주거광열비의 비중을 낮추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2-145> 지출순위

(n=27)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산 합계		가중합산 합계	
	빈도	퍼센트 (%)	빈도	퍼센트 (%)	빈도	퍼센트 (%)	빈도	퍼센트 (%)	빈도	퍼센트 (%)
식료품비	3	11.1	10	37.0	4	14.8	17	24.6	33	23.6
교육비	17	63.0	4	14.8	0	0.0	21	30.4	59	42.1
의료비	2	7.4	2	7.4	4	14.8	8	11.6	14	10.0
주거광열비	1	3.7	1	3.7	2	7.4	4	5.8	7	5.0
교통비/차량유지비	0	0.0	2	7.4	6	22.2	8	11.6	10	7.1
사회활동 및 조사비	0	0.0	0	0.0	1	3.7	1	1.4	1	0.7
여가문화생활비	0	0.0	0	0.0	1	3.7	1	1.4	1	0.7
빛 값는 비용	0	0.0	2	7.4	4	14.8	6	8.7	8	5.7
재테크 및 금융	0	0.0	1	3.7	0	0.0	1	1.4	2	1.4
기타	1	3.7	1	3.7	0	0.0	2	2.9	5	3.6
무응답	3	11.1	4	14.8	5	18.5	5	18.5	5	18.5
합계	27	100.0	27	99.9	27	99.9	69	99.8	140	99.9

<표 3-2-146> 수급자 현황

(n=27)

구 분	빈도	퍼센트 (%)
기초생활수급자	1	3.7
차상위 계층	0	0.0
그외(일반)	22	81.5
잘 모름	2	7.4
기타	2	7.4
무응답	0	0.0
합계	27	100.0

응답 대상 자폐성장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비수급)이 81.5%(22명), 기초생활수급자가 3.7%(1명)로 나타났다.

응답 대상 자폐성장장애인의 가족과의 관계 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조금 좋다'가 51.9%(14명), '매우 좋다'가 44.4%(12명), '조금 나쁘다'가 3.7%(1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관계가 96.3%로 나타났다.

<표 3-2-147> 가족관계 정도

(n=27)

구 분	빈도	퍼센트 (%)
매우 나쁘다	0	0.0
조금 나쁘다	1	3.7
조금 좋다	14	51.9
매우 좋다	12	44.4
무응답	0	0.0
합계	27	100.0

응답 대상 자폐성장장애인의 연령대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남의 도움'과 '거의 남의 도움 필요'가 각각 25.9%(7명),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와 '일부 남의 도움 필요'가 각각 22.2%(6명), '모든 일상생활 가능'이 3.7%(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74%로 나타났다. 취학아동 및 청소년이 경우, '일부 남의 도움', '대부분 남의 도움', '거의 남의 도움 필요'가 각각 25%(5명)씩이었으며, '대부분 일상생활 가능'이 20%(4명), '모든 일상생활 가능'이 5%(1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거의 남의 도움 필요'와 '대부분 일상생활 가능'이 각각 33.3%(2명), '일부 남의 도움'과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가 각각 16.7%(1명)로 나타났다.

<표 3-2-148> 연령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n=27)

구분	빈도	퍼센트(%)	
전체	모든 일상생활 가능	1	3.7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6	22.2
	일부 남의 도움 필요	6	22.2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7	25.9
	거의 남의 도움 필요	7	25.9
	무응답	0	0.0
	합계	27	99.9
미취학아동 (0세~7세)	모든 일상생활 가능	0	0.0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0	0.0
	일부 남의 도움 필요	0	0.0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1	100.0
	거의 남의 도움 필요	0	0.0
	무응답	0	0.0
	합계	1	100.0
취학아동 (8세~19세)	모든 일상생활 가능	1	5.0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4	20.0
	일부 남의 도움 필요	5	25.0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5	25.0
	거의 남의 도움 필요	5	25.0
	무응답	0	0.0
	합계	20	100.0
성인 (20세 이상)	모든 일상생활 가능	0	0.0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2	33.3
	일부 남의 도움 필요	1	16.7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1	16.7
	거의 남의 도움 필요	2	33.3
	무응답	0	0.0
	합계	6	100.0

응답 대상 자폐성장장애인을 주로 도와주는 사람에 관한 사항으로 부모 70%(14명), 조부모와 유로활동보조인이 5%(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49> 주로 도와주는 사람

(n=20)

구분	빈도	퍼센트(%)	
도와주는 사람	배우자	0	0.0
	부모	14	70.0
	조부모	1	5.0
	자녀	0	0.0
	이웃	0	0.0
	친척	0	0.0
	유료가정봉사원	0	0.0
	유료간병인	0	0.0
	유료 활동보조인	1	5.0
	무료가정봉사원	0	0.0
	무료 간병인	0	0.0
	무료 활동보조인	0	0.0
	기타	0	0.0
	무응답	4	20.0
	합계	20	100.0

응답 대상 자폐성장장애인의 도움충분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편이다'가 45%(9명), '충분한 편이다'가 30%(6명), '매우 부족하다'가 20%(4명), '매우 충분한 편이다'가 5%(1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취학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부족한 편이다' 40%(6명), '충분한 편이다' 33.3%(5명), '매우 부족하다'가 26.7%(4명)이었고 성인의 경우 '부족한 편이다'가 75%(3명), '충분한 편이다'가 25%(1명)로 나타났다.

<표 3-2-150> 도움충분정도

		(n=20)	
구 분	빈 도	퍼센트(%)	
전체	매우 부족하다	4	20.0
	부족한 편이다	9	45.0
	충분한 편이다	6	30.0
	매우충분한 편이다	1	5.0
	무응답	0	0.0
	합계	20	100.0
미취학아동 (0세~7세)	매우 부족하다	0	0.0
	부족한 편이다	0	0.0
	충분한 편이다	0	0.0
	매우충분한 편이다	1	100.0
	합계	1	100.0
	취학아동 (8세~19세)	매우 부족하다	4
부족한 편이다		6	40.0
충분한 편이다		5	33.3
매우충분한 편이다		0	0.0
합계		15	100.0
성인 (20세 이상)		매우 부족하다	0
	부족한 편이다	3	75.0
	충분한 편이다	1	25.0
	매우충분한 편이다	0	0.0
	합계	4	100.0

응답 대상 자폐성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중증 44.4%(12명), 경증 25.9%(7명), 완전자립 22.2%(6명)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중증 100%(1명)였고, 취학아동의 경우 중증 40%(8명), 경증 30%(6명), 완전자립 20%(2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중증 50%(3명), 완전 자립 33.3%(2명), 경증 16.7%(1명)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일상생활수행 능력에 장애를 가진 비율이 7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3-2-151>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n=27)	
구 분	빈 도	퍼센트(%)	
전체	완전자립(이상없음)	6	22.2
	정도약함(경증)	7	25.9
	정도심함(중증)	12	44.4
	무응답	2	7.4
	합계	27	99.9
	미취학아동 (0세~7세)	완전자립(이상없음)	0
정도약함(경증)		0	0.0
정도심함(중증)		1	100.0
무응답		0	0.0
합계		1	100.0
취학아동 (8세~19세)		완전자립(이상없음)	4
	정도약함(경증)	6	30.0
	정도심함(중증)	8	40.0
	무응답	2	10.0
	합계	20	100.0
	성인 (20세 이상)	완전자립(이상없음)	2
정도약함(경증)		1	16.7
정도심함(중증)		3	50.0
무응답		0	0.0
합계		6	100.0

(2) 기관 이용현황

응답 대상 자폐성장장애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정도, 이용 경험 여부, 이용 희망 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서비스 제공기관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95.8%(23명), 유아교육기관 95.7%(22명),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91.7%(22명), 직업재활시설 83.3%(20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79.2%(19명), 특수교육 지원센터 72%(18명), 주간·단기보호시설 72%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복지관 92.3%(24명),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76.9%(20명), 유아교육기관 73.9%(17명), 특수교육 지원센터 45.8%(11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36%(9명), 이동지원서비스센터 30.8%(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희망여부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100%(24명), 특수교육 지원센터96%(24명), 장애인고용촉진공단 96%(24명),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95.7%(22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전용체육관이 각각 92%(23명), 이동지원서비스센터 88%(22명),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86.4%(19명), 장애인직업재활센터 84%(2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52> 기관 이용 현황

(n=27)

기 관 명	인지여부		이용경험여부		이용희망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22(91.7)	2(8.3)	20(76.9)	6(23.1)	22(95.7)	1(4.3)
특수교육 지원센터	18(72.0)	7(28.0)	11(45.8)	13(54.2)	24(96.0)	1(4.0)
유아교육기관	22(95.7)	1(4.3)	17(73.9)	6(26.1)	16(76.2)	5(23.8)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16(64.0)	9(36.0)	5(20.0)	20(80.0)	22(84.6)	4(15.4)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14(56.0)	11(44.0)	4(16.0)	21(84.0)	19(76.0)	6(24.0)
장애인복지관	23(95.8)	1(4.2)	24(92.3)	2(7.7)	24(100.0)	0(0.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9(79.2)	5(20.8)	9(36.0)	16(64.0)	23(92.0)	2(8.0)
직업재활시설	20(83.3)	4(16.7)	3(12.0)	22(88.0)	21(84.0)	4(16.0)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4(56.0)	11(44.0)	4(16.0)	21(84.0)	24(96.0)	1(4.0)
장애인생활시설	16(64.0)	9(36.0)	3(12.0)	22(88.0)	20(80.0)	5(20.0)
중증장애인요양시설	13(54.2)	11(45.8)	2(8.3)	22(91.7)	15(62.5)	9(37.5)

기 관 명	인지여부		이용경험여부		이용희망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11(45.8)	13(54.2)	2(8.3)	22(91.7)	12(50.0)	12(50.0)
그룹홈(공동생활가정)	17(68.0)	8(32.0)	4(16.0)	21(84.0)	19(76.0)	6(24.0)
주간·단기 보호시설	18(72.0)	7(28.0)	3(12.0)	22(88.0)	18(69.2)	8(30.8)
장애인전용체육관	10(40.0)	15(60.0)	7(28.0)	18(72.0)	23(92.0)	2(8.0)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보건소)	5(20.8)	19(79.2)	0(0.0)	23(100.0)	19(82.6)	4(17.4)
재활 병·의원	14(60.9)	9(39.1)	5(21.7)	18(78.3)	17(77.3)	5(22.7)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6(26.1)	17(73.9)	1(4.5)	21(95.5)	19(86.4)	3(13.6)
이동지원서비스센터	18(75.0)	6(25.0)	8(30.8)	18(69.2)	22(88.0)	3(12.0)
심부름센터	5(20.8)	19(79.2)	1(4.2)	23(95.8)	19(82.6)	4(17.4)
교통안전공단	9(37.5)	15(62.5)	1(4.2)	23(95.8)	20(87.0)	3(13.0)
사회복지시설	9(40.9)	13(59.1)	1(4.5)	21(95.5)	13(59.1)	9(40.9)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8(34.8)	15(65.2)	0(0.0)	23(100.0)	5(25.0)	15(75.0)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6(26.1)	17(73.9)	0(0.0)	23(100.0)	5(25.0)	15(75.0)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5(21.7)	18(78.3)	0(0.0)	23(100.0)	5(25.0)	15(75.0)

(3) 연령별 서비스 현황

응답 대상 자폐성장장애인 중 취학아동 및 청소년(8세-19세)의 서비스 미충족률에 관한 사항이다. 취학아동 및 청소년기에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미충족률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장기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그룹홈, 주간보호시설 등 시설서비스에 대한 미충족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교육, 부모교육, 인권교육, 학습지원활동 등 교육관련 서비스에서 미충족률이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각종 치료에 대한 욕구 미충족률 또한 높게 나타났다. 기타 내용은 피아노교습, 학습지도, 방학기간의 그룹 활동, 예술치료, 요리, 직업교육 등이 있었다. 반면에 미충족율이 낮은 것은 특수학급(22.2%), 학교 방과 후 활동(37.5%) 등이었다.

<표 3-2-153> 취학아동 및 청소년기(8세~19세) 서비스 현황

(n=20)

사업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
	필요(%)	불필요 (%)	이용(%)	비이용 (%)	
특수학교	14(77.8)	4(22.2)	6(42.9)	8(57.1)	57.1
특수학급	18(100.0)	0(0.0)	14(77.8)	4(22.2)	22.2
학교 방과 후 활동	16(94.1)	1(5.9)	10(62.5)	6(37.5)	37.5
정보화 교육	13(86.7)	2(13.3)	2(15.4)	11(84.6)	84.6
부모교육(자녀 양육교육)	17(100.0)	0(0.0)	6(35.3)	11(64.7)	64.7
인권 교육	17(100.0)	0(0.0)	3(17.6)	14(82.4)	82.4
학습지원 활동	16(100.0)	0(0.0)	4(25.0)	12(75.0)	75.0
일상생활훈련	17(100.0)	0(0.0)	7(41.2)	10(58.8)	58.8
물리치료	11(73.3)	4(26.7)	2(18.2)	9(81.8)	81.8
언어치료	17(100.0)	0(0.0)	9(52.9)	8(47.1)	47.1
심리치료(놀이치료)	17(94.4)	1(5.6)	8(47.1)	9(52.9)	52.9
작업치료	17(100.0)	0(0.0)	3(17.6)	14(82.4)	82.4
음악치료	17(94.4)	1(5.6)	5(29.4)	12(70.6)	70.6
미술치료	18(100.0)	0(0.0)	4(22.2)	14(77.8)	77.8
동물매개치료	15(93.8)	1(6.3)	2(13.3)	13(86.7)	86.7
주간보호	13(81.3)	3(18.8)	3(23.1)	10(76.9)	76.9
단기보호	12(80.0)	3(20.0)	1(8.3)	11(91.7)	91.7
그룹홈	13(81.3)	3(18.7)	2(15.4)	11(84.6)	84.6
장기시설보호	10(66.7)	5(33.3)	0(0.0)	10(100.0)	100.0
진료상담	15(93.8)	1(6.2)	2(13.3)	13(86.7)	86.7
건강관리	16(94.1)	1(5.9)	7(43.8)	9(56.3)	56.3
성교육/성상담	15(93.8)	1(6.3)	1(6.7)	14(93.3)	93.3
활동보조서비스	17(94.4)	1(5.6)	6(35.3)	11(64.7)	64.7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12(75.0)	4(25.0)	1(8.3)	11(91.7)	91.7
테마캠프	17(100.0)	0(0.0)	4(23.5)	13(76.5)	76.5
여가활동	16(100.0)	0(0.0)	7(43.8)	9(56.3)	56.3
체육활동	17(100.0)	0(0.0)	9(52.9)	8(47.1)	47.1
문화활동	15(93.8)	1(6.2)	3(20.0)	12(80.0)	80.0
체력단련실 등 장소 이용	15(93.8)	1(6.2)	7(46.7)	8(53.3)	53.3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7(46.7)	8(53.3)	1(14.3)	6(85.7)	85.7
청력검사/훈련	8(50.0)	8(50.0)	1(12.5)	7(87.5)	87.5

응답 대상 자폐성장애인 중 성인기(20세 이상)의 서비스 미충족률에 관한 사항이다. 성인기에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한 결과(빈도는 2-3개 정도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아래 표와 같이 전체적으로 미충족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이 의미는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가능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성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2-154> 성인기(20세 이상) 서비스 미충족률

(n=6)

사업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
	필요(%)	불필요(%)	이용(%)	비이용(%)	
인문학 교육	1(50.0)	1(50.0)	0(0.0)	1(100.0)	100.0
인권 교육	2(100.0)	0(0.0)	0(0.0)	2(100.0)	100.0
정보화교육	2(100.0)	0(0.0)	0(0.0)	2(100.0)	100.0
일상생활훈련	2(100.0)	0(0.0)	1(50.0)	1(50.0)	50.0
직업상담	2(100.0)	0(0.0)	0(0.0)	2(100.0)	100.0
직업능력 평가	2(100.0)	0(0.0)	0(0.0)	2(100.0)	100.0
취업 준비 훈련	3(100.0)	0(0.0)	1(33.3)	2(66.7)	66.7
보호 작업	3(100.0)	0(0.0)	1(33.3)	2(66.7)	66.7
취업 후 지원	3(100.0)	0(0.0)	0(0.0)	3(100.0)	100.0
취업알선	3(100.0)	0(0.0)	0(0.0)	3(100.0)	100.0
물리치료	1(33.3)	2(66.7)	0(0.0)	1(100.0)	100.0
언어치료(의사소통훈련)	3(100.0)	0(0.0)	0(0.0)	3(100.0)	100.0
심리치료(원예치료/댄스치료/드라마치료)	3(100.0)	0(0.0)	0(0.0)	3(100.0)	100.0
작업치료	3(100.0)	0(0.0)	1(33.3)	2(66.7)	66.7
주간보호	3(100.0)	0(0.0)	1(33.3)	2(66.7)	66.7
단기보호	3(100.0)	0(0.0)	1(33.3)	2(66.7)	66.7
그룹홈	3(100.0)	0(0.0)	0(0.0)	3(100.0)	100.0
결혼상담	3(100.0)	0(0.0)	0(0.0)	3(100.0)	100.0
성교육/성상담	3(100.0)	0(0.0)	0(0.0)	3(100.0)	100.0
활동보조서비스	3(100.0)	0(0.0)	0(0.0)	3(100.0)	100.0

사 업 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
	필요(%)	불필요(%)	이용(%)	비이용(%)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3(100.0)	0(0.0)	0(0.0)	3(100.0)	100.0
노인 돌보미 서비스	2(66.7)	1(33.3)	0(0.0)	2(100.0)	100.0
산모 신생아 돌보미 서비스	2(66.7)	1(33.3)	0(0.0)	2(100.0)	100.0
이동목욕서비스	1(33.3)	2(66.7)	0(0.0)	1(100.0)	100.0
이·미용서비스	2(66.7)	1(33.3)	0(0.0)	2(100.0)	100.0
여가활동	3(100.0)	0(0.0)	1(33.3)	2(66.7)	66.7
체육활동	3(100.0)	0(0.0)	3(100.0)	0(0.0)	0.0
문화활동	3(100.0)	0(0.0)	1(33.3)	2(66.7)	66.7
체력단련실 등 장소이용	3(100.0)	0(0.0)	2(66.7)	1(33.3)	33.3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1(33.3)	2(66.7)		1(100.0)	100.0

(4) 기타 서비스 욕구

응답 대상 자폐성장애인의 취업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성인 6명이 응답하였으며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2-155> 현재 취업여부

		(n=6)	
구 분		빈 도	퍼센트(%)
취업여부	취업	0	0.0
	미취업	4	66.7
	무응답	2	33.3
	합계	6	100.0

응답 대상 자폐성장애인의 취업현장에서의 이직 고려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응답자는 성인 6명으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2-156>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n=6)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고려	1	16.7
	미고려	3	50.0
	무응답	2	33.3
	합계	6	100.0

응답 대상 자폐성장애인의 구직과 이직 희망 업종에 관한 사항으로 응답자는 성인 6명 중 1명이 응답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2-157> 구직과 이직 희망 업종

		(n=1)	
구 분		빈 도	퍼센트(%)
희망일자리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1	100.0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	0	0.0
	합계	1	100.0

응답 대상 자폐성장애인의 희망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응답자는 1명으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2-158> 희망급여

		(n=1)	
구 분		빈 도	퍼센트(%)
희망급여	49만원 이하	1	100.0
	합계	1	100.0

응답 대상 자폐성장애인이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 답한 사항으로 응답자는 3명이었으며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2-159> 구직활동 않는 이유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직활동 않는 이유	장애 때문에	2	66.7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1	33.3
	합계	3	100.0

응답 대상 자폐성장애인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인지하는 경로에 관한 사항으로 이웃 및 친지 59.5%(22명), 사회복지기관과 인쇄매체 10.8%(4명), 방송 및 언론매체 8.1%(3명), 공무원 5.4%(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60> 서비스 인지경로

구 분		빈 도	퍼센트(%)
서비스 인지경로	인쇄매체(전단지 등)	4	10.8
	이웃 및 친지	22	59.5
	방송 및 언론매체	3	8.1
	공무원	2	5.4
	사회복지기관	4	10.8
	기타	1	2.7
	무응답	1	2.7
	합계	37	100.0

응답 대상 자폐성장애인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가중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총 138개의 빈도 중에서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30.4%(42개), 이동거리가 24.6%(34개), 서비스 내용 16.7%(23개), 이용료 14.5%(20개), 이용가능 기간 8%(1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61> 서비스 선택기준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산 합계		가중합산 합계	
	빈 도	퍼센트(%)	빈 도	퍼센트(%)	빈 도	퍼센트(%)	빈 도	퍼센트(%)	빈 도	퍼센트(%)
이동거리	5	18.5	6	22.2	7	25.9	18	26.1	34	24.6
시설규모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용료	1	3.7	6	22.2	5	18.5	12	17.4	20	14.5
인지도	1	3.7	1	3.7	3	11.1	5	7.2	8	5.8
이용가능 기간	2	7.4	1	3.7	3	11.1	6	8.7	11	8.0
프로그램의 전문성	11	40.7	4	14.8	1	3.7	16	23.2	42	30.4
서비스 내용	3	11.1	5	18.5	4	14.8	12	17.4	23	16.7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무응답	4	14.8	4	14.8	4	14.8				
합계	27	99.9	27	99.9	27	99.9	69	100.0	138	100.0

응답 대상 자폐성장애인의 문화, 체육, 관광과 관련 필요한 서비스에 관한 질문에 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기회(음악/미술 등) 확대 29.6%(8명), 동아리활동기회 확대 18.5%(5명), 방문기회(공연장, 전시장 등) 7.4%(2명), 테마관광 기회확대 3.7%(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62> 연령별 필요한 서비스

(n=27)

구분	빈도	퍼센트(%)	
전체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2	7.4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8	29.6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 기회확대	5	18.5
	(역사/생태 등)테마관광 기회확대	1	3.7
	기타	5	18.5
	무응답	6	22.2
	합계	27	99.9
미취학 아동 (0세~7세)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0	0.0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0	0.0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 기회확대	0	0.0
	(역사/생태 등)테마관광 기회확대	0	0.0
	기타	1	100.0
	무응답	0	0.0
	합계	1	100
취학 아동 (8세~19세)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2	10.0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6	30.0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 기회확대	5	25.0
	(역사/생태 등)테마관광 기회확대	1	5.0
	기타	2	10.0
	무응답	4	20.0
	합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0
성인 (20세 이상)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0	0.0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2	33.3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 기회확대	0	0.0
	(역사/생태 등)테마관광 기회확대	0	0.0
	기타	2	33.3
	무응답	2	33.3
	합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응답 대상 자폐성장애인의 자택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이유에 관한 사항으로 동의가 55.6%(15명), 반대가 33.3%(9명)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가족이 다 잘함, 부담스러움, 믿음이 가지 않음, 집안에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은 싫음, 집에서 할 경우 아동이 적극적이지 못함, 집에서 할 경우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응답하였다.

<표 3-2-163> 자택 자원봉사활동 동의 여부/반대이유

(n=27)

구분	빈도	퍼센트(%)	
자택 자원봉사활동	동의	15	55.6
	비동의	9	33.3
	무응답	3	11.1
	합계	27	100.0
	반대 이유	가족이 다 잘함, 부담스러움, 믿음이 가지 않음, 집안에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은 싫음, 집에서 할 경우 아동이 적극적이지 못함, 집에서 할 경우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응답 대상 자폐성장애인이 생각하는 인식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 운영이 55.6%(15명),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이 11.1%(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64> 인식개선방안

(n=27)

구분	빈도	퍼센트(%)	
인식개선방안	홍보(캠페인,방송등)	3	11.1
	인식개선 교육	3	11.1
	장애인의 지역행사참여	0	0.0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 운영	15	55.6
	기타	0	0.0
	무응답	6	22.2
	합계	27	100.0

응답 대상 자폐성장장애인이 생각하는 생활에 있어 할인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영화·스포츠가 25.9%(7명), 학원 14.8%(4명), 차량정비 11.1%(3명)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볼 때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병원보다는 문화 활동 및 교육관련 할인혜택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65> 할인혜택 분야

		(n=27)	
구 분		빈 도	퍼센트(%)
할인혜택분야	병원	5	18.5
	식당	0	0.0
	영화/스포츠/공연장	7	25.9
	학원	4	14.8
	차량정비	3	11.1
	기타	3	11.1
	무응답	5	18.5
합계	27	99.9	
기타 내용	버스비, 특수교육비		

응답 대상 자폐성장장애인의 집수리 필요 및 희망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별로 고치고 싶지 않다'가 33.3%(9명), '가급적 고치고 싶다'가 25.9%(7명), '전혀 고치고 싶지 않다'가 18.5%(5명), '반드시 고치고 싶다'가 3.7%(1명) 순으로 나타났다. 집수리 내용으로는 난방, 문턱, 수납장, 보조 창문, 현관문 개조, 화장실, 욕조로 나타났다.

<표 3-2-166> 집수리 여부/희망내용

		(n=27)	
구 분		빈 도	퍼센트 (%)
집개조	반드시 고치고 싶다	1	3.7
	가급적 고치고 싶다	7	25.9
	별로 고치고 싶지 않다	9	33.3
	전혀 고치고 싶지 않다	5	18.5
	기타	0	0.0
	무응답	5	18.5
	합계	27	99.9
집수리 희망내용	난방, 문턱, 수납장, 보조 창문이나 현관문, 현관문 개조, 화장실, 욕조		

(5) 소결

본 조사에 응답한 자폐성장장애인 2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폐성장장애인 영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 특이사항을 정리해 보면 첫째, 응답가구의 지출 순위를 볼 때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교육비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폐성 장애의 일부라도 도움이 필요한 응답자가 72.3%로 나타났다. 셋째,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 부모였으며, 도움 필요정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74%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움충분정도에 있어서는 65%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자립 22.2% 중증 44.4%, 경증 25.9%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결과는 일상생활능력이 있어 완전자립보다는 저강도 케어 또는 고강도 케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른 장애유형에 비교하여 볼 때,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관 이용현황 및 욕구에 측면에서 인지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이용률과 이용희망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교육관련 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직업관련 기관에 대한 이용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의 미충족률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취학아동 및 청소년기는 장기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그룹홈, 주간보호시설 등 보호시설에 대한 미충족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교육, 부모교육, 인권교육, 학습지원활동 등 교육관련 미충족률이 높았다. 각종 치료에 대한 욕구 미충족률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전체 아동 및 청소년기 장애인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욕구의 표현은 장애인복지관 및 교육관련 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이용률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는 전체서비스에 있어서 미충족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나타났다.

기타 서비스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서비스를 선택기준은 프로그램 전문성, 이동거리, 서비스 내용, 이용료, 이용가능기간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대별 필요한 서비스는 주로 학습기회와 동아리 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택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지적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장애영역과는 다르게 55.6%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넷째, 생활에 있어 할인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문화 활동을 위한 영화/스포츠/공연장과 학원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6) 인터뷰 자료

인터뷰 대상(1)	남성(18세), 자폐성장애
주거 (생활시설)	- 집에서 전혀 불편한 게 없다.
노동 (직업활동)	- 구직의 어려움은 느리게 이해하고 느린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 컴퓨터 자격증이 있으므로 문서작성과 문서 나르기 정도의 일은 가능하다고 본다. - 제빵 제과도 공부하고 있지만 창조적으로 빵이나 과자는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고, 보조 제빵사로 취직했으면 좋겠다. -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면 좋겠다.
의료분야 (재활)	- 치료비 부담이 가장 크다. - 복지관의 체육과 미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교육	- 현재 일반 고등학교 특수반을 다니고 있으며, 나자렛 대학교에 진학시킬 예정이다. 아이가 공부를 좀 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고 실력이 있는 자원봉사 대학생 도우미들을 통해 개인학습이나 과외를 시키고 싶다.
여가	- 농구도 하고 애호협회에도 가고 합창도 하며 교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 음악듣기, 경찰서 구경하기(유니폼을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 다니기를 좋아한다.
기타	- 아직 언어구사에 어려움이 있다. 복지관에서 언어치료를 아동수준에만 하지 말고 대상을 넓혀주기 바란다.

인터뷰 대상(2)	남성(11세), 자폐성장애
주거 (생활시설)	- 어릴 적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연령이 올라가고 반복교육을 통하여, 하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구분하게 되면서, 집에서는 어느 정도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이다.
노동 (직업활동)	- 구직의 어려움은 느리게 이해하고 느린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 컴퓨터 자격증이 있으므로 문서작성과 문서 나르기 정도의 일은 가능하다고 본다. - 제빵 제과도 공부하고 있지만 창조적으로 빵이나 과자는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고, 보조 제빵사로 취직했으면 좋겠다. -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면 좋겠다.
의료분야 (재활)	- 치료비 부담이 가장 크다. - 병원과 복지관을 다 이용해 왔다. 후원을 통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개월간 재활병원에 다닌 적도 있다.
교육	- 현재 일반학교 1학년 을 마치고 2학년을 다니고 있다. - 아이가 어릴 때 치료에 온 힘을 쏟다가, 크면서 교육과 치료를 느슨하게 했었다. 이후 몇 가지 경험을 통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2년 간 집중교육을 했는데 아이가 놀라운 발전을 했다.
여가	- 여행을 자주 다닌다. 재활승마도 하고 있다. 승마는 감각통합에 효과가 있었다.
기타	- 부모나 보호자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위급 시 일시적으로 보호해주거나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과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을 분리해서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 성향이 다르고 원하는 서비스가 다른데, 그런 아동들을 섞어 냈을 때 도저히 융화가 되지 않는다. - 홍보 팸플릿이나, 장애 이해하기 등에서 서로의 장애를 이해할 수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5) 정신장애인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양천구 거주 정신장애인 중 설문에 응답한 정신장애인(총 46명)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간단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응답자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46명의 응답자 중 본인 응답이 43.5%(20명), 어머니, 형제·자매, 아버지, 배우자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자 중에서는 어머니의 비율이 제일 높아서 13명이 대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167> 응답자

(n=46)

구 분		빈 도	퍼센트(%)
응답자	본인	20	43.5
	기타	26	56.5
	무응답	0	0.0
	합계	46	100.0
응답자와 관계	어머니	13	50.0
	형제·자매	4	15.4
	아버지	3	11.5
	배우자	2	7.7
	기타	2	7.7
	무응답	2	7.7
합계		26	100.0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의 장애 등급 및 연령으로 장애등급에 있어서는 1급 15.2%(7명), 2급 47.8%(22명), 3급 32.6%(15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미취학 2.2%(1명), 취학 아동 15.2%(7명), 성인 82.6%(38명)로 나타났다.

<표 3-2-168> 장애등급/연령

(n=46)

구 분		빈 도	퍼센트(%)
15장애등급	1급	7	15.2
	2급	22	47.8
	3급	15	32.6
	무응답	2	4.3
	합계	46	100.0
연령	미취학아동(0세~7세)	1	2.2
	취학아동(8세~19세)	7	15.2
	성인(20세 이상)	38	82.6
	합계	46	100.0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의 학력, 성별, 결혼에 관한 사항으로 학력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30.4%(14명), 중학교 10.9%(5명), 고등학교 41.3%(19명), (전문)대학 8.7%(4명)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73.9%(34명), 여자 26.1%(12명)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에 대해서는 미혼 80.4%(37명), 기혼 15.2%(7명)로 나타났다.

<표 3-2-169> 학력/성별/결혼

(n=46)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 분		빈 도	퍼센트(%)
학력	미취학	1	2.2	성별	남자	34	73.9
	유치원/어린이집	1	2.2		여자	12	26.1
	초등학교	14	30.4		합계	46	100.0
	중학교	5	10.9	결혼	기혼	7	15.2
	고등학교	19	41.3		미혼	37	80.4
	(전문)대학	4	8.7		기타	2	4.3
	무학	1	2.2		합계	46	100.0
	기타	1	2.2				
	합계	46	100.0				

다중응답 항목으로 정신장애인의 동거여부에 관한 물음에서 정신장애인들은 어머니 33%(29명), 아버지 22.7%(20명), 형제 12.5%(11명), 자매 8.0%(7명), 할머니 4.5%(4명) 순으로 함께 사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혼자 산다'는 응답한 사람도 4명 있었다.

<표 3-2-170> 동거인

구분	빈도	퍼센트(%)	
동거인	배우자	2	2.3
	어머니	29	33.0
	아버지	20	22.7
	할아버지	3	3.4
	할머니	4	4.5
	형제	11	12.5
	자매	7	8.0
	자녀	5	5.7
	손자녀	0	0.0
	친척	2	2.3
	기타	5	5.7
	무응답	0	0.0
	합계	88	100.0
기타내용	독거	4	80.0
	무응답	1	20.0
	합계	5	100.0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의 주택소유에 관한 사항으로 자기소유 39.1%(18명), 월세 34.8%(16명), 전세 13.0%(6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친지·친척과 거주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3-2-171> 주택소유 형태

구분	빈도	퍼센트(%)	
주택소유 형태	자기소유	18	39.1
	전세	6	13.0
	월세	16	34.8
	기타	6	13.0
	합계	46	100.0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의 월평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월평균 수입에 대해서는 40만원 미만 34.8%(16명), 41만원-80만원 23.9%(11명), 81만원-120만원과 121만원-200만원, 200만원 이상이 각각 10.9%(5명)로 나타났다. 월평균 지출을 살펴보면 41만원-80만원이 34.8%(16명), 200만원 이상은 19.6%(9명), 40만원 미만이 17.4%(8명), 121만원-200만원이 15.2%(7명), 81만원-120만원이 13.0%(6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72> 월평균 수입/지출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월평균 수입	1원-40만원	16	34.8	월평균 지출	1원-40만원	8	17.4
	41만원-80만원	11	23.9		41만원-80만원	16	34.8
	81만원-120만원	5	10.9		81만원-120만원	6	13.0
	121만원-200만원	5	10.9		121만원-200만원	7	15.2
	200만원 이상	9	19.6		200만원 이상	9	19.6
	합계	46	100.0		합계	46	100.0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의 지출 순위에 관한 사항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다시 가중치를 통해 합계를 산출하였다. 가중치를 통해 살펴보면 식료품비 33.2%(76명), 의료비 20.1%(46명), 주거광열비 15.7%(36명), 교육비 10.9%(25명), 빛값은 비용 8.7%(20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73> 지출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산 합계		가중합산 합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식료품비	17	43.6	11	28.9	3	8.3	31	27.4	76	33.2
교육비	4	10.3	5	13.2	3	8.3	12	10.6	25	10.9
의료비	9	23.1	6	15.8	7	19.4	22	19.5	46	20.1
주거광열비	3	7.7	10	26.3	7	19.4	20	17.7	36	15.7
교통비/차량유지비	1	2.6	1	2.6	6	16.7	8	7.1	11	4.8
사회활동 및 조사비	0	0.0	0	0.0	3	8.3	3	2.7	3	1.3
여가문화생활비	0	0.0	0	0.0	2	5.6	2	1.8	2	0.9
빛 값은 비용	3	7.7	4	10.5	3	8.3	10	8.8	20	8.7
재테크 및 금융	1	2.6	0	0.0	1	2.8	2	1.8	4	1.7
기타	1	2.6	1	2.6	1	2.8	3	2.7	6	2.6
합계	39	100.0	38	100.0	36	100.0	113	100.0	229	100.0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자 52.2%(24명), 일반(비수급) 23.9%(11명), 차상위계층 6.5%(3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유형별에서 산출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31.1%임을 감안해볼 때 정신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표 3-2-174> 수급자 현황

(n=46)

구 분	빈 도	퍼센트(%)	
수급자 현황	기초생활수급자	24	52.2
	차상위 계층	3	6.5
	그외(일반)	11	23.9
	잘 모름	6	13.0
	기타	2	4.3
	합계	46	100.0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의 가족과의 관계 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매우 좋다 39.1%(18명), 조금 좋다 37%(17명), 조금 나쁘다 8.7%(4명), 매우 나쁘다 8.7%(4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긍정적(76.1%)으로 나타났다.

<표 3-2-175> 가족관계 정도

(n=46)

구 분	빈 도	퍼센트(%)	
가족관계 정도	매우 나쁘다	4	8.7
	조금 나쁘다	4	8.7
	조금 좋다	17	37.0
	매우 좋다	18	39.1
	무응답	3	6.5
	합계	46	100.0

<표 3-2-176> 연령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n=46)

구 분	빈 도	퍼센트(%)	
전체	모든 일상생활 가능	7	15.2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8	17.4
	일부 남의 도움 필요	17	37.0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8	17.4
	거의 남의 도움 필요	4	8.7
	무응답	2	4.3
	합계	46	100.0
미취학아동 (0세~7세)	모든 일상생활 가능	0	0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0	0
	일부 남의 도움 필요	1	100.0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0	0
	거의 남의 도움 필요	0	0
	무응답	0	0
	합계	1	100.0
취학아동 (8세~19세)	모든 일상생활 가능	0	0.0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1	14.3
	일부 남의 도움 필요	3	42.9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3	42.9
	거의 남의 도움 필요	0	0.0
	무응답	0	0.0
	합계	7	100.0
성인 (20세 이상)	모든 일상생활 가능	7	18.4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7	18.4
	일부 남의 도움 필요	13	34.2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5	13.2
	거의 남의 도움 필요	4	10.5
	무응답	2	5.3
	합계	38	100.0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의 연령대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남의 도움 필요'가 37.0%(17명),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와 '대부분

일상생활 가능'이 각각 17.4%(8명), '모든 일상생활 가능' 15.2%(7명), '거의 남의 도움 필요' 8.7%(4명) 순으로 나타났다. 취학 아동의 경우 일부 및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각각 42.9%(3명)로 취학 아동의 경우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일부 남의 도움 필요 34.2%(13명), 모든 또는 대부분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각각 18.4%(7명),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13.2%(5명), 거의 남의 도움 필요 10.5%(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을 주로 도와주는 사람에 관한 사항으로 부모가 55.2%(16명), 친척이 17.2%(5명), 배우자 또는 조부모가 각각 3.4%(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의 도움을 부모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료가정봉사원이 도움을 주는 경우도 1명 있었다.

<표 3-2-177> 주로 도와주는 사람

(n=29)

구 분	빈 도	퍼센트(%)	
도와주는 사람	배우자	1	3.4
	부모	16	55.2
	조부모	1	3.4
	친척	5	17.2
	유료가정봉사원	1	3.4
	기타	3	10.3
	무응답	2	6.9
	합계	29	100.0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의 도움충분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편이다'가 44.8%(13명), '충분한 편이다' 31.0%(9명), '매우 부족하다' 20.7%(6명), '매우 충분한 편이다'가 3.4%(1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 100%(1명)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취학 아동의 경우 부족한 편이 66.7%(4명), 충분하다와 매우 충분하다는 응답이 각각 16.7%(1명)로 나타났으며, 성인의 경우 부족한 편이 36.4%(8명), 충분한 편이 36.4%(8명), 매우 부족한 편이 27.3%(6명)로 전반적으로 도움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많게 나타났다.

<표 3-2-178> 도움충분정도

(n=29)

구 분	빈 도	퍼센트(%)	
전체	매우 부족하다	6	20.7
	부족한 편이다	13	44.8
	충분한 편이다	9	31.0
	매우충분한 편이다	1	3.4
	합계	29	100.0
미취학아동 (0세~7세)	매우 부족하다	0	0.0
	부족한 편이다	1	100.0
	충분한 편이다	0	0.0
	매우충분한 편이다	0	0.0
	합계	1	100.0
취학아동 (8세~19세)	매우 부족하다	0	0.0
	부족한 편이다	4	66.7
	충분한 편이다	1	16.7
	매우충분한 편이다	1	16.7
	합계	6	100.0
성인 (20세 이상)	매우 부족하다	6	27.3
	부족한 편이다	8	36.4
	충분한 편이다	8	36.4
	매우충분한 편이다	0	0.0
	합계	22	100.0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자립이 47.8%(22명), 중증과 경증이 각각 21.7%(10명) 순으로 나타났다. 취학아동의 경우 중증이 71.4%(5명), 경증이 28.6%(2명)이었고, 성인의 경우는 완전 자립이 57.9%(22명), 경증이 18.4%(7명), 중증은 13.2%(5명)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결과는 일상생활능력에 있어 완전자립보다는 저강도 케어 또는 고강도 케어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향후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을 반영한 프로그램 내용과 개발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2-179>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n=46)

구 분		빈 도	퍼센트(%)
전체	완전자립(이상없음)	22	47.8
	정도약함(경증)	10	21.7
	정도심함(중증)	10	21.7
	무응답	4	8.7
	합계	46	100.0
미취학아동 (0세~7세)	완전자립(이상없음)	0	0.0
	정도약함(경증)	1	100.0
	정도심함(중증)	0	0.0
	무응답	0	0.0
	합계	1	100.0
취학아동 (8세~19세)	완전자립(이상없음)	0	0.0
	정도약함(경증)	2	28.6
	정도심함(중증)	5	71.4
	무응답	0	0.0
	합계	7	100.0
성인 (20세 이상)	완전자립(이상없음)	22	57.9
	정도약함(경증)	7	18.4
	정도심함(중증)	5	13.2
	무응답	4	10.5
	합계	38	100.0

(2) 기관 이용현황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정도, 이용 경험 여부, 이용 희망 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서비스 제공기관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90.9%(30명),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68.8%(22명), 유아교육기관 60.7%(17명), 자립생활지원센터 51.5%(17명) 순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기관인지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58.3%(21명),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41.7%(15명), 사회복지시설 32.4%(11명), 유아교육기관 25%(7명), 재활병·의원 23.5%(8명) 순으로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이용 경험도는 매우 낮았다. 이용 희망여부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68.6%(22명), 장애인자립지원센터 66.7%(20명), 장애인고용촉진공단 63.6%(21명), 직업재활시설 60%(18명), 장애인정보교육기관 56.7%(17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80> 기관 이용현황 (n=46)

기 관 명	인지여부		이용경험여부		이용희망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22(68.8)	10(31.3)	15(41.7)	21(58.3)	13(43.3)	17(56.7)
특수교육 지원센터	13(43.3)	17(56.7)	6(18.2)	27(81.8)	12(40.0)	18(60.0)
유아교육기관	17(60.7)	11(39.3)	7(25.0)	21(75.0)	8(32.0)	17(68.0)
장애인정보교육기관	14(46.7)	16(53.3)	6(19.4)	25(80.6)	17(56.7)	13(43.3)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14(42.4)	19(57.6)	6(18.2)	27(81.8)	19(54.3)	16(45.7)
장애인복지관	30(90.9)	3(9.1)	21(58.3)	15(41.7)	22(68.6)	10(31.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7(51.5)	16(48.5)	6(18.8)	26(81.3)	20(66.7)	10(33.3)
직업재활시설	15(48.4)	16(51.6)	6(18.8)	26(81.3)	18(60.0)	12(40.0)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5(46.9)	17(53.1)	5(15.2)	28(84.8)	21(63.6)	12(36.4)
장애인생활시설	12(40.0)	18(60.0)	5(16.1)	26(83.9)	13(43.3)	17(56.7)
중증장애인요양시설	9(31.0)	20(69.0)	2(6.5)	29(93.5)	6(22.2)	21(77.8)
장애영유아생활시설	10(41.7)	14(58.3)	0(0.0)	0(0.0)	2(8.7)	21(91.3)

기 관 명	인지여부		이용경험여부		이용희망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13(44.8)	16(55.2)	3(9.1)	30(90.9)	7(25.9)	20(74.1)
주간·단기 보호시설	12(38.7)	19(61.3)	6(17.6)	28(82.4)	12(40.0)	18(60.0)
장애인전용체육관	8(25.8)	23(74.2)	2(6.5)	29(93.5)	13(43.3)	17(56.7)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보건소)	10(29.4)	24(70.6)	5(15.2)	28(84.8)	12(40.0)	18(60.0)
재활 병·의원	13(41.9)	18(58.1)	8(23.5)	26(76.5)	14(46.7)	16(53.3)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14(45.2)	17(54.8)	2(6.1)	31(93.9)	9(31.0)	20(9.0)
이동지원서비스센터	16(48.5)	17(51.5)	3(9.1)	30(90.9)	10(33.3)	20(66.7)
심부름센터	7(23.3)	23(76.7)	1(3.0)	32(97.0)	8(27.6)	21(72.4)
교통안전공단	6(20.0)	24(80.0)	0(0.0)	33(100.0)	10(33.3)	20(66.7)
사회복지시설	12(41.4)	17(58.6)	11(32.4)	23(67.6)	11(37.9)	18(62.1)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5(20.0)	20(80.0)	1(3.6)	27(96.4)	3(13.0)	20(87.0)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5(21.7)	18(78.3)	0(0.0)	27(100.0)	3(13.6)	19(86.4)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5(21.7)	18(78.3)	0(0.0)	26(100.0)	3(14.3)	18(85.7)

(3) 연령별 서비스 현황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 중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1개의 표본 밖에 없어 별도의 구분
을 하지 않았다. 취학아동 및 청소년(8세~19세) 7개 사례를 서비스 내용을 정리하여 조
사한 결과를 미충족률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물리치료, 동물매개체료, 단기보호, 그룹홈,
장기시설보호, 성교육, 성상담,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청력검사/훈련 등의 경우 미충
족율이 100%였다. 이 밖에도 체육활동, 문화활동은 83.3%, 정보화교육, 부모교육, 건강
관리, 체력단련실 등 장소이용 66.7%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습지원활동의 경우 미충족
율이 0%이었으며, 특수학급·방과 후 학교의 경우 미충족율이 각각 20%였다. 언어치료
의 경우도 33.3%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표 3-2-181> 취학아동 및 청소년기(8세~19세) 서비스 현황

(n=7)

사 업 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
	필요 (%)	불필요 (%)	이용 (%)	비이용 (%)	
특수학교	4(80.0)	1(20.0)	2(50.0)	2(50.0)	50.0
특수학급	5(100.0)	0(0.0)	4(80.0)	1(20.0)	20.0
학교 방과 후 활동	5(100.0)	0(0.0)	4(80.0)	1(20.0)	20.0
정보화 교육	6(100.0)	0(0.0)	2(33.3)	4(66.7)	66.7
부모교육(자녀 양육교육)	6(100.0)	0(0.0)	2(33.3)	4(66.7)	66.7
인권 교육	5(100.0)	0(0.0)	2(40.0)	3(60.0)	60.0
학습지원 활동	5(100.0)	0(0.0)	5(100.0)	0(0.0)	0.0
일상생활훈련	5(100.0)	0(0.0)	2(40.0)	3(60.0)	60.0
물리치료	3(75.0)	1(25.0)	0(0.0)	3(100.0)	100.0
언어치료	6(100.0)	0(0.0)	4(66.7)	2(33.3)	33.3
심리치료(놀이치료)	5(100.0)	0(0.0)	2(40.0)	3(60.0)	60.0
작업치료	5(100.0)	0(0.0)	2(40.0)	3(60.0)	60.0
음악치료	6(100.0)	0(0.0)	3(50.0)	3(50.0)	50.0
미술치료	6(100.0)	0(0.0)	3(50.0)	3(50.0)	50.0
동물매개치료	1(25.0)	3(75.0)	0(0.0)	1(100.0)	100.0
주간보호	4(80.0)	1(20.0)	2(50.0)	2(50.0)	50.0
단기보호	3(60.0)	2(40.0)	0(0.0)	3(100.0)	100.0
그룹홈	3(60.0)	2(40.0)	0(0.0)	3(100.0)	100.0
장기시설보호	2(40.0)	3(60.0)	0(0.0)	2(100.0)	100.0
진로상담	4(80.0)	1(20.0)	1(25.0)	3(75.0)	75.0
건강관리	6(100.0)	0(0.0)	2(33.3)	4(66.7)	66.7
성교육/성상담	4(80.0)	1(20.0)	0(0.0)	4(100.0)	100.0
활동보조서비스	5(100.0)	0(0.0)	2(40.0)	3(60.0)	60.0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2(40.0)	3(60.0)	0(0.0)	2(100.0)	100.0
테마캠프	6(100.0)	0(0.0)	2(33.3)	4(66.7)	66.7
여가활동	6(100.0)	0(0.0)	3(50.0)	3(50.0)	50.0
체육활동	6(100.0)	0(0.0)	1(16.7)	5(83.3)	83.3
문화활동	6(100.0)	0(0.0)	1(16.7)	5(83.3)	83.3
체력단련실 등 장소 이용	6(100.0)	0(0.0)	2(33.3)	4(66.7)	66.7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4(80.0)	1(20.0)	1(25.0)	3(75.0)	75.0
청력검사/훈련	4(80.7)	1(20.0)	0(0.0)	4(100.0)	100.0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 중 성인기(20세 이상) 38명의 서비스 미충족률에 관한 사항이다. 성인기에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미충족률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미충족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족률 순으로 정리해 보면, 이동목욕서비스 97.8%, 주간보호 96.6%, 취업 후 지원 95.3%, 취업준비훈련 95%,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94.6%, 언어치료 94.4%, 단기보호 93.1%, 직업능력평가 90.5%, 노인돌보미 서비스 90.4%, 결혼상담 90.2%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미충족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2-182> 성인기(20세 이상) 서비스 현황

(n=38)

사업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
	필요 (%)	불필요 (%)	이용 (%)	비이용 (%)	
인문학 교육	12(44.41)	15(55.6)	0(0.0)	12(100.0)	100.0
인권 교육	15(57.7)	11(42.3)	2(13.3)	13(86.7)	86.7
정보화교육	18(66.7)	9(33.3)	4(22.2)	14(77.8)	77.8
일상생활훈련	17(63.0)	10(37.0)	4(23.5)	13(76.5)	76.5
직업상담	20(74.1)	7(25.9)	4(20.0)	16(80.0)	80.0
직업능력 평가	19(73.1)	7(26.9)	4(21.1)	15(78.9)	78.9
취업 준비 훈련	15(55.6)	12(44.4)	3(20.0)	12(80.0)	80.0
보호 작업	10(41.7)	14(58.3)	0(0.0)	10(100.0)	100.0
취업 후 지원	15(62.5)	9(37.5)	0(0.0)	15(100.0)	100.0
취업알선	18(66.7)	9(33.3)	3(16.7)	15(83.3)	83.3
물리치료	8(32.0)	17(68.0)	0(0.0)	8(100.0)	100.0
언어치료(의사소통훈련)	12(48.0)	13(52.0)	1(8.3)	11(91.7)	91.7
심리치료(원예치료/댄스치료/드라마치료)	14(53.8)	12(46.2)	3(21.4)	11(78.6)	78.6
작업치료	10(40.0)	15(60.0)	1(10.0)	9(90.0)	90.0
주간보호	8(34.8)	15(65.2)	1(12.5)	7(87.5)	87.5
단기보호	7(30.4)	16(69.6)	0(0.0)	7(100.0)	100.0
그룹홈	9(36.0)	16(64.0)	0(0.0)	9(100.0)	100.0

사업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
	필요 (%)	불필요 (%)	이용 (%)	비이용 (%)	
결혼상담	13(52.0)	12(48.0)	0(0.0)	13(100.0)	100.0
성교육/성상담	11(44.0)	14(56.0)	3(27.3)	8(72.7)	72.7
활동보조서비스	9(39.1)	14(60.9)	1(11.1)	8(88.9)	88.9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9(37.5)	15(62.5)	1(11.1)	8(88.9)	88.9
노인 돌보미 서비스	10(40.0)	10(60.0)	0(0.0)	10(100.0)	100.0
산모 신생아 돌보미 서비스	8(34.8)	15(65.2)	0(0.0)	8(100.0)	100.0
이동목욕서비스	9(37.5)	15(62.5)	2(22.2)	7(77.8)	77.8
이·미용서비스	14(58.3)	10(41.7)	4(28.6)	10(71.4)	71.4
여가활동	20(76.9)	6(23.1)	10(50.0)	10(50.0)	50.0
체육활동	14(58.3)	10(41.7)	5(35.7)	9(64.3)	64.3
문화활동	11(44.0)	14(56.0)	2(18.2)	9(75.0)	75.0
체력단련실 등 장소이용	12(50.0)	12(50.0)	3(25.0)	9(75.0)	75.0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7(29.2)	17(70.8)	1(14.3)	6(85.7)	85.7

(4) 기타 서비스 욕구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의 취업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미취업 63.2%(24명), 취업 10.2%(4명)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미취업이 63.2%로 매우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표 3-2-183> 현재 취업여부

(n=38)

구분	빈도	퍼센트(%)	
취업여부	취업	4	10.5
	미취업	24	63.2
	무응답	10	26.3
	합계	38	100.0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의 취업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취업분야는 4명만이 응답하였으며,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 25%(1명), 기타 75%(3명)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은 세차, 장애인복지관 아르바이트, 재활용품 수집으로 응답하였다.

<표 3-2-184> 취업 분야/원계 직무

(n=4)			
구 분		빈 도	퍼센트(%)
분야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	1	25.0
	기타	3	75.0
	합계	4	100.0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의 취업현장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해 4명만이 응답하였으며 응답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2-185> 근무기간

(n=4)			
구 분		빈 도	퍼센트(%)
근무기간	2년 ~ 5년 미만	1	25.0
	5년 이상	1	25.0
	무응답	2	50.0
	합계	4	100.0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의 취업현장에서의 이직 고려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가 41.3%(19명), '고려하고 있다'가 26.1%(12명)로 나타났다.

<표 3-2-186>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n=38)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고려	12	26.1
	미고려	19	41.3
	무응답	7	32.6
	합계	38	100.0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의 구직과 이직 희망 업종에 관한 사항은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41.7%(5명),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 16.7%(2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2차

및 3차 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87> 구직과 이직 희망 업종

(n=12)			
구 분		빈 도	퍼센트(%)
희망일자리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5	41.7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	2	16.7
	기타	2	16.7
	무응답	3	25.0
	합계	12	100.0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의 희망급여에 관한 사항은 50만원~99만원은 58.3%(7명), 100만원~149만원이 16.7%(2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88> 희망급여

(n=12)			
구 분		빈 도	퍼센트(%)
희망급여	50만원~99만원	7	58.3
	100만원~149만원	2	16.7
	150만원~199만원	0	0.0
	200만원 이상	0	0.0
	무응답	3	25.0
	합계	12	100.0

<표 3-2-189> 구직활동 않는 이유

(n=19)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직활동 않는 이유	장애 때문에	13	68.4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1	5.3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0	0.0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0	0.0
	기타	3	15.8
	무응답	2	10.5
	합계	19	100.0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이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응답으로 '장애 때문에' 68.4%(13명)가 가장 많았고, '일자리가 없어서'가 1명(5.3%) 있었다. 기타 의견은 몸이

좋지 않아서, 장애 및 노령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인지하는 경로에 관한 사항은 이웃 및 친척·사회복지기관이 각각 27.1%(13명), 공무원 16.7%(8명), 방송 및 언론매체 14.6%(7명), 인쇄매체(전단지 등) 10.4%(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90> 서비스 인지경로

(n=46)

구 분		빈 도	퍼센트(%)
서비스 인지경로	인쇄매체(전단지 등)	5	10.4
	이웃 및 친척	13	27.1
	방송 및 언론매체	7	14.6
	공무원	8	16.7
	사회복지기관	13	27.1
	기타	2	4.2
	합계	48	100.0

<표 3-2-191> 서비스 선택기준

(n=46)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산 합계		가중합산 합계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이동거리	19	55.9	5	15.6	5	16.1	29	29.9	72	36.5
시설규모	4	11.8	5	15.6	1	3.2	10	10.3	23	11.7
이용료	3	8.8	6	18.8	6	19.4	15	15.5	27	13.7
인지도	2	5.9	2	6.3	1	3.2	5	5.2	11	5.6
이용가능 기간	1	2.9	3	9.4	2	6.5	6	6.2	11	5.6
프로그램의 전문성	3	8.8	6	18.8	4	12.9	13	13.4	25	12.7
서비스 내용	1	2.9	5	15.6	12	38.7	18	18.6	25	12.7
기타	1	2.9	0	0.0	0	0.0	1	1.0	3	1.5
합계	34	100	32	100	31	100	97	100	197	100.0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 서비스 선택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가중치의 합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동거리가 36.5%(72개), 이용료가 13.7%(27개), 프로그램 전문성·서비스 내용은 각각 12.7%(25개), 시설규모 11.7%(23개), 인지도 및 이용가능기간이 각각

5.6%(11개)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92> 연령별 필요한 서비스

(n=46)

구 분		빈 도	퍼센트(%)
전체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9	19.6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11	23.9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 기회확대	6	13.0
	(역사/생태 등)테마관광 기회확대	1	2.2
	기타	6	13.0
	무응답	13	28.3
	합계	46	100.0
미취학 아동 (0세~7세)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0	0.0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1	100.0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 기회확대	0	0.0
	(역사/생태 등)테마관광 기회확대	0	0.0
	기타	0	0.0
	무응답	0	0.0
	합계	1	100.0
취학 아동 (0세~19세)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2	28.6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5	71.4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 기회확대	0	0.0
	(역사/생태 등)테마관광 기회확대	0	0.0
	기타	0	0.0
	무응답	0	0.0
	합계	7	100.0
성인 (20세 이상)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7	18.4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5	13.2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 기회확대	6	15.8
	(역사/생태 등)테마관광 기회확대	1	2.6
	기타	6	15.8
	무응답	13	34.2
	합계	38	100.0

문화, 체육, 관광 관련 필요한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학습기회(음악/미술 등) 확대가 23.9%(11명), 방문기회(공연장, 전시장 등) 19.6%(9명), 동아리활동기회 확대 13%(6명), 테마관광 기회확대 2.2%(1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사항으로 먹고사는 문제, 원어민 영어교육, 일상생활훈련, 필요하지 않음, 헬스, 수영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

로 구분해서 보면,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음악, 미술 등)학습기회의 확대를 선호한 반면, 성인의 경우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의 확대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의 자택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이유에 관한 사항으로 '동의한다'가 39.1%(18명), '반대한다'가 28.3%(13명)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대인관계장애, 몸이 좋지 못함, 부모님이 도와주심, '중증 장애가 아니다'로 응답하였다.

<표 3-2-193> 자택 자원봉사활동 동의 여부/반대이유

(n=46)

구 분		빈 도	퍼센트(%)
자택 자원 봉사 활동	동의	18	39.1
	비동의	13	28.3
	무응답	15	32.6
	합계	46	100.0
반대 이유	대인관계장애, 몸이 좋지 못함, 부모님이 도와주심, 중증 장애가 아니라서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이 생각하는 인식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은 홍보 30.4%(14명), 인식개선 프로그램 21.7%(10명),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 운영 15.2%(7명), 장애인의 지역사회행사 참여 8.7%(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94> 인식개선방안

(n=46)

구 분		빈 도	퍼센트(%)
인식 개선 방안	홍보(캠페인, 방송 등)	14	30.4
	인식개선 교육	10	21.7
	장애인의 지역행사참여	4	8.7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 운영	7	15.2
	무응답	11	23.9
	합계	46	100.0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이 생각하는 생활에 있어 할인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사항은

병원인 52.2%(24명)로 가장 많았다. 차량정비는 응답한 경우가 없으며 영화관 등이 10.9%(5명), 학원 6.5%(3명), 식당 2.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필요와 여가활동 및 일상 활동의 필요에 따른 응답으로 보인다.

<표 3-2-195> 할인혜택 분야

(n=46)

구 분		빈 도	퍼센트(%)
할인혜택분야	병원	24	52.2
	식당	1	2.2
	영화/스포츠/공연장	5	10.9
	학원	3	6.5
	기타	1	2.2
	무응답	12	26.1
	합계	46	100.0

응답 대상 정신장애인의 집수리 필요 및 희망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별로 고치고 싶지 않다' 26.1%(12명), '반드시 고치고 싶다'와 '가급적 고치고 싶다'가 17.4%(8명), '전혀 고치고 싶지 않다' 13%(6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은 임대료 인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집수리 내용으로는 이동이 편하게, 도배, 화장실, 싱크대, 보수, 방충, 옥상 방수 등으로 나타났다.

<표 3-2-196> 집수리 여부/희망내용

(n=46)

구 분		빈 도	퍼센트 (%)
집개조	반드시 고치고 싶다	8	17.4
	가급적 고치고 싶다	8	17.4
	별로 고치고 싶지 않다	12	26.1
	전혀 고치고 싶지 않다	6	13.0
	기타	2	4.3
	무응답	6	21.7
	합계	46	100.0
집수리 희망내용	다니다기 편하게, 도배, 화장실, 싱크대, 보수, 방충, 옥상 방수		

(5) 소결

본 조사에 응답한 정신장애인 4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정신장애인 영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 특이사항을 정리해 보면 첫째, 미혼이 전체응답자의 80.4%로 나타났다. 둘째, 자가 주택 소유자가 3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응답자 중 120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이 69.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일부라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63.1%에 이르고 있다. 다섯째,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 부모였으며, 도움충분정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편이었다. 여섯째, 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자립 47.8%, 중증과 경증이 21.7%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일상생활능력이 있어 완전자립보다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이용현황 및 욕구에 측면에서 인지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이용률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이용 희망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립지원센터, 그리고 직업재활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이용 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측면에서는 응답수가 많은 성인기를 중심으로 서비스 미충족률 순으로 정리해 보면 이동목욕서비스, 주간보호, 취업 후 지원, 취업준비훈련, 단기보호, 직업능력평가, 결혼상담 등이 미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목욕서비스에 대한 욕구, 직업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시설서비스 욕구 미충족률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서비스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미취업이 63.2%로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서비스를 선택기준은 이동거리, 이용료, 프로그램 전문성, 서비스 내용, 시설규모, 인지도, 이용가능기간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이 생활에 있어 할인이 필요한 분야로 병원이라고 응답한 경우(52.2%)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필요에 따른 응답으로 보인다.

(6) 인터뷰 자료

인터뷰 대상	남성(50세), 정신장애
주거 (생활시설)	- 불편한 것은 별로 없고 자신이 음식은 잘 챙겨먹고 있다.
노동 (직업활동)	- 귀에서 환청이 많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다.
의료분야 (재활)	- 정신과만 다니고 있다. - 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 약값이 너무 많이 든다.
이동 (편의시설)	- 버스를 타고 다닌다. 처음엔 어머니랑 같이 다녔지만, 부모가 없을 때를 대비하여 혼자 다니는 연습을 하고 있다. - 지하철은 아직까지 타보지 않았다.
여가	- 취미생활도 없으며, 여행하고 싶지 않다. 그저 혼자서 텔레비전 보는 게 전부다. -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한다.
기타	- 현재로서는 경제적 도움만 필요하다.

6) 시각장애인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양천구 거주 장애인인 중 설문에 응답한 시각장애인(총 35명)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간단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이번에 조사된 시각장애인은 모두 성인(20세 이상)만이 응답하였다.

응답자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35명의 응답자 중 본인이 응답한 경우가 68.6%(24명)이

있고 배우자(3명), 아버지(1명), 자녀(1명)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97> 응답자

(n=35)			
구 분		빈 도	퍼센트(%)
응답자	본인	24	68.6
	기타	11	31.4
	합계	35	100.0
기타 내용	배우자	3	27.3
	아버지	1	9.1
	자·녀	3	27.3
	기타	4	36.4
	합계	11	100.0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의 장애 등급 및 연령으로 장애등급에 있어서는 1급 45.7%(16명), 2급 8.6%(3명), 5급 8.6%(3명), 6급 34.3%(12명)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경증의 장애도 많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5급과 6급의 표본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3-2-198> 장애등급

(n=35)			
구 분		빈 도	퍼센트(%)
장애등급	1급	16	45.7
	2급	3	8.6
	5급	3	8.6
	6급	12	34.3
	무응답	1	2.9
	합계	35	100.0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의 학력, 성별, 결혼에 관한 사항으로 학력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34.3%(12명), 초등학교 17.1%(6명), 중학교 14.3%(5명), (전문)대학 11.4%(4명), 대학원 5.7%(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증 장애가 표집집단에서 많았고 시각장애의 경우 보조기구를 활용한 학습방법이 개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로는 남자 42.9%(15명), 여자 57.1%(20명)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에 대해서는 기혼 68.6%(24명), 미혼 14.3%(5명)로 나타났다.

<표 3-2-199> 학력/성별/결혼

(n=35)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 분		빈 도	퍼센트(%)
학력	초등학교	6	17.1	성별	남자	15	42.9
	중학교	5	14.3		여자	20	57.1
	고등학교	12	34.3		합계	35	100.0
	(전문)대학	4	11.4	결혼	기혼	24	68.6
	대학원	2	5.7		미혼	5	14.3
	무학	6	17.1		기타	6	17.1
	합계	35	100.0		합계	35	100.0

시각장애인의 동거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다중응답으로 질문하였다. 총 54개의 응답 중에서 배우자 35.2%(19개), 자녀 33.3%(18개), 어머니 7.4%(4개), 아버지 5.6%(3개), 형제 3.7%(2개)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은 모두 '독거한다'로 13%(7개)로 나타났다.

<표 3-2-200> 동거인

(n=35)			
구 분		빈 도	퍼센트(%)
동거인	배우자	19	35.2
	어머니	4	7.4
	아버지	3	5.6
	할머니	1	1.9
	형제	2	3.7
	자녀	18	33.3
	기타	7	13.0
기타내용	합계	54	100.0
	독거	7	
	합계	7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의 주택소유에 관한 사항으로 전세 34.3%(12명), 자기소유 28.6%(10명), 월세 22.9%(8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은 임대, 친인척과 거주한다고 응답한 경우였다.

<표 3-2-201> 주택소유 형태

(n=35)			
구 분		빈 도	퍼센트(%)
주택소유 형태	자기소유	10	28.6
	전세	12	34.3
	월세	8	22.9
	기타	5	14.3
	합계	35	100.0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의 월평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월평균 수입은 41만원-80만원이 31.4%(11명), 1만원-40만원이 20%(7명), 121만원-200만원이 17.1%(6명), 81만원-120만원이 11.4%(4명), 200만원 이상이 8.6%(3명) 순이었다. 월평균 지출은 41만원-80만원이 28.6%(10명), 121만원-200만원이 20%(7명), 1만원-40만원 14.3%(5명), 81만원-120만원이 11.4%(4명), 200만원 이상이 8.6%(3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수입과 지출 면에서 균형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02> 월평균 수입/지출

(n=35)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 분	빈 도	퍼센트(%)		
월 평균 수입	1원-40만원	7	20.0	월 평균 지출	1원-40만원	5	14.3
	41만원-80만원	11	31.4		41만원-80만원	10	28.6
	81만원-120만원	4	11.4		81만원-120만원	4	11.4
	121만원-200만원	6	17.1		121만원-200만원	7	20.0
	200만원 이상	3	8.6		200만원 이상	3	8.6
	무응답	4	11.4		무응답	6	17.1
	합계	35	100.0		합계	35	100.0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의 지출 순위에 관한 사항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하였으며, 가중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식료품비 23%(38개), 의료비 18.2%(30개), 주거광열비 17%(28개), 빛 값는 비용 10.9%(18개), 교육비 10.3%(17개), 사회활동 및 경조사비 9.7%(16개)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형의 장애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2-203> 지출순위

(n=35)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산 합계		가중합산 합계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식료품비	4	13.8	11	40.7	4	16.7	19	23.8	38	23.0
교육비	4	13.8	2	7.4	1	4.2	7	8.8	17	10.3
의료비	6	20.7	5	18.5	2	8.3	13	16.3	30	18.2
주거광열비	6	20.7	3	11.1	4	16.7	13	16.3	28	17.0
교통비/차량유지비	1	3.4	0	0.0	2	8.3	3	3.8	5	3.0
사회활동 및 조사비	1	3.4	5	18.5	3	12.5	9	11.3	16	9.7
여가문화생활비	0	0.0	0	0.0	1	4.2	1	1.3	1	0.6
빛 값는 비용	4	13.8	1	3.7	4	16.7	9	11.3	18	10.9
재테크 및 금융	1	3.4	0	0.0	3	12.5	4	5.0	6	3.6
기타	2	6.9	0	0.0	0	0.0	2	2.5	6	3.6
합계	29	100	27	100	24	100	80	100	165	100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비수급)이 40%(14명), 차상위 계층이 8.6%(3명)로 나타났다.

<표 3-2-204> 수급자 현황

(n=35)			
구 분	빈 도	퍼센트(%)	
수급자 현황	기초생활수급자	14	40.0
	차상위 계층	3	8.6
	그외(일반)	14	40.0
	잘 모름	4	11.4
	합계	35	100.0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의 가족과의 관계 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매우 좋다' 40%(14명), '조금 좋다' 31.4%(11명), '조금 나쁘다' 17.1%(6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관계가 71.4%로 나타났다.

<표 3-2-205> 가족관계 정도

(n=35)			
구분	빈도	퍼센트(%)	
가족관계 정도	매우 나쁘다	0	0.0
	조금 나쁘다	6	17.1
	조금 좋다	11	31.4
	매우 좋다	14	40.0
	무응답	4	11.4
	합계	35	100.0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의 연령대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응답자 전체가 성인으로 '일부 남의 도움 필요'가 28.6%(10명), '모든 일상생활 가능'은 22.9%(8명),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와 '거의 남의 도움 필요'가 각각 17.1%(6명), '대부분 일상생활 가능'이 11.4%(4명) 순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62.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06> 연령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n=35)			
구분	빈도	퍼센트(%)	
전체 (성인 20세 이상)	모든 일상생활 가능	8	22.9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4	11.4
	일부 남의 도움 필요	10	28.6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6	17.1
	거의 남의 도움 필요	6	17.1
	무응답	1	2.9
	합계	35	100.0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을 주로 도와주는 사람에 관한 사항으로 배우자가 27.3%(6명), 유료활동보조인이 18.2%(4명), 자녀가 13.6%(3명), 무료활동보조인 9.1%(2명), 부모 또는 무료가정봉사원이 각각 4.5%(1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40.9%로 대체로 가족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시행되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표 3-2-207> 주로 도와주는 사람

(n=22)			
구분	빈도	퍼센트(%)	
도와주는 사람	배우자	6	27.3
	부모	1	4.5
	자녀	3	13.6
	이웃	1	4.5
	유료 활동보조인	4	18.2
	무료가정봉사원	1	4.5
	무료 활동보조인	2	9.1
	기타	1	4.5
	무응답	3	13.6
	합계	22	100.0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의 도움충분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응답자가 성인으로 '부족한 편이다'가 40.9%(9명), '충분한 편이다'가 31.8%(7명), '매우 부족하다'가 13.6%(3명), '매우 충분한 편이다'가 9.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도움 부족이 54.5%였으며, 충분이 40.9%로 나타났다.

<표 3-2-208> 도움충분정도

(n=22)			
구분	빈도	퍼센트(%)	
전체 (성인 20세 이상)	매우 부족하다	3	13.6
	부족한 편이다	9	40.9
	충분한 편이다	7	31.8
	매우충분한 편이다	2	9.1
	무응답	1	4.5
합계	22	100.0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관한 사항으로 완전자립이 51.4%(18명), 중증이 28.6%(10명), 경증이 14.3%(5명) 순으로 나타났다. 법정 장애의 비율과 비교해볼 때 수궁이 가는 결과이며, 이는 다른 장애유형보다도 일상생활능력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2-209>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n=35)	
구 분	빈 도	퍼센트(%)	
전체 (성인 20세 이상)	완전자립(이상없음)	18	51.4
	정도약함(경증)	5	14.3
	정도심함(중증)	10	28.6
	무응답	2	5.7
	합계	35	100.0

(2) 기관 이용현황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정도, 이용 경험 여부, 이용 희망 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서비스 제공기관 인지여부는 장애인복지관 89.3%(25명), 이동지원서비스 센터 60.7%(17명), 장애인정보화 교육기관 51.9%(14명), 유아교육기관 50%(13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50%(15명) 순이었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기관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경험은 장애인복지관 63.3%(19명), 이동지원서비스센터 46.4%(13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39.3%(11명), 장애인정보화 교육기관 18.5%(5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8.5%(5명), 재활 병·의원 16%(4명) 순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으나 이용경험 역시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인지도와 이용경험(16.7%, 7.4%)과 점자도서관의 인지도 및 이용률(41.4%, 11.5%)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해당 기관에 대한 홍보부족과 양천구에 관련기관이 없는 것이 원인으로 보여진다. 이용 희망여부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76%(19명),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70.4%(19명), 이동지원서비스센터 68%(17명),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점자도서관이 각각 57.7%(15명), 재활 병·의원이 56%(14명) 순으로 나타났다. 홍보가 활성화되고, 해당 장애기관이 있으면 이용률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지원센터, 점자도서관을 제외하고 대체로 이용률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복지관 이용, 이동서비스지원 기관, 직업재활 및 교육서비스 기관에 대한 이용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표 3-2-210> 기관 이용현황

기 관 명	인지여부		이용경험여부		이용희망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13(43.3)	17(56.7)	1(4.0)	24(96.0)	5(20.8)	19(79.2)
특수교육 지원센터	9(33.3)	18(66.7)	1(4.2)	23(95.8)	8(33.3)	16(66.7)
유아교육기관	13(50.0)	13(50.0)	1(4.3)	22(95.7)	3(12.5)	21(87.5)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14(51.9)	13(48.1)	5(18.5)	22(81.5)	15(57.7)	11(42.3)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10(35.7)	18(64.3)	4(14.8)	23(85.2)	15(57.7)	11(42.3)
장애인복지관	25(89.3)	3(10.7)	19(63.3)	11(36.7)	19(76.0)	6(24.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5(50.0)	15(50.0)	5(18.5)	22(81.5)	14(53.8)	12(46.2)
직업재활시설	13(44.8)	16(55.2)	3(11.5)	23(88.5)	9(36.0)	16(64.0)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2(41.4)	17(58.6)	4(15.4)	22(84.6)	13(52.0)	12(48.0)
장애인생활시설	9(32.1)	19(67.9)	2(7.7)	24(92.3)	9(36.0)	16(64.0)
중증장애인요양시설	10(34.5)	19(65.5)	3(11.5)	23(88.5)	10(38.5)	16(61.5)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7(25.0)	21(75.0)	1(4.0)	24(96.0)	4(16.7)	20(83.3)
그룹홈(공동생활가정)	6(21.4)	22(78.6)	1(4.2)	23(95.8)	5(20.8)	19(79.2)
주간·단기 보호시설	10(34.5)	19(65.5)	0(0.0)	26(100.0)	6(24.0)	19(76.0)
장애인전용체육관	7(24.1)	22(75.9)	3(11.5)	23(88.5)	14(53.8)	12(46.2)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보건소)	13(43.3)	17(56.7)	11(39.3)	17(60.7)	12(48.0)	13(52.0)
재활 병·의원	9(33.3)	18(66.7)	4(16.0)	21(84.0)	14(56.0)	11(44.0)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10(34.5)	19(65.5)	5(19.2)	21(80.8)	10(40.0)	15(60.0)
이동지원서비스센터	17(60.7)	11(39.3)	13(46.4)	15(53.6)	17(68.0)	8(32.0)
심부름센터	10(35.7)	18(64.3)	3(11.5)	23(88.5)	15(57.7)	11(42.3)

기관명	인지여부		이용경험여부		이용희망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교통안전공단	5(18.5)	22(81.5)	2(7.7)	24(92.3)	11(44.0)	14(56.0)
사회복지시설	3(11.5)	23(88.5)	2(8.3)	22(91.7)	6(26.1)	17(73.9)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5(16.7)	25(83.3)	2(7.4)	25(92.6)	19(70.4)	8(29.6)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12(41.4)	17(58.6)	3(11.5)	23(88.5)	15(57.7)	11(42.3)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5(19.2)	21(80.8)	2(7.7)	24(92.3)	7(30.4)	16(69.6)

(3) 연령별 서비스 현황

<표 3-2-7>는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 중 성인기(20세 이상)의 서비스 미충족률에 관한 사항이다. 전체 응답자가 성인으로 미충족률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미충족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목욕서비스,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 시설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여가 및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의 미충족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인권, 치료에 대한 서비스 미충족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필요한 서비스 내용은 컴퓨터 교육, 이동차량지원 등으로 응답되었다.

<표 3-2-211> 성인기(20세 이상) 서비스 현황

(n=35)

사업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
	필요 (%)	불필요 (%)	이용 (%)	비이용 (%)	
인문학 교육	11(52.4)	10(47.6)	0(0.0)	11(100.0)	100.0
인권 교육	10(47.6)	11(52.4)	1(10.0)	9(90.0)	90.0
정보화교육	20(83.3)	4(16.7)	2(10.0)	18(90.0)	90.0
일상생활훈련	11(50.0)	11(50.0)	1(9.0)	10(90.9)	90.9
직업상담	14(66.7)	7(33.3)	2(14.3)	12(85.7)	58.7
직업능력 평가	12(57.1)	9(42.9)	1(8.3)	11(91.7)	91.7
취업 준비 훈련	14(66.7)	7(33.3)	0(0.0)	14(100.0)	100.0
보호 작업	7(38.9)	11(61.1)	0(0.0)	7(100.0)	100.0

사업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
	필요 (%)	불필요 (%)	이용 (%)	비이용 (%)	
취업 후 지원	14(66.7)	7(33.3)	1(7.1)	13(92.9)	92.9
취업알선	14(66.7)	7(33.3)	1(7.1)	13(92.9)	92.9
물리치료	14(63.6)	8(36.4)	1(7.1)	13(92.9)	92.9
언어치료(의사소통훈련)	10(47.6)	11(52.4)	1(10.0)	9(90.0)	90.0
심리치료(원예치료/댄스치료/드라마치료)	11(52.4)	10(47.6)	0(0.0)	11(100.0)	100.0
작업치료	9(42.9)	12(57.1)	0(0.0)	9(100.0)	100.0
주간보호	10(45.5)	12(54.5)	1(10.0)	9(90.0)	100.0
단기보호	8(40.0)	12(60.0)	0(0.0)	8(90.0)	100.0
그룹홈	6(31.6)	13(68.4)	0(0.0)	6(100.0)	100.0
결혼상담	7(33.3)	14(66.7)	0(0.0)	7(100.0)	100.0
성교육/성상담	8(38.1)	13(61.9)	0(0.0)	8(100.0)	100.0
활동보조서비스	19(79.2)	5(20.8)	8(42.1)	11(57.9)	57.9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14(63.6)	8(36.4)	4(28.6)	10(71.4)	71.4
노인 돌보미 서비스	13(61.9)	8(38.1)	3(23.1)	10(76.9)	76.9
산모 신생아 돌보미 서비스	7(33.3)	14(66.7)	1(14.3)	6(85.7)	85.7
이동목욕서비스	8(38.1)	13(61.9)	0(0.0)	8(100.0)	100.0
이·미용서비스	17(73.9)	6(26.1)	2(11.8)	15(88.2)	88.2
여가활동	15(68.2)	7(31.8)	1(6.7)	14(93.3)	93.3
체육활동	14(66.7)	7(33.3)	0(0.0)	14(100.0)	100.0
문화활동	12(60.0)	8(40.0)	0(0.0)	12(100.0)	100.0
체력단련실 등 장소이용	13(61.9)	8(38.1)	1(7.7)	12(92.3)	92.3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13(65.0)	7(35.0)	2(15.4)	11(84.6)	84.6

(4) 기타 서비스 욕구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의 취업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미취업 77.1%(27명), 취업 14.3%(5명)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미취업이 77.1%로 매우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표 3-2-212> 현재 취업여부

(n=35)			
구 분		빈 도	퍼센트(%)
취업여부	취업	5	14.3
	미취업	27	77.1
	무응답	3	8.6
	합계	35	100.0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의 취업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와 자영업이 각각 20%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은 동사무소 장애인행정보조, 장애인단체, 미화원으로 응답되었다.

<표 3-2-213> 취업 분야

(n=5)			
구 분		빈 도	퍼센트(%)
분야	자영업	1	20.0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	1	20.0
	기타	3	60.0
	합계	5	100.0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의 취업분야에서의 현재 직무에 대해 5명이 응답하였으며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2-214> 현재 직무

(n=5)		
구 분	빈 도	퍼센트(%)
사무관리	1	20.0
안마	1	20.0
사무업무	2	40.0
무응답	1	20.0
합계	5	100.0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의 취업현장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해 5명이 응답하였으며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2-215> 근무기간

(n=5)			
구 분		빈 도	퍼센트(%)
근무기간	6개월 미만	1	20.0
	6개월 ~ 1년	2	40.0
	2년 ~ 5년 미만	2	40.0
	합계	5	100.0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의 취업현장에서의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45.7%(16명), '고려하고 있다' 20%(7명)로 나타났다. 무응답도 12명이나 되었다.

<표 3-2-216>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n=35)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고려	7	20.0
	미고려	16	45.7
	무응답	12	34.3
	합계	35	100.0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의 구직과 이직 희망 업종에 관해 7명이 응답하였으며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2-217> 구직과 이직 희망 업종

		(n=7)	
구 분		빈 도	퍼센트(%)
희망일자리	자영업	2	28.6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1	14.3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	2	28.6
	기타	1	14.3
	무응답	1	14.3
	합계	7	100.0

직업생활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희망급여에 관해 7명이 응답하였으며,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2-218> 희망급여

		(n=7)	
구 분		빈 도	퍼센트(%)
희망급여	100만원~149만원	3	42.9
	무응답	4	57.1
	합계	7	100.0

직업생활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이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 때문에 50%(8명), 일자리가 없어서 6.3%(1명)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은 노력과 욕아문제 라고 응답하였다.

<표 3-2-219> 구직활동 않는 이유

		(n=16)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직활동 않는 이유	장애 때문에	8	50.0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1	6.3
	기타	4	25.0
	무응답	3	18.8
	합계	16	100.0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인지하는 경로에 관한 사항으로 이웃 및 친지 24.4%(10명), 방송 및 언론매체·공무원가 22%(9명), 사회복지기관 19.5%(8명), 인쇄매체(전단지 등)가 7.3%(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20> 서비스 인지경로

		(n=41)	
구 분		빈 도	퍼센트(%)
서비스 인지경로	인쇄매체(전단지 등)	3	7.3
	이웃 및 친지	10	24.4
	방송 및 언론매체	9	22.0
	공무원	9	22.0
	사회복지기관	8	19.5
	기타	2	4.9
	합계	41	100.0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가치 치 합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동거리 37.5%(54개), 서비스 내용 18.8%(27개), 이용료 17.4%(25개), 프로그램 전문성 11.8%(17개)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21> 서비스 선택기준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산 합계		가중합산 합계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이동거리	15	57.7	3	13.6	3	13.6	21	30.0	54	37.5
시설규모	1	3.8	1	4.5	1	4.5	3	4.3	6	4.2
이용료	2	7.7	7	31.8	5	22.7	14	20.0	25	17.4
인지도	0	0.0	0	0.0	2	9.1	2	2.9	2	1.4
이용가능 기간	2	7.7	3	13.6	1	4.5	6	8.6	13	9.0
프로그램의 전문성	3	11.5	3	13.6	2	9.1	8	11.4	17	11.8
서비스 내용	3	11.5	5	22.7	8	36.4	16	22.9	27	18.8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합계	26	100	22	100	22	100	70	100	144	100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의 연령대별 필요한 서비스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살펴 보면 방문기회(공연장, 전시장 등) 14.3%(5명), 학습기회(음악/미술 등) 확대와 테마관광 기회확대가 8.6%(3명), 동아리활동기회 확대 2.9%(1명)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은 경제적 도움으로 응답되었다.

<표 3-2-222> 연령별 필요한 서비스

			(n=35)	
구 분		빈 도	퍼센트(%)	
전체 (성인, 20세 이상)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5	14.3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3	8.6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 기회확대	1	2.9	
	(역사/생태 등)테마관광 기회확대	3	8.6	
	기타	5	14.3	
	무응답	18	51.4	
	합계	35	100.0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의 자택자원봉사활동 등의 및 반대이유에 관한 사항으로 반대 42.9%(15명), 동의 31.4%(11명)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가족이 있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함, 미안하기 때문, 기관에서 받는 것이 편함,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음, 직접지원 선호로 응답되었다. 향후 양천구의 자원봉사자 관련 사업추진 시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고, 자원봉사활동이 이용자 중심의 봉사활동 계획, 교육, 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3-2-223> 자택 자원봉사활동 등의 여부/반대이유

			(n=35)	
구 분		빈 도	퍼센트(%)	
자택 자원 봉사 활동	동의	11	31.4	
	비동의	15	42.9	
	무응답	9	25.7	
	합계	35	100.0	
반대 이유	가족이 있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함, 미안하기 때문, 기관에서 받는 것이 편함,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음, 직접지원 선호, 무응답,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이 생각하는 인식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이 각각 22.9%(8명), 장애인지역행사 참여 14.3%(5명), 비장애 통합프로그램 운영 8.6%(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24> 인식개선방안

			(n=35)	
구 분		빈 도	퍼센트(%)	
인식 개선 방안	홍보(캠페인, 방송 등)	8	22.9	
	인식개선 교육	8	22.9	
	장애인의 지역행사참여	5	14.3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 운영	3	8.6	
	무응답	11	31.4	
	합계	35	100.0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이 생각하는 생활에 있어 할인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병원 57.1%(20명), 차량정비 8.6%(3명), 식당과 학원이 각각 5.7%(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의료적 필요와 이동상 필요에 따른 응답으로 보여진다.

<표 3-2-225> 할인혜택 분야

			(n=35)	
구 분		빈 도	퍼센트(%)	
할인혜택분야	병원	20	57.1	
	식당	2	5.7	
	학원	2	5.7	
	차량정비	3	8.6	
	무응답	8	22.9	
	합계	35	100.0	

응답 대상 시각장애인의 집수리 필요 및 희망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가급적 고치고 싶다' 31.4%(11명), '별로 고치고 싶지 않다' 22.9%(8명), '전혀 고치고 싶지 않다'

14.3%(5명), '반드시 고치고 싶다' 5.7%(2명)로 나타났다. 집수리 내용은 문턱, 화장실, 현관문, 내 기준에 맞고 편리하게, 모두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

<표 3-2-226> 집수리 여부/희망내용

		(n=35)	
구 분		빈 도	퍼센트 (%)
집개조	반드시 고치고 싶다	2	5.7
	가급적 고치고 싶다	11	31.4
	별로 고치고 싶지 않다	8	22.9
	전혀 고치고 싶지 않다	5	14.3
	기타	1	2.9
	무응답	8	22.9
	합계	35	100.0
집수리 희망내용	문턱, 화장실, 현관문, 내 기준에 맞고 편리하게, 모두		

(5) 소결

본 조사에서는 응답한 시각장애인 3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시각장애인 영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 특이사항을 정리해 보면 첫째, 자가 주택 소유자가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응답자 중 120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이 62.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차상위를 포함한 저소득 층이 48.6%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관계는 긍정적인 응답이 71.4%로 나타났다. 넷째, 일부라도 도움이 필요한 응답자가 62.8%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이었으며,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여섯째, 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자립 51.4%, 중증, 경중의 합이 42.8%로 자립이 약간 높았지만 일상생활능력에 있어 자립이 되고 않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기관 이용현황 및 욕구에 측면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이용률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관에서는 기관인지, 이용경험, 이용희망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점자도서관의 인지 및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보부족과 함께 양천구에 관련기관이 없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복지관 이용, 이동서비스지원 기관, 직업재활 및 교육서비스 기관에 대한 이용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연령대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측면에서는 미중족률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미중족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목욕서비스,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 시설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여가 및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의 미중족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인권, 치료에 대한 서비스 미중족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필요한 서비스 내용은 컴퓨터 교육, 이동차량지원 등으로 응답되었다.

기타 서비스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미취업이 77.1%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를 선택기준은 이동거리, 서비스 내용, 이용료, 프로그램 전문성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이 생활에 있어 할인이 필요한 분야에 병원 57.1%, 차량 정비 8.6%, 식당, 학원 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필요와 이동의 필요에 따른 응답으로 보여진다.

(6) 인터뷰 자료

인터뷰 대상(1)	여성(나이 안밝힘), 시각장애
주거 (생활시설)	- 도로가라서 집이 시끄럽다. - 화장실과 욕조가 가까이 있어서 움직이기 불편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싱크대의 높이가 안 맞아서 힘들다. - 처음 이사 와서 도우미와 연결이 되지 않아서 힘들었다.
노동 (직업활동)	- 손으로 작업해야하는데 손으로 무엇을 하는 게 두렵다. - 단순노동은 할 수 있는데도 취직시켜 주지 않는다.
의료분야 (재활)	- 암에 걸렸으므로 소견서를 받을 때에 거리가 멀었고, 의료보험공단을 찾아가는 게 멀고 어려웠다. - 병원이나 이용시설이 가까이 위치하였으면 한다.

이동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을 주로 이용한다. 그런데, 지하철에 계단이 너무 많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적다. - 장애인콜택시는 경제적 부담이 있지만 가장 편하다. - 버스는 유료이므로 잘 이용하지 않고 또한 빨리 빨리 타고 내려야하므로 너무 위험하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인들도 장애경험을 1달에서 1주일 정도 경험해서 장애인들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인터뷰 대상(2)	남(11), 시각장애(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중복)
주거 (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숙한 환경에서는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 익숙하지 않은 사물이 생겼을 때 걸려서 넘어진다. 넘어지는 것도 익숙해 져서 방어가 된다.
의료분야 (재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에서 수영과 체육을 먼저 했고 지금은 미술과 언어프로그램 하고 있다.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다. -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싶어 하는데, 아이를 배려해 주는 학원이 별로 없다.
이동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에서 본의 아니게 전동휠체어랑 부딪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성인장애인(체력단련실 이용 장애인)의 경우 활동이 큰 아이들과 서로 배려해줄 필요가 있다.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지만, 여행은 못가는 형편이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보호나 단기보호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7) 청각장애인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양천구 거주 장애인인 중 설문에 응답한 청각장애인(총 30명)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응답자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30명의 응답자 중 본인 응답이 90%(27명), 기타 어머니, 자녀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27> 응답자

		(n=30)	
구 분	빈 도	퍼센트(%)	
응답자	본인	27	90.0
	기타	3	10.0
	무응답	0	0.0
	합계	30	100.0
기타 내용	어머니	2	6.7
	자·녀	1	3.3
	합계	3	10.0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의 장애 등급 및 연령으로 장애등급에 있어서는 4급이 33.3%(10명), 2급 30%(9명), 3급 16.7%(5명), 6급 10%(3명), 1급 3.3%(1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취학아동 및 청소년 3.3%(1명), 성인 96.7%(29명)로 나타났다. 주로 성인들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28> 장애등급/연령

		(n=30)	
구 분	빈 도	퍼센트(%)	
장애등급	1급	1	3.3
	2급	9	30.0
	3급	5	16.7
	4급	10	33.3
	5급	0	0.0
	6급	3	10.0
	무응답	2	6.7
	합계	30	100.0
연령	미취학아동(0세~7세)	0	0.0
	취학아동(8세~19세)	1	3.3
	성인(20세 이상)	29	96.7
	무응답	0	0.0
	합계	30	100.0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의 학력, 성별, 결혼에 관한 사항으로 학력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26.7%(8명), 무학 16.7%(5명), 중학교와 (전문)대학이 각각 13.3%(4명)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56.7%(17명), 여자 40%(12명)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에 대해서는 기혼 73.3%(22명), 미혼 23.3%(7명)로 나타났다.

<표 3-2-229> 학력/성별/결혼

		(n=30)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 분	빈 도	퍼센트(%)	
학력	미취학	0	0.0	성별	남자	17	56.7
	유치원/어린이집	0	0.0		여자	12	40.0
	초등학교	8	26.7		무응답	1	3.3
	중학교	4	13.3	합계	30	100.0	
	고등학교	8	26.7	결혼	기혼	22	73.3
	(전문)대학	4	13.3		미혼	7	23.3
	무학	5	16.7		기타	0	0.0
	기타	0	0.0		무응답	1	3.3
	무응답	1	3.3		합계	30	100.0
	합계	30	100.0				

다중응답으로 물어본 청각장애인의 동거여부에 대한 총 40개의 응답 중에서 배우자가 42.5%(17개), 자녀 15%(6개), 어머니 7.5%(3개), 손자녀 7.5%(3개), 아버지 5%(2개) 순으로 답하였다. 기타 의견 중에는 '혼자 산다'고 답한 경우가 7개(17.5%)가 있었다.

<표 3-2-230> 동거인

		(n=30)	
구 분	빈 도	퍼센트(%)	
동거인	배우자	17	42.5
	어머니	3	7.5
	아버지	2	5.0
	할아버지	0	0.0
	할머니	0	0.0
	형제	1	2.5
	자매	1	2.5
	자녀	6	15.0
	손자녀	3	7.5
	친척	0	0.0
	기타	7	17.5
	무응답	0	0.0
	합계	40	100.0
기타내용	독거	7	17.5
	합계	7	17.5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의 주택소유에 관한 사항으로 월세가 46.7%(14명), 자기소유가 33.3%(10명), 전세가 16.7%(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31> 주택소유 형태

		(n=30)	
구 분	빈 도	퍼센트(%)	
주택소유 형태	자기소유	10	33.3
	전세	5	16.7
	월세	14	46.7
	기타	1	3.3
	무응답	0	0.0
	합계	30	100.0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의 월평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월평균 수입에 대해서는 1원-40만원이 43.3%(13명), 41만원-80만원과 121만원-199만원이 20%(6명), 200만원 이상이 10%(3명), 81만원-120만원이 6.7%(2명)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지출에 대해서는 41만원-80만원이 40%(12명), 121만원-200만원 20%(6명), 40만원 이하가 16.7%(5명), 200만원 이상은 3.3%(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32> 월평균 수입/지출

(n=30)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 분		빈 도	퍼센트(%)
월 평 균 수 입	1원-40만원	13	43.3	월 평 균 지 출	1원-40만원	5	16.7
	41만원-80만원	6	20.0		41만원-80만원	12	40.0
	81만원-120만원	2	6.7		81만원-120만원	0	0.0
	121만원-200만원	6	20.0		121만원-200만원	6	20.0
	200만원 이상	3	10.0		200만원 이상	1	3.3
	무응답	3	10.0		무응답	6	20.0
	합계	30	100.0		합계	30	100.0

<표 3-2-233> 지출순위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산 합계		가중합산 합계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식료품비	4	13.3	5	16.7	5	16.7	14	25.9	27	24.3
교육비	2	6.7	1	3.3	0	0.0	3	5.6	8	7.2
의료비	8	26.7	4	13.3	3	10.0	15	27.8	35	31.5
주거광열비	2	6.7	5	16.7	4	13.3	11	20.4	20	18.0
교통비/차량유지비	0	0.0	0	0.0	2	6.7	2	3.7	2	1.8
사회활동 및 조사비	0	0.0	0	0.0	3	10.0	3	5.6	3	2.7
여가문화생활비	0	0.0	0	0.0	0	0.0	0	0.0	0	0.0
빛 값는 비용	4	13.3	2	6.7	0	0.0	6	11.1	16	14.4
재테크 및 금융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무응답	10	33.3	13	43.3	13	43.3				
합계	30	100.0	30	100.0	30	100.0	54	100.0	111	100.0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의 지출 순위에 관한 사항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하였으며, 가중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총 111개의 응답 중에서 식료품비 24.3%(27개), 의료

비 31.5%(35개), 주거광열비 18%(20개), 빛 값는 비용 14.4%(16개), 교육비 7.2%(8개)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비수급) 40%(12명), 기초생활수급자 33.3%(10명), 차상위계층 10%(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34> 수급자 현황

(n=30)			
구 분		빈 도	퍼센트(%)
수 급 자 현 황	기초생활수급자	10	33.3
	차상위 계층	3	10.0
	그외(일반)	12	40.0
	잘 모름	4	13.3
	무응답	1	3.3
	합계	30	100.0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의 가족과의 관계 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매우 좋다'와 '조금 좋다'가 각각 26.7%(8명), '조금 나쁘다'가 13.3%(4명), '매우 나쁘다'가 6.7%(2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관계가 53.4%로 나타났다.

<표 3-2-235> 가족관계 정도

(n=30)			
구 분		빈 도	퍼센트(%)
가 족 관 계 정 도	매우 나쁘다	2	6.7
	조금 나쁘다	4	13.3
	조금 좋다	8	26.7
	매우 좋다	8	26.7
	무응답	8	26.7
	합계	30	100.0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의 연령대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남의 도움 필요' 30%(9명), '모든 일상생활 가능' 23.3%(7명), '대부분 일상생활 가능'과 '거의 남의 도움 필요'가 각각 16.7%(5명),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가 3.3%(1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일부 남의 도움 필요'가 27.6%(8명), '모든 일상생활 가능'이 24.1%(7명), '대부분 일상생활 가능'과 '거의 남의 도움 필요'가 각각 17.2%(5명),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가 3.4%(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36> 연령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n=30)			
구 분	빈 도	퍼센트(%)	
전체	모든 일상생활 가능	7	23.3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5	16.7
	일부 남의 도움 필요	9	30.0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1	3.3
	거의 남의 도움 필요	5	16.7
	무응답	3	10.0
	합계	30	100.0
	취학아동 (8세~19세)	모든 일상생활 가능	0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0	0.0
일부 남의 도움 필요		1	100.0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0	0.0
거의 남의 도움 필요		0	0.0
무응답		0	0.0
합계		1	100.0
성인 (20세 이상)	모든 일상생활 가능	7	24.1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5	17.2
	일부 남의 도움 필요	8	27.6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1	3.4
	거의 남의 도움 필요	5	17.2
	무응답	3	10.3
	합계	0	0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을 주로 도와주는 사람에 관한 사항으로 배우자 33.3%(5명), 자녀 13.3%(2명), 부모와 이웃이 6.7%(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37> 주로 도와주는 사람

(n=15)			
구 분	빈 도	퍼센트(%)	
도와주는 사람	배우자	5	33.3
	부모	1	6.7
	자녀	2	13.3
	이웃	1	6.7
	기타	3	20.0
	무응답	3	20.0
	합계	15	100.0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의 도움충분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편이다'가 53.3%(8명), '매우 부족하다'가 33.3%(5명), '매우 충분한 편이다'가 6.7%(1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매우 부족한 편이다'가 50%(7명), '매우 부족하다'가 35.7%(5명), '충분하다'와 '매우 충분한 편이다'가 각각 7.1%(1명)씩 있었다.

<표 3-2-238> 도움충분정도

(n=15)			
구 분	빈 도	퍼센트(%)	
전체	매우 부족하다	5	33.3
	부족한 편이다	8	53.3
	충분한 편이다	0	0.0
	매우충분한 편이다	1	6.7
	무응답	1	6.7
	합계	15	100.0
취학아동 (8세~19세)	매우 부족하다	0	0.0
	부족한 편이다	1	100.0
	충분한 편이다	0	0.0
	매우충분한 편이다	0	0.0
	합계	1	100.0
성인 (20세 이상)	매우 부족하다	5	35.7
	부족한 편이다	7	50.0
	충분한 편이다	1	7.1
	매우충분한 편이다	1	7.1
	합계	0	0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자립 53.3%(16명), 중증 6.7%(2명), 경증 3.3%(1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완전 자립 55.2%(16명), 중증과 경증이 각각 3.4%(1명) 씩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결과는 일상생활능력이 있어 완전자립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3-2-239>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n=30)	
구 분	빈 도	퍼센트(%)	
전체	완전자립(이상없음)	16	53.3
	정도약함(경증)	1	3.3
	정도심함(중증)	2	6.7
	무응답	11	36.7
	합계	30	100.0
취학아동 (8세~19세)	완전자립(이상없음)	0	0.0
	정도약함(경증)	0	0.0
	정도심함(중증)	1	100.0
	무응답	0	0.0
	합계	1	100.0
성인 (20세 이상)	완전자립(이상없음)	16	55.2
	정도약함(경증)	1	3.4
	정도심함(중증)	1	3.4
	무응답	11	37.9
	합계	29	0

(2) 기관 이용현황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정도, 이용 경험 여부, 이용 희망 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서비스 제공기관 인지여부는 장애인복 84.2%(16명), 장애인정보화 교육기관 47.4%(9명),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46.7%(14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44.4%(8명), 유아교육기관 41.2%(7명), 장애인생활시설 38.9%(7명), 중증장애인요양원 35.3%(6명) 순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관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70.6%(12명),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52.9%(9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33.3%(5

명), 장애인고용촉진공단 26.7%(4명),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 20%(3명) 순으로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인 이용경험 역시 인지도 만큼 낮게 나타났다. 이용 희망여부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61.5%(8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가 각각 60%, 재활 병·의원 58.8%(10명),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과 교통안전공단이 각각 5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40> 기관 이용현황

기 관 명	인지여부		이용경험여부		이용희망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6(31.6)	13(68.4)	2(12.5)	14(87.5)	2(15.4)
특수교육 지원센터	5(27.8)	13(72.2)	2(13.3)	13(86.7)	3(23.1)	10(76.9)
유아교육기관	7(41.2)	10(58.8)	2(13.3)	13(86.7)	3(25.0)	9(75.0)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9(47.4)	10(52.6)	9(52.9)	8(47.1)	7(53.8)	6(46.2)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3(16.7)	15(83.3)	3(20.0)	12(80.0)	8(57.1)	6(42.9)
장애인복지관	16(84.2)	3(15.8)	12(70.6)	5(29.4)	8(61.5)	5(38.5)
장애인자립생활센터	5(26.3)	14(73.7)	1(6.3)	15(93.8)	9(60.0)	6(40.0)
직업재활시설	5(29.4)	12(70.6)	1(7.1)	13(92.9)	6(46.2)	7(53.8)
장애인고용촉진공단	5(29.4)	12(70.6)	4(26.7)	11(73.3)	7(53.8)	6(46.2)
장애인생활시설	7(38.9)	11(61.1)	0(0.0)	15(100.0)	9(56.3)	7(43.8)
중증장애인요양시설	6(35.3)	11(64.7)	0(0.0)	13(100.0)	5(38.5)	8(61.5)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2(12.5)	14(87.5)	0(0.0)	12(100.0)	2(20.0)	8(80.0)
그룹홈(공동생활가정)	3(17.6)	14(82.4)	0(0.0)	13(100.0)	2(16.7)	10(83.3)
주간·단기 보호시설	3(16.7)	15(83.3)	0(0.0)	14(100.0)	3(23.1)	10(76.9)
장애인전용체육관	4(22.2)	14(77.8)	1(7.1)	13(92.9)	8(53.3)	7(46.7)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보건소)	8(44.4)	10(55.6)	5(33.3)	10(66.7)	9(60.0)	6(40.0)
재활 병·의원	6(33.3)	12(66.7)	0(0.0)	15(100.0)	10(58.8)	7(41.2)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4(22.2)	14(77.8)	1(6.7)	14(93.3)	6(40.0)	9(60.0)
이동지원서비스센터	7(38.9)	11(61.1)	1(7.1)	13(92.9)	7(46.7)	8(53.3)

기관명	인지여부		이용경험여부		이용희망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심부름센터	3(16.7)	15(83.3)	0(0.0)	14(100.0)	3(25.0)	9(75.0)
교통안전공단	2(11.1)	16(88.9)	0(0.0)	14(100.0)	8(57.1)	6(42.9)
사회복지시설	3(18.8)	13(81.3)	0(0.0)	12(100.0)	3(27.3)	8(72.7)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14(46.7)	16(53.3)	0(0.0)	10(100.0)	3(33.3)	6(66.7)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2(13.3)	13(86.7)	0(0.0)	12(100.0)	5(45.5)	6(54.5)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4(26.7)	11(73.3)	1(7.1)	13(92.9)	8(50.0)	8(50.0)

(3) 연령별 서비스 현황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 중 성인기(20세 이상)의 서비스 미충족률에 관한 사항이다. 성인기에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미충족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고, 미충족률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육(인문학:88.9%, 인권교육:89.9%, 정보화교육:80.0%, 일상생활:87.5%)부분에 대한 미충족률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직업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욕구 미충족률이 70-80%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화 및 체육활동과 관련된 욕구의 미충족률이 80%대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필요한 서비스 내용에는 TV자막 고급 보청기 확보, 무료 보장구, 빠른 정보, 인공와우 수술 후 언어치료, 취업지원으로 응답되었다.

<표 3-2-241> 성인기(20세 이상) 서비스 현황

사업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
	필요 (%)	불필요 (%)	이용 (%)	비이용 (%)	
인문학 교육	9(69.2)	4(30.8)	1(11.1)	8(88.9)	88.9
인권 교육	9(69.2)	4(30.8)	1(11.1)	8(89.9)	89.9
정보화교육	10(76.9)	3(23.1)	2(20.0)	8(80.0)	80.0
일상생활훈련	8(66.7)	4(33.3)	1(12.5)	7(87.5)	87.5
직업상담	10(76.9)	3(23.1)	3(30.0)	7(70.0)	70.0

사업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
	필요 (%)	불필요 (%)	이용 (%)	비이용 (%)	
직업능력 평가	8(72.7)	3(27.3)	1(12.5)	7(87.5)	87.5
취업 준비 훈련	8(72.7)	3(27.3)	1(12.5)	7(87.5)	87.5
보호 작업	5(50.0)	5(50.0)	1(20.0)	4(80.0)	80.0
취업 후 지원	8(72.7)	3(27.3)	1(12.5)	7(87.5)	87.5
취업알선	10(76.9)	3(23.1)	2(20.0)	8(80.0)	80.0
물리치료	8(66.7)	4(33.3)	2(25.0)	6(75.0)	75.0
언어치료(의사소통훈련)	5(50.0)	5(50.0)	1(20.0)	4(80.0)	80.0
심리치료(원예치료/댄스치료/드라마치료)	6(60.0)	4(40.0)	2(33.3)	6(66.7)	66.7
작업치료	6(60.0)	4(40.0)	1(16.7)	5(83.3)	83.3
주간보호	4(44.4)	5(55.6)	1(25.0)	3(75.0)	75.0
단기보호	3(33.3)	6(66.7)	1(33.3)	2(66.7)	66.7
그룹홈	3(33.3)	6(66.7)	1(33.3)	2(66.7)	66.7
결혼상담	4(44.4)	5(55.6)	1(25.0)	3(75.0)	75.0
성교육/성상담	4(44.4)	5(55.6)	1(25.0)	3(75.0)	75.0
활동보조서비스	5(50.0)	5(50.0)	1(20.0)	4(80.0)	80.0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4(40.0)	6(60.0)	1(25.0)	3(75.0)	75.0
노인 돌보미 서비스	5(45.5)	6(54.5)	1(20.0)	4(80.0)	80.0
산모 신생아 돌보미 서비스	4(44.4)	5(55.6)	1(25.0)	3(75.0)	75.0
이동목욕서비스	6(54.5)	5(45.5)	2(33.3)	4(66.7)	66.7
이·미용서비스	6(60.0)	4(40.0)	3(50.0)	3(50.0)	50.0
여가활동	6(54.5)	5(45.5)	1(16.7)	5(83.3)	83.3
체육활동	7(63.6)	4(36.4)	3(42.9)	4(57.1)	57.1
문화활동	5(50.0)	5(50.0)	1(20.0)	4(80.0)	80.0
체력단련실 등 장소이용	6(54.5)	5(45.5)	1(16.7)	5(83.3)	83.3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6(60.0)	4(40.0)	1(16.7)	5(83.3)	83.3

(4) 기타 서비스 욕구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의 취업여부에 관한 사항은 미취업 72.4%(21명), 취업 6.9%(2명)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미취업이 72.4%로 매우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표 3-2-242> 현재 취업여부

(n=29)

구 분		빈 도	퍼센트(%)
취업여부	취업	2	6.9
	미취업	21	72.4
	무응답	6	20.7
	합계	29	100.0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의 취업분야에 관한 사항은 2인이 응답하였으며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2-243> 취업 분야

(n=2)

구 분		빈 도	퍼센트(%)
분야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원예업	0	0.0
	자영업	1	50.0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0	0.0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	1	50.0
	기타	0	0.0
	합계	2	100.0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의 취업분야에서의 현재 직무에 대한 사항은 2인이 응답하였으며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2-244> 현재 직무

(n=2)

구 분	빈 도	퍼센트(%)
관리직	1	50.0
자영업	1	50.0
합계	2	100.0

응답 대상 장애인의 취업현장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사항은 2인이 응답하였으며,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2-245> 근무기간

(n=2)

구 분	빈 도	퍼센트(%)	
근무기간	6개월 미만	0	0.0
	6개월 ~ 1년	0	0.0
	1년 ~ 2년	0	0.0
	2년 ~ 5년 미만	0	0.0
	5년 이상	1	50.0
	무응답	1	50.0
	합계	2	100.0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의 취업현장에서의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와 44.8%(13명), '고려하고 있다'가 41.4%(12명)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3-2-246>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n=29)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고려	12	41.4
	미고려	13	44.8
	무응답	4	13.8
	합계	29	100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의 구직과 이직 희망 업종에 관한 사항은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 25%(3명), 블루칼라 16.7%(2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47> 구직과 이직 희망 업종

(n=12)			
구 분		빈 도	퍼센트(%)
희망일자리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2	16.7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	3	25.0
	기타	4	33.3
	무응답	3	25.0
	합계	12	100.0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의 희망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50만원~99만원이 41.7%(5명), 49만원 이하와 100만원~149만원, 그리고 200만원 이상이 16.7%(2명), 150만원~199만원이 8.3%(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48> 희망급여

(n=12)			
구 분		빈 도	퍼센트(%)
희망급여	49만원 이하	2	16.7
	50만원~99만원	5	41.7
	100만원~149만원	2	16.7
	150만원~199만원	1	8.3
	200만원 이상	2	16.7
	무응답	0	0.0
	합계	12	100.0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의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 때문이라

는 답변이 38.5%(5명), '일자리가 없어서'가 30.8%(4명),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 7.7%(1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은 고령이기 때문이라고 있었다.

<표 3-2-249> 구직활동 않는 이유

(n=13)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직활동 않는 이유	장애 때문에	5	38.5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4	30.8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0	0.0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1	7.7
	기타	2	15.4
	무응답	1	7.7
	합계	13	100.0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인지하는 경로에 관한 사항으로 이웃 및 친지 36.7%(11명), 인쇄매체(전단지 등) 26.7%(8명), 방송 및 언론매체와 사회복지기관이 16.7%(5명), 공무원 3.3%(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50> 서비스 인지경로

(n=30)			
구 분		빈 도	퍼센트(%)
서비스 인지경로	인쇄매체(전단지 등)	8	26.7
	이웃 및 친지	11	36.7
	방송 및 언론매체	5	16.7
	공무원	1	3.3
	사회복지기관	5	16.7
	무응답	0	0.0
	합계	30	100.0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가중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총 105개의 빈도 중에서 이동거리 36.2%(38개), 서비스 내용이 16.2%(17개), 시설규모가 15.2%(16개), 이용료 14.3%(15개),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8.6%(9개)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51> 서비스 선택기준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산		가중합산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n=30)									
이동거리	12	40.0	1	3.3	0	0.0	13	25.0	38	36.2
시설규모	1	3.3	6	20.0	1	3.3	8	15.4	16	15.2
이용료	0	0.0	5	16.7	5	16.7	10	19.2	15	14.3
인지도	0	0.0	1	3.3	2	6.7	3	5.8	4	3.8
이용가능 기간	0	0.0	0	0.0	6	20.0	6	11.5	6	5.7
프로그램의 전문성	1	3.3	3	10.0	0	0.0	4	7.7	9	8.6
서비스 내용	4	13.4	1	3.3	3	10.0	8	15.4	17	16.2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무응답	12	40.0	13	43.4	13	43.3				
합계	30	100	30	100.0	30	100.0	52	100.0	105	100.0

<표 3-2-252> 연령별 필요한 서비스

구 분	빈도	퍼센트(%)	
(n=30)			
전체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3	10.0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1	3.3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 기회확대	1	3.3
	(역사/생태 등)테마관광 기회확대	9	30.0
	기타	4	13.4
	무응답	12	40.0
	합계	30	100
취학 아동 (0세~19세)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 기회확대	1	100.0
	합계	1	100.0
성인 (20세 이상)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2	10.3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1	3.4
	(역사/생태 등)테마관광 기회확대	9	31.0
	기타	4	13.8
	무응답	12	41.4
	합계	28	99.9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의 문화, 체육, 관광 관련 필요한 서비스에 관한 사항으로 응답자가 많은 성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테마관광 기회확대'가 31%(9명), 방문기회(공연장, 전시장 등)의 확대가 10.3%(2명), 학습기회(음악/미술 등) 확대가 3.4%(1명) 순으로 나타

났다.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의 자택자원봉사활동 동의 및 반대이유에 관한 사항으로 반대 가 46.7%(14명), 동의가 33.3%(10명)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가족동거(자녀), 개인적 만남 보다는 일정한 곳을 방문하여 사회성을 키워주고 싶음, 혼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음, 청각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접촉이 쉽지 않음으로 응답하였다.

<표 3-2-253> 자택 자원봉사활동 동의 여부/반대이유

구 분	빈도	퍼센트(%)	
(n=30)			
자택 자원봉사활동	동의	10	33.3
	비동의	14	46.7
	무응답	6	20.0
	합계	30	100.0
반대 이유	가족동거(자녀), 개인적 만남 보다는 일정한 곳을 방문하여 사회성을 키워주고 싶음, 혼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음, 청각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접촉이 쉽지 않음,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이 생각하는 인식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 30%(9명), 인식개선교육 20%(6명),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 운영 13.3%(4명), 장애인의 지역사회행사 참여 6.7%(2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54> 인식개선방안

구 분	빈도	퍼센트(%)	
(n=30)			
인식개선방안	홍보(캠페인,방송등)	9	30.0
	인식개선 교육	6	20.0
	장애인의 지역행사참여	2	6.7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 운영	4	13.3
	기타	0	0.0
	무응답	9	30.0
	합계	30	100.0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이 생각하는 생활에 있어 할인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병원 60%(18명), 식당 3.3%(1명) 순으로 답했다. 기타 내용은 생활비 보조, 식료품 구매 시라고 응답했다.

<표 3-2-255> 할인혜택 분야

		(n=30)	
구 분		빈 도	퍼센트(%)
할인혜택분야	병원	18	60.0
	식당	1	3.3
	영화/스포츠/공연장	0	0.0
	학원	0	0.0
	차량정비	0	0.0
	기타	2	6.7
	무응답	9	30.0
	합계	30	100.0

응답 대상 청각장애인의 집수리 필요 및 희망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별로 고치고 싶지 않다'가 26.7%(8명), '전혀 고치고 싶지 않다'가 23.3%(7명), '반드시 고치고 싶다'와 '가급적 고치고 싶다'가 6.7%(2명)로 나타났다. 집수리 내용으로는 공간을 더 넓게, 난방 시설, 서고 앉거나 잡고 다니는 시설물 설치, 높낮이 조절 가능 싱크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56> 집수리 여부/희망내용

		(n=30)	
구 분		빈 도	퍼센트 (%)
집개조	반드시 고치고 싶다	2	6.7
	가급적 고치고 싶다	2	6.7
	별로 고치고 싶지 않다	8	26.7
	전혀 고치고 싶지않다	7	23.3
	기타	0	0.0
	무응답	11	36.7
	합계	30	100.1
집수리 희망내용		공간을 더 넓게, 난방시설, 서고 앉거나 잡고 다니는 시설물 설치, 높낮이 조절 가능 싱크대	

(5) 소결

본 조사에 응답한 청각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청각장애인 영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 특이사항을 정리해 보면 첫째, 자가 주택 소유자가 3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응답자 중 120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이 70%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이 43.3%로 나타났다. 셋째, 일부라도 도움이 필요한 응답자가 50%로 나타났다. 넷째,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일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충분정도는 86.6%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자립이 53.3%, 중증, 경증의 합이 10%로 대체로 자립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각장애의 경우 최근 들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조 기수술을 통해 완치하거나 장애의 정도를 줄여 완전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 이용현황 및 욕구에 측면에서 인지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인지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이용률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의료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장애인복지관, 재활병의원, 보건소에 대한 이용욕구가 일차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며, 자립생활과 교육과 관련된 기관인 성인교육기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이용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측면에서는 미충족률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미충족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고, 미충족률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육(인문학, 인권 교육 정보화교육, 일상생활)부분에 대한 미충족률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직업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욕구 미충족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화 및 체육활동과 관련된 욕구의 미충족률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필요한 서비스 내용에는 TV자막 고급 보청기 확보, 무료 보장구, 빠른 정보, 인공와우 수술 후 언어치료, 취업지원으로 응답되었다.

기타 서비스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미취업이 72.4%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구직활동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 때문 38.5%, 일자리가 없어서 30.8%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를 선택기준은 이동거리, 서비스 내용, 시설규모, 이용료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이 생활에 있어 할인이 필요한 분야에 병원이 60%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집수리에 있어서는 50%가 수리를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재가생활을 하는 데 있어, 집수리에 대한 욕구는 다른 장애유형의 경우보다 크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인터뷰 자료

인터뷰 대상(1)	남성(13세), 청각장애(지적장애 중복)
주거 (생활시설)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동생도 형을 잘 이해하여 보살펴주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없다. - 청각장애 아동이라 집안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노동 (직업활동)	-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라 큰 고민을 하지 않는다. -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나이가 많은 학생의 부모가 직업활동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서서히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의료분야 (재활)	- 어릴 때는 가정수업의 절반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다. 요즘에는 소통하는 법도 배우고, 아이의 특성도 많이 파악해서인지 비용도 크게 줄었다. - 보청기를 착용하고 언어치료 훈련을 하고 있다. - 발작증세가 있어 약 4년 전부터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발작예방에 대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발작의 횟수도 년 간 1-2차례로 줄었다. - 복지관에서 각종 치료를 받고 싶은데 너무 오래 대기해서 순서가 돌아오지 않는다. 아이가 8세 때 등록했는데 14세 때 차례가 돌아왔다.(결국 한 번도 이용하지 못했다.) 대신에 8세 때부터 사설기관의 치료를 받았는데, 복지관에 비해 비싸다
교육	- 일반학교에서 5학년까지 다니다 약 1년 전에 성베드로 학교로 옮겼다. 옮긴 이유는 일반학교에서 아이나 부모 모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학교를 옮긴 후 교육환경에 대체로 만족한다.

여가	- 가족단위로 매 주말마다 나갈 정도로 나들이가 많다. 자가용으로 움직이며 아이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서 노래방도 자주 가며, 태권도도 배우고 있다(정상인 못지않은 자세를 갖춘다)
기타	- 복지관에서는 또래 집단도 있고 사회성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복지관을 선호하는 데, 양천구에는 복지관 수가 너무 부족하다.

인터뷰 대상(2)	여성(20대 초반), 청각장애
주거 (생활시설)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동생도 형을 잘 이해하여 보살펴주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없다. - 청각장애 아동이라 집안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노동 (직업활동)	- 취업을 하고 싶은 데 할 만한 데가 없다. - 기술을 배울 만 한데가 없다. 청음회관에서 바리스타 직업훈련반을 작년부터 했는데, 선택 조건이 까다롭고, 수화가 잘 안되어 적용이 안 되었다.
의료분야 (재활)	- 인공와우수술 후 검사하고 청각검사, 언어테스트도 지속적으로 받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인공와우수술도 큰 병원이 아닌 구에 있는 병원에서 사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소모품지원 포함) - 수화를 못하고 구화로는 언어의 깊이를 몰라 소통이 더 힘들다. 수화와 구화를 병행하면 괜찮은데, 수화를 알아보면 그게 편해 구화를 안 하게 될 수도 있다.
교육	- 사회성을 많이 기르기 위해 초중고 일반학교를 보냈다. 중학교 때까지는 별 문제 없이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부터 장애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 - 나사렛대학교는 수화를 주로 하는데, 병원에서는 비장애학생과 어울리고 수화를 배우지 말라고 한다. 이 때문에 대학교 가서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 복지관에서 상담을 했는데, 당사자와 같은 경우가 많았다.

이동 (편의시설)	- 지하철에서 정류장 자막을 보여주는데, 버스 같은 경우도 볼 수 있게 정류장 자막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
기타	- 양천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장애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홍보 프로그램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 인공와우 수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 거기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8) 기타장애인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양천구 거주 장애인인 중 설문에 응답한 신장, 안면, 간, 호흡기, 장루·요루 장애인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응답자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26명의 응답자 중 본인 응답 73.1%(19명), 어머니, 자녀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57> 응답자

구 분		빈 도	퍼센트(%)
응답자	본인	19	73.1
	기타	6	23.1
	무응답	1	3.8
	합계	26	100.0
기타 내용	어머니	3	11.5
	자·녀	1	3.8
	기타	2	7.8
	합계	6	23.1

응답 대상 장애인의 장애 등급 및 연령으로 장애등급에 있어서는 1급 11.5%, 2급 30.8%, 3급 23.1%, 4급 11.5%, 5급 11.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취학아동 7.7%, 성인 92.3%로 나타났다.

<표 3-2-258> 장애등급/연령

구 분		빈 도	퍼센트(%)
장애등급	1급	3	11.5
	2급	8	30.8
	3급	6	23.1
	4급	3	11.5
	5급	3	11.5
	6급	0	0.0
	무응답	3	11.5
합계	26	100.0	
연령	미취학아동(0세~7세)	0	0.0
	취학아동(8세~19세)	2	7.7
	성인(20세 이상)	24	92.3
	무응답	0	0.0
	합계	26	100

<표 3-2-259> 학력/성별/결혼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 분		빈 도	퍼센트(%)
학력	미취학	1	3.8	성별	남자	14	53.8
	유치원/어린이집	0	0.0		여자	12	46.2
	초등학교	6	23.1		무응답	0	0.0
	중학교	5	19.2	결혼	합계	26	100.0
	고등학교	7	26.9		기혼	17	65.4
	(전문)대학	4	15.4		미혼	5	19.2
	무학	1	3.8		기타	1	3.8
	기타	1	3.8		무응답	3	11.5
	무응답	1	3.8		합계	26	99.9
	합계	26	99.8				

응답 대상 장애인의 학력, 성별, 결혼에 관한 사항으로 학력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23.1%(6명), 중학교 19.2%(5명), 고등학교 26.9%(7명), (전문)대학 15.4%(4명), 무학 3.8%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53.8%(14명), 여자 46.2%(12명)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에 대

해서는 기혼 65.4%(17명), 미혼 19.6%(5명)로 나타났다.

다중응답으로 장애인의 동거여부에 관한 사항을 물었는데, 총 39개의 빈도 중에서, 배우자 28.2%(11개), 어머니 20.5%(8명), 자녀 17.9%(7명), 아버지 10.3%(4명)로 나타났다.

<표 3-2-260> 동거인

		(n=26)	
구 분		빈 도	퍼센트(%)
동거인	배우자	11	28.2
	어머니	8	20.5
	아버지	4	10.3
	할아버지	0	0.0
	할머니	0	0.0
	형제	0	0.0
	자매	1	2.6
	자녀	7	17.9
	손자녀	1	2.6
	친척	0	0.0
	기타	7	17.9
	무응답	0	0.0
합계	39	100.0	
기타내용	독거	6	15.3
	무응답	1	2.6
	합계	7	17.9

<표 3-2-261> 주택소유 형태

		(n=26)	
구 분		빈 도	퍼센트(%)
주택소유 형태	자기소유	5	19.2
	전세	8	30.8
	월세	7	26.9
	기타	6	23.1
	무응답	0	0.0
	합계	26	100.0
기타내용	임대	2	7.7
	자녀	2	7.7
	무상거주	1	3.8
	무응답	1	3.8
	합계	6	23.1

응답 대상 장애인의 주택소유에 관한 사항으로 전세 30.8%(8명), 월세 26.9%(7명), 자기소유 19.2%(5명)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은 임대, 자녀, 무상 거주로 응답되었다.

응답 대상 장애인의 월평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월평균 수입은 40만원 이하 30.8%(8명), 41만원-80만원과 81만원-120만원이 각각 15.5%(4명), 121만원-200만원 11.5%(3명)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지출에 대해서는 41만원-80만원이 30.8%(8명), 121만원-200만원이 19.2%(5명), 1-40만원 11.5%(3명), 81만원-120만원이 7.7%(2명), 200만원 이상 3.8%(1명)로 나타났다.

<표 3-2-262> 월평균 수입/지출

		(n=26)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 분		빈 도	퍼센트(%)
월평균 수입	1원-40만원	8	30.8	월평균 지출	1원-40만원	3	11.5
	41만원-80만원	4	15.4		41만원-80만원	8	30.8
	81만원-120만원	4	15.4		81만원-120만원	2	7.7
	121만원-200만원	3	11.5		121만원-200만원	5	19.2
	200만원 이상	0	0.0		200만원 이상	1	3.8
	무응답	7	26.9		무응답	7	26.9
	합계	26	100.0		합계	26	100.0

<표 3-2-263> 지출순위

		(n=26)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산 합계		가중합산 합계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빈 도	퍼센트 (%)	
식료품비	8	30.8	2	7.7	6	23.1	16	27.6	34	29.1	
교육비	1	3.8	1	3.8	1	3.8	3	5.2	6	5.1	
의료비	3	11.5	9	34.6	2	7.7	14	24.1	29	24.8	
주거광열비	4	15.4	5	19.2	4	15.4	13	22.4	26	22.2	
교통비/차량유지비	0	0.0	1	3.8	3	11.5	4	6.9	5	4.3	
사회활동 및 조사비	1	3.8	0	0.0	2	7.7	3	5.2	5	4.3	
여가문화생활비	1	3.8	0	0.0	0	0.0	1	1.7	3	2.6	
빛 값는 비용	1	3.8	1	3.8	0	0.0	2	3.4	5	4.3	
재테크 및 금융	0	0.0	0	0.0	1	3.8	1	1.7	1	0.9	
기타	1	3.8	0	0.0	0	0.0	1	1.7	3	2.6	
무응답	6	23.1	7	26.9	7	26.9	7	26.9	7	26.9	
합계	26	100.0	26	100.0	26	100.0	58	100.0	117	100.0	

응답 대상 장애인의 지출 순위에 관한 사항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하였으며,

가중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총 117개 빈도 중에서 식료품비 25%(34개), 의료비 24.8%(29개), 주거광열비 22.2%(26개), 교육비 5.1%(6개), 교통비/차량유지비와 사회활동 및 경조사비가 각각 4.3%(5개) 씩으로 나타났다.

응답 대상 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자 53.8%(14개), 차상위계층 19.2%(5개), 일반(비수급)은 15.4%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유형별 분석에서 일반(비수급)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경우이다.

<표 3-2-264> 수급자 현황

(n=26)			
구 분	빈 도	퍼센트(%)	
수급자 현황	기초생활수급자	14	53.8
	차상위 계층	5	19.2
	그외(일반)	4	15.4
	잘 모름	2	7.7
	기타	1	3.8
	무응답	0	0.0
	합계	26	100.0

응답 대상 장애인의 가족과의 관계 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조금 좋다'가 34.6%(9명), '매우 좋다'가 15.4%(4명), '매우 나쁘다'가 15.4%(4명), '조금 나쁘다'가 7.7%(2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가 50%로 정도로, 전체 장애유형별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낮은 정도였다.

<표 3-2-265> 가족관계 정도

(n=26)			
구 분	빈 도	퍼센트(%)	
가족관계 정도	매우 나쁘다	4	15.4
	조금 나쁘다	2	7.7
	조금 좋다	9	34.6
	매우 좋다	4	15.4
	무응답	7	26.9
	합계	26	100.0

응답 대상 장애인의 연령대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남의 도움 필요'가 26.9%(7명), '모든 일상생활 가능'이 26.9%(7명), '대부분 일상생활 가능'이 23.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일부 남의 도움 필요'가 29.2%(7명), 모든 또는 대부분 일상생활 가능이 각각 25%(6명)로 나타났다. 기타 장애로 분류된 간질, 심장, 신장 등의 장애의 경우 대부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가 전체 장애유형에 비해 크게 높았다.

<표 3-2-266> 연령별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n=26)			
구 분	빈 도	퍼센트(%)	
전체	모든 일상생활 가능	7	26.9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6	23.1
	일부 남의 도움 필요	7	26.9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0	0.0
	거의 남의 도움 필요	0	0.0
	무응답	6	23.1
	합계	26	100.0
미취학아동 (0세~7세)	모든 일상생활 가능	0	0.0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0	0.0
	일부 남의 도움 필요	0	0.0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0	0.0
	거의 남의 도움 필요	0	0.0
	무응답	0	0.0
	합계	0	0.0
취학아동 (8세~19세)	모든 일상생활 가능	1	50.0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0	0.0
	일부 남의 도움 필요	0	0.0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0	0.0
	거의 남의 도움 필요	0	0.0
	무응답	1	50.0
	합계	2	100.0
성인 (20세 이상)	모든 일상생활 가능	6	25.0
	대부분의 일상생활 가능	6	25.0
	일부 남의 도움 필요	7	29.2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0	0.0
	거의 남의 도움 필요	0	0.0
	무응답	5	20.8
	합계	24	100.0

응답 대상 장애인을 주로 도와주는 사람에 관한 사항으로 무료가정봉사원 28.6%, 부모, 자녀, 친척 등 14.3%로 나타났다. 이 역시 다른 장애에 비해 부모나 가족의 도움 정도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3-2-267> 주로 도와주는 사람

		(n=7)	
구분	빈도	퍼센트(%)	
도와주는 사람	배우자	1	14.3
	부모	1	14.3
	조부모	0	0.0
	자녀	1	14.3
	이웃	0	0.0
	친척	1	14.3
	유료가정봉사원	1	14.3
	유료간병인	0	0.0
	유료 활동보조인	0	0.0
	무료가정봉사원	2	28.6
	무료 간병인	0	0.0
	무료 활동보조인	0	0.0
	기타	0	0.0
	무응답	0	0.0
합계	7	100.0	

<표 3-2-268> 도움충분정도

		(n=7)	
구분	빈도	퍼센트(%)	
전체	매우 부족하다	2	28.6
	부족한 편이다	4	57.1
	충분한 편이다	1	14.3
	매우충분한 편이다	0	0.0
	무응답	0	0.0
	합계	7	100.0
성인 (20세 이상)	매우 부족하다	5	28.6
	부족한 편이다	4	57.1
	충분한 편이다	1	14.3
	매우충분한 편이다	0	0.0
	합계	7	100.0

응답 대상 장애인의 도움충분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편이다'가 57.1%(4명), '매우 부족하다'가 28.6%(2명), '충분한 편이다'는 14.3%(1명) 순으로 나타

났다.

응답 대상 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 자립이 53.8%(14명), 중증 11.5%(3명), 경증 3.8%(1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완전 자립이 54.2%(13명), 중증 8.3%, 경증 4.2%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결과는 일상생활 능력에 있어 완전자립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2-269>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n=26)	
구분	빈도	퍼센트(%)	
전체	완전자립(이상없음)	14	53.8
	정도약함(경증)	1	3.8
	정도심함(중증)	3	11.5
	무응답	8	30.8
	합계	26	100.0
취학아동 (8세~19세)	완전자립(이상없음)	1	50.0
	정도약함(경증)	0	0.0
	정도심함(중증)	1	50.0
	무응답	0	0.0
	합계	2	100.0
성인 (20세 이상)	완전자립(이상없음)	13	54.2
	정도약함(경증)	1	4.2
	정도심함(중증)	2	8.3
	무응답	8	33.3
	합계	24	100.0

(2) 기관 이용현황

응답 대상 장애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정도, 이용 경험 여부, 이용 희망 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서비스 제공기관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85.7%(12명), 이동지원서비스 센터 63.6%(7명), 장애인정보화 교육기관과 생활시설

58.3%, 중증장애인요양시설 45.5%,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41.7%(5명), 장애인고용 촉진공단과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보건소), 재활 병·의원이 40%순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기관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 이용경험은 장애인복지관 62.5%(10명),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보건소) 33.3%(3명), 재활 병·의원 30%(3명), 유아교육기관 27.3%(3명),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18.2%(2명)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기관 이용경험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용 희망여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보건소)와 재활 병·의원이 각각 63.6%(7명), 장애인복지관 62.5%(10명),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44.4%(4명), 이동지원서비스센터 41.7%(5명),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과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이 각각 38.5%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전반적으로 이용희망률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모든 장애유형에 걸쳐 가장 선호되는 장애인복지관이 내부 장애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기타 장애인들에게 있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의료적 접근이 가능한 병원이나 의원, 내지는 보건소가 기타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종합해 보면 인지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이용률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직업 및 교육과 관련된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성인을 위한 교육기관 등에 대한 이용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70> 기관 이용현황

(n=26)

기 관 명	인지여부		이용경험여부		이용희망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5(50.0)	5(50.0)	1(8.3)	11(91.7)	1(9.1)	10(90.9)
특수교육 지원센터	4(33.3)	8(66.7)	1(9.1)	10(90.9)	3(23.1)	10(76.9)
유아교육기관	4(40.0)	6(60.0)	3(27.3)	8(72.7)	2(18.2)	9(81.8)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7(58.3)	5(41.7)	2(18.2)	9(81.8)	5(38.5)	8(61.5)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5(41.7)	7(58.3)	0(0.0)	11(100.0)	5(38.5)	8(61.5)
장애인복지관	12(85.7)	2(14.3)	10(62.5)	6(37.5)	10(62.5)	6(37.5)
장애인자립생활센터	5(41.7)	7(58.3)	1(8.3)	11(91.7)	6(42.9)	8(57.1)
직업재활시설	3(27.3)	8(72.7)	0(0.0)	10(100.0)	4(33.3)	8(66.7)

기 관 명	인지여부		이용경험여부		이용희망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4(40.0)	6(60.0)	0(0.0)	7(100.0)	4(36.4)	7(63.6)
장애인생활시설	7(58.3)	5(41.7)	2(18.2)	9(81.8)	3(23.1)	10(76.9)
중증장애인요양시설	5(45.5)	6(54.5)	0(0.0)	9(100.0)	3(25.0)	9(75.0)
장애영유아생활시설	4(40.0)	6(60.0)	0(0.0)	8(100.0)	1(9.1)	10(90.9)
그림홈(공동생활가정)	2(22.2)	7(77.8)	0(0.0)	8(100.0)	1(9.1)	10(90.9)
주간·단기 보호시설	3(30.0)	7(70.0)	0(0.0)	8(100.0)	1(9.1)	10(90.9)
장애인전용체육관	2(20.0)	8(80.0)	0(0.0)	9(100.0)	2(18.2)	9(81.8)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보건소)	4(40.0)	6(60.0)	3(33.3)	6(66.7)	7(63.6)	4(36.4)
재활 병·의원	4(40.0)	6(60.0)	3(30.0)	7(70.0)	7(63.6)	4(36.4)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3(37.5)	5(62.5)	1(14.3)	6(85.7)	4(44.4)	5(55.6)
이동지원서비스센터	7(63.6)	4(36.4)	1(10.0)	9(90.0)	5(41.7)	7(58.3)
심부름센터	1(11.1)	8(88.9)	0(0.0)	7(100.0)	4(40.0)	6(60.0)
교통안전공단	2(20.0)	8(80.0)	0(0.0)	8(100.0)	4(36.4)	7(63.6)
사회복지시설	1(10.0)	9(90.0)	0(0.0)	10(100.0)	1(10.0)	9(90.0)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2(20.0)	8(80.0)	0(0.0)	10(100.0)	0(0.0)	10(100.0)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1(10.0)	9(90.0)	0(0.0)	10(100.0)	0(0.0)	10(100.0)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2(20.0)	8(80.0)	0(0.0)	11(100.0)	0(0.0)	10(100.0)

(3) 연령별 서비스 현황

응답 대상 장애인 중 성인기(20세 이상)의 서비스 미충족률에 관한 사항이다. 성인기에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 및 취업 관련 서비스, 치료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 여가 및 문화관련 서비스 미충족률이 높게 나타났다. 미충족율이 0%의 경우는 그림홈을 제외하고 대다수 활동보조서비스(바우처제도)이며, 기타 장애를 가진 응답자가 대부분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활동과 체육활동 등이 서비스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정책수립과정에서 양천구의 진지한 고민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표 3-2-271> 성인기(20세 이상) 서비스 현황

(n=24)

사 업 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미충족률 (%)
	필요 (%)	불필요 (%)	이용 (%)	비이용 (%)	
인문학 교육	2(28.6)	5(71.4)	1(50.0)	1(50.0)	50.0
인권 교육	5(62.5)	3(37.5)	0(0.0)	5(100.0)	100.0
정보화교육	6(85.7)	1(14.3)	1(16.7)	5(83.3)	83.3
일상생활훈련	2(28.6)	5(71.4)	0(0.0)	2(100.0)	100.0
직업상담	4(50.0)	4(50.0)	1(25.0)	3(75.0)	75.0
직업능력 평가	2(28.6)	5(71.4)	1(50.0)	1(50.0)	50.0
취업 준비 훈련	2(28.6)	5(71.4)	0(0.0)	2(100.0)	100.0
보호 작업	2(28.6)	5(71.4)	0(0.0)	2(100.0)	100.0
취업 후 지원	2(33.3)	4(66.7)	0(0.0)	2(100.0)	100.0
취업알선	4(50.0)	4(50.0)	1(25.0)	3(75.0)	75.0
물리치료	4(57.1)	3(42.9)	2(50.0)	2(50.0)	50.0
언어치료(의사소통훈련)	1(14.3)	6(85.7)	0(0.0)	1(100.0)	100.0
심리치료(원예치료/댄스치료/드라마치료)	2(28.6)	5(71.4)	0(0.0)	2(100.0)	100.0
작업치료	1(14.3)	6(85.7)	0(0.0)	1(100.0)	100.0
주간보호	1(16.7)	5(83.3)	0(0.0)	1(100.0)	100.0
단기보호	1(14.3)	6(85.7)	0(0.0)	1(100.0)	100.0
그룹홈	0(0.0)	6(100.0)	0(0.0)	0(0.0)	0.0
결혼상담	1(16.7)	5(83.3)	0(0.0)	1(100.0)	100.0
성교육/성상담	3(42.9)	4(57.1)	0(0.0)	3(100.0)	100.0
활동보조서비스	1(16.7)	5(83.3)	1(100.0)	0(0.0)	0.0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1(16.7)	5(83.3)	1(100.0)	0(0.0)	0.0
노인 돌봄 서비스	0(0.0)	6(100.0)	0(0.0)	0(0.0)	0.0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	0(0.0)	6(100.0)	0(0.0)	0(0.0)	0.0
이동목욕서비스	0(0.0)	6(100.0)	0(0.0)	0(0.0)	0.0
이·미용서비스	2(28.6)	5(71.4)	0(0.0)	2(100.0)	100.0
여가활동	4(57.1)	3(42.9)	0(0.0)	4(100.0)	100.0
체육활동	3(50.0)	3(50.0)	0(0.0)	3(100.0)	100.0
문화활동	3(42.9)	4(57.1)	0(0.0)	3(100.0)	100.0

체력단련실 등 장소이용	3(42.9)	4(57.1)	0(0.0)	3(100.0)	100.0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0(0.0)	6(100.0)	0(0.0)	0(0.0)	0.0

(4) 기타 서비스 욕구

응답 대상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미취업이 50%(12명), 취업 4.2%(1명)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미취업이 50% 이상으로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미취업의 비율보다 취업자의 비율이 현격하게 적다는 점이다. 내부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2-272> 현재 취업여부

(n=24)

구 분		빈 도	퍼센트(%)
취업여부	취업	1	4.2
	미취업	12	50.0
	무응답	11	45.8
	합계	24	100.0

응답 대상 장애인의 취업현장에서의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미고려 45.8%(11명), 고려 25%(6명)로 나타났다.

<표 3-2-273>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n=24)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직과 이직 희망 여부	고려	6	25.0
	미고려	11	45.8
	무응답	7	29.2
	합계	24	100.0

응답 대상 장애인이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응답자는 11인이었으며,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2-274> 구직활동 않는 이유

(n=11)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직활동 않는 이유	장애 때문에	7	26.9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0	0.0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0	0.0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0	0.0
	기타	4	15.4
	무응답	0	0.0
	합계	11	100.0

응답 대상 장애인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인지하는 경로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기관과 이웃 및 친지로부터 얻는다는 응답이 각각 17.9%(5명)이었으며, 인쇄매체와 방송 및 언론매체, 그리고 공무원으로부터 얻는다는 응답은 7.1%(2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75> 서비스 인지경로

(n=26)

구 분		빈 도	퍼센트(%)
서비스 인지경로	인쇄매체(전단지 등)	2	7.1
	이웃 및 친지	5	17.9
	방송 및 언론매체	2	7.1
	공무원	2	7.1
	사회복지기관	5	17.9
	기타	1	3.6
	무응답	11	39.3
	합계	28	100

응답 대상 장애인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1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총 81개의 빈도 중에서 이동거리 35.8%(29개), 서비스 내용 18.5%(15개), 이용료 17.3%(14개), 이용가능기간 13.6%(11개)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76> 서비스 선택기준

(n=26)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산		가중합산	
	빈 도	퍼센트(%)	빈 도	퍼센트(%)	빈 도	퍼센트(%)	빈 도	퍼센트(%)	빈 도	퍼센트(%)
이동거리	7	26.9	3	11.5	2	7.7	12	30.0	29	35.8
시설규모	0	0.0	2	7.7	1	3.8	3	7.5	5	6.2
이용료	2	7.7	3	11.5	2	7.7	7	17.5	14	17.3
인지도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용가능 기간	2	7.7	2	7.7	1	3.8	5	12.5	11	13.6
프로그램의 전문성	0	0.0	1	3.8	2	7.7	3	7.5	4	4.9
서비스 내용	2	7.7	2	7.7	5	19.2	9	22.5	15	18.5
기타	1	3.8	0	0.0	0	0.0	1	2.5	3	3.7
무응답	12	46.2	13	50.0	13	50.0				
합계	26	100.0	26	100.0	26	100.0	40	100.0	81	100.0

<표 3-2-277> 연령별 필요한 서비스

(n=26)

구 분		빈 도	퍼센트(%)
전체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2	7.7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3	11.5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 기회확대	1	3.8
	(역사/생태 등)테마관광 기회확대	1	3.8
	기타	2	7.7
	무응답	17	65.4
	합계	26	100.0
취학 아동 (0세~19세)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0	0.0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0	0.0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 기회확대	0	0.0
	(역사/생태 등)테마관광 기회확대	0	0.0
	기타	1	50.0
	무응답	1	50.0
	합계	2	100.0
성인 (20세 이상)	(공연장/전시장 등)방문기회 확대	2	8.3
	(음악/미술 등)학습기회 확대	3	12.5
	(축구/야구 등) 동아리활동 기회확대	1	4.2
	(역사/생태 등)테마관광 기회확대	1	4.2
	기타	1	4.2
	무응답	16	66.7
	합계	24	100.0

응답 대상 장애인의 문화, 체육, 관광 등에 대한 연령대별 필요한 서비스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기회(음악/미술 등) 확대'가 11.5%(3명), 방문기회(공

연장, 전시장 등) 7.7%(2명)이었으며, 그 밖에도 테마관광 기회확대, 동아리활동 기회 확대 3.8%(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대상 장애인의 자택자원봉사활동 동의 및 반대이유에 관한 사항으로 반대 42.3%(11명), 동의 19.2%(5명)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매사 생활에 남이 끼어드는 것을 아직 못 받아들임', '보호받을 정도가 아님(스스로 할 수 있어서)', '아이가 원하지 않음', '사생활이 오픈되는 것을 싫어한다'로 응답하였다.

<표 3-2-278> 자택 자원봉사활동 동의 여부/반대이유

(n=26)			
구 분		빈 도	퍼센트(%)
자택 자원 봉사 활동	동의	5	19.2
	비동의	11	42.3
	무응답	10	38.5
	합계	26	100.0
	반대이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매사 생활에 남이 끼어드는 것을 아직 못 받아들임, 보호받을 정도가 아님(스스로 할 수 있어서), 아이가 원하지 않음, 개인사생활이 오픈되는 것을 싫어한다.	

응답 대상 장애인이 생각하는 인식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 23.1%(6명),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의 지역사회행사 참여가 각각 11.5%(3명),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 운영 7.7%(2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79> 인식개선방안

(n=26)			
구 분		빈 도	퍼센트(%)
인식 개선 방안	홍보(캠페인, 방송 등)	6	23.1
	인식개선 교육	3	11.5
	장애인의 지역행사참여	3	11.5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 운영	2	7.7
	기타	0	0.0
	무응답	12	46.2
	합계	26	100.0

응답 대상 장애인이 생각하는 생활에 있어 할인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병원 50%(13명), 식당·영화 등과 학원, 차량정비가 각각 3.8%(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 장애가 대부분인 경우에 의료적 필요가 가장 크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 3-2-280> 할인혜택 분야

(n=26)			
구 분		빈 도	퍼센트(%)
할인혜택분야	병원	13	50.0
	식당	1	3.8
	영화/스포츠/공연장	1	3.8
	학원	1	3.8
	차량정비	1	3.8
	기타	0	0.0
	무응답	9	34.6
	합계	26	100.0

응답 대상 장애인의 집수리 필요 및 희망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전혀 고치고 싶지 않다'가 19.2%(5명), '반드시 고치고 싶다'가 15.4%(4명), '가급적 고치고 싶다'와 '별로 고치고 싶지 않다'가 11.5%(3명) 순으로 나타났다. 집수리 내용으로는 창문, 난방, 수도, 도배, 계량기로 나타났다.

<표 3-2-281> 집수리 여부/희망내용

(n=26)			
구 분		빈 도	퍼센트 (%)
집개조	반드시 고치고 싶다	4	15.4
	가급적 고치고 싶다	3	11.5
	별로 고치고 싶지 않다	3	11.5
	전혀 고치고 싶지 않다	5	19.2
	기타	1	3.8
	무응답	10	38.5
	합계	26	100.0
집수리 희망내용	창문, 난방, 수도, 도배, 계량기		

(5) 소결

본 조사에 응답한 기타장애 영역은 신장, 간, 호흡기, 안면, 장루·요루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응답자 2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기타 장애 영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 특이사항을 정리해 보면 첫째, 자가 주택 소유자가 1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응답자 중 120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이 61.6%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자립 53.8%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 이용현황 및 욕구에 측면에서 인지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이용률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의료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재활병원 등에 대한 이용욕구가 일차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직업 및 교육과 관련된 장애인정보보호교육기관, 성인을 위한 교육기관 등에 대한 이용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측면에서는 응답수가 많은 성인기를 중심으로 서비스 미충족률 순으로 정리해 보면 전반적으로 미충족률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 및 취업 관련 서비스, 치료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 여가 및 문화관련 서비스 미충족률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서비스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미취업이 50%로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둘째, 서비스를 선택기준은 이동거리, 서비스 내용, 이용료, 이용가능기간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이 생활에 있어 할인이 필요한 분야에 병원 50%, 식당, 영화 등, 학원, 차량정비 3.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의료적 필요에 따른 응답으로 보여진다.

(6) 인터뷰 자료

인터뷰 대상	여성(42세), 간장애
주거 (생활시설)	- 집안 식구들이 익숙해져서 불편함을 못 느낀다. - 엄마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 미국에서 생활도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가사 일을 나누어 한다.

노동 (직업활동)	-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복지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약값 등 의료비를 대기엔 부족하다. - 간장애 이전에는 잡지사에서 그림 그리는 일을 했었고 정규적이고 수입도 괜찮았다. 그런데, 간장애에다 뇌출혈로 인해 지금은 그림 그리는 일을 하기가 곤란하다.(취미로 그림 그리는 일은 집에서 하고 있다)
의료분야 (재활)	- 병원에서 약값이 의료보험이 돼서 나오지만 약값이 두 달에 50만 원이다. 경제적인 면이 가장 힘들다. - 간식 수술을 받을 당시 수술비용은 일억원 정도였다. 지금은 삼천만원이면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경험과 정보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교육	- 노숙인에게 인문학 강의하는 것을 TV에서 본 적 있는데, 그런 것을 듣고 싶다.
이동 (편의시설)	- 교통편이나 이동에는 문제가 없으나, 체력이 부족하여 멀리 나가지 못한다.
여가	- 아이들이 학원 갔다 오면 봐준다. 매일 책을 읽게 해서 독후감을 쓰게 한다. - 동네에서 하는 작은 공연은 한 달에 한번정도 가고, 동네 나들이도 자주 하는 편이다. - 복지관에서 하는 미술 관련된 일을 배우고 싶지만, 일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부족하여 하지 못한다. 어학도 들어보고 싶다.
기타	- 한국도 예전에 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나아진 것 같다. 그래도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제 4 장 양천구 장애인복지 정책 방향

제 1 절 전체 장애인 종합 검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양천구 거주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장애유형별 욕구조사를 통해 전체장애인이 갖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애인서비스 기관의 인지도, 이용경험 여부, 연령별 서비스 욕구, 기타서비스 욕구를 분석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학력, 연령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 변수 통제화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추론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장애유형별 구분을 중심으로 조사 설계를 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연령별 욕구의 차이에만 주목하고자 했다. 특히 장애등급별 표집이나, 동별 표집, 연령별 구성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조사 설계를 하지 않았기에 양천구 거주 전체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조사가 양천구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당사자주의 자립생활의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어린이집, 보호시설 등처럼 서비스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한 기관을 중심으로 표본이 추출되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는 연구의 목적에 근접하게 접근했다고 판단된다.

조사 결과에도 이런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장애등급별로는 1급, 2급, 3급의 표본 수가 4급, 5급, 6급 보다 그 비율이 높았으며, 고소득 계층의 장애인보다는 저소득 내지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장애인들의 응답비율이 크게 많았다. 이들의 수입과 지출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다시 설문 조사에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답한 비율과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없었다. 주거실태나 가족관계,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비교해 보니, 대다수의 장애인 가구가 전세와 월세의 형태로 주거생활을 꾸리고 있었으

며,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형편이다 보니 짐수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2. 일상생활수행능력

이번 욕구조사에서는 또 하나, 양천구 거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주력하였다.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여부를 측정하는 이 측정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이후 2004년 서울시의 장애인 욕구조사에도 사용되었고, 2008년 기획예산처의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 정밀조사 연구에서도 사용되면서, 다양한 비교분석의 결과물을 만들어가고 있다. 조사 분석 결과, 양천구 장애인의 경우 약 64% 정도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도움이 약 45%는 배우자 또는 부모로부터 받고 있었으며, 최근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약 8% 정도는 유료가정봉사원 또는 간병인, 활동보조원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조사결과 도움이 양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72%가 주변의 도움이 부족하다고 답하였으며, 충분하다는 응답은 7%대에 불과했다. 확률적인 측면에서 양천구 거주 장애인 100명 중 7명이 주변의 도움이 충분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특히, ADL(Activity of Daily Living)의 측정결과 부분도움 내지는 완전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일수록 주변으로부터 도움의 충분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장애인 기관 이용 현황

양천구 거주 장애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자립지원생활센터, 보건소, 재활 병·의원 등이 인지도가 높은 기관 정도만 인식하고 있을 뿐, 교통안전공단(자동차사고피해유자녀생활기금, 장학금 지원 등)처럼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나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처럼 장애유형별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있는가 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이런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향후 이용 희망을 묻는 항목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적극적인 이용희망 의사를 피력하였다. 가장 많이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었으며, 자립지원 생활센터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자립지원센터의 이용희망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가 점차 당사자주의적 관점에서 표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이동할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진다.

재활과 치료의 영역은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재활 병·의원과 보건소 치료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60-70%대로 여전히 높았으며, 지역 연계사업에 있어서도 병원과의 연계가 70%를 넘을 정도로 선호되는 이용 희망기관이었다.

장애이용 콜택시나 해피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동지원서비스센터는 바우처 제도의 급속한 확산을 예고하는 이용희망기관이었다.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별도의 지원예산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장애인들의 이동서비스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관련 기관 중에서는 정보화 기관과 성인을 위한 교육시설에 대한 이용희망이 비교적 높았으며 이외에도 장애인전용체육관 역시 양천구 거주 장애인이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중요한 시설이었다.

이러한 기관이용 희망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에 해당 시설이 없을 경우, 양천구 거주 장애인들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지역이나 강서지역, 마포, 영등포 등 인접지역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었으며, 멀리 떨어진 일산이나 강동 지역까지 서비스의 내용을 보고 이동하고 있었다.

4. 연령별 서비스 현황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욕구는 크게 미취학 아동기 취학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대부분의 장애인 욕구조사는 이런 단계로 나누어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연령별 욕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개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유형별로 욕구를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에, 연령별 서비스 욕구는 미취학 아동기와 취학 아동 및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미취학 아동기의 욕구는 크게 교육서비스, 치료서비스,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 정도로 대별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미취학 아동의 서비스 욕구는 이런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게 나타난 욕구는 시설서비스 욕구였다.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2006년 양천구에서 실시한 양천구 장애인복지서비스 수요추계 및 복지욕구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 있었다. 양천구 차원에서 하루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할 서비스로 판단된다.

음악치료, 미술치료, 동물매개치료 등 활용치료 욕구도 매우 높았다.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공급량이 부족한 상태로 여전히 욕구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의 욕구도 매우 크게 나타났으나, 이 제도가 도입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아서인지 이용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외에도 장애 이해교육과 같은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또한 자신의 자녀가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가를 상담받기 원하는 진로상담서비스 역시 욕구충족이 되지 않는 서비스 중의 하나였다.

취학아동의 경우 크게 미취학 아동의 서비스 욕구와 다르지 않았다. 아직 교육과정에 있는 연령층이라서 욕구가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인데, 다만 연령의 차이에 따른 몇 가지 특징적인 욕구가 나타났다. 시설서비스 욕구에서는 그룹홈에 대한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었다. 사회성 함양 및 자립생활 훈련을 피할 수 있는 그룹홈 체험은 탈시설화의 시대적인 흐름과도 같은 맥락이며, 장애자녀의 간병과 지원에 대한 부모의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로서 하루빨리 시설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프로그램이다.

교육서비스에 있어서는 교육내용이 다양해진다는 것도 차이점이었다. 인권교육, 정보화교육, 학습지원활동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높았으며, 학교교육은 아니지만 성교육/성상담과 같은 욕구가 크게 부각되었다. 또 다른 특징은 문화, 체육관련 프로그램 욕구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활동의 경우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인식개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치료모델의 형태를 뛰어넘어 공동창작 프로그램 및 예술 활동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적 모델로서 접근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내지는 창작스튜디오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성인의 욕구는 취업과 결혼, 출산, 육아 등 연령대별로 다양한 서비스 욕구가 존재한다. 특히 취업의 경우, 사회화의 기초이며 경제적 안정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20세를 넘

어선 성인의 경우 취업에 대한 욕구가 크게 부각된다. 실제, 많은 장애인관련 기관에서 취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크지 않은 상태이다. 양천구에서도 취업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는 크게 나타났으며,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향후, 노동부나 보건복지가족부, 양천구가 협력하여 다양한 취업모델과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인문학 교육이나 문화 활동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인문학에 대한 욕구 미충족율이 약 85% 정도 나타났으며,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20여명이 된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영역이 문화적 치료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성찰하는 단계로 진일보했다고 복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범사업으로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기타 서비스 욕구

기타 서비스 중 취업관련 서비스 욕구 결과를 놓고 보면 크게 장애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직업을 갖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를 보이는 중요한 요인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배제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홍보나 캠페인과 같은 접근뿐만 아니라,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을 확산시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문화, 체육, 관광 관련 서비스 욕구의 경우 연령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교육과정에 있는 미취학 아동이나 취학아동 및 청소년들은 음악과 미술의 학습기회의 확대를 바라고 있는 반면에, 성인들의 경우 공연장 내지는 전시장에 방문하는 기회를 보다 선호하고 있었다. 생애주기별로 이를 분석하면, 어린 시절 학습된 문화적 감수성은 성인이 돼서도 이어지고 예술적 재능을 갖춘 장애인의 경우 창작활동가로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흐름과 추세는 바람직해 보인다. 재가서비스에서 가장 선호되는 것 중 하나가 주택개조인데, 양천구 장애인들의 경우 60% 이상이 임대(전세, 월세) 주택에서 거주함에 따라, 주택개조를 무조건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다만, 장

관·도배 사업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화장실 붕 설치 등 적은 비용으로 최소한의 시설변경을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서비스 공급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장애유형별 종합 검토

1. 지체장애

이번 조사에서 본 조사에 응답한 지체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욕구와 비교해 볼 때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먼저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전체 응답자 200명 중 자가 주택 소유자가 29.0%에 불과했으며, 120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도 63%에 달했다.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에 있어서도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57%로, 남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둘째, 기관 이용현황 및 욕구에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지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이용률도 높게 나타났다. 뇌병변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치료와 재활을 도모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지체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지원 센터를 이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업 관련해서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등을 이용하며 자립의 의욕을 고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대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를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시설서비스, 활동치료서비스, 재가서비스, 여가활동 등 서비스의 전 영역에서 골고루 욕구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은 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간병과 치료에 힘들어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 성인의 경우 특히 시설서비스와 직업생활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근무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는 취업관련 서비스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기타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전체장애인의 욕구의 경향과 별반 다르지 않았

다. 다만, 지체장애인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이동관련 서비스 욕구가 더 높다는 점이다. 휠체어/전동구 제작 서비스나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마련 시, 이동봉사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터뷰 결과에서도 이동에 관한 욕구들이 많았으며 이런 욕구는 양천구 차원에서 다각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 뇌병변장애

첫째.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 특이사항을 정리해 보면 지체장애의 유형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고 또한 연령대별로 보면 미취학, 취학아동, 성인기 순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은 중증의 비율이 아주 높아 전체 장애유형에서도 아주 많은 장애유형이었다.

둘째. 전체 장애유형의 욕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이동관련 서비스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장애인복지관, 재활병의원 과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이용욕구도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응답자 수는 많지 않지만 연령대별 욕구의 흐름을 보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 치료와 재가 중심의 서비스 욕구에서 학교에 입학하고 사회화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성을 기르는 서비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성인들의 서비스 욕구는 결혼상담, 보호작업, 그룹홈, 직업능력 평가, 취업 후 지원 등 성인으로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욕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넷째. 기타 서비스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선택기 준은 이동거리,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전문성, 이용료, 이용가능기간 순으로 나타났다. 자택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동의가 반대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자원봉사자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과, 자원봉사보다는 활동보조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있었다.

다섯째. 인터뷰에 참가했던 뇌병변장애인 네 사람의 욕구 중 공통되는 것은 이동에 대한 서비스였는데, 휠체어를 통한 이동 공간 확보, 저상버스나 지하철의 편리한 이용, 주차공간의 확보 등 장애인을 위한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된 규정을 지켜주는 것도 장애인복지의 중요한 영역이라는 내용이었다.

3. 지적장애

첫째.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혼이 전체응답자의 9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장애인을 가장 많이 돕는 사람이었으며, 도움 충분도 역시도 크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둘째, 기관 이용현황 및 욕구의 특징적인 것은 지적장애인들의 교육관련 기관과 직업관련 기관에 대한 이용욕구가 크다는 것인데, 이는 지적장애인들의 특성상 치료(언어치료, 물리치료, 심리치료, 작업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가 많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욕구 미충족률이 있어 다른 부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 다양한 치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셋째. 연령대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측면에서 보면, 미취학 아동은 시설보호관련 욕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등 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취학아동 및 청소년은 시설보호 및 치료 그리고 교육관련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성인기는 전체 장애인의 결과와 유사하게 직업관련 욕구가 가장 많았고, 바우처 제도에 기초한 돌봄 서비스 이용희망 비율도 높았다. 성인기 욕구 중에서 다른 장애인의 욕구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육욕구였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해 사회성과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반복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인기에 접어들어도 교육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넷째. 기타 서비스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가 전체 장애인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섯째. 인터뷰 조사 결과, 교육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직장을 가진 여성으로 아이를 맡기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주간보호센터 이용경험이 없었다). 또한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4. 자폐성 장애

첫째.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전체 장애인의 결과와 다르게 교육비 지출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가 제일 적었으며, 일상생활수행능력(ADL)측면에서도 중증의 비율이 적게 나타났다.

둘째. 기관 이용현황 및 욕구에 측면에서 교육관련 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및 직업관련 기관에 대한 이용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연령대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를 미충족률을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 취약 아동 및 청소년기는 장기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그룹홈, 주간보호시설 등 보호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성교육, 부모교육, 인권교육, 학습지원활동 등 교육관련 욕구도 높은 편이었다. .

넷째. 서비스 선택기준도 전체 장애인 결과와 구별되는 것이 있었는데, 전체 장애인 결과에서 이동거리가 최우선의 선택기준이었던 것에 비해 자폐성장애의 경우는 프로그램 전문성이었다. 그리고 장애인이 생활에 있어 할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도 병원을 제일로 꼽았던 다른 장애영역과는 달리 문화 활동을 위한 영화/스포츠/공연장과 학원 등의 할인 혜택을 먼저 지적했다는 점도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인터뷰의 사례에서 지적된 욕구는 교육의 욕구와 직업훈련의 욕구였다.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대학졸업 후에는 최저임금이라도 감수하고 직업을 갖게 해주고 싶다는 부모의 욕구가 표출되었다. 다른 사례에서는 복지관의 정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신설된 복지관(영등포장애인복지관, 양천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다루기 쉬운 아이들을 뽑는 등 불합리한 운영방식을 보인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사회복지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장애아이 때문에 목디스크가 발생한 후 전신마비까지 발생한 적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아이를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의 도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5. 정신장애

첫째.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혼이 많다는 것과, 소득수준과 자가 주택 소유 정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었다. 둘째. 연령대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측면에서 성인들은 이동목욕서비스에 대한 욕구, 직업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시설서비스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이 생활에 있어 할인이 필요한 분야에 병원 52.2%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필요에 따른 응답으로 보여진다. 넷째. 인

터뷰의 사례에서는 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약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는데, 약값이 너무 많이 들어 큰 부담이라는 응답자도 있었다.

6. 시각장애

첫째,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전체 응답자 중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이 48.6%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기관 이용현황 및 욕구에 측면에서 특징적인 것은 기관인지, 이용경험, 이용희망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점자도서관의 인지 및 이용률조차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홍보부족과 함께 양천구에 관련기관이 없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셋째, 연령대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측면에서는 목욕서비스,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 시설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여가 및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 등 서비스 전반에 걸쳐 욕구가 나타났다. 넷째, 기타 서비스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는 전체 장애인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인터뷰의 사례를 보면, 이동수단의 문제와 장애인 간의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비장애인이 장애체험이 필요하다는 것과, 주간보호나 단기보호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7. 청각장애

첫째.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측면에서 완전자립이 가능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청각장애의 경우 최근 들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조기수술을 통해 완치하거나 장애의 정도를 줄여 완전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관 이용현황 및 욕구에 측면에서 또한 의료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장애인복지관, 재활병의원, 보건소에 대한 이용욕구가 일차적으로 높았으며, 자립생활과 교육과 관련된 기관인 성인교육기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대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측면에서는 보면, 교육(인문학, 인권교육, 정보화교육, 일상생활)과 직업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문화 및 체육활동과 관련된 욕구도 많이 나타났다. 넷째. 기타 필요한 서비스

내용에는 TV자막 고급 보청기 확보, 무료 보장구, 인공와우 수술 후 언어치료, 취업지원으로 응답하였다.

다섯째, 인터뷰의 사례를 보면, 청각장애의 경우 보청기 착용을 통해 대화가 가능할 정도(단답형 대화)이며, 언어치료 훈련을 병행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관 대기 순서가 길어 몇 년을 기다리다가 한 번도 이용하지 못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하여 주간보호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다른 인터뷰 사례에서는 와우수술의 경우 재활이 중요하므로, 복지관이나 협회 등에서 성인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8. 기타장애

첫째, 기타장애는 신장, 간, 호흡기, 안면, 장루·요루 장애를 포함하여 분류하였으며, 각 세부 영역별로 분석하지 않았다. 둘째, 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을 보면 완전자립 53.8%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기관 이용현황 및 욕구에 측면에서 의료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재활병의원 등에 대한 이용욕구가 일차적으로 높았다. 이외에도 직업 및 교육과 관련된 장애인정보화 교육기관, 성인을 위한 교육기관 등에 대한 이용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이 생활에 있어 할인이 필요한 분야에 병원 50%, 식당, 영화 등, 학원, 차량정비 3.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의료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종합제언

이 절에서는 전체장애인 서비스 욕구와 장애유형별 서비스 욕구를 종합 검토하여 양천구가 장애인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욕구조사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장애인들의 연령별 서비스 필요여부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미충족율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과정에 참여한 전체 장애인 614명이 표출했던 다양한 욕구를 표로 정리하여 미충족율의 순위를 매김

로서 자연스럽게 욕구의 크기와 우선순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1. 전체 장애인의 서비스 미충족률

1) 미취학 아동(총 35명)

미취학 아동의 경우 1순위는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로 15명이 응답했으며, 한 명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미충족율이 100.0%였다. 2순위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로 16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100.0%의 미충족율을 보였다. 3순위는 '청력 검사 및 훈련'으로 14명이 응답했으며 미충족율은 100.0%였다. 4순위는 동물매개치료 (17명, 100.0%), 5순위는 단기보호 (12명, 100.0%)였다. 6순위에서 10순위까지는 <표 4-3-1> 같다.

<표 4-3-1> 전체 장애인 서비스 미충족률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미취학 아동 (35명)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15(100.0%)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16(100.0%)	청력검사/훈련 14(100.0%)	동물매개치료 17(100.0%)	단기보호 12(100.0%)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진료상담 19(95.0%)	주간보호 15(93.8%)	체력단련실 등 장소 이용 19(90.5%)	여가활동 18(81.8%)	장애이해교육 22(78.6%)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취학 아동·청소년 (82명)	장기시설보호 41(100.0%)	청력검사/훈련 34(97.1%)	동물매개치료 46(95.8%)	그룹홈 45(95.7%)	단기보호 43(95.6%)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42(95.5%)	성교육/성상담 59(93.7%)	진료상담 56(93.3%)	인권교육 54(87.1%)	문화활동 50(84.7%)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성인 (497명)	결혼상담 97(94.2%)	취업후지원 156(93.4%)	그룹홈 79(91.9%)	이동복용서비스 99(90.8%)	단기보호 76(90.5%)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산모·신생아 돌보미서비스 75(90.4%)	언어치료 113(89.7%)	노인돌보미서비스 112(88.9%)	취업준비훈련 145(86.8%)	취업알선 155(86.6%)

2) 취학 아동 및 청소년(총 82명)

장기시설보호(41명, 100.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순위로는 청력 검사 및 훈련(34명, 97.1%)이었으며, 3순위로는 동물매개치료(46명, 95.8%)였다. 뒤를 이어 4순위와 5순위는 각각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이 (95.7%, 45명), 단기보호(95.6%, 43명)로 나타났다. 6순위에서 10순위까지는 <표 4-3-1>과 같다.

3) 성인(총 497명)

1순위는 결혼상담(94.2%, 97명)이 차지했다. 취업 후 지원은 2순위였으며 (93.4%, 156명), 3순위는 그룹홈이 (91.9%, 79명)이 차지했다. 4순위는 이동목욕서비스로 총 90.8%(99명)가 응답했고, 5순위는 단기보호(90.5%, 76명)였다. 6순위에서 10순위까지는 <표 4-3-1>과 같다.

2. 장애유형별 서비스 미충족율

1) 지체장애(총 200명)

지체장애 총 200명 중에서 미취학 아동은 5명, 취학 아동 및 청소년은 7명, 성인은 188명이었다.

(1) 미취학 아동

음악치료가 1순위로 5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한 명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2순위는 동물 매개치료로 4명이 응답했으나 역시 한 명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3순위는 주간보호(100%, 4명), 4순위는 단기보호(100%, 4명), 5순위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100%,4명)로 나타났다. 6순위에서 10순위까지는 <표 4-3-2>와 같다.

(2) 취학아동 및 청소년

1순위는 건강관리로 100.0%(6명)의 미충족율을 보였다. 2순위는 학습지원활동(100.0%, 5명)이었으며, 3순위는 일상생활훈련(100.0%, 5명)이었다. 그 뒤를 이어 미술치료(100.0%, 5명)와 주간보호(100.0%, 5명)이 각각 4순위와 5순위였다. 6순위에서 10순위까지는 <표

4-3-2>와 같다.

(3) 성인

이동목욕서비스가 97.8%(44명)의 미충족율을 보이며 1순위를 차지했다. 2순위는 주간보호(96.6%, 28명)였으며, 그룹홈(96.6%)이 3순위 취업 후 지원(95.3%)이 4순위 취업준비훈련(95.0%)이 5순위였다. 6순위에서 10순위까지는 <표 4-3-2>와 같다.

<표 4-3-2> 지체 장애인 서비스 미충족률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미취학 아동 (5명)	음악치료 5(100.0%)	동물매개치료 4(100.0%)	주간보호 4(100.0%)	단기보호 4(100.0%)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4(100.0%)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가사·간병방 문서비스 3(100.0%)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3(100.0%)	청력검사/훈련 3(100.0%)	심리치료 4(80.0%)	작업치료 4(80.0%)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취학 아동·청 소년 (7명)	건강관리 6(100.0%)	학습지원활동 5(100.0%)	일상생활훈련 5(100.0%)	미술치료 5(100.0%)	주간보호 5(100.0%)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성교육/성상담 5(100.0%)	그룹홈 4(100.0%)	부모교육 4(100.0%)	심리치료 4(100.0%)	문화활동 4(100.0%)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성인 (188명)	이동목욕서비 스44(97.8%)	주간보호 28(96.6%)	그룹홈 28(96.6%)	취업후지원 61(95.3%)	취업준비훈련 57(95.0%)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산모·신생아 돌보미서비스 35(94.6%)	언어치료 34(94.4%)	단기보호 27(93.1%)	직업능력평가 57(90.5%)	노인돌보미서 비스 7(90.4%)

2) 뇌병변장애(총 140명)

뇌병변장애로 응답한 총 140명 중에서 미취학 아동은 12명, 취학 아동 및 청소년은 11명, 성인은 117명이었다. 6순위에서 10순위까지는 <표 4-3-3>와 같다.

<표 4-3-3> 뇌병변 장애인 서비스 미충족률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미취학 아동 (12명)	진로상담 9(100.0%)	심리치료 8(100.0%)	미술치료 7(100.0%)	청력검사/훈련 7(100.0%)	동물매개치료 6(100.0%)
	6순위 가사·간병방문서비스 6(100.0%)	7순위 단기보호 5(100.0%)	8순위 산모신생아돌보미서비스 5(100.0%)	9순위 주간보호 6(85.7%)	10순위 체력단련시동장소이용 6(85.7%)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취학 아동·청소년 (11명)	인권교육 6(100.0%)	동물매개치료 6(100.0%)	진로상담 6(100.0%)	테마캠프 6(100.0%)	여가활동 6(100.0%)
	6순위 일상생활훈련 5(100.0%)	7순위 체육활동 5(100.0%)	8순위 단기보호 4(100.0%)	9순위 그룹홈 3(100.0%)	10순위 장기시설보호 3(100.0%)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성인 (117명)	단기보호 18(100.0%)	결혼상담 18(100.0%)	보호작업 24(96.0%)	그룹홈 18(94.7%)	직업능력평가 31(93.9%)
	6순위 성교육/성상담 24(92.3%)	7순위 취업후지원 33(91.7%)	8순위 취업알선 35(89.7%)	9순위 직업상담 33(89.2%)	10순위 노인돌봄서비스 26(86.7%)

(1) 미취학 아동

진로상담(100.0%, 9명)이 1순위였으며, 심리치료(놀이치료)가 100.0%의 미충족율로 2순위, 미술치료(100.0%, 7명)가 3순위, 청력검사/훈련(100.0%, 7명)이 4순위, 동물매개치료(100.0%, 6명)로 5순위였다. 6순위에서 10순위까지는 <표 4-3-3>와 같다.

(2) 취학 아동 및 청소년

인권교육(100.0%, 6명), 동물매개치료(100.0%, 6명), 진로상담(100.0%, 6명), 테마캠프(100.0%, 6명), 여가활동(100.0%, 6명)순으로 나타났다. 6순위에서 10순위까지는 <표 4-3-3>와 같다.

(3) 성인

단기보호(100.0%, 18명)와 결혼상담(100.0%, 18명)이 각각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했다. 보호작업(96.0%, 24명)은 3순위, 그룹홈(94.7%, 18명)은 4순위, 직업능력평가(93.9%, 31명)

이 5순위로 그 뒤를 이었다. 6순위에서 10순위까지는 <표 4-3-3>와 같다.

3) 지적장애(총 65명)

지적장애로 응답한 총 65명 중에서 미취학 아동은 8명, 취학아동은 27명, 성인은 30명이었다.

<표 4-3-4> 지적 장애인 서비스 미충족률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미취학 아동 (8명)	동물매개치료 5(100.0%)	체력단련실 등 장소이용 5(100.0%)	진로상담 4(100.0%)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4(100.0%)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3(100.0%)
	6순위 주간보호 2(100.0%)	7순위 단기보호 1(100.0%)	8순위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1(100.0%)	9순위 청력검사/훈련 1(100.0%)	10순위 물리치료 5(83.3%)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취학 아동·청소년 (27명)	그룹홈 17(100.0%)	동물매개치료 16(100.0%)	청력검사/훈련 11(100.0%)	장기시설보호3 100.0%	진로상담 23(95.8%)
	6순위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16(94.1%)	7순위 주간보호 14(93.3%)	8순위 단기보호 14(93.3%)	9순위 물리치료 12(92.3%)	10순위 성교육/성상담 23(92.0%)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성인 (30명)	언어치료사소 통훈련 13(100.0%)	물리치료 12(100.0%)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7(100.0%)	노인돌봄미서 비스 7(100.0%)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6(100.0%)
	6순위 이·미용서비 스 11(91.7%)	7순위 결혼상담 10(90.9%)	8순위 정보화교육 18(90.0%)	9순위 인문학교육 9(90.0%)	10순위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11(91.7%)

(1) 미취학 아동

지적 장애인의 미취학 아동 중에서 1순위는 동물매개치료(100.0%, 5명)였으며, 2순위는 체력단련실 등 장소 이용(100.0%, 5명), 진로상담(100.0%, 4명)이 3순위, 가사·간병방문서비스(100.0%, 4명)가 4순위,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100.0%, 3명)가 5순위였다.

6순위에서 10순위까지는 <표 4-3-4>와 같다.

(2) 취학 아동 및 청소년

1순위는 그룹홈(100.0%, 17명)이었다. 2순위는 동물매개치료(100.0%, 16명)였다. 3순위는 청력검사/훈련으로 100.0%(11명)의 미충족율을 보였다. 4순위와 5순위는 각각 장기시설보호(100.0%, 3명)와 진로상담(95.8%, 23명)이 차지하였다. 6순위에서 10순위까지는 <표 4-3-4>와 같다.

(3) 성인

1순위는 언어치료(의사소통훈련)가 차지했다. 100.0%(13명)의 미충족율을 보였다. 2순위는 물리치료(100.0%, 12명), 3순위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100.0%, 7명), 4순위는 노인 돌봄서비스(100.0%, 7명), 5순위는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100.0%, 6명)이었다. 6순위에서 10순위까지는 <표 4-3-4>와 같다.

4) 자폐성 장애(총 27명)

자폐성 장애 27명 중에서 미취학 학생이 1명, 취학 학생 및 청소년이 20명, 성인이 6명이다. 미취학 학생의 경우는 표시하지 않았다.

(1) 취학 아동 및 청소년

1순위는 장기시설보호(100.0%, 10명)였다. 2순위는 성교육/성상담(93.3%, 14명)이었으며, 3순위는 단기보호(91.7%, 11명), 4순위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91.7%, 11명), 5순위는 청력검사/훈련(87.5%, 7명)이었다. 6순위에서 10순위까지는 <표 4-3-5>와 같다.

(2) 성인

1순위는 취업 후 지원으로 100.0%(3명)로의 미충족율을 보였다. 2순위는 취업알선(100.0%, 3명), 3순위는 언어치료(의사소통훈련)로 역시 100.0%(3명)로의 미충족율을 보였으며, 4순위는 심리치료(원예치료 등)로 100.0%(3명), 5순위는 그룹홈으로 (100.0%, 3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6순위에서 10순위까지는 <표 4-3-5>와 같다.

<표 4-3-5> 자폐성 장애인 서비스 미충족률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취학 아동·청소년 (20명)	장기시설보호 10(100.0%)	성교육/성상담 14(93.3%)	단기보호 11(91.7%)	가사·간병방문서비스 11(91.7%)	청력검사/훈련 7(87.5%)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동물매개치료 13(86.7%)	진로상담 13(86.7%)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6(85.7%)	정보화교육 11(84.6%)	그룹홈 11(84.6%)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성인 (6명)	취업후지원 3(100.0%)	취업알선 3(100.0%)	언어치료(의사소통훈련) 3(100.0%)	심리치료(원예치료등) 3(100.0%)	그룹홈 3(100.0%)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결혼상담 3(100.0%)	성교육/성상담 3(100.0%)	활동보조서비스 3(100.0%)	가사·간병방문서비스 3(100.0%)	인권교육 2(100.0%)

5) 정신장애(총 46명)

실문 응답자는 총 46명이며, 이 중에서 미취학 아동이 1명, 취학 학생 및 청소년이 7명, 성인 38명이다. 미취학 아동 1명은 표시하지 않았다.

(1) 취학 아동 및 청소년

1순위는 성교육/성상담(100.0%, 4명)이었다. 2순위는 청력검사/훈련으로 미충족율이(100.0%, 4명)이었고, 그 밖에 물리치료(100.0%, 3명), 단기보호(100.0%, 3명), 그룹홈(100.0%, 3명)이 3순위, 4순위, 5순위를 이루었다. 6순위에서 10순위까지는 <표 4-3-6>와 같다.

(2) 성인

1순위는 취업 후 지원(100.0%, 15명)이었다. 결혼상담(100.0%, 13명)에 대한 미충족율도 높았다. 3순위는 인문학교육(100.0%, 12명)이었으며, 보호작업(100.0%, 10명)과 노인

돌보미 서비스(100.0%, 10명)가 각각 4순위와 5순위였다. 6순위에서 10순위까지는 <표 4-3-6>와 같다

<표 4-3-6> 정신 장애인 서비스 미충족률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취학 아동·청소년 (7명)	성교육/성상담 4(100.0%)	청력검사/훈련 4(100.0%)	물리치료 3(100.0%)	단기보호 3(100.0%)	그룹홈 3(100.0%)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장기시설보호 2(100.0%)	가사·간병방문서비스 2(100.0%)	동물매개치료 1(100.0%)	체육활동 5(83.3%)	문화활동 5(83.3%)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성인 (38명)	취업후지원 15(100.0%)	결혼상담 13(100.0%)	인문학교육 12(100.0%)	보호작업 10(100.0%)	노인돌보미서비스 10(100.0%)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그룹홈 9(100.0%)	물리치료 8(100.0%)	산모·신생아돌보미서비스 8(100.0%)	단기보호 7(100.0%)	언어치료 11(91.7%)

6) 시각장애(총 35명)

시각장애의 경우 수거된 설문지 모두가 20세 이상의 성인에 의해 작성되었다. 시각장애의 경우 장애인 기관의 이용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과 이용희망이 높았다는 점에서 모든 미충족율이 모두 100.0%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1순위는 취업준비훈련(100.0%, 14명)이고, 2순위는 체육활동(100.0%, 14명)이었다. 3순위는 문화활동(100.0%, 12명)으로 나타났으며, 인문학교육과 심리치료(원예치료 등)도 각각 11명으로 100.0%의 미충족율을 보였다. 6순위에서 10순위까지는 <표 4-3-7>와 같다.

<표 4-3-7> 시각 장애인 서비스 미충족률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성인 (35명)	취업준비훈련 14(100.0%)	체육활동 14(100.0%)	문화활동 12(100.0%)	인문학교육 11(100.0%)	심리치료 11(100.0%)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작업치료 9(100.0%)	주간보호 9(100.0%)	단기보호 8(100.0%)	성교육/성상담 8(100.0%)	이동목욕서비스 8(100.0%)

7) 청각장애(총 30명)

청각장애 30명 중에서 성인이 29명, 취학 아동이 1명이 있지만, 취학 아동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순위는 인문교육(89.9%, 8명)이었으며, 2순위는 인문학교육(88.9%, 8명)이었다. 일상생활훈련(87.5%, 7명)이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직업능력평가(87.5%, 7명)와 취업준비훈련(87.5%, 7명)이 각각 4순위와 5순위였다. 6순위에서 10순위까지는 <표 4-3-8>와 같다.

<표 4-3-8> 청각 장애인 서비스 미충족률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성인 (29명)	인문교육 8(89.9%)	인문학교육 8(88.9%)	일상생활훈련 7(87.5%)	직업능력평가 7(87.5%)	취업준비훈련 7(87.5%)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취업후지원 7(87.5%)	작업치료 5(83.3%)	여가활동 5(83.3%)	체력단련실 등 장소이용 5(83.3%)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5(83.3%)

8) 기타장애(총 26명)

안면, 간질, 심장, 신장 등의 장애를 기타장애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성인이 24명, 취학 아동이 2명이 응답하였다. 여기서는 취학 아동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1순위

는 인권교육(100.0%, 5명)이 차지했다. 이외에도 여가활동(100.0%, 4명)과 성교육/성상담(100.0%, 3명), 체육활동(100.0%, 3명), 문화활동(100.0%, 3명) 등 2순위에서 10순위까지의 미충족율이 모두 100.0%로 나타났다. 6순위에서 10순위까지는 <표 4-3-9>와 같다.

<표 4-3-9> 기타 장애인 서비스 미충족률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성인 (24명)	인권교육 5(100.0%)	여가활동 4(100.0%)	성교육/성상담 3(100.0%)	체육활동 3(100.0%)	문화활동 3(100.0%)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체력단련실 등장소이용 3(100.0%)	일상생활훈련 2(100.0%)	취업준비훈련 2(100.0%)	보호작업 2(100.0%)	취업후지원 2(100.0%)

참고문헌

- 가와이 가오리 저, 육민혜 역, 2005, 섹스자원봉사, 아롬미디어
- 경상남도, 2002, 장애인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02, 합천군 장애인 욕구조사
- 권선진, 2008,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 기획예산처, 2008,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 정밀조사 연구
- 김영중, 2001,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조직들의 재정지원 수급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용득외, 2008,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 김혜경, 2004, “요보호 노인 부양가족의 재가복지 및 재가보건의서비스 유형별 이용의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 56, No. 4, 한국사회복지학회.
- 밀양시, 2002, 밀양지역 장애우 욕구 및 기초실태조사-등록장애우를 중심으로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07,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06,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연구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2003, 은평지역장애인욕구조사서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복지연구소, 1999, 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을 위한 욕구조사
- 서울특별시/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장애인욕구조사 및 정책지표 설정연구.
-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2005,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복지관의 발전전략 모색』, 2005년 직원연수자료.
-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2006, 양천구 장애인복지서비스 수요추계 및 복지욕구 분석.
-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2008, 2007년 장애인복지사업 백서.
-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2008, 2008년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2008, 2008년 장애인복지사업 운영계획
-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2008, 장애인 복지 4년 성과 및 향후과제.
-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2008, 장애인복지서비스 5개년 계획.
- 우수명외, 2001,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모델 개발 연구(세미나 자료집)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07,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서비스 수요추계 및 복지육구 분석 보고서

이성규, 2001, 장애인복지정책과 노딜라이제이션, 홍익재.

주윤정 역, 한국시각장애인협회, 2006, 에이블아트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08,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복지육구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장애인예술활동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이용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1999, 장애인복지 관련 육구 및 자원 실태 조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7, 장애인 권리의 법적환경의 변화와 대응.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08,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역할 및 기능재정립 연구 공청회 자료집”.

W. Crimando · T. F. Riggan, 1996, 『Utilizing Community Resources: An overview of human services』,

<부록 1> 양천구 장애인 서비스 육구조사 설문지

양천구장애인 서비스 육구조사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은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의뢰를 받아,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육구에 맞는 서비스 개발 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설문은 장애인 당사자의 육구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설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I. 일반적 특성**”, “**II. 일상생활 수행능력**”, “**III. 기관 이용현황 및 육구**”는 모두 응답해 주시고, “**IV. 연령별 서비스 이용현황 및 육구**”, “**V. 기타 서비스 육구**”는 장애인 당사자가 해당하는 연령대에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은 **장애인 당사자가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 당사자를 대신하여 당사자의 입장에서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은 없으므로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설문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향동 1-1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전 화 : 02-2610-4758 팩 스 : 02-2610-4140

연구 원 : 상 중 열

책임연구원 : 김 용 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조사원 기계사항	조 사 일 시		조사원 성명	
	조사원 의견			

※ 이 설문은 **장애인 당사자가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일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하여 응답할 때,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당하는 번호에 √표를 하시거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일반적 특성

- 1. 응답하시는 분은 **장애인 당사자**이십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장애인 당사자와의 관계: _____)
 - 2. 귀하(또는 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등록된 장애 유형**은 무엇입니까? ()
 - ① 지체 ② 뇌병변 ③ 지적 ④ 자폐성 ⑤ 정신 ⑥ 시각 ⑦ 청각 ⑧ 언어
 - ⑨ 미등록 ⑩ 기타(_____)
- 2-1. 귀하(또는 응답자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가 **중복장애일 경우 등록된 장애 이외의 장애 유형**은 무엇입니까? (_____ 장애)
- 3. 귀하(또는 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무엇입니까? (_____)급
 - 4. 귀하(또는 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③ 기타(_____)
 - 5. 귀하(또는 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남자 ② 여자
 - 6. 귀하(또는 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세
 - 7. 귀하(또는 응답자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해당 번호를 모두 적어주시거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배우자 ② 어머니 ③ 아버지 ④ 할아버지 ⑤ 할머니 ⑥ 형제 ⑦ 자매
 - ⑧ 자녀 ⑨ 손·자녀 ⑩ 친척 ⑪ 기타(_____)

- 8. 귀하(또는 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미취학 ② 유치원·어린이집 재학 ③ 초등학교 재학·중퇴 ④ 중학교 재학·중퇴
 - ⑤ 고등학교 재학·중퇴 ⑥ (전문)대학 재학·중퇴 ⑦ 무학 ⑧ 기타(_____)
- 9. 귀하(또는 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① 자기 소유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타(_____)
- 10. 귀 가구의 **한 달 평균 수입(정부지원 수당 포함)**은 얼마입니까? (약 _____ 만 원)
- 11. 귀 가구의 **한 달 평균 지출**은 얼마입니까? (약 _____ 만 원)
- 12. 귀 가구에서 다음 중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부터 **순서대로 세 개의 번호**를 골라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식료품비 ② 교육비 ③ 의료비 ④ 주거광열비 ⑤ 교통비/차량유지비
 - ⑥ 사회활동 및 경조사비 ⑦ 여가문화생활비 ⑧ 빚 갚는 비용 ⑨ 재테크 및 금융
 - ⑩ 기타(_____)
- 13. 귀 가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 합니까? ()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계층 ③ 그 외(일반) ④ 잘 모름 ⑤ 기타(_____)
- 14. 귀하(또는 응답자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가족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
 - ① 매우 나쁘다 ② 조금 나쁘다 ③ 조금 좋다 ④ 매우 좋다

II. 일상생활 수행능력

- 1. 귀하(또는 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합니까? ()
 - ①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2번부터**)
 - ②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 **2번부터**)
 - ③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1-1번부터**)
 - ④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1-1번부터**)
 - 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1-1번부터**)

1-1. 귀하(또는 응답자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를 **주로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배우자 ② 부모 ③ 조부모 ④ 자녀 ⑤ 이웃 ⑥ 친척
 ⑦ 유료가정봉사원 ⑧ 유료 간병인 ⑨ 유료 활동보조인
 ⑩ 무료가정봉사원 ⑪ 무료 간병인 ⑫ 무료 활동보조인
 ⑬ 기타(_____)

1-2. 귀하(또는 응답자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현재 가족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도움은 얼마나 충분**합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한 편이다 ③ 충분한 편이다 ④ 매우 충분하다

2. 귀하(또는 응답자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행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필요**하든지 해당하는 번호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자립 정도		
• 옷 벗고 입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필요	③ 완전 도움 필요
• 세수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필요	③ 완전 도움 필요
• 양치질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필요	③ 완전 도움 필요
• 목욕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필요	③ 완전 도움 필요
• 식사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필요	③ 완전 도움 필요
• 자세변경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필요	③ 완전 도움 필요
• 일어나 앉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필요	③ 완전 도움 필요
• 옮겨 타기(앉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필요	③ 완전 도움 필요
• 밖으로 나오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필요	③ 완전 도움 필요
• 화장실 사용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필요	③ 완전 도움 필요
• 대변 조절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필요	③ 완전 도움 필요
• 소변 조절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필요	③ 완전 도움 필요

Ⅲ. 기관 이용현황 및 욕구

1. 다음은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명	인지여부		이용경험 여부		이용희망 여부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희망함	희망안함
•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①	②	①	②	①	②
• 특수교육 지원센터(학습지원센터 등)	①	②	①	②	①	②
•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	①	②	①	②	①	②
•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컴퓨터, 인터넷 등)	①	②	①	②	①	②
•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①	②	①	②	①	②
• 장애인복지관	①	②	①	②	①	②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등)	①	②	①	②	①	②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장애인금지원, 취업지원, 교육훈련 등)	①	②	①	②	①	②
• 장애인생활시설	①	②	①	②	①	②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①	②	①	②	①	②
• 장애영유아생활시설	①	②	①	②	①	②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①	②	①	②	①	②
• 주간·단기 보호시설	①	②	①	②	①	②
• 장애인전용체육관	①	②	①	②	①	②
•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보건소)	①	②	①	②	①	②
• 재활 병·의원	①	②	①	②	①	②
•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 이동지원서비스센터(장애인콜택시, 해피콜 등)	①	②	①	②	①	②
• 심부름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 교통안전공단(자동차사고피해유자녀생활기금, 장학금 지원 등)	①	②	①	②	①	②
• 사회복지시설(정신장애인)	①	②	①	②	①	②
•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①	②	①	②	①	②
•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1-1. **기타 이용하지는** 기관이 있으면, **기관명과 이용 기간**을 적어주십시오.

기관명	_____	이용기간	_____년 _____개월
기관명	_____	이용기간	_____년 _____개월

※ 여기서 부터는 **미취학 아동(만 0세-초등학교 입학이전), 취학학생(초등학교-고등학교), 성인(만 18세 이상)으로 설문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연령대에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V. 연령별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 **미취학 아동(만 0세-초등학교 입학 이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또는 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아래 **서비스의 필요여부와 이용여부**를 **해당하는 번호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예	아니오
• 조기특수교육	①	②	①	②
• 부모교육(자녀 양육교육)	①	②	①	②
• 장애인해교육(부모/형제)	①	②	①	②
• 물리치료	①	②	①	②
• 언어치료(의사소통훈련)	①	②	①	②
• 심리치료(놀이치료)	①	②	①	②
• 작업치료	①	②	①	②
• 음악치료	①	②	①	②
• 미술치료	①	②	①	②
• 동물매개치료	①	②	①	②
• 장애전담 어린이집 / 통합어린이 집	①	②	①	②
• 주간보호	①	②	①	②
• 단기보호	①	②	①	②
• 진로상담(진학상담 등)	①	②	①	②
• 건강관리(상담/검진, 치과진료 등)	①	②	①	②
• 활동보조서비스	①	②	①	②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①	②	①	②
•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①	②	①	②
• 여가활동(나들이, 공연관람 등)	①	②	①	②

사 업 명	필요여부		현재 이용여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예	아니오
• 체육활동(수영 등)	①	②	①	②
• 체육단련실/체육관/수영장/탁구장 등 장소 이용	①	②	①	②
•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①	②	①	②
• 청력검사/훈련	①	②	①	②

1-1. **기타 원하시는 서비스**가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_____	서비스	_____
서비스	_____	서비스	_____

◇ **취학 학생(초등학교-고등학교)**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또는 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아래 **서비스의 필요여부와 이용여부**를 **해당하는 번호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필요 여부		현재 이용여부	
	필요 하다	필요 하지 않다	예	아니 오
• 특수학교	①	②	①	②
• 특수학급(일반학교)	①	②	①	②
• 학교 방과 후 활동	①	②	①	②
• 정보화 교육(컴퓨터, 인터넷 활용 등)	①	②	①	②
• 부모교육(자녀 양육교육)	①	②	①	②
• 인권 교육	①	②	①	②
• 학습지원 활동	①	②	①	②
• 일상생활훈련(신변처리, 요리 등)	①	②	①	②
• 물리치료	①	②	①	②
• 언어치료(의사소통훈련)	①	②	①	②
• 심리치료(놀이치료)	①	②	①	②
• 작업치료	①	②	①	②
• 음악치료	①	②	①	②
• 미술치료	①	②	①	②
• 동물매개치료	①	②	①	②
• 주간보호	①	②	①	②
• 단기보호	①	②	①	②

사업명	필요 여부		현재 이용 여부	
	필요 하다	필요 하지 않다	예	아니 오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①	②	①	②
• 장기시설보호	①	②	①	②
• 진로상담	①	②	①	②
• 건강관리(상담/검진, 치과진료 등)	①	②	①	②
• 성교육/성상담	①	②	①	②
• 활동보조서비스	①	②	①	②
•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①	②	①	②
• 테마캠프(장애청소년 체험활동)	①	②	①	②
• 여가활동(나들이, 공연관람 등)	①	②	①	②
• 체육활동(수중 스포츠/축구/야구/배드민턴 등)	①	②	①	②
• 문화활동(풍물, 기악합주, 합창 등)	①	②	①	②
• 체력단련실/체육관/수영장/탁구장 등 장소 이용	①	②	①	②
•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①	②	①	②
• 청력검사/훈련	①	②	①	②

1-1. **기타 원하시는 서비스**가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_____	서비스	_____
서비스	_____	서비스	_____

◇ **성인(만 18세 이상)**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또는 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아래 **서비스의 필요여부와 이용여부**를 해당하는 **번호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필요 여부		현재 이용 여부	
	필요 하다	필요 하지 않다	예	아니 오
• 인문학 교육(문학/역사/철학/예술 등)	①	②	①	②
• 인권 교육	①	②	①	②
• 정보화교육(컴퓨터, 인터넷 활용 등)	①	②	①	②
• 일상생활훈련	①	②	①	②
• 직업상담	①	②	①	②
• 직업능력평가	①	②	①	②

• 취업준비훈련	①	②	①	②
• 보호 작업	①	②	①	②
• 취업 후 지원	①	②	①	②
• 취업알선	①	②	①	②
• 물리치료	①	②	①	②
• 언어치료(의사소통훈련)	①	②	①	②
• 심리치료(원예치료/댄스치료/드라마치료)	①	②	①	②
• 작업치료	①	②	①	②
• 주간보호	①	②	①	②
• 단기보호	①	②	①	②
• 그룹홈	①	②	①	②
• 결혼상담	①	②	①	②
• 성교육/성상담	①	②	①	②
• 활동보조서비스	①	②	①	②
•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①	②	①	②
• 노인 돌봄 서비스	①	②	①	②
•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	①	②	①	②
• 이동목욕서비스	①	②	①	②
• 이·미용서비스	①	②	①	②
• 여가활동(나들이, 공연관람 등)	①	②	①	②
• 체육활동(수영/탁구/배드민턴/등산/게이트 볼 등)	①	②	①	②
• 문화활동(풍물, 기악합주, 합창 등)	①	②	①	②
• 체력단련실/탁구장/수영장 등 장소 이용	①	②	①	②
• 휠체어/보장구 제작/대여	①	②	①	②

1-1. **기타 원하시는 서비스**가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_____	서비스	_____
서비스	_____	서비스	_____

7. 귀하(또는 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홍보(캠페인, 방송 등) ② 인식개선 교육 ③ 장애인의 지역행사 참여
- ④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 운영 ⑤ 기타(_____)

8. 귀하(또는 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지역에서 장애인을 위한 **활인혜택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병원 ② 식당 ③ 영화/스포츠/공연장 ④ 학원 ⑤ 차량정비
- ⑥ 기타(_____)

9. 귀하(또는 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구조를 편리하게 고치고 싶습니까?** ()

- ① 반드시 고치고 싶다(☞ 91번부터) ② 가급적 고치고 싶다(☞ 91번부터)
- ③ 별로 고치고 싶지 않다(☞ 10번부터) ④ 전혀 고치고 싶지 않다(☞ 10번부터)
- ⑤ 기타(_____)

9-1 **집의 구조를 바꾸거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습니까?**
(_____)

10.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기타 **건의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인터뷰 설문지

구 분	내 용
개인적 사항	
주거	집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노동	일을 하는데 있어(혹은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의료	치료를 받는 데 있어(병원/복지관 등)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	교육을 받는 데 있어(학교/복지관 등)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동 및 편의	이동하는 데 있어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여가 및 취미	꼭 해보고 싶은 취미활동이 있습니까? 꼭 가보고 싶은 곳(여행지)이 있습니까?
기타	특별한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부록3> 언어장애 인터뷰 자료

인터뷰 대상(1)	남성(30세), 언어장애
주거 (생활시설)	- 전화 받을 때 모르는 사람 전화 오면 당황하면 말을 더듬는 경우가 있다. - 글씨와 숫자를 다 잊어버려 다시 공부하고 있다. 컴퓨터도 못하고 책도 못 본다.
노동 (직업활동)	-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거나, 교수들 강연하는 것도 듣고 있다.
교육	- 학습도우미 지원을 받고 싶은데 수급권자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만 해당해 신청이 어렵다. - 컴퓨터나 영어를 배우고 싶다.
여가	- 제주도를 못 가봐서 한 번 가보고 싶다.
기타	- 본인이 얘기하고 싶을 때 말이 안 나오는 경우 누가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인터뷰 대상(2)	남성(4세), 언어장애
주거 (생활시설)	- 아동과 놀아주는 시간이 별로 없다. 언어발달에 있어서 많이 듣는 것보다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아동과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다.
노동 (직업활동)	-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거나, 교수들 강연하는 것도 듣고 있다.

의료분야 (재활)	- 영리를 추구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진단을 하기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 아이가 언어발달 외에 신체발달이나 지적발달 등에 있어서 다른 것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병원에는 가 본적이 없다.
교육	-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공간도 좁고, 선생님의 수도 부족하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무료 또는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으면 한다.
이동 (편의시설)	- 구립 어린이집 통학 시 저렴한 가격으로 자체 차량을 운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 양천구 구립 어린이집의 경우 맞벌이 부부를 우선으로 하고, 가정주부의 경우는 자리가 비어도 잘 연락을 안 한다. 아들의 경우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어, 먼저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가	- 아이를 키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잠시 맡기고 쉬고 싶을 때가 있다. 단기보호를 통해 잠깐 삶의 여유를 갖고 싶다.
기타	- 본인이 얘기하고 싶을 때 말이 안 나오는 경우 누가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